

연구보고서 2018-14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 이진숙 · 손서희 · 조성호 · 박신아

【책임연구자】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서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신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14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발행일 2018년 12월

저자 김유경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발간사 <<

우리 사회는 급속한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 맞벌이부부 증가로 가족돌봄을 담당할 주체가 급속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인구의 확대와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성인기 자녀의 독립 지체는 가족의 돌봄기능의 과부하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2015년 50.3세로 중·장년층 가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 가족은 본인의 노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로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은 가족갈등을 초래하고, 경제적 취약으로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중·장년층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부재하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 가족의 지속적인 이중부양 부담 구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생산하고 가족해체를 가속화시켜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므로 지속 가능한 가족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중부양 부담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균형 있는 가족부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수행 및 보고서 집필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분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요약(김유경)

제1장 서론(김유경)

제2장 이론적 배경(이진숙·김유경·박신아)

제3장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환경 및 특성(이진숙·김유경·조성호)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구조 변화분석(김유경·조성호·박신아)

제5장 국내외 이중부양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비교 분석(손서희)

제6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구조 전망과 정책함의(이진숙)

제7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김유경·
이진숙·손서희·조성호·박신아)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수행되었다.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위하여 검토를 해 주신 본원의 황남희 연구위원과 원외의 이여봉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8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8
제2장 이론적 배경	37
제1절 중·장년층 및 가족의 개념과 범위	39
제2절 부양 및 이중부양의 개념과 유형	45
제3절 이중부양 관련 이론	61
제4절 이중부양 관련 선행연구	72
제3장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환경 및 특성	77
제1절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환경 진단	79
제2절 중·장년층의 특성	106
제3절 시사점	124
제4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129
제1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분포 및 특성 변화 추이	132
제2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유형별 변화 추이 및 실태	144
제3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	177
제4절 중·장년층 가족의 정책 욕구	227
제5절 시사점	231

제5장 국내외 이종부양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비교 분석	239
제1절 국내외 제도 및 정책 사례 비교 분석의 틀	241
제2절 국내 이종부양 관련 정책	245
제3절 국외 이종부양 관련 정책	272
제4절 시사점	289
제6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종부양 구조 전망과 정책 함의	297
제1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종부양 환경 변화 전망	299
제2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종부양 구조 변화 전망	325
제3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종부양 구조 전망을 통한 정책 함의	356
제7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종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359
제1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종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361
제2절 중·장년층 대상의 이종부양 부담 해소 방안	363
제3절 성인자녀 대상의 이종부양 부담 해소 방안	373
제4절 노부모 대상의 이종부양 부담 해소 방안	379
참고문헌	387
부 록	413

표 목차

〈표 1-1〉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차 특성	31
〈표 1-2〉 중·장년층 가족의 이증부양에 대한 실태 조사 내용	32
〈표 1-3〉 이증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내용	33
〈표 1-4〉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자: 학계 전문가	34
〈표 2-1〉 중·장년 관련 연구들의 연령 규정	41
〈표 2-2〉 고용노동부의 관련 중·장년층 대상 계획 및 고용 지원 제도	43
〈표 2-3〉 부양 유형 분류 및 범위	52
〈표 2-4〉 이증부양의 개념과 유형 및 범위에 대한 정의	61
〈표 3-1〉 연도별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2002~2016)	83
〈표 3-2〉 연도별 자녀 양육 책임의 범위 변화(2003~2012)	85
〈표 3-3〉 연도별 유소년, 생산연령 및 고령 인구 추이(2000T~2016R)	87
〈표 3-4〉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2000~2017)	87
〈표 3-5〉 연도별 유소년, 생산연령 및 고령 인구 추이(2000T~2016R)	88
〈표 3-6〉 연도별 기대수명 변화 추이(2000~2016)	89
〈표 3-7〉 연도별 총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의 변화 추이(2000~2017)	89
〈표 3-8〉 연도별 평균 초혼 연령 추이(2000~2017)	90
〈표 3-9〉 연령별 남녀 미혼 인구 비율(2000~2015)	90
〈표 3-10〉 연도별 경제활동 참가율(2000~2017)	91
〈표 3-11〉 연도별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2005~2015)	93
〈표 3-12〉 연도별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의향(2005~2015)	93
〈표 3-13〉 가구 수 및 가구당 평균가구원 수(2000T~2016R)	96
〈표 3-14〉 연도별 가구 규모 분포(2000T~2016R)	97
〈표 3-15〉 연도별 가족 형태 분포(2000~2015)	98
〈표 3-16〉 연도별 가구 유형 변화 추이(2000~2017)	98
〈표 3-17〉 연도별 1인 가구 규모 및 분포(2000T~2016R)	99
〈표 3-18〉 연도별 총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2000~2017)	99
〈표 3-19〉 연도별 한부모가구 현황 변화 추이(2005~2017)	100
〈표 3-20〉 연도별 혼인 종류와 재혼 현황 변화 추이(2005~2017)	101

〈표 3-21〉 연도별 재혼 연령의 변화 추이(2000~2017)	101
〈표 3-22〉 연도별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교류 변화 추이(2004~2017)	104
〈표 3-23〉 연도 및 연령별 인구의 분포(2000~2015)	107
〈표 3-24〉 연도 및 연령별 중·장년층 인구의 분포(2000~2015)	107
〈표 3-25〉 연도 및 연령별 중·장년층 인구의 성별 분포(2000~2015)	108
〈표 3-26〉 연도 및 연령별 중·장년층 인구의 혼인 상태별 분포(2000~2015)	109
〈표 3-27〉 연도 및 연령별 가구주 분포(2000~2015)	110
〈표 3-28〉 연도별 중·장년층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2000~2015)	111
〈표 3-29〉 연도별 중·장년층 가구주의 성별 분포(2000~2015)	111
〈표 3-30〉 연도별 중·장년층 가구주의 혼인 상태별 분포(2000~2015)	113
〈표 3-31〉 연도별 중·장년층 가구주의 가구원 규모(2000~2015)	113
〈표 3-32〉 연도별 중·장년층 가구주의 가구 유형 분포(2000~2015)	114
〈표 3-33〉 연도별 중·장년층 가구주의 성인자녀·노부모 동거 여부 및 3세대 분포 (2000~2015)	115
〈표 3-34〉 연도 및 연령별 중·장년층 남성의 교육수준 분포(2000~2015)	116
〈표 3-35〉 연도 및 연령별 중·장년층 여성의 교육수준 분포(2000~2015)	117
〈표 3-36〉 연도, 성 및 연령별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2000~2015)	118
〈표 3-37〉 연도, 성 및 연령별 중·장년층의 고용 형태(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 비율) (2000~2015)	119
〈표 3-38〉 연도 및 연령별 중·장년층 남성의 직종(2000~2015)	120
〈표 3-39〉 연도 및 연령별 중·장년층 여성의 직종(2000~2015)	121
〈표 3-40〉 연도별 중·장년층의 주거 소유 비율(2000~2015)	122
〈표 3-41〉 연도별 중·장년층의 주거 종류(2000~2015)	123
〈표 4-1〉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의 추출 조건	131
〈표 4-2〉 연도별 중·장년층의 가족 특성별 이중부양 분포(2008~2016)	135
〈표 4-3〉 연도별 중·장년층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 이중부양 분포(2008~2016)	137
〈표 4-4〉 연도별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의 가족 특성(2008~2016)	141
〈표 4-5〉 연도별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2008~2016)	143
〈표 4-6〉 지난 1년간 미혼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빈도 비교: 중·장년층→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	153
〈표 4-7〉 지난 1년간 노부모와의 경제적 부양 빈도 비교: 중·장년층→노부모와 노부모→ 중·장년층	155
〈표 4-8〉 지난 1년간 미혼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유형 비교: 중·장년층→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	158
〈표 4-9〉 지난 1년간 노부모와의 경제적 부양 유형 비교: 중·장년층→노부모와 노부모→ 중·장년층	160
〈표 4-10〉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피부양자의 현금지원 비교: 중·장년층→피부양자와 피부양자→중·장년층	163
〈표 4-11〉 지난 1년간 미혼 성인자녀와의 현물지원 비교: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와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	166
〈표 4-12〉 지난 1년간 노부모와의 현물지원 비교: 중·장년층→노부모와 노부모→ 중·장년층	168
〈표 4-13〉 지난 1년간 미혼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 부양 비교: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와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	174
〈표 4-14〉 지난 1년간 노부모와의 비경제적 부양 비교: 중·장년층→노부모와 노부모→ 중·장년층	176
〈표 4-15〉 지난 1년간 이중부양에 지출한 총부양 비용 및 가계소득의 비율	181
〈표 4-16〉 지난 1년간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경제적 부양의 가계 부담 정도	184
〈표 4-17〉 지난 1년간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비경제적 부양의 가계 부담 정도	188
〈표 4-18〉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특성별 가구 총소득(2008~2016)	191
〈표 4-19〉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특성별 가구 순자산(2008~2016)	192
〈표 4-20〉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특성별 총소득 대비 총소비 지출 비율 (2008~2016)	193
〈표 4-21〉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특성별 총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 비율 (2008~2016)	194
〈표 4-22〉 연도 및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여부별 가구경제 수준 변화 추이 (2008~2016)	196
〈표 4-23〉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집단별 현재 경제 상태 비교	198

〈표 4-24〉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집단별 가계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 비교(1순위)	203
〈표 4-25〉 이중부양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전후 변화(중복응답)	208
〈표 4-26〉 중·장년층 가족의 특성 및 부양집단별 가족건강성 수준 비교	213
〈표 4-27〉 지난 1년간 부양 문제로 가족 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심한 갈등을 경험한 비율	218
〈표 4-28〉 중·장년층 가족의 특성별 미혼 성인자녀와의 가족관계 만족도 비교	223
〈표 4-29〉 중·장년층 가족의 특성별 노부모와의 가족관계 만족도 비교	226
〈표 4-30〉 이중부양 중·장년층 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229
〈표 5-1〉 2018 지방자치단체 청년 지원 예시	246
〈표 5-2〉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 내용	252
〈표 5-3〉 국민연금 급여 종류	258
〈표 5-4〉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	263
〈표 5-5〉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267
〈표 5-6〉 돌봄 부담 분석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연계	271
〈표 5-7〉 가족교실 운영 방법 및 주요 내용	272
〈표 5-8〉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283
〈표 6-1〉 응답자의 특성별 이중부양의 경우 바람직한 책임 주체에 대한 견해	304
〈표 6-2〉 응답자의 특성별 이중부양의 경우 바람직한 책임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견해	305
〈표 6-3〉 응답자의 특성별 이중부양의 경우 희망하는 거주 방식에 대한 견해	307
〈표 6-4〉 응답자의 특성별 이중부양의 경우 희망하는 부양 방식에 대한 견해	309
〈표 6-5〉 중위추계 장래 합계출산율(2018~2065)	315
〈표 6-6〉 중위추계 장래 기대수명(2018~2065)	316
〈표 6-7〉 현 수준 출산율과 중위 기대수명 기준 장래 인구구조와 부양비(2018~2065)	317
〈표 6-8〉 가구 유형별 추계 가구	321
〈표 6-9〉 이혼 가구주 장래가구 추계(2018~2045)	322
〈표 6-10〉 가구주의 연령별 장래가구 추계(2018~2045)	324
〈표 6-11〉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전반적인 부양	327
〈표 6-12〉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 유형별 향후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	329

〈표 6-13〉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경제부양	329
〈표 6-14〉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정서부양	332
〈표 6-15〉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신체부양	333
〈표 6-16〉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도구부양	334
〈표 6-17〉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중부양 순위	334
〈표 6-18〉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전반적인 부담	338
〈표 6-19〉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 ...	339
〈표 6-20〉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경제부양	340
〈표 6-21〉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정서부양	340
〈표 6-22〉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신체부양	341
〈표 6-23〉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도구부양	342
〈표 6-24〉 응답자의 특성별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변화에 대한 견해: 전반적인 부담 ...	343
〈표 6-25〉 이중부양 유형별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	346
〈표 6-26〉 응답자의 특성별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변화에 대한 견해: 경제부양	347
〈표 6-27〉 응답자의 특성별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변화에 대한 견해: 정서부양	348
〈표 6-28〉 응답자의 특성별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변화에 대한 견해: 신체부양	349
〈표 6-29〉 응답자의 특성별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변화에 대한 견해: 도구부양	351
〈표 6-30〉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의 이중부양 부담이 향후 가족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한 견해(1순위)	355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35
[그림 2-1] 가족의 노인 돌봄 실태	60
[그림 3-1] 자녀 양육의 책임 범위(2015)	86
[그림 3-2] 성인자녀 부양의 책임 범위(2015)	86
[그림 3-3] 연도별 청년 실업자 수 및 실업률(2000~2017)	92
[그림 3-4]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	102
[그림 3-5] 연도별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 비율 변화	103
[그림 3-6] 자녀와 비동거 비율	105
[그림 3-7]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	105
[그림 3-8] 연도별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2000~2015)	118
[그림 3-9] 연도별 중·장년층의 고용 형태(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 비율) (2000~2015)	119
[그림 4-1] 연도별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분포(2008~2016)	132
[그림 4-2] 연도별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의 연령 분포(2008~2016)	138
[그림 4-3] 연도별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에게 지원한 경제적 부양 유형별 변화(2008~2016)	145
[그림 4-4] 연도별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경제부양 유형별 변화(2008~2016)	145
[그림 4-5] 연도별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경제적 부양 유형별 변화(2008~2016)	146
[그림 4-6] 연도별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노부모로부터 받은 경제부양 유형별 변화 (2008~2016)	146
[그림 4-7] 연도별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에 주고받은 월평균 현금 수준 추이(2008~2016)	147
[그림 4-8] 연도별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가 주고받은 월평균 현금 수준 추이(2008~2016)	149

[그림 4-9] 연도별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노부모가 주고받은 월평균 현금 수준 추이 (2008~2016)	149
[그림 4-10] 응답자의 연령별 부양 유형	150
[그림 4-11]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의 경제적 부양 빈도	152
[그림 4-12]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 빈도	152
[그림 4-13]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의 경제적 부양 유형	156
[그림 4-14]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 유형	156
[그림 4-15]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의 현금지원 규모	161
[그림 4-16]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의 현금지원 빈도 비교	161
[그림 4-17]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의 현물지원 비교	164
[그림 4-18]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의 현물지원 비교	164
[그림 4-19] 연도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 정서적 부양 정도의 변화 (2008~2016)	170
[그림 4-20] 연도별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 정서적 부양 정도의 변화(2008~2016) ..	170
[그림 4-21] 연도별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 신체 부양 정도의 변화(2008~2016)	171
[그림 4-22]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 비경제적 부양 비교	172
[그림 4-23]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 비경제적 부양 비교	172
[그림 4-24] 연도별 중·장년층 이중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 추이 (2008~2016)	177
[그림 4-25] 응답자의 연령별 지난 1년간 이중부양에 지출한 월평균 총부양 비용	178
[그림 4-26] 응답자의 연령별 지난 1년간 월평균 이중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78
[그림 4-27] 지난 1년간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경제적 부양의 가계 부담 정도	182
[그림 4-28] 응답자의 연령별 지난 1년간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경제적 부양의 가계 부담 정도	182
[그림 4-29] 지난 1년간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비경제적 부양의 가계 부담 정도	186
[그림 4-30] 응답자의 연령별 지난 1년간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비경제적 부양의 가계 부담 정도	186

[그림 4-31] 이중부양 전·후의 가족생활 변화 분포(중복응답)	205
[그림 4-32]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집단별 가족건강성 수준 비교	211
[그림 4-33] 지난 1년간 부양 문제로 가족 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심한 갈등을 경험한 비율	216
[그림 4-34] 중·장년층의 미혼성인자녀와의 가족관계 만족도	220
[그림 4-35] 중·장년층의 노부모와의 가족관계 만족도	220
[그림 4-36] 이중부양 중·장년층 가족의 정책 욕구	227
[그림 5-1]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270
[그림 6-1] 장래 인구구조 변화	318

Abstract <<

Changes in Double Care Burden in Korean Families with Middle-aged and Older Heads:

Policy Implications

Project Head: Kim, Yukyung

In South Korea,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care among middle-aged families due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lag in socioeconomic independence of unmarried younger generations.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middle-aged families, they bear the double care burden of their elderly parents and unmarried adult children. The middle-aged generations may face unstable employment and experience financial hardships. However, the social support system is insufficient and the existing policies inadequately reflect structural problems and needs of middle-aged families. In addition, the lack of social safety nets for middle-aged families may contribute to the potential poverty, financial insecurity, and family conflicts and disintegration, resulting in a social cost burden. In order to reduce social costs, adequate policies should be prepared to establish a balanced family support system for middle-aged families. Therefore, this seeks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characteristics and care burdens of middle-aged familie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alleviating the double care burden

Co-Researchers: Lee Jin-sook · Son Seohee · Cho Sungho · Park Sina

of middle-aged families.

In this study, we suggests both economic and non-economic support for middle-aged families. Economic support is needed to activate the work market participation support system, preserve the income of the unemployed, strengthen the employment and start-up program, find ways to recognize credit for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nd activate the housing pension system. Non-economic support should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compensation system for dual care, the provision of integrated services for double care, and the reinforcement of balanced support for dual care and work, as well as the reinforcement of mental health support services. An integrated adult access support policy should be prepared with economic support for adult children. Jobs and housing stabilization measures for adult children should also be considered. Non-economic support should seek a self-reliant relationship between the middle-aged and adult children, and provide emotional support between generations. The economic support of the elderly parents is needed to strengthen the public income support system, strengthen the income base through the job business for senior citizens, change the culture of supporting the elderly, and establish an old safety net. Non-economic support requires mutual support by establishing a shared structure between projects by type of support and improving the exchange of generations between the middle aged and elderly parent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속한 소가족화·핵가족화, 가족해체,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가족돌봄을 담당할 주체가 급속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 인구의 확대와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성인기 자녀의 독립 지체는 돌봄 수요의 증가를 야기한다.

중·장년층은 본인의 노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다. 고용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이들은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은 가족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이들이 경제적 취약으로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사회적 지원 체계는 미흡하고, 중·장년층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은 부재하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이중부양 부담 구조는 빈곤과 해체를 야기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 중·장년층 가족의 균형 있는 가족부양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중부양 부담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장년층 가족의 균형 있는 가족부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해 통계청 통계자료 및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재분석하고, 일반 국민 및 중·장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하는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II. 주요 연구 결과

1. 중·장년층의 개념 및 범위

이증부양 주체가 인구적으로는 중년층 이후부터 노년기 이전으로 특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년과 중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 측면에서 만 45~64세 범위를 중·장년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표 1〉 중·장년층의 개념 및 범위 비교

	구분	개념	연령 규정
중·장년 관련 연구	Erikson(1974)	중년기	만 40~65세
	Petry(2002)	중년기	만 36~55세 미만
	Wakasaki 외(2006)	중년기	만 30~59세
	김미경·주재선(2003)	중고령기	만 50~60대
	금재호(2011)	중장년층	만 45~59세
	성지마·안주엽(2011)	중고령기	만 50~60대
	진주영·하규수(2016)	중장년기	노년기의 직전 시기
	김영란	중장년층	만 40~59세
중·장년층 정책 대상	3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		만 55세 이상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만 40대 이상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만 40세 이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2. 이증부양의 개념 및 유형

이증부양은 '두 세대 이상의 피부양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특히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거 여부와 상관 없이 동시에 부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증부양 유형은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으로 구분하였다. 부양받는 대상은 노부모와 미혼 성인자녀로 한정하였다.

〈표 2〉 이중부양의 개념과 유형 및 범위

구분	내용 및 범위
이중부양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세대 이상의 피부양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경우'로, 특히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동시에 부양하는 행위 • 노부모 부양: 노부모를 대상으로 부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성인자녀 부양: 만 25세 이상의 미혼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부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중부양 유형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부양: 금전 및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 비경제적 부양: 정서, 신체 및 도구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서적 부양: 피부양자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 주는 행위 • 신체 및 도구적 부양(서비스 부양): 신체적 독립과 가사 운영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청소·심부름·간병·돌봄 등을 제공하는 행위

3.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환경 및 특성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환경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중장년층 가족은 소위 '깁 세대' 부양자가 이끄는 가족으로서, 부양에 대한 사회와 가족 간의 이해 충돌, 가족 내 세대 간의 의식적 괴리, 가족제도와 가족적 생활양식 간의 불일치로 인해 타 연령대의 부양자 가족과는 상이한 부양 조건에 처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장기적 경기 침체와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인구·사회적 환경의 변화, 가족 내재적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 가족은 경제적 부양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은 물론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핵가족 중심의 부양관이 확산되면서 가족 내적인 부양 구조에도 균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인자녀들이 성인기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존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중부양 부담의 현실은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세대나 노인 세대와 달리 중·장년층은 전통적 부양 의식의 유지와 새로운 생활양식의 수용이라는 두 가지의 모순적인 압박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가족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 상황에 이들이 강하게 도전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양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가족 가치관의 변화가 주로 사회경제적 구

조와 핵가족 중심의 생활양식,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빚어낸 결과라고 할 때, 앞으로도 중·장년층 가족들이 노부모와 성인자녀에 대한 이중부양의 책임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부양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중·장년층 가족이 사적인 차원에서 부양을 수행하는 것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 불안정의 지속과 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부양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지만, 소규모화와 가족 내 돌봄의 한계로 인해 이중부양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은 갈수록 감소할 것이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규모화되고 다양화된다면 사적 부양의 공백은 더욱 커지고, 부양 욕구를 가진 가족 구성원은 더욱 증가할 것이기에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사회는 기존 가족 중심의 부양 패러다임을 새롭게 검토하고, 노부모뿐 아니라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까지도 고려하는 다층적인 부양지원 체계의 구성을 고민해 봐야 할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다층적인 이중부양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 사회가 각각의 층위에서 어떻게 책임과 역할을 분담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

중·장년층의 부양 환경 진단과 함께 이중부양 주체인 중·장년층의 인구가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부양 구조와 자원 등 이중부양 부담의 요인을 진단하는 데 중요하게 자리매김한다.

전체 인구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44세 이하 인구는 약 57%로 2000년 이후 15년간 약 23% 감소하였다. 중·장년층인 45~64세 인구는 약 30%로 같은 기간 54% 증가하였으며, 고령층인 65세 이상 인구는 약 13%로 2배 증가하였다. 이 중 중·장년층 인구의 연령

별 분포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45~54세 인구는 56.0%, 55~64세 인구는 44.0%로 15년간 간격이 줄어들어 1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성별 분포는 2000년 여성이 다소 높다가 남성이 소폭 증가하여 2015년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혼인 상태별 분포는 만혼화 및 가족해체의 영향으로 2015년 유배우는 약 79%로 15년간 다소 감소하였다. 사별·이혼과 미혼은 각각 약 15%와 약 6%로 같은 기간 미혼은 5배 증가하였다.

한편 중·장년층의 가구주 분포를 보면 대체로 인구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중·장년층 가구주의 가구원 규모를 보면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2015년 기준으로 2~3인 가구와 1인 가구는 각각 52%와 19%로 증가하였고, 4~5인 가구는 29%로 감소하였다. 가구 유형은 2000년 중·장년층의 다수가 부부와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다 2005년 이후 핵가족과 확대가족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유형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이중부양의 중요한 요인인 자녀 및 노부모 동거, 그리고, 3세대 가족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장년층 가구 중에서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약 56%로, 15년간 성인자녀와의 동거율은 약 17% 감소하였다.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형태를 보여 중·장년층의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약 7%로, 같은 기간 43% 감소하여 자녀와의 동거보다 2.5배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이와 같이 노부모와의 비동거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동거 중심 부양 형태에서 비동거 부양에 대응하는 중·장년층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세대 비율은 2015년 기준 약 6%로, 42%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가족구조상 3세대 형태는

절대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성인자녀의 독립 지체 및 노부모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중·장년층의 사회경제 특성은 부양 자원 및 부양 부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중·장년층의 교육수준을 보면 초졸 이하의 비율은 2000년 약 23%에서 2015년 약 6%로 15년간 4분의 1로 낮아진 반면, 대졸 이상의 비율은 같은 기간 약 22%에서 약 41%로 2배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성별 차가 매우 현저하여 남성은 2000년 약 78%에서 2015년 약 83%인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약 42%에서 약 50%로 남성의 약 절반 정도만이 경제활동을 하였다. 직종은 남성의 경우 2000년에는 거의 절반이 기능·장치·단순노무직에 집중되고, 관리자 및 전문직과 사무·서비스·판매직은 유사한 분포를 보이다 2015년으로 오면서 관리자 및 전문직은 감소하고, 사무·서비스·판매직과 기능·장치·단순노무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거 소유는 2000년 자가 비율이 약 72%에서 2015년은 약 61%로 감소하였다. 전세도 같은 기간 약 16%에서 13%로 소폭 감소한 반면, 기타(월세, 사글세 등)는 약 12%에서 26%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등 사회경제 수준은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노동 집중의 직종 구조 및 주거 환경의 불안정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이중부양 주체인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배가되어 빈곤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통한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분포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 중·장년층 인구 중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비율은 2008년 약

35%에서 2016년은 약 42%로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55~64세 연령층이 45~54세 연령층보다 이중부양의 증가폭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이중부양 부담의 중·장년층 변화 추이를 보면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45~54세 연령층은 같은 기간 절반 이상으로 감소한 데 비해 55~64세 연령층은 31%포인트 증가하여 55~64세 연령층이 45~54세 연령층보다 3.2배 높은 분포를 보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통한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실태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의 경제적 부양 유형별 교환 추이는 현금지원이 현물지원보다 높았으나, 점차 현금지원은 감소하고 현물지원이 증가하는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수준은 현금지원은 과반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으나, 현물지원은 현금지원의 절반 내외 수준으로 그 비율은 낮았으나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비율은 일관되게 낮은 분포를 보였다.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에 주고받은 현금 수준을 보면 2008년 중·장년층이 피부양자에게 지원한 평균 금액(91만 6100원)은 피부양자로부터 받은 평균 금액(36만 4300원)보다 2.5배 높았다. 그러나 2016년에는 3.5배(중·장년층이 지원한 금액 103만 8100원, 피부양자에게 받은 금액 29만 3800원)로 나타나서 9년간 중·장년층이 지원한 평균 금액과 받은 평균 금액의 차이는 1.4배까지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화 조사 결과를 통한 현금지원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중·장년층(115만 5000원)이 피부양자(17만 6400원)에게 월평균 97만 8600원(6.6배)을 더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은 피부양자보다 정기적으로 55만 6000원, 비정기적으로 42만 6300원을 더 많이 지원하여 각각 6.7배와 6.5배의 차이가 났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통한 비경제적 이중부양을 정서부양과 신체부

양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정서부양은 동거 여부와 비동거인 경우 접촉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2008~2016년까지 9년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및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의 정서부양은 감소하거나 정체 양상을 보였다. 동거 형태는 미혼 성인자녀가 노부모보다 높았으나, 만나거나 연락하는 접촉 정도는 노부모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수행이 불편한 미혼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신체부양을 경험한 사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노부모를 중심으로 신체부양의 변화 양상을 보면 노부모를 수발한 평균 기간과 시간은 2008년 평균 35주, 평균 22시간에서 2016년 평균 43주, 평균 16시간으로, 대체로 평균 수발 기간은 증가하지만 평균 주당 수발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산과 함께 고소득 가구에서의 간병 인력 활용이 활성화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전화 조사 결과를 통한 비경제적 부양 실태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지원한 비경제적 부양은 전반적으로 노부모보다 미혼 성인자녀에게 정서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을 지원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신체적 부양은 미혼 성인자녀보다 노부모에게 약 3배 높은 지원을 하였다. 피부양자 중에는 미혼 성인자녀가 노부모보다 중·장년층에게 비경제적 부양을 지원하는 비율이 모두 높았다. 특히 신체적 부양은 다른 비경제 부양과는 다르게 미혼 성인자녀가 중·장년층보다 지원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통한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 수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부담하는 월평균 부양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약 31%로 3분의 1에 근접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26%의 분포를 보였다. 전화 조사 결과를 통하여 부양 집단별로 경제적 부양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

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지출한 총비용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는 이중부양집단이 약 18%로 단일부양집단의 약 10%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에 비해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총비용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를 보면 이중부양집단(53%)이 단일부양집단(46%)에 비해 주관적인 가계 부담 정도가 높았다. 중·장년층이 수행한 비경제적 부양이 미치는 부담 정도는 이중부양집단(32%)이 단일부양집단(29%)에 비해 주관적인 부담 정도는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여부별로 가족경제 수준 변화 추이를 보면, 총소득과 순자산은 모두 이중부양가구가 비부양가구보다 많았고, 기간이 경과될수록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커지며, 두 집단 모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총소득 대비 총소비 지출 비율과 총소득 대비 및 생활비 지출 비율은 이중부양가구보다 비부양가구에서 크게 나타났다. 전화조사 결과를 통해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을 보면, 비부양집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단일부양집단, 이중부양집단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양집단별 절대적 크기의 차이로 해석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이중부양집단은 세금·보험료와 채무의 원리금 상환으로 나타난 데 비해, 단일부양집단과 비부양집단은 유사하게 채무의 원리금 상환과 자녀부양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조사 결과를 통하여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정생활의 변화, 가족관계 및 갈등, 가족건강성 측면에서 살펴해보았다. 이중부양 전후에 가정생활에 변화가 있다는 중·장년층 비율은 절반으로 나타났다. 변화의 특징은 이중부양으로 인한 부양자 간의 갈등,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의 갈등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 외에 부양자의 일상

및 사회생활 제약, 경제 및 건강 악화 등에 집중되었다.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의 가족 갈등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가족 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이중부양 문제가 8%로 나타났다. 그중 부모부양 문제가 미혼 성인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보다 다소 높았다.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이중부양집단과 비부양집단에서는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에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단일부양집단에서는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에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미혼 성인자녀보다 다소 높았다.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모든 피부양자에서 비부양집단이 가장 높아서 부양 부담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장년층의 부양 집단별 가족건강성을 비교하면 이중부양집단과 단일부양집단의 가족건강성이 비부양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세대 간에 부양 부담을 교류하고 지원하는 행동이 가족건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 응집력(가족건강성)이 높은 경우 부양 부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다고도 볼 수 있다.

전화 조사 결과를 통해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정책 욕구를 보면 이중부양을 수행하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1순위가 일자리 마련이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세금공제 등 가계 보전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거주비 지원, 가족돌봄휴직제도 및 청원휴직제도, 사회적 관심 강화 등도 보였다.

5. 국내외 이중부양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비교 분석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대상인 성인자녀 및 노부모 관련 국내외 정책을 경제적·비경제적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외 성인자녀 대상 경제적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성인자녀, 즉 청년은 여러 OECD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청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만, 대학 졸업 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다수 가족이 개별 가족 수준에서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청년 대상 경제적 지원 정책인 소득 지원 및 주거 지원 제도는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제공되므로 부모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만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또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모든 저소득 가족의 성인자녀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부모의 소득이 정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의 경우 공적 제도보다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성인자녀의 독립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서구 사회에서도 부모와 동거하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성인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 직업훈련,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Goldfarb, 2014; Tosi & Grundy, 2018). 덴마크와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들에게 교육, 주거, 고용, 공공부조, 가족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직업 세계로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반면 남유럽 국가의 빈약한 청년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가족 의존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Fingerman, 2017; Thévenon, 2015). 일부 유럽 국가는 청년보장제도라는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청년정책은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다수를 차지

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인 대학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입 대상인 성인자녀 지원은 국내의 청년정책과 유사하게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부조 제도하에서 이뤄졌다. 고용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와 달리 핀란드와 영국 같은 국가들은 고용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실업부조를 지원하였다. 특히 실업부조는 직업교육 훈련과 함께 제공될 때 효과적이므로 구직활동 및 교육의 조건하에 실업부조가 제공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에게 수당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 청년들이 양질의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고용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제도 도입이나 구직활동 과정 동안에 지급하는 수당의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당 지급과 관련해 자산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채창균, 최영섭, 오호영, 정재호, 2017).

국내외 성인자녀 대상 비경제적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국내 성인자녀 대상 비경제적 지원은 일자리 제공 등 고용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저성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움을 고려할 때 고용정책 중심의 청년정책에는 한계가 있다(이철선, 김영란, 변수정, 2016b). 또한 대학생 중심의 청년정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인 소득 없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면서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 취업준비생, 근로빈곤 청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이철선 외, 2016b).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년 집단을 고려할 때 고용 중심의 청년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공부조, 사회정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등 통합적인 청년정책 마련을 통해 청년의 학업-취업-결혼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30세 미만의 청년까지 청년 보장 대상으로 설정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핀란드의 사례를 국내에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부모 부양 관련 경제적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노부모의 중·장년층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지원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제, 주택 특별공급, 합가 시 양도소득세 면제 정도에 불과하였다. 노부모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경제 지원 정책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지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장년층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 노부모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개인의 시민권을 강조하는 북유럽 국가와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의 정책 차이가 일부 발견되었다.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상속 제도나 세제 혜택과 같은 경제적 지원 제도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족부양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상속제도와 세제 혜택을 통해 가족부양을 장려하였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OECD 국가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에게 돌봄자수당이나 간병수당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이는 노인 부양을 가족의 책임하에 두기보다 관대한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부모 부양과 관련한 비경제적 지원은 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자 지원에 관한 형태로 주로 제공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족의 노부모 부양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시설급여보다 가정에서의 재가급여를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부양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부모 부양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휴식 지원, 상담 등의 부양자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부양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공식적 돌봄을 활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가족요양보호사의 돌봄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반면 비공식 돌봄자 지원이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는 서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구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돌봄자에게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휴식지원, 상담, 훈련 등의 지원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은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치매가족 휴가지원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비해 핀란드의 경우 비공식 돌봄자가 매달 2일 이상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가족돌봄자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돌봄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노부모가 외부 기관에서 하루 7시간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더라도 종일 돌봄자로 인정하여 돌봄자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상이 낮은 우리나라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가족돌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독일의 경우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다양한 돌봄휴가제도를 마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서구의 가족돌봄자 대상 서비스가 국내보다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가족돌봄자를 위한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OECD, 2011). 국외 노인 부양 지원 정책 사례는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자원 확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돌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 핀란드의 경우 돌봄자의 근로 여부는 돌봄자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실업수당 수혜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독일은 비공식 돌봄자에게 연금보험과 실업보험 가입 혜택을 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비공식 돌봄자의 신체적 부담에 대한 보호 조치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돌봄자 지원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6.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전망과 정책 함의

미래의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층 가족들이 이중부양 부담 문제를 헤쳐 나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개인과 가족들의 부양관과 생활양식은 앞으로 더욱더 개체화되고 분화될 것이며, 제도적 가족 규범은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부양관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사회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라는 사회경제적 변동은 가족들이 전통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유발할 것이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 또한 갈수록 더욱 소규모화하고 다양화할 것이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노부모 부양 기간은 장기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어 중·장년층 부양자들은 노후 은퇴기에 접어들다 해도 부양의 집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전화 조사와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중·장년층 세대의 이중부양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이중부양이 증가하리라는 견해가 감소하리라는 견해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이중부양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향후 이중부양은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도구적 부양의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중부양 유형은 경제적 이중부양이었다.

이중부양 주체의 전반적인 부담 변화에 대한 전화 조사 결과에서는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사회적 또는 공적 이중부양에 대한 전망이 강했다. 이중부양 주체의 이중부양 유형별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경제적 이중부양과 신체적 이중부양, 도구적 이중부양에 대해서는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정서적 이중부양에 대해서는 부양 유형의 특성상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및 장기적 경기 침체 현상은 가족의 이중부양 능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들이다. 인구구조의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양 능력이 강화되고, 가족의 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위한 이중부양이 증가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욕구와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본다면 우선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기존에 가족부양 정책에서 간과되었던 성인자녀와 노부모, 중장년 부양자를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해 보편성을 확장하는 일이다. 종전의 부양정책은 부양 지원 대상을 판단할 때 주로 소득 능력이나 건강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건강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성인이나 소득이 있는 노인은 부양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불안정한 고용이 확산되고, 사회보장이 미흡한 사회적 상황에서 건강하고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에 대한 부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장년층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이중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건강과 근로 능력 외에 실질적인 부양 욕구를 기준으로 하여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이중부양은 가족을 통한 사적 부양에는 한계가 있고 공적 부양을 통한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가 필요하므로 부양 지원 정책의 전달 주체를 공적 주체 중심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중부양에 대한 부양 주체 간의 분담에서는 각기 상이한 이중부양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적 부양 주체와 공적 부양 주체 간의 적절한 분업 구조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중부양 유형 중에서는 특히 경제적 이중부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성인자녀와 노부모 등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 강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중부양 부담이 강화되면 가족의 갈등과 해체에 대한 위험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중부양 부담이 중·장년층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나 건강 및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가족들에게 소득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건강과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이중부양 부담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중·장년층 부양자는 경제적 문제에서부터 건강 상실과 인간관계의 단절 및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중·장년층 부양자를 위한 부양 능력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및 시사점

1. 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2015년 50.3세로 중·장년층 가족이

확대되고 있다. 중·장년층은 본인의 노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이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이들이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중·장년층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 가족의 지속적인 이중부양 부담 구조는 빈곤과 해체를 야기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 가족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을 위해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간에 균형 있는 가족부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은 부양 대상과 부양 유형에 따라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중·장년층 세대의 경제적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담보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적인 부양문화 정착을 통해 가족 내 부양 주체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미혼 성인자녀 부양은 성인자녀의 독립 지점인 취업 및 결혼 등의 공적 지원을 통해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 시기가 단축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노부모 부양 환경의 공백과 세대 간 갈등은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므로 노인 부양의 공적 기반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이중부양 욕구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부양 형태는 공·사 간에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부모에 대해서는 부양의 사회화를 강화하고, 성인자녀 부양은 가족이 주로 책임지지만 공공이 성인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분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 방안

중·장년층 대상의 경제적 지원으로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

제도 활성화를 비롯하여 실직 중·장년층 대상 소득 보전과 취·창업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상의 부양 기간의 크레딧 인정 방안 모색과 함께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산 보전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등이 검토·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비경제적 지원으로는 이중부양 보상 체계 마련 및 이중부양자 통합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중부양과 일의 균형적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내실화와 함께 이중부양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의 해소를 위한 지원 서비스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자녀 대상의 경제적 지원으로 통합적 성인기 진입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성인자녀의 일자리 및 주거 안정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비경제적 지원으로는 중·장년층과 성인자녀 간에 상호부양과 사적 이전에 대한 기대 변화로 세대 간 자립적 관계가 모색되어야 하고, 세대 간 정서 지원 서비스 기반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부모 대상의 경제적 지원으로 공적 소득 지원 체계 강화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득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고, 자립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부양문화 형성 및 공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노후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경제적 지원으로는 부양 유형별 공사 간 분담 구조를 구축하고,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에 교류 증진을 통한 상호부양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중·장년층 가족, 이중부양 및 이중부양 부담, 미혼 성인자녀 부양, 노부모 부양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 맞벌이부부 증가로 가족돌봄을 담당할 주체가 급속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고령 인구의 확대와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성인기 자녀의 독립 지체는 돌봄 수요의 증가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가족의 돌봄 기능 과부하로 인한 가족부양 기능 공백에 노출되고 있다.

가구원 규모별 분포를 보면 1~2인 가구는 2000년 34.6%에서 2010년 48.2%, 2015년 5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핵가족 비율은 2000년 68.3%에서 2010년 61.6%, 2015년 58.6%로 소폭의 감소를 보이며 절반을 상회하였다(통계청, 2000d; 통계청, 2010d; 통계청, 2015c).

맞벌이 가족은 2000년 35.4%에서 2009년 40.1%, 2014년 4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00b; 통계청, 2009; 통계청, 2014). 조이혼율은 2000년 2.5건에서 2012년 2.3건, 2015년 2.1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일정 건수가 발생하는 추세를 보였다(통계청, 2000c; 통계청, 2012; 통계청, 2015b).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3%에서 2010년 11.3%, 2015년 13.2%로 높아져 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다(통계청, 2000d; 통계청, 2010d; 통계청,

2015c). 초혼 연령은 2000년 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서 2015년 각각 32.6세와 30.0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00c; 통계청, 2015b).

우리나라는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2015년 50.3세로 중·장년층 가족이 확대되고 있다.¹⁾ 중·장년층은 본인의 노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이들이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실증적 조사 결과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성인자녀 부양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0%, 부양 때문에 가계가 부담스럽다는 비율은 32%였고, 노부모 부양인 경우는 각각 9.7%와 25% 분포를 보였다(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어려움으로 부양비용 부담은 39.2%, 가족과의 갈등은 32.9%인 데 비해 노부모 부양은 각각 48.4%와 16% 분포를 보였다(김유경 외, 2015).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연령별 고용률에서 잘 나타난다. 고용률을 보면 30대(74.2%)부터 40대(79.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50대(74.4%)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60세 이상(38.9%)은 40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통계청, 2015a).

이와 같이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은 가족 갈등을 초래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지만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중·장년층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족부양 관련 연구는 노인부양에 편중되어 부양자 스트레스 및 노인부양과 가족 갈등 등 노인부양 부담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성인자녀 부양 관련

1) 우리나라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2000년 44.5세에서 2010년 48.3세, 2015년 50.8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고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통계청, 2000d; 통계청, 2010d; 통계청, 2015c).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중부양 부담의 원인 및 환경 분석부터 이중부양 구조의 특성 및 문제점, 정책 욕구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통합적인 가족부양 정책 도출을 위한 기초 연구도 미흡하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 가족의 지속적인 이중부양 부담 구조는 빈곤과 해체를 불러오고,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야기한다. 중·장년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중부양 부담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균형 있는 가족부양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중부양 부담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균형 있는 가족부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환경을 진단하고 중·장년층의 인구 가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이중부양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추이를 진단하고 정책 욕구를 파악한다.

넷째,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환경 및 구조를 전망하고 정책적 의미를 도출한다.

다섯째,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환경 진단 및 특성 분석,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과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전망을 반영하여 이중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전체 7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론을 제외하면 6개 핵심 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 영역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3장에서는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환경을 부양 의식과 인구사회적 변화, 가족 변화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장년층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이중부양 실태 및 영향 등을 진단하고 정책 욕구를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내 및 주요 선진국의 이중부양 관련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였고, 제6장에서는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를 전망하고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이중부양에 대한 이론,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및 전망,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등을 기반으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이중부양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동향 분석

제2장에서는 중·장년층과 중·장년층 가족 및 이중부양의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 이중부양 유형을 부양 주체, 부양 서비스 및 부양 대상별로

분류하는 한편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나.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환경 및 특성

제3장에서는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환경을 부양 관련 인식 변화, 인구 사회적 변화 및 가족 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중·장년층의 특성을 인구가족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다.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비중, 이중부양 부담의 중·장년층 및 가족의 특성 변화 추이,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실태 변화를 경제부양과 비경제부양 측면에서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이 연구를 위한 전화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실태를 경제부양과 비경제부양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중부양 부담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이중부양 부담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 욕구도 도출하였다.

라. 국내외 이중부양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비교 분석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관련 정책 분석 틀은 성인자녀 및 노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과 비경제적 지원을 적용하였다.

국내 상황에서는 이중부양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국외 사례에서는 시민권 보장을 바탕으로 한 보편주의적 급여가 발달해 있는 북유럽 국가와 국가가 가족부양을 보조하는 방식

의 정책을 펼치는 가족주의 보조 모델 국가로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와 문화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 8개국을 중심으로 이중부양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전망과 정책 함의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변화를 둘러싼 환경을 부양 관련 인식 및 인구사회, 가족 변화를 중심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이중부양 환경이 미혼 성인자녀 및 노부모의 부양 구조와 부양 부담에 미치는 변화 양상, 이중부양 주체 간 부양 분담 변화 등을 전망하고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바.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이론, 이중부양 환경 및 특성 진단,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및 전망,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등을 중심으로 이중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중·장년층과 성인자녀 및 노부모 대상의 경제적 지원과 비경제적 지원, 부양 주체 간 분담 등의 단기 및 중장기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가. 문헌 고찰

중·장년층과 중·장년층 가족 및 이중부양 관련 개념과 유형, 연구 동

향 및 국내외 정책 분석 등을 위하여 각종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다. 문헌 연구 대상에는 각종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모두 포함하였다.

나. 통계 자료 및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이증부양 관련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증부양 관련 환경 변화 및 중·장년층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차 자료(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를 활용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이증부양 비중, 이증부양 부담의 중·장년층 및 가족의 특성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중·장년층 가족의 이증부양 실태 변화 추이를 경제부양과 비경제부양 측면에서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였다.

〈표 1-1〉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차 특성

구분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내용	조사 완료 수
2차		2008년			8688명
3차	2006년 당시 45세 이상 제주도를 제외한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국민	2010. 10. 1.~2010. 11. 30.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방법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가족 • 건강 • 고용 • 소득과 소비 • 자산 • 주관적 기대감과 삶의 질 • 인구사회적 정보 	8229명
4차		2012. 9. 17.~2012. 11. 20.			7813명
5차	2006년 당시 및 당해 연도 45세 이상 제주도를 제외한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국민	2014.09.01.~2014.11.30.			8387명
6차		2016. 9. 1.~2019. 11. 30.			7893명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재구성.

2) 한국고용정보원(2010~2016).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재구성.

다. 전화 조사

이 연구를 위한 전화 조사 가운데 하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없는 중·장년층 가족의 특성별 이중부양 실태 심층 분석, 이중부양 부담 및 이중부양 부담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 욕구를 도출하기 위하여 별도로 실시하였다. 다른 하나는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견해 및 이중부양 구조를 전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실시한 전화 조사 2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45~64세 이하의 성인 남녀이고, 조사 시기는 2018년 8월 20~31일까지 12일간이다. 조사 내용은 응답자 일반 사항, 이중부양 실태, 이중부양 부담, 이중부양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욕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1-2〉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 조사 내용

부 문	내 용
응답자 일반 사항 (13개 항목)	① 총가구원 수 ② 가구 형태 ③ 형제자매 순위 ④ 최종 학력 ⑤ 취업 여부 ⑥ 직업 ⑦ 종사상 지위 ⑧ 맞벌이부부 여부 ⑨ 월평균 가구소득 ⑩ 재산 ⑪ 경제 상태 ⑫ 가계부담 항목 ⑬ 생활비 부담자
이중부양 실태 (17개 항목)	① 미혼 성인자녀 유무 ② 양가 부모 생존 여부 ③ 양가 부모 동거 여부 ④ 피부양 대상 ⑤ 미혼 성인자녀 부양 기간 ⑥ 피부양 미혼 성인자녀 연령 ⑦ 피부양 미혼 성인자녀 동거 여부 ⑧ 피부양 미혼 성인자녀 근로 여부 ⑨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 경제적 부양 정도 ⑩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 비경제적 부양 정도 ⑪ 피부양 부모 ⑫ 부모 부양 기간 ⑬ 피부양 부모 연령 ⑭ 피부양 부모 건강상태 피부양 부모와의 연락 빈도(비동거) ⑮ 피부양 부모와 만나는 빈도(비동거) ⑯ 중·장년층과 부모 간 경제적 부양 정도 ⑰ 중·장년층과 부모 간 비경제적 부양 정도

부 문	내 용
이중부양 부담 (4개 항목)	① 이중부양 비용 부담 정도 및 분담자 ② 이중부양 비용 및 가계소득 비중 ③ 이중부양 비용의 가계부담 정도 ④ 비경제부양의 부담 정도
이중부양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욕구 (5개 항목)	① 이중부양 전후의 가족생활 변화 ② 부양 문제로 인한 가족 간 말다툼 또는 갈등 경험 유무(미혼 성인자녀 부양 문제/부모부양 문제/이중부양 문제) ③ 미혼 성인자녀 및 노부모와의 가족관계 만족도 ④ 가족건강성 정도 ⑤ 중·장년층 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이와 함께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20~65세 이하의 성인 남녀이고, 조사 시기는 2018년 8월 20~27일까지 8일간이었다. 조사 내용은 응답자 일반 사항, 부양 및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향후 이중부양 전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이중부양에 대한 정책 욕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1-3〉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내용

부 문	내 용
응답자 일반 사항 (9개 항목)	① 총가구원 수 ② 가구 형태 ③ 형제자매 순위 ④ 최종 학력 ⑤ 취업 여부 ⑥ 직업 ⑦ 종사상 지위 ⑧ 월평균 가구소득 ⑨ 재산
부양 및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개 항목)	① 자녀부양 책임 범위 ② 부양 유형별 미혼 성인자녀 책임 주체 ③ 부모부양 책임 범위 ④ 이중부양에 대한 견해 ⑤ 이중부양 책임 주체 ⑥ 이중부양의 범위 수준 ⑦ 미혼 성인자녀가 선호하는 부양 방식 ⑧ 노부모가 선호하는 부양 방식 ⑨ 이중부양 시 선호하는 거주 방식 ⑩ 이중부양 시 선호하는 부양 방식(지속/일시)
향후 이중부양 전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5개 항목)	① 이중부양 유형별 변화 전망 ② 가장 증가가 예상되는 이중부양 유형 ③ 이중부양 유형별 부양 주체 전망 ④ 이중부양 유형별 부담 전망 ⑤ 이중부양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중부양에 대한 정책 욕구 (4개 항목)	① 이중부양 유형별 정책 욕구 변화 전망 ② 가장 증가가 예상되는 이중부양 지원 정책 ③ 성인자녀 및 노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④ 중·장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라.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에서는 이중부양에 대한 견해, 향후 이중부양의 전망에 대한 견해, 이중부양에 대한 욕구 및 정책 과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이중부양에 대한 견해에는 이중부양의 원인 및 영향, 이중부양의 적절한 책임 범위, 이중부양 방식 등이 포함되었다. 향후 이중부양의 전망에 대한 견해에는 향후 이중부양의 환경 변화, 이중부양(부담)의 변화 전망, 이중부양 책임 주체 변화, 이중부양이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었다. 이중부양에 대한 욕구 및 정책 과제는 중·장년층 세대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미혼 성인자녀 및 노부모 대상 정책, 이중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책임 주체 및 공사 간 분담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에는 4명의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4〉 초점집단면접(FGI) 참여자: 학계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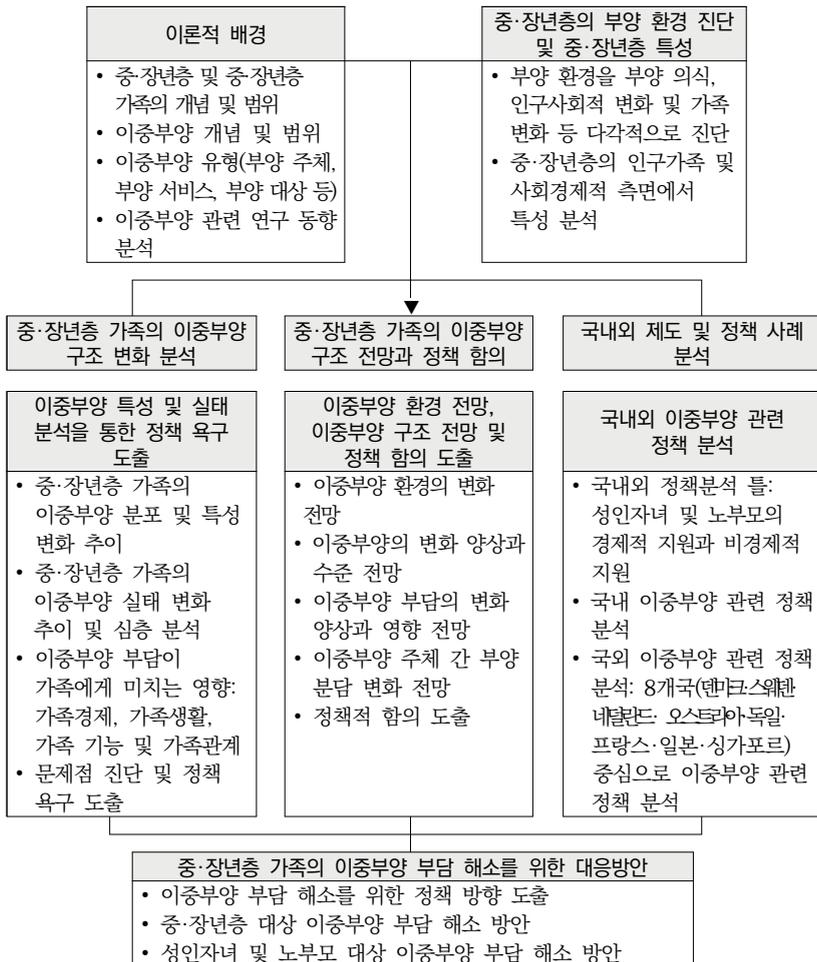
그룹	참여자	직위 및 소속
학계 전문가	1	○○○ 선임연구원(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
	2	○○○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3	○○○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 교수(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마. 워크숍 개최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원내외 전문가와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여 세 차례의 워크숍을 열었다.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연구 계획

서를 발표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연구의 중간 단계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는지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였다. 세 번째 워크숍에서는 최종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 내용을 최종 점검하였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중·장년층 및 가족의 개념과 범위

제2절 부양 및 이중부양의 개념과 유형

제3절 이중부양 관련 이론

제4절 이중부양 관련 선행연구



2

이론적 배경 <<

제1절 중·장년층 및 가족의 개념과 범위

1. 중·장년층의 개념과 범위

가. 연구 관련 중·장년층의 범위

중·장년층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중·장년층 개념은 중년과 장년의 복합어로, 이에 대해서는 학자와 연구들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고, 중년 또는 중고령 등과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절에서는 중·장년층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 및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중·장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사전으로 위키백과에서는 중장년을 중년(中年)과 동일한 의미로 설명하며, 중년 또는 중·장년은 인간의 인생에서 장년에서 노년 사이의 단계를 이르는 용어로 정의한다. 이 외의 사전들은 복합어로서의 중장년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중년 또는 장년을 각기 구분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장년은 ‘인생에서 한창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30~40대로, 중년은 ‘청년과 노년의 중간에 이르는 40대에서 50대 초반’으로 정의한다. 이와 달리 국외에서는 중년과 장년을 중년으로 통합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콜린스 사전(Collins 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중년(middle age)은 일반적으로 40~60세 사이

의 연령기로 간주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는 성인기 전반부터 노년기 사이의 생애로 대략 45세에서 65세 사이로 규정한다.

중·장년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외 연구들에서는 사전적 정의와 유사하게 중·장년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다. 대체로 해당 시기를 중년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자 Erikson(1974)은 중년기(7단계)를 40~65세로 규정하고, 중년기를 인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전환되는 격정적 시기로 인식하였다. Petry(2002)는 중년기(middle-aged adults)를 36~55세 미만 연령대로 규정하고, 노년기(older adults)를 55세 이상 연령대(aged older than 55 years)로 규정하였다. Wakasaki 외(2006)는 중년기(middle aged)를 30~59세까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달리 국내 연구들 중에서는 소수이기는 하나 중·장년층 개념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연구들이 발견된다. 국내 연구들은 중·장년 개념을 연령에 의한 구분보다는 노년기와 구분지어 경제활동 중에 있고,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활동적인 시기, 즉 노년기의 직전 시기로 규정하고(진주영, 하규수, 2016, p. 47), 중·장년층을 40~59세(김영란, 2017)나 45~59세 사이의 인구(금재호, 2011, p. 62)로 한정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간혹 연령상으로 중고령기의 연령층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중고령기는 통상 50~60대에 이르는 시기(김미경, 주재선, 2003; 성지미, 안주엽, 2011), 즉 실제로는 장년기를 의미한다. 만약 중장년의 개념을 중고령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중·장년층은 주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제1차 베이비붐 세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중고령기의 개념은 중·장년의 개념보다 포괄하는 연령 범위가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다.

〈표 2-1〉 중·장년 관련 연구들의 연령 규정

연구자	개념	연령 규정
Erikson(1974)	중년기	40~65세
Petry(2002)	중년기	36~55세 미만
Wakasaki 외(2006)	중년기	30~59세
김미경, 주재선(2003)	중고령기	50~60대
김재호(2011)	증장년층	45~59세
성지미, 안주엽(2011)	중고령기	50~60대
진주영, 하규수(2016)	증장년기	노년기 직전 시기
김영란(2017)	증장년층	40~59세

중년기는 개인의 발달에 대한 관점에서는 신체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중년기는 개인들이 인간관계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서 절정기를 경험하고, 삶의 과정에서 종전에 달성했던 업적보다 더 이상의 성취를 추구하기보다는 하강의 시작을 인지하고, 스스로에게 새로운 계획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런 맥락에서 Erikson(1974)은 중년기를 생산성(Generativity) 대 침체성(Stagnation)으로 특징지어지는 발달 단계로 규정하였다. 생산성이란 성인이 자신의 인생이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후속 세대를 통해 자신의 영속성을 성취하기 위한 의도로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데에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은 몇 가지 방법으로 표출될 수 있는데(Kotre, 1984), 생물학적 생산성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이다. 생산적인 증장년층들은 다음 세대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기여한다. Kotre에 따르면 개인은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침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침체성이란 개인이 후속 세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중·장년에 대한 연령 규정과 특성에 대한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중·장년층이란 개념은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에 위치한 연령기를 의미한다.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족의 부양과 자녀의 독립을 지원해야 하는 특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연령층이라 할 수 있다. 대략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기에 출생한 한국 사회의 중·장년층은 전통적 가치관의 유지와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부모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이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정책적 안전망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나. 정책 관련 중·장년층의 범위

중·장년층 대상을 제시한 관련 법 및 정책은 주로 중·고령층 대상 고용 지원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수립한 제3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에서 중·장년층 대상은 만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중년 55+ 현역 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관련 지원 제도에 나타난 중·장년 범주는 다음과 같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 제도의 정책 대상은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 예정자로 범주화하고 있으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설계 서비스 제도에서도 만 40세 이상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에서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장년층 관련 지원 제도인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에서는 만 50세 이상을 장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도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을 정책 대상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고령자인재은행도 만 50세 이상을 장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장년 일자리 희망넷에서는 만 40세 이상 구직자를 장년으로 범주화하여 차이를 보였다.

(표 2-2) 고용노동부의 관련 중·장년층 대상 계획 및 고용 지원 제도

구분	지원 제도	대상
신중년 55+ 현역 시대를 위한 일할 기회 늘리기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만 55세 이상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만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워크넷	•만 40세 이상 구직자
	•장년 일자리 희망넷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만 40세 이상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
	•생애설계 서비스	•만 40세 이상
	•고령자인재은행	•만 50세 이상 장년
	•정년 연장 지원금	•정년 폐지 또는 58세 이상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만 58세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 용자	•만 50세 이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만 60세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18. 6. 2. 인출).

지금까지 연구 및 정책과 관련하여 중·장년층의 개념 및 범위를 살펴본 것이다. 사전적 규정들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중·장년 개념은 국내에서는 대체로 중년과 같은 연령 발달 단계로 이해되거나 장년과 중년의 순차적인 단계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외에서는 중년과 장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주로 중년으로 통합돼 사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장년 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중·장년 개념은 중년과 장년을 포괄하면서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의 단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년 개념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중부양을 연구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이중부양은 자녀와 노부모의 사이에서 두 피부양 집단을 부양하는 주체가 경험하게 되는 가족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에 토대를 두고 도출된 개

넘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주체 측면에 연구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중부양 주체가 인구적으로는 중년층 이후부터 노년기 이전으로 특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년과 중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통합적 측면에서 만 45~64세 범위를 중·장년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 중·장년층 가족의 개념과 범위

중·장년층이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을 가족주기 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자녀는 양육기를 지나서 성인기로 진입하고, 연장된 기대 수명으로 인해 노부모도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부양자는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직접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장년 부양자는 가족주기적 특성으로 인해 가족부양으로 인한 부담들에 다양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이 중·장년 부양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여기에서는 중·장년층 가족으로 칭하고자 한다.

중·장년층 가족은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에 고용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여 재편된 노동시장 구조 안에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한편으로는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신체적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부담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취업준비 지원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 보장 수준이 낮고, 장기요양제도의 성숙도가 미흡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 주제공자다. 높은 수준의 교육비와 독립 이전까지의 생활비 지출은 중·장년층 세대의 노후 대비를 저해하며, 경제적 부담 및 돌봄 부담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김지경, 2010, pp. 21-22).

제2절 부양 및 이중부양의 개념과 유형

1. 부양 및 이중부양의 개념과 범위

가. 부양의 개념과 범위

부양(扶養)은 사전적 의미로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2018)으로, 일반적으로 부모부양을 의미한다. 부양은 개념적으로 봉양이나 수발, 돌봄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부양은 대체로 경제적인 원조를, 봉양이나 수발, 돌봄은 주로 신체적·정서적인 원조에 주목할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양영자, 2008).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부양 개념은 경제적 원조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신체적 및 정서적 돌봄까지 포괄하여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부양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범위에 대한 규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대다수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Caplan(1982)은 부양을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서적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고, 그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Warren(1981)은 부양을 물질적 원조, 신체적 돌봄, 정서적 지지, 외로움과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였다(최순남, 1995, p. 503에서 재인용).

부양을 유형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혜경(2000)은 부양 행동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 국내와 국외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국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양 대상자가 질병에 노출되거나 수발을 필요로 할 때에 피부양자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부양으로 규정하는데, 이에 비하여 국내

에서는 정서적, 도구적, 서비스적, 사회참여적 부양 등 다양한 부양 유형들에 대해 폭넓게 관심이 부여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런 맥락에서 조추용(2004)도 부양이란 협의의 관점에서 한 개인이 스스로가 가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자신이 소유한 사적 지지망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현대 사회에서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대응을 통한 욕구 충족까지도 부양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부양을 대상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양은 돌봄이나 지원 등과 동일한 의미로 간주되기도 한다. 부양 대상과 범위는 미성년 자녀 양육 및 성인자녀의 부양, 부모부양, 손자녀 돌봄 등 광범위하게 포괄된다(김유경 외, 2015, pp. 3-4).

부양을 신체적, 정서적 지원과 필요한 물질적 자원들을 개인에게 제공(최순남, 2000; 조추용, 2004)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부양 부담은 부양자들이 겪는 부정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노인의 신체적 의존성과 경제력 결핍 등으로 인해 부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규정할 수 있다(Poulshock & Deimling, 1984). 그러므로 부양 부담에 관한 정의는 부양에 따르는 정서적 비용으로 국한되는 경우에서부터 생활 리듬의 변화 같은 부양자의 구체적 일상생활 변화와 심리적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이연미, 2006). 그리고 부양 부담은 단순히 쇠약한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어려움과 같은 주관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한경혜, 이서연, 2009; 이희경, 2010). 부양 부담은 외부적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각기 경험하는 부담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Chappell & Reid, 2002).

부양 부담에 대해 연구가 시작된 것은 Grad와 Sainbury가 1990년대에 가족이 정신질환자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과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 이후 주로 가족학과 사회복지학, 여성학, 노년학 등의 분야에서 부양 부담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의 저하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부양 부담을 경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권중돈, 1994 재인용).

나. 이중부양의 개념과 범위

인간의 의존성은 보편적 원리(Kittay, 1999; Nussbaum, 2002)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가족부양이란 도움이 필요한 부모와 자녀에게 가족이 동거 또는 비동거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도구적,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부양은 한 가지 형태의 부양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이상의 부양 형태가 동시에 제공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둘 이상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부양이 동시에 수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양을 이중부양이라고 규정한다면 이중부양은 주로 특정 연령층 또는 특정 가족주기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이중부양은 두 연령 집단에서 주로 발견된다. 우선 한 집단은 중·장년층이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노부모를,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자녀를 취업과 결혼 이전까지 부양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 집단은 중·장년층과 그들의 자녀 세대로, 이들은 부모와 영유아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경우를 보이기도 한다(Spillman and Pezzin, 2000).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을 논하는 연구들은 주로 돌봄에 초점을 두고 청

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중간층에 위치한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자녀와 노부모를 위한 이중적 돌봄의 문제를 부각시켜 왔다. 이중적 부양 책임의 수행은 돌봄 제공 경로(caregiving path)의 이중화,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끼여 있는 샌드위치 세대의 돌봄 부담, 이중 돌봄(double care)(Rubin & White-Means, 2009)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양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가족의 새로운 부담 양상을 다층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장년층의 가족부양 부담은 노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돌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노부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신체적 돌봄과 정서적 지지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다. 그런 맥락에서 Given과 Given(1991)은 부양 부담을 사용 가능한 자원과 요구 간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일차적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반응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가족 구성원 간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혜택과 서비스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과 지원을 제공받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양 의식이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부양의 성격도 일방적이고 규범적인 부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론적인 상호 호혜의 동기에 의해 주고받는 부양 관계를 선호하는 동향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노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담을 이중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중·장년층 세대는 전통적 부양에 익숙한 노부모 세대와 개인주의적 부양관을 견지하는 자녀 세대 사이에서 일종의 ‘긴 세대’로서 쌍방향의 부양 부담을 모두 안은 채 오히려 스스로의 미래와 노후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라고 할 것이다.

한국의 중·장년층은 1960년대의 대가족 환경에서 사회화를 겪으며 성

장하였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가족의 소규모화와 구조 변화를 피부로 경험한 세대로, 전통이라는 하나의 가치와 혁신이라는 다른 하나의 가치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중·장년층은 부모부양을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반면, 자신의 노후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즉 부모부양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려는 첫 세대(정성호, 2006)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이 견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부양관은 그들 세대의 부모에 대한 부양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들 스스로를 위한 부양도 자녀 세대에 의해서 재현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부모부양 기능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가족부양관의 규범적 규제력과 아울러 한국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김두섭, 박경숙, 이세용, 2000).

생애 과정에서 비독립적 자녀와 노부모를 지원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Grundy & Henretta, 2006)의 이중적 부양 부담에 대한 관심은 중·장년층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서구의 연구들(Ingersoll-Dayton, Neal & Hammer, 2001; Brody, 1985; Grundy & Henretta, 2006; Miller, 1981)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정된 노후보장 체계와 공공성이 강한 교육환경 및 제도, 개별화된 부양문화의 특성을 내재한 서구 선진국의 연구들에서는 부모와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논의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한국의 중·장년층 세대가 샌드위치 세대로서 갖는 부양 부담이 서구에서 관찰되는 부모부양이나 자녀 지원에 대한 부담과는 논의의 맥락과 접근 방식이 상이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양은 신체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기존의 연구들은 가족의 부양 문제는 주로 미성년자녀나 장애가족원 또는 노인이나 중증질환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문제로 한정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의 부양 문제는 이와 같이 선별적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자립 가능성이 있지만 자립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들까지 포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인 가족 구성원들도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가족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부양이나 이중부양은 종전처럼 선별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일반 가족들을 모두 포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양 형태의 다양성과 부양 대상의 증충성을 포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중부양을 ‘두 세대 이상의 피부양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특히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동시에 부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중부양의 대상을 정하는 데 미성년 자녀와 기혼 성인자녀를 배제한 이유는 미성년 자녀의 부양은 중·장년층뿐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부양으로 인식되기 때문이고, 기혼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이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고 자립적인 부양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행위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2. 부양 및 이중부양의 유형과 범위

가. 부양의 유형과 범위

일반적으로 부양은 광의의 관점으로 보면 부양을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부양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양을 제공받는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유형이 상이하게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부양의 공급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부양은 공적 부양(public support)과 사적 부양(private support)으로 분류된다. 공적 부양은 국가나 사회로 대표되는 공적인 주체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부양 책임을 분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사적 부양은 부양이 개인과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다시 가족부양과 자기부양으로 나뉜다. 한국 사회에서 부양은 사적 부양, 특히 그중에서도 대체로 가족부양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양 시에 제공되는 내용에 따라서 부양의 유형은 경제적 부양과 비경제적 부양으로 구분되고, 다시 비경제적 부양에는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도구적 부양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경제적 부양은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유형을 의미하고, 정서적 부양은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신체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은 신체적 자립 지원과 가정생활에서 요구되는 청소, 세탁, 질병 시의 간병,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 등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서비스부양으로 통칭되기도 한다(조지현, 2011; 김유경 외, 2015).

〈표 2-3〉 부양 유형 분류 및 범위

부양 유형	내용 및 범위
부양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부양(public support): 국가 및 사회에서 해결해 주는 사회적 수준 부양 - 사적 부양(private support): 가족·친척·찬자·이웃에 의한 개인 또는 가족차원의 부양
부양 서비스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부양: 금전 및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 비경제부양: 정서, 신체 및 도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부양: 피부양자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행위 • 신체 및 도구부양(서비스부양): 신체적 독립과 가사운영 및 생활에 필요한 청소·심부름·질병 시 부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부양받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 부양: 노부모를 대상으로 부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자녀 부양: 미성년 자녀(만 24세 이하) 부양과 성인자녀(만 25세 이상) 부양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 자녀 양육: 만 24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성인자녀 부양: 만 25세 이상의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부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손자녀 돌봄 포함

자료: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2015, p. 35).

부양받는 대상자에 따라서는 노부모 부양, 미성년 자녀 및 성인자녀 부양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성인자녀는 법정 기준 연령인 만 19세 이상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양자로서 경제적인 자율성을 갖추지 못한 성인자녀를 포괄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임금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시기인 만 25세 이상의 자녀를 의미한다. 성인자녀 부양에는 손자녀 돌봄이 포함되기도 한다(김유경 외, 2015, pp. 34-35).

이상과 같은 부양의 유형과 범위는 이중부양의 범주화 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가족주기 관점에서 볼 때 중·장년 부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시기는 본인들이 자녀들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시기와 중첩되고, 자녀가 결혼하는 시기는 본인이 노후 대비를 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과거에 부양자는 주로 노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부양에 집중하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이에 더하여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도 늘고 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한 응답자 2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2015, p. 143)

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성인자녀가 학교를 졸업했거나 취업 또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응답자가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무려 39%(102명)나 되었다. 이는 가족부양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증충화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적 부양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부양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이중부양의 유형과 범위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성인자녀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기생’으로 보거나, 노부모를 위한 부양으로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한 가지만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양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부양을 주로 노부모의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와 사별 후 홀로 됨(곽인숙, 2012)으로 인해 성인자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으로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구 사회에서도 부모 세대의 필요에 의해 자녀와 동거하며 부양하는 경우는 주로 노부모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의존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노부모와 자녀의 동거는 부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서구 문화에서는 성인자녀와의 동거부양이 노부모의 삶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전제하고 연구가 시작되었다(Suitor & Pillemer, 1988). 그러나 실제 실증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가설과 달리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부모가 갈등을 거의 보고하지 않았으며(Suitor & Pillemer, 1988),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Aquilino & Supple, 1991)도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중·장년층 가족은 생애주기상 자녀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

을 지원하는 것을 종료하고, 자녀의 독립 준비를 지원하거나 완료하며, 노부모의 돌봄과 경제적 부양 및 정서적 지지 등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전이(in-transition) 단계에 있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Arber and Ginn, 1990). 즉 중장년층 가족은 부양의 대상을 자녀에서 노부모로 대체하는 과정에 위치한 특성이 있다. 그런데 가족구조가 변화하여 사적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고, 만혼이 증가하여 늦은 출산이 확산되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노인부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 가족은 아직 자녀 양육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노부모도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 양육은 종료되었지만, 성인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거나 성인자녀가 낳은 손자녀 또는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장애가족원 등을 돌보면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적 부양 책임을 수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적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청년 실업이 늘고, 경제적인 독립과 결혼을 실행하지 못하는 청년 인구가 늘고 있어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대상으로 성인자녀가 차지하는 자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양의 대상에는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대상을 논하는 데에는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스스로의 부양 능력 결핍으로 인해 독립과 결혼을 미루는 청년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미혼 성인자녀를 부양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요구된다. 실제로 오늘날 대학에 입학하여 정확히 4년 후에 졸업하는 사람은 드물어 남성은 평균 6년 2개월, 여성은 4년 4개월을 필요로 한다. 졸업 후 남성은 평균 1년, 여성은 10개월 정도를 취업 준비에 사용한다(신준섭, 2018. 10. 8.). 이렇게 연장되는 성인자녀의 의존 기간은 부모의 부양 부담을 더욱 배가시킨다. 그런 맥락에서 심현정, 정나라(2018)는 50~60대의 부양에 대한 부담 양상을 원격부양, 황혼육아, 더블케어, 동상이몽이란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의 가중화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장년 세대의 이중부양 대상과 내용 및 범위를 논하고자 할 때에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중부양 유형 및 범위는 앞에서 논의한 부양 유형 및 범위(〈표 2-3〉 참조)를 적용하되 자녀부양에서 성인자녀 부양 중 미혼만 포함되고 미성년 자녀 양육은 제외된다. 이상과 같은 부양의 유형과 범위를 고려하여 이중부양의 유형을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서비스부양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해 노부모 부양과 성인자녀 부양에 초점을 두고 양상을 논해 보고자 한다.

1) 경제적 부양

경제적 부양은 피부양자가 필요로 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부양자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의 중·장년 부양자들은 노인의 소득 보장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여전히 부모의 생활비에 대한 주제공자가 되고, 자녀를 위한 높은 수준의 교육비와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지출로 인해 스스로의 노후 대비는 미흡한 채 노후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이성립, 2005; 하준경, 2006; 유경원, 2007; 유민상, 2008; 김지경, 2010).

서구에서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사회화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자녀가 성년기에 접어들면 자녀는 취업 여부에 상관 없이 독립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적 부양관이 사회기저에 잔존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부양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개인들이 퇴직 후에 연장된 노후를 대비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노후를 영위할 수 있

는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는 전체 노인 중에서 절반 가까이 이른다. 공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책으로 가장 중요한 데,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자 규모가 제한적이고, 급여수준의 적정성에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적 부양 중 특히 가족의 경제적 부양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2008년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전체 노인들 중 하위 소득 70% 이하의 노인들에게 매월 최대 25만 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는 2018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0만 1632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노후생계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노부모부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연장된 교육 기간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의 증가가 성인자녀들의 독립기를 지체시키고 있어 이들에 대한 부모의 부양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유경 외(2015, p. 159)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성인자녀에게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 있다는 부모들이 66.8%로 높게 나타났다. 부양 유형은 현금 지원이 67.8%로 현물을 지원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 정기적 현금지원은 월평균 87만 2000원이었으며, 비정기적 현금지원은 월평균 25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심현정, 정나라(2018)의 50~60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자녀에게 매월 평균 73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결혼자금 등 목돈은 평균 6372만 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성인 전기에 이루어야 하는 발달 과업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서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자녀의 성인기

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보호하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당연시 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주로 결혼과 함께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방향으로 성인 전기 발달 과업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초혼 연령과 독신의 증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청년층을 둘러싼 경제적 상황의 악화(실업의 만성화, 실질임금의 하락, 고용 불안정의 심화 및 주택 구입 가격 등의 상승)로 인해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성인 전기 발달 과업을 이루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캥거루족’ ‘기생독신’ ‘연어족’ 등의 용어로 지칭되면서 매스미디어 등에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국내 연구에서도 50대가 느끼는 가장 큰 짐이 독립을 못 하는 ‘캥거루족’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한경혜, 2011).

2) 비경제적 부양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경제적 부양은 정서, 신체 및 도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양 유형이다. 정서적 부양은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며, 신체적 자립 지원과 가정생활에서 요구되는 도구적 서비스 등을 포괄하여 서비스부양으로 통칭되기도 한다(조지현, 2011; 김유경 외, 2015). 비경제적 부양을 이중부양의 관점에서 유형별로 다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정서적 부양이란 가족 구성원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 주는 등 심리정서적인 면의 욕구 충족과 안정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이다(진달래, 2013).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 의한 심리정서적 지원은 자녀의 안정적인 인성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확산되면서 노년기

를 외롭게 지내고, 노인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노부모를 위한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노년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퇴하는 시기로 개인들은 주로 노년기에 배우자, 친구, 친척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 상실과 정년퇴직, 노인에 대한 경시와 같은 사회적 상실(권기갑, 이재모, 2009)을 경험하게 되므로 노인의 개인적·사회적 상실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서적 부양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심리정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가족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분거 중인 노부모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등의 매체를 통해 정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자녀들의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유경 외(2015, p. 220)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와 동거를 하지는 않지만, 부양은 하고 있는 응답자 329명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연락 빈도를 조사해 본 결과 1주일에 1회 연락을 하는 경우가 23.3%로 가장 많았고, 3개월 또는 일 년에 1~2회 정도로 드물게 연락하는 경우도 4.5%, 전혀 연락하지 않은 경우도 4.5%로, 노부모와의 소통과 정서적 교감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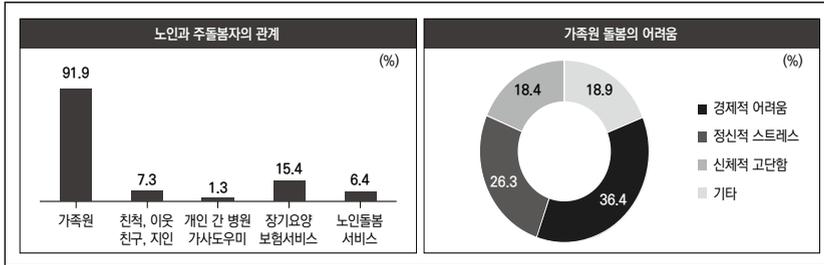
정서적 부양은 경제적 부양과 서비스 부양과는 다르게 애정을 근거로 하여 공적인 부양 주체가 전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가족이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다(조성희, 2011). 정서적 부양은 이제 어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취업 준비와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고립감, 우울 등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성인자녀들을 위해서도 필요해지고 있다. 김유경 외(2015, p. 159)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제공된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정서적 부양과 관련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38.4%로 가장 많

았다. 한 달에 1~2회가 19.7%, 1주일에 2~3회와 1년에 1~2회가 각각 8.6%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정서적 부양이 자주 제공되는 것은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서비스 부양은 가정 내에서 신체적인 독립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 심부름, 간병과 돌봄, 외출 시의 보살핌과 시중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강선아, 2013). 전통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대가족 구조 내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책무로 인식되고 수행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서비스 부양은 배우자나 동거하는 자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과 기대수명 증가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돌봄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와 소규모화로 성인자녀의 분거, 맞벌이부부의 증가, 노부모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사적 부양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과 간병 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역할은 주로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이 담당하게 되는 사회문화 속에서 역할 수행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들은 증폭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족의 노인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지만, 돌봄을 받는 노인 중 91.9%가 아직도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원들은 경제적 어려움(36.4%), 정신적 스트레스(26.3%), 신체적 고단함(18.4%)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이진숙, 2017, p. 84). 그러므로 가족의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돌봄자를 위한 휴식 지원, 돌봄 교육 및 정서적 지지,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돌봄 부담 완화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1] 가족의 노인 돌봄 실태



자료: 1)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2015).
 2)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14).
 3) 여성가족부. (2017).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p. 57.

전통적으로 돌봄으로 대표되는 서비스부양은 미성년 자녀와 노부모를 위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인자녀가 취업준비 또는 취업, 학업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의 일들을 해결하기 어렵거나 분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성인자녀이지만 가사 업무나 일상생활 서비스를 대리해 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한 사례로 김유경 외 (2015, pp. 169-170)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제공된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서비스부양과 관련하여 성인자녀에 대한 신체적, 도구적 부양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76.8%로 높은 편이었지만,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일상생활 부양은 지난 1년간 거의 매일 수행되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5.6%에 달하였다. 이를 볼 때 성인자녀의 독립 시기가 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가 청소나 일상생활 문제 등의 해결을 비롯하여 성인자녀에 대한 서비스부양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부양의 정의 및 부양 주체, 부양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이중부양에 대한 개념적 틀을 설정하기 위해 탐색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이중부양의 개념, 대상, 유형

및 범위를 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이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도출해 낸 이증부양의 개념에 대한 정의, 대상, 유형 및 범위를 요약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이증부양의 개념과 유형 및 범위에 대한 정의

구분	내용 및 범위
이증부양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세대 이상의 피부양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경우로, 특히 중장년층 이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동시에 부양하는 행위 • 노부모 부양: 노부모를 대상으로 부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성인자녀 부양: 만 25세 이상의 미혼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부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증부양 유형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부양: 금전 및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 비경제적 부양: 정서, 신체 및 도구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서적 부양: 피부양자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 주는 행위 • 신체 및 도구적 부양(서비스부양): 신체적 독립과 가사 운영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청소·심부름·간병·돌봄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제3절 이증부양 관련 이론

가족은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생애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들을 분산하기 위한 핵심적인 공간이었다. 노인과 부모, 자녀로 구성된 세대 간의 고전적인 계약은 부모와 자녀들이 부의 이전에 대한 교환으로 노인과 아동들을 보호하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개인들은 대부분 중년의 경제활동을 통해 가계소득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노후보장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양육과 교육 및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있는 가족에게 이러한 근대적 전제가 적용되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부양은 ‘효’ 사상을 토대로 하여 전승된 맥락이 있다. 이는 주로 가족 내의 부계 질서 즉 장남과 며느리 중심의 책무로

수행되어 왔다. 그리고 전통사회에서 부양은 가족주의적 가족관에 의거하여 가족의 당연한 과업으로 이해되었으므로 오늘날의 사회에서처럼 사회적 관심의 논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주의가 점차 개인주의, 평등주의, 합리주의 등의 근대적 가치와 혼재됨에 따라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노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이 여전히 가족에게 있다고 이해되면서 실제 부양을 수행하면서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가족은 부양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부양가족들은 당연히 부양의 사회화를 통해 부양 부담을 덜고자 하는 욕구를 내재하고 있다. 부양에 대해 서로 상반된 두 가치관의 혼재는 부양 체계의 구축과 실행에서 혼돈을 유발하고(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6, p. 618), 결국 한국 가족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는 생애주기적 위험 중에서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생의 양극단 시기, 즉 아동기와 노령기에 집중하여 보호를 제공하였다. 포스트 산업사회의 윤곽은 가족의 불안정성과 실업의 만연, 고용 불안정의 증가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제 생애주기적 위험들이 청년기와 중년기, 즉 성인기의 삶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에 의한 복지나 시장에 기초한 복지로 이 간극을 메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Esping-Andersen, 2006, pp. 96-97). 일반적으로 상속된 불이익은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은 가족 속에서 생산된 다음 시장에서 더욱 심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생활기회를 재분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세대 간의 위험은 완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Esping-Andersen, 2006, pp. 96-98).

가족부양과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면 노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중적 부양 부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부양 당사자는 부모부양과 자녀부양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는 선택이론(alternative hypothesis)과 가족 연대

가 강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할 것이라는 결속이론(solidarity hypothesis)이 널리 알려져 있다.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자녀 양육을 더 많이 하고, 세대 간 연대가 강한 가족이 이중부양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oomis & Booth, 1995; Grundy & Henretta, 2006; Kunemund, 2006). 그러나 국내에서 이에 대한 일부 연구(김지경, 2010; 방하남 외, 2010; 정경희 외, 2010)를 제외하면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연구 관심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중부양 양상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중부양 부담의 해소를 위해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거시적 이론과 이중부양 부담이 가족생활과 구성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미시적 이론들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시장 부문의 소비 재원은 대체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이전(transfer), 즉 사적 부양을 통해서 충당된다. 이전은 반대급부에 대한 교환과 상관없이 경제적 자원이 타인에게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이전 행위의 주체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이전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등이 있고, 사적 이전에는 부모님 및 자녀에 대한 용돈, 명절 세뱃돈 제공, 보살피기, 상호 방문 등의 시간 이전 등이 포함된다(황남희, 2012).

한국 사회의 공적 부양제도는 아직 공고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통한 사적 이전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적 이전의 동기에는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인 동기가 있다.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e) 이론에서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의해 자신의 소득을 자기가 모두 소비하는 것보다 소득이 적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전해 자신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Becker, 1974; Becker and Tomes, 1986)(황남희, 2012, pp. 19에서 재인용). 교환적 동기는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고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차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설명하는 데에 유효하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미래 유산에 대한 기대(Bernheim, Shleifer, & Summers., 1985), 가족 간의 전화 및 방문 등의 심리적인 혜택, 손자녀 돌봄 등의 서비스의 교환(Cox, 1987; Cox and Rank, 1992; Altonji, Hayashi, & Kotlikoff., 1996) 등의 대가로 이전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황남희, 2012, pp. 19-22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가족부양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 중 어디에 부양의 비중을 두어야 바람직할 것인가? 신체적 돌봄과 도구적 지원, 정서적 부양의 과정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보상 또는 교환이 뒤따를 것인가? 우선 소득과 자원의 이전과 관련해서 사회적 관념 틀을 찾아보자면 부양 주체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구조기능론과 갈등론이 유용한 논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부양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론적 역동에 대해서는 교환론적 동기와 역할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이 절에서는 이상의 4가지 이론들을 중심으로 이중부양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양 관련 거시 이론

가. 구조기능론(Structural-functionalism)

구조기능론자들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사회를 생동하는 인간의 신체에 비유한다. 인간의 신체는 여러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기관은 생존을 위해 각기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며, 기관들이 각각의

기능들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신체는 균형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사회도 인간의 신체와 다를 바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영역과 가족, 교육 등의 제도들로 구성되는데, 이 영역들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구조기능론적 관점을 통해 보면 사회는 상호 간에 관련성이 있으며, 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로 인식된다. 체계의 각 부분은 체계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각기 고유하게 수행되어야 할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능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전체 체계를 구성하는 하위체계들은 사회를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사회적 기능들을 수행한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 사회는 항상성과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사회가 균형성과 항상성을 상실하게 되면 사회에 변동과 갈등이 야기된다. 이러한 변동과 갈등은 하나의 하위체계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위체계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사회변동은 급격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점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은 사회의 균형과 유지를 위해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제도이다. 가족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과 자녀를 양육, 교육하고 사회화시켜 사회의 통합을 수행하는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각 개인은 사회화를 통해 사회규범과 가치를 전수받아 내면화하며, 그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가족은 재생산과 부양을 통해 사회의 기본적 제도로서의 사회유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의 구성원들을 위한 부양은 책임이자 의무로 인식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가족에 대한 구조기능론적 관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가족은 경쟁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을 보호해 주는 안식처의 역

할을 한다. 가족은 전통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 재생산과 양육 및 정서적 기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견고한 보호와 휴식처 역할을 수행하였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은 많은 기능을 사회에 이양하고, 이제는 노동력의 재생산과 정서적 안정의 주 담당자로 축소되었다.

둘째, 산업화는 직장가 가족의 이원화라는 분리 현상을 가져왔고, 가족은 생계부양과 가사노동의 역할 분담을 담당한다.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족 내에서의 역할은 젠더에 따라 분업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는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 여파로 남편의 가정 내 역할은 최소화되고, 아내의 가족 외적인 사회활동도 최소화된다.

셋째, 가족 구성원은 서로가 사랑에 의해 결합되어 있고, 가족 내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해와 수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조기능론적 관점에서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자녀를 통하여 부부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이해된다(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2010, pp. 22-25).

구조기능론은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핵가족이 대두되던 근대 산업화 시대의 가족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설득력이 있지만, 현대의 변화되고 다양화된 가족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나. 갈등론(Conflict theory)

갈등론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속성을 갈등으로 보는데, 사회와 가족

의 관계 또한 이러한 맥락 안에서 규정한다. 갈등론에서는 가족을 구조기능론이 그러하듯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적 또는 개인적 합의에 의해 존속되는 제도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그보다 가족은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를 원하는 지배 세력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한다. 갈등론은 사회가 가족의 역할을 사회 구성원의 공급, 자녀의 양육과 부양 등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사회가 가족에게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은 고통과 갈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에 주목한다.

가족들은 부양을 비롯한 기능의 수행에서 능력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사회는 가족의 기능들을 통해 개별 가족이 사회 구성원들의 부양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가족들 간에는 부양 부담 및 부양의 질과 결과에서 다른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갈등론에서는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가족 내에서 부양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체가 꺾어야 하는 개인적 희생과 그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 간 관계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데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갈등론은 부양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양자의 희생과 과중한 가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가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부양의 주체가 가족이라는 사적 주체뿐 아니라 공적인 관계로까지 확장된다면 가족들은 과중한 부양 부담을 덜 수 있고, 부양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되어 부양가족들 간의 불평등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양을 비롯한 가족 문제의 해결에 대해 구조기능론에서는 가족 책임 우선의 점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는 반면에 갈등론에서는 이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체제의 변화에 중심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오늘날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부양 부담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지엽적인 처방으로는 불가하고, 사회 체제 전반의

부양 역할 강화와 사회 체계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갈등론이 보다 유용한 처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김유경 외, 2015, pp. 61-62).

2. 부양 관련 미시이론

가.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교환이론의 기본적 관점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 또는 사회적 행위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들은 상호 간의 관계에서 스스로에게 이익 혹은 보상이 담보되어야 교환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교환은 어떤 상품이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에 대한 대가 등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자원을 얻고자 하는 자기이익(self-interest)에 따라 사회적 교환이 발생하는데, 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하게 된다(Roloff, 1981). 여기에서 교환자원은 물질과 비물질을 모두 포괄하는 자원을 의미한다.

과거 사회와 달리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노인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은 빠른 속도로 새롭게 대체되어 교환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다. 노인들이 교환자원을 상실하게 되면 이들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방적인 부양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교환할 자원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노인은 가족생활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부양을 만족스럽게 제공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노인

과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 간에 교환자원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부양 부담은 커지게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 이에 따른 부양 부담의 증대는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일방적인 부양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노인이 보유한 교환자원이 세대 간의 자원 교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잘 밝혀진 바 있다. 일례로 Geurts 외(2012)는 조부모가 과거에 손자녀를 양육했던 경험이 현재 성인자녀가 조부모에게 정서적인, 또는 도구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아들은 그가 규칙적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조부모에게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을 하지만, 딸은 현재 그녀가 도구적 지원을 하는가에 대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조부모의 과거 손자녀 양육 지원은 성인 아들에게는 부채로 작용하여 관계에서의 비용·혜택의 균형에 따라 미래의 상호 호혜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김현정, 2015, pp. 137-138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자녀는 대체로 부모에게 받은 동일한 유형의 도움(신체적 지원에는 신체적 지원으로, 정감적 지원에는 정감적 지원으로)으로 보상하는 경향이 있고, 자녀가 부모(배우자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움이 교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전성표, 2007).

나. 역할이론(Role theory)

역할이란 사회적 지위에 따라 행해지는 특징적인 행동으로, 개인들은 상황과의 상호작용으로 행동을 학습하여 수행하고, 특정 관계 내에서 상대방과의 상호 호혜성을 고려하여 역할을 형성하게 된다. 역할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인 역할기대란 개인이 어떤 역할의 수행에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분 짓는 준거가 되며, 역할규범이라고 불리기도 한다(Davis, 1996). 개인들은 부여받은 역할과 역할에 따른 역할 기대를 고려하여 사회와 가족 내에서 역할을 형성하고 수행하게 된다.

가족부양 시 발생할 수 있는 역할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잉, 역할비연속성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첫째, 역할갈등은 한 개인이 둘 이상의 역할지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 지위들이 각각 요구하는 역할기대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둘째, 역할모호성은 역할기대가 불명확할 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거나 과거의 역할이 재정의될 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역할 과잉은 하나의 역할이지만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할 수행의 상태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경우이다. 끝으로 역할비연속성은 역할 간의 유사성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Davis, 1996),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경우 직장일과 육아, 가사와 돌봄 등 하루 일과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각각의 역할은 각기 다른 역할규범과 기대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다중적인 역할의 수행은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잉, 역할비연속성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사회 환경과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개인들은 일과 가족생활 사이에서 적절히 역할의 수행과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면 스스로와 가족 모두 부담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김현정, 2015, pp. 139-140).

한국 사회에서 가족부양과 연관된 개인들의 역할은 젠더(gender)와 세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젠더 차원에서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가족 내 부양의 주제공자 역할에 대한 부담 또는 갈등과 연관된다. Fraser(1994)는 과거 지배적이었던 ‘남성생계부양 모델’은 후기 산업사회적 자본주의 노동시장 안에서 불안정한 고용의 확산으로 인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남성 중심이던 노동시장

의 변화는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이라는 성역할의 변화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Hood(1986)는 생계부양의 역할은 실제 수행하는 사람과 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간에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Charles와 James(2005)의 연구 결과에서도 남성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아내와 생계부양을 함께 하여도 여전히 남성 자신을 주요 생계부양자라고 인식하는 역할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이는 남성이 생계부양의 책임을 남성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과 퇴직은 남성의 정체성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역할갈등을 유발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신경아, 2014). 이에 비해 시대가 변화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많아지면서 생계부양자 역할 의식이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전히 경제적 소유권이 남성에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로 인해 여성들은 스스로의 역할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또는 역할과잉 등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강이수, 2011). 한국의 가족들에게도 젠더와 관련된 역할 문제는 유사하게 발견되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연장자인 남성에게 가부장권을 부여해 왔기 때문에 남성들은 직업생활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부양자에서 피부양자로 지위가 변화되고,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문제가 부가된다. 그렇다 보니 여성 노인에 비해 가정 내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역할을 찾지 못하는 남성 노인의 역할모호성과 역할비연속성은 가족 갈등을 높이고, 가족관계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기태, 2002; 성미애, 옥선화, 2002; 신호식, 이선정, 2007; 양영순, 2007; 이진숙, 최원석, 2014).

역할을 세대, 즉 연령의 차원에서 재조명해 보면 이는 세대 간의 부양 갈등과 직결된다. 한국 사회는 연령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비교적 강한

데, 이러한 사회에서는 생애과정 내 위치를 통해 개개인의 태도나 인식 등을 살펴보고 역할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송리라, 이민아, 2012). 성인 기혼 남녀는 생애주기상 경제활동과 동시에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다양한 생애 과업에 따른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때 성인 기혼 남녀에게 요구되는 역할 중 주요한 변수로 가족과 생계부양 책임이라는 경제활동을 지목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경제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즉 실업이나 미취업의 상태에 있을 때 부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심리가 강하게 발동될 수 있다. 청년기부터 중·장년기에 이르기까지 개인들은 충분한 소득활동을 통해 노인과 아동을 부양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 실업과 조기 퇴직의 확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양 부담의 증가 등 변화된 부양 환경은 경제활동 연령층에게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이수비, 송영매, 이현옥, 최윤주, 2016).

역할이론이 주지하듯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부양이 전통 사회에서처럼 당연시될 수 없고, 그로 인한 역할 관련 문제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세대 간의 부양이 가족 내에서 수행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부양의 주체를 가족이 아닌 사회로 확장하고, 공적인 제도를 통해서 세대 간의 부양 구조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제4절 이중부양 관련 선행연구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인 만큼 관련 연구들도 최신 연구로 수행되었다. 이중부양 부담 논의는 부양 부담을

수행하고 있는 ‘중·장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경향을 보인다(정순돌, 이현희, 2012). 나아가 중·장년 중 실제적으로 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집단이 누구인지, 어떠한 형태로 얼마나 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졌다(김유경 외, 2015; 김혜선, 박효진, 2016).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들에서 발전해 최근의 연구들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중부양 부담이 중·장년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로 발전해 왔다(송현주, 임란, 2016; 심현정, 정나라, 2018). 하지만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는 중·장년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변화하고 있는 이중부양 부담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 연구는 중·장년을 주요 대상으로 이들의 이중부양 부담 실태를 살펴보지만, 이중부양 부담의 변화 양상과 이러한 변화 추세가 중·장년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모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정순돌, 이현희(2012)는 세대별 가족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 정도를 비교해 세대 특성에 따른 노후 준비 이슈를 관찰하고자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탐색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예비노인 세대(1947~1954년생)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해 203개의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로 자녀부양 부담의 경우 예비노인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의 부담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모부양 부담의 경우 예비노인의 부양 부담이 베이비붐 세대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양 부담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예비노인에 비해 부모와 자녀의 부양 부담을 모두 짊어지고 있어 이중부양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외(2015)는 성인자녀 및 노부모 부양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가족구조에 맞춘 부양 부담의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전화 조사를 수행했으며, 성인자녀 부양 부담의 조사 대상은 전국 만 20~64세 이하 성인 남녀 중 만 25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부양하는 응답자로, 총 102명을 조사하였다. 노부모 부양 부담은 전국 만 20~64세 이하 성인 남녀 중 부모를 부양하는 응답자로 총 531명을 조사하였다. 성인자녀 부양 부담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성인자녀의 부양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고소득일수록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이 높아져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이 61%로 매우 높았다. 부양 중인 성인자녀의 87%는 미혼이며,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월평균 금액은 87만 2000원으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 상당한 수준임이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 부담의 경우 연령별로 부모부양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50대의 부양비용 비율이 11%로 가장 높았다. 이들의 부양비용 부담은 55%로 평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련하여 노인부양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적 욕구는 노인부양 보조금 지원이 1순위, 노인 일자리 마련이 2순위 대안으로 노인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경제적 대책 마련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김혜선, 박효진(2016)은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 부담의 영향 요인을 탐색했다. 연구 방법으로 한국복지패널 9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항 로스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한 횡단조사를 수행했다. 분석 대상은 40~60세의 중장년층 중 노부모와 자녀의 경제부양을 동시에 하고 있는 가구주로 총 2389명이 해당되었다. 연구 결과 자녀와 노부모 중 한쪽만 부양하는 집단과 비교하여 이중 부담을 겪는 세대주의 경우 한쪽만 부양하는 집단과 달리 성별, 교육수준, 취업 가구원 수, 가족관계 만족도가 이중 부담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 가구원이 많으며, 가족관계가 높을

수록 세대주가 이중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 가구 내에서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을수록 부양 부담이 크며, 사회적 이전으로의 복지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송현주, 임란(2016)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부양 부담과 그에 따른 노후 준비 실태를 심도 있게 관찰했다. ‘한국노동패널 9~18차 본조사 및 장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부양 부담은 출생 코호트가 늦을수록 높아져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요 과업은 부양부담보다는 노후소득 마련으로 이전된 특성이 나타났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및 노부모 부양의무에서 벗어나고 은퇴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부양 부담이 더 높은 베이비붐 이후 세대에 비해 가구 경제 상태 및 공적연금 가입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가용 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경제 자원의 상당 부분을 부양비용으로 지출함에 따라 은퇴와 함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특성을 보였다. 송현주, 임란의 연구는 중·장년 세대의 이중 부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층연금 가입률로 분석해 노후소득 보장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심현정, 정나라(2018)는 50~60대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모습을 키워드로 요약하면서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더블케어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만 50~69세의 중장년 20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만 50~69세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34.5%가 더블케어를 수행 중이었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에게 지원하는 월별 평균 생활비 총액은 118만 원(성인자녀 78만 원, 노부모 40만 원)으로 중장년 평균 가구소득의 20.4%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노부모 생활비 지원은 성인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나, 노부모를 간병하고 있는 중·장년 가구의 경우 노부모에게

들어가는 월별 간병 평균 비용이 45만 원으로 간병 부양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중부양을 하고 있는 중·장년 중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소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7.4%로, 이중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중·장년 절반 이상이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중부양 부담이 중·장년 세대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이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이중부양 부담을 초점으로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집단의 부양 부담을 살펴보고 있어 이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분석 방법이 횡단 분석에 그치고 있어 단년도 분석으로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종단 분석을 함께 활용하여 부양 수준의 실태뿐 아니라 전망으로까지 논의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정순돌, 이현희, 2012; 김유경 외, 2015; 김혜선, 박효진, 2016; 심현정, 정나라, 2018). 또한 종단 분석을 수행한 연구라도 종속변수를 경제적 부양으로만 분석하고 있어 다양한 부양 형태별 실태와 전망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송현주, 임란, 2016).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전화 조사를 통한 심층적인 이중부양 실태 정보와 함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차 데이터를 활용해 이중부양 형태의 추이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중부양 유형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책 기반을 마련할 때 실증적인 근거 자료로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장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환경 및 특성

제1절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환경 진단

제2절 중·장년층의 특성

제3절 시사점



3

중·장년층 가족의 << 부양 환경 및 특성

제1절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환경 진단

1. 부양 의식의 변화

가. 가족 가치관의 변화

한국 사회에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서구의 개인주의가 공존한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이중적인 사회 규범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 그로 인해 부양에 대한 수요와 선택, 평가에서 사회와 개별 가족, 가족 안의 개인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부양의 분담을 둘러싼 부적응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부양 의식과 기대가 일치하지 않아 가족부양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김유경 외, 2015).

오랜 기간 한국 사회에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가치로 인식되어 왔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응집력을 기초하여 공동 거주와 경제적 협력, 배타적인 성생활과 같은 문화를 강조하므로 가족주의가 발전하는 데에 촉매가 되었다.

가족주의는 가족으로 대표되는 친족 집단의 이익을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시하여,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동양식, 곧 가족의 영속화와 번영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도덕률이라고 할 수 있다(이광규, 1990). 가족주의에 토대를 둔 집단은 다른 집단이나 개인보다 가족에게 우선성을 부여하며, 이러한 가족 우선성에 의하여 부계 중심성과 부계 가

족의 발전이 지속되는 결과가 나타났다(옥선화, 1989). 이러한 가족주의는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유대 의식을 형성하여 가족의 삶에서 응집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사회 적응 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와 부양이 가족집단 전체에 확대 재생산되어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부양과 원조가 가능토록 기능하는 사회적 가치 체계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이덕식, 2015, pp. 179-180).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나타난 노동, 즉 직업일은 가족부양을 위한 경제활동의 수단이지만 가족관계에서 갈등과 부담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이 역할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 또는 시간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자원소모 모델(resource drainmodel)(Edward & Rothbard, 2000)에 의하면 가족주의적 인식이 강할수록 자원, 즉 경제적 소득과 부양에 대한 태도는 강한 갈등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덕식, 2015, pp. 188-189).

서구의 제도적 개인주의(Beck & Beck-Gernsheim, 2002)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Chang(2010, 2014)은 제도적 가족주의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사회제도들의 형성과 운용에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 명시적·묵시적으로 가족적 차원의 책임·의무·권리를 강화하고 가족 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효과'(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3, pp. 15-16)를 의미한다. 제도적 가족주의 개념은 한국의 '사회와 국가 모두가 한국인들로 하여금 출생(출산)부터 양육, 교육, 생업, 노후부양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에 의지하여 가족을 위하여 삶을 살도록 규범적으로 강요하고 제도적으로 강제해 왔다'(장경섭, 2011, p. 19)는 문제의식에서 도출되었다. 이는 한국과 같이 가족주의 또는 가족 중심주의

적 전통이 강한 국가의 사회제도에는 가족의 기능과 의무를 강조하는 가족주의적 속성이 있음(Chang, 2014)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이재림, 2015, pp. 78-79). 그러나 오늘날 핵가족 중심의 생활양식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 과거에는 부계 중심적인 전통적 가족관의 영향으로 부양 부담이 부양 행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가족관이 약화되면서 부양 부담(특히 경제적 부양 부담)이 증가할 때 부양 행동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인할 수 있는 동인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일방적 부양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부양에서 상호교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신영선, 2005).

나. 부양관의 변화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층은 전후의 경제 재건과 성장을 경험하면서 전통에서 현대로의 변화를 몸소 체험한 세대이다. 이들은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산업화의 격변기에 대가족 내에서의 부계 중심적 위계질서와 핵가족으로의 가족 변화를 실생활에서 직접 체험한 세대이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전통과 혁신이라는 이중적인 가치관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특성이 발견된다. 이들은 부모부양을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반면, 자신의 노후는 자녀 세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을 견지한다. 이런 면에서 이들은 전통적 부모부양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려는 첫 세대(정성호, 2006)라고 할 수 있다. 중·장년층이 소유하고 있는 전통적 가족 부양관은 그들의 부모에 대한 부양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중·장년층 부모 세대와 상이한 부양관을 추구하고 있

는 그들의 자녀 세대도 그들처럼 부모부양을 수행할 것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인해 부양을 둘러싸고 나타날 수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은 노인들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에게 부양되는 데 적지 않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홍미령, 2004).

산업화로 인한 가족 가치와 가족 생활양식의 변화 과정에서 부양관도 변화되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양은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 결과 사적 부양의 영역에 남겨진 것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으로 국한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의식 측면에서는 부양관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현실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 사적 책임이 당위시된다.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다. 또는 손자녀의 돌봄, 가사노동을 비롯한 생활상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부양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태도들이 발견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 기능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가족 부양관의 규범적 규제력과 아울러 사회보장의 포괄 범위와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김두섭, 박경숙, 이세용, 2000). 따라서 가족 부양관의 규범적 규제력은 더욱 약화되고, 사회보장의 취약성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해진다면 가족의 부양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2002년에는 가족이 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70.7%)이 대체로 확산되어 있어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적 부양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2016년에는 부모의 노후 생

계 책임에 대해 가족은 30.8%로 감소하였다.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45.5%로 가장 많아 부모 부양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연도별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2002~2016)

(단위: %)

구분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기타	계
2002	9.6	70.7	19.5	0.0	2.0	100.0
2006	7.8	63.4	26.4	2.3	0.1	100.0
2010	12.7	36.0	47.4	3.9	0.0	100.0
2016	18.6	30.8	45.5	5.1	0.0	100.0

주: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가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자임.

자료: 통계청(2002, 2006, 2010b)와 통계청(2016b), 2016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p. 9에서 재구성.

가족부양 중 장남 또는 맏며느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5.6%, 아들 또는 며느리와 딸 또는 사위는 각각 4.5%와 1.0%로 나타났으며, 모든 자녀는 71.1%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장자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은 쇠퇴하고, 점차 노부모의 자기부양을 비롯하여 국가 및 사회 등 공적 부양에 대한 의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유경 외, 2015, p. 108).

중년기 비혼 여성의 결혼과 가족 담론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중년 비혼 여성은 투병 중인 아버지를 돌보거나 조카를 돌보는 일에 거의 전적으로 또는 보조적으로 참여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자신이 부모를 모시거나 가족을 도와주는 상황을 당연한 도리나 책임으로 인식하였다(성미애, 2014; 성미애, 최연실, 최새은, 이재림, 2016, pp. 160-163). 이와 같이 가족 구성원 중에 가족 형성을 따로 하지 않아 현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이 없는 비혼자에게 원

가족에 대한 부양을 당연시하는 상황은 부양관의 변화와 현실 생활 속에서 부양 수행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양을 둘러싼 부담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 의식

부모가 어떤 자녀 부양관을 견지하고 있고, 어떤 자녀를 지원하는가는 세대 간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 모델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타적인 부모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이 더 필요한 자녀를 지원한다는 이타심(altruism) 가설(Becker & Tomes, 1977), 훗날 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녀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는 위험에 대한 보험(insurance against risk) 가설(Frankenberg, Lillard, & Willis, 2002), 즉각적으로 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자녀를 지원한다는 교환(exchange of money for time) 가설(Cox, 1987)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 자원이전 모델의 영향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받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자녀부양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녀를 지원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최여진, 이재림, 2014, p. 88).

자녀부양 책임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김유경 외, 2015, p. 108)를 보면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그리고 취업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은 자녀의 혼인 여부보다는 경제적 독립과 중요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양관은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부모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성인자녀 부양에 대해 부모 책임이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어서(김유경 외, 2015, pp. 105-106) 자녀가 성인기로 접어들었지만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인자녀 부양에 대한 가족 내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을 예견해 볼 수 있다.

〈표 3-2〉 연도별 자녀 양육 책임의 범위 변화(200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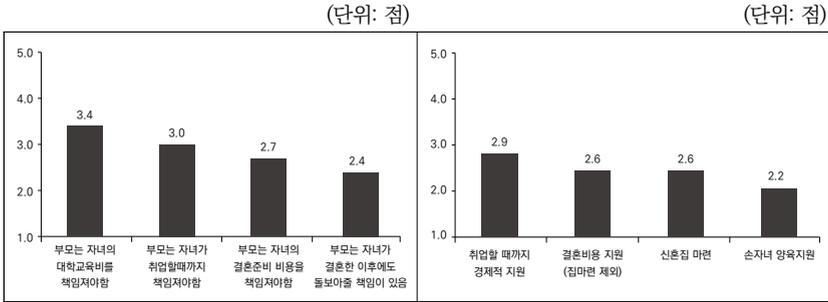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필요하면 언제까지	기타	생각해 보지 않음/모르 겠음	계(수)
2003	8.3	40.2	11.5	32.1	6.3	0.6	1.0	100.0(11,106)
2006	8.6	46.3	11.9	27.0	5.5	0.1	0.5	100.0(10,117)
2009	9.6	49.6	12.2	23.1	5.0	0.1	0.4	100.0(9,075)
2012	8.9	49.6	15.7	20.4	4.6	0.0	0.8	100.0(10,058)

- 자료: 1)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진우. (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진우.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종서, 손창균, 최영준 외.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1] 자녀 양육의 책임 범위(2015)

[그림 3-2] 성인자녀 부양의 책임 범위(2015)



주: 1) 1점은 전혀 그렇지 않음, 2점은 별로 그렇지 않음, 3점은 보통, 4점은 대체로 그렇, 5점은 매우 그렇므로 구성됨.

2)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 책임이 낮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책임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1)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2015). 가족 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 전망과 공사 간 부양 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인구·사회적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전체 인구의 연령 구조를 보면 2016년 총조사 인구 중 유소년 인구는 676만 8000명(13.6%), 생산연령 인구는 3631만 2000명(72.8%),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677만 5000명(13.6%)으로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졌다. 2017년 인구 피라미드는 아직까지는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3〉 연도별 유소년, 생산연령 및 고령 인구 추이(2000T~2016R)

(단위: 천 명, 100명당 %)

구분	2000년T	2005년T	2010년T	2010년R	2015년R	2016년R
전체	45,985	47,041	47,991	48,748	49,706	49,856
유소년 인구(0~14세)	21.0	19.1	16.2	16.2	13.9	13.6
생산연령 인구(15~64세)	71.7	71.6	72.5	72.8	72.9	72.8
고령 인구(65세 이상)	7.3	9.3	11.3	11.0	13.2	13.6

주: 1) 2000년T와 2005년T, 2010년T는 전통적 방식을 말하며, 2010년R과 2015년R, 2016년R은 등록 센서스 방식을 말함.

2) 전통적 방식(Traditional): 인구·가구·주택의 규모, 구조, 모든 특성에 대한 정보를 조사표와 함께 현장 면접조사, 우편조사 등을 통해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말함.

3) 등록 센서스방식(Register-based): 주민등록부, 건축물 대장 등 가용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을 말함.

자료: 통계청(2017d): 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 p. 16.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심화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1.10명 이하로 감소하여 2017년에 1.05명을 기록하였다. 보육비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저출산 정책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으나, 보육 및 교육비용의 부담, 장기적 경기 침체의 지속 등으로 인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저출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표 3-4〉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2000~2017)

(단위: 명, %, 인구 1천 명당 명,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출생아 수	증감	증감률	조출생률	증감	합계출산율	증감
2000	634,501	20,268	3.3	13.3	0.3	1.467	0.057
2005	435,031	-37,730	-8.0	8.9	-0.9	1.076	-0.078
2010	470,171	25,322	5.7	9.4	0.4	1.226	0.077
2015	438,420	2,985	0.7	8.6	0.0	1.239	0.034
2017	357,700	-48,500	-11.9	7.0	-0.9	1.05	-0.122

자료: 통계청(2018a): 2017년 인구동향조사 -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p. 26.

한편 통계청(2017b)의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44만 6000명으로, 이 중 65세 인구수는 13.8%인 707만

6000명이었다. 그러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2017년 말에 전체 인구의 약 14%를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유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유소년 부양비는 2000년 29.2명에서 2016년 18.6명으로 감소하였지만, 노년 부양비는 2000년의 10.2명에서 2017년 18.8명으로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자 1명에 대해 생산가능 인구 5.3명이 부양을 하고, 저출산 및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년 부양비의 증가 속도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노령화 지수는 2000년 35.0에서 2016년 100.1, 2017년 104.8로 상향되었다. 유소년과 노년에 대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5〉 연도별 유소년, 생산연령 및 고령 인구 추이(2000T~2016R)

(단위: 100명당 명)

구분	2000년T	2005년T	2010년R	2015년R	2016년R
유소년 부양비	29.2	26.7	22.2	19.1	18.6
노년 부양비	10.2	13.0	15.1	18.1	18.7
노령화지수	35.0	48.6	68.0	95.1	100.1

주: 1) 2000년T와 2005년T는 전통적 방식을 말하며, 2010년R과 2015년R, 2016년R은 등록 센서스 방식을 말함.

2) 전통적 방식과 등록 센서스 방식은 〈표 3-3〉의 주 2)와 주 3) 참조.

자료: 통계청(2017d). 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 p.16.

이상과 같이 고령화의 심화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유소년과 경제활동 인구층이 감소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길어진 기대수명도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2000년에는 평균 76.01세였지만 2016년에는 82.36세로 상승하였다. 그런데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은 64.9세에 불과하여 약 17년간은 돌봄과 의료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3-6〉 연도별 기대수명 변화 추이(2000~2016)

(단위: 세)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기대수명	계	76.01	78.24	80.24	82.06	82.36
	남성	72.35	74.89	76.84	78.96	79.30
	여성	79.67	81.60	83.63	85.17	85.41
유병 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0.0	0.0	0.0	0.0	64.90

주: 1) 2000~2015년 기대수명은 0세 기대여명을 의미하고, 2016년 기대수명은 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을 의미함.

2) 위 자료는 2017년 12월 5일에 수치가 변경되었음(생명표 작성 방법 개선)

자료: 통계청(2018b). 생명표 재구성.

나. 만혼과 비혼의 확산

오늘날 20~30대는 길어진 교육 기간과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경제적 자립기가 지속적으로 유예되고 있다. 이들은 N포 세대라 불릴 정도로 취업의 어려움,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 등에 노출되어 있다. 그로 인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및 심리·정서적 의존도 강화되고 있다.

교육기가 연장되고,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늦은 취업의 여파는 결혼 양태에도 변화를 야기하여 혼인율이 낮아지고, 혼인을 한다 하여도 늦게 하는 만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애기간 동안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인구도 늘고 있다. 이를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보면 2000년에 조혼인율은 7.0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5.2건으로 낮아졌다. 초혼 연령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2세 정도 상승하였다.

〈표 3-7〉 연도별 총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의 변화 추이(2000~2017)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7
총 혼인 건수(천 건)	332.1	314.3	326.1	302.8	264.5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건)	7.0	6.5	6.5	5.9	5.2

자료: 통계청(2000c, 2005b, 2010c, 2015b, 2017c). 인구동향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2000년의 남성 초혼 연령은 29.3세, 여성은 26.5세였던 것이 2017년에는 남성 32.9세, 여성 30.2세로, 약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남성은 3.6세, 여성은 3.7세가 상향하였다.

〈표 3-8〉 연도별 평균 초혼 연령 추이(2000~2017)

(단위: 세)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남성	29.3	30.9	31.8	32.6	32.8	32.9
여성	26.5	27.7	28.9	30.0	30.1	30.2

자료: 통계청(2000c, 2005b, 2010c, 2015b, 2016c, 2017c). 인구동향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초혼 연령이 상향된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이 결혼을 늦게 하게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미혼 또는 비혼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부터 10년간 30대 이후의 남성 미혼 인구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여성은 2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표 3-9〉 연령별 남녀 미혼 인구 비율(2000~2015)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2005	2010	2015	2005	2010	2015
20~24세	98.2	98.8	98.8	89.1	93.7	96.0
25~29세	81.8	85.4	90.0	40.1	59.1	69.3
30~34세	41.3	50.2	55.8	10.7	19.0	29.1
35~39세	18.4	26.7	33.0	4.3	7.6	12.6
40~44세	8.5	14.4	22.5	2.6	3.6	6.2
45~49세	4.5	7.5	13.9	1.7	2.4	3.3

자료: 통계청(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특히 여성의 경우 30대 후반부터의 미혼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35~39세는 2005년 4.3%에서 2015년 12.6%로 10년간 약 3배

증가하였고, 40대 초반에서도 2.6%에서 6.2%로 약 3배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 40대의 증가가 매우 급격하게 나타났는데, 2005년의 40~44세는 8.5%에서 22.5%, 45~49세는 4.5%에서 13.9%로 여성과 유사하게 3배 정도 증가하였다.

만혼과 비혼의 확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으나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0년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1%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59%로 상향되었다.

〈표 3-10〉 연도별 경제활동 참가율(2000~2017)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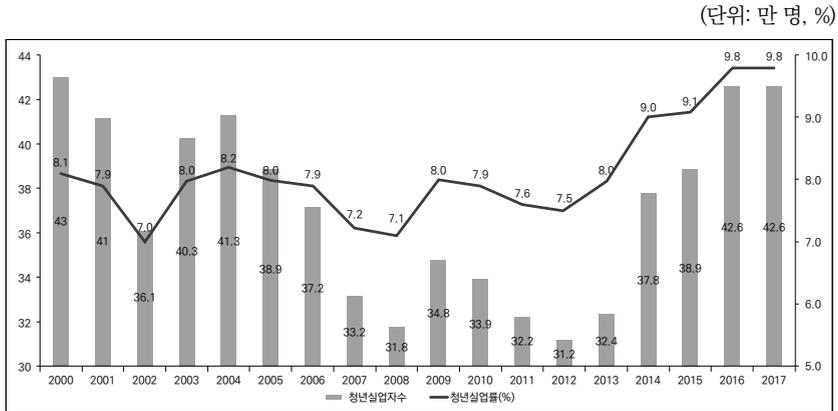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7
15세 이상 인구	36,192	38,120	40,825	43,239	43,931
경제활동 인구	22,151	23,718	24,956	27,153	27,748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64.5	66.3	65.9	68.4	69.2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77.2	78.3	77.2	78.9	79.3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52.1	54.5	54.5	57.9	59.0

자료: 통계청(2000a, 2005a, 2010a, 2015a, 2017a). 경제활동인구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취업이 여성 생애주기의 한 부분으로 고착되면서 이는 가족 내에서 부부간의 권력 구조가 민주적으로 변화하는 데에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구조가 임금노동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제권은 곧 가족 내에서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성의 취업은 기존에 남성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주 생계부양자(bread-winner)’ 위치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부장적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삶이 여성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으며, 결혼으로 인해 여성이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인식을 여성들에게 일깨우게 되어 여성들이 자발적 비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하고 있다.

만혼과 비혼이 확산되는 데에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능력 약화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영향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 2000년대 들어서 청년 실업자 수는 2010년 전후로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실업자 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7년의 전체 실업률이 3.7%에 불과한 것에 비하여(통계청, 2017a) 청년 실업률은 9.8%로 약 3배 가까이 높은 점을 볼 때,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결혼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3] 연도별 청년 실업자 수 및 실업률(2000~2017)



주: 청년 연령의 범위는 15~29세임.

자료: 통계청(2000~2017). 경제활동인구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미혼자들의 의견을 보면 남성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비율이 2005년에는 29.4%였던 것이 2015년에는 18.1%로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2.9%에서 7.7%로 감소하였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남성이 23.5%에서 33.0%, 여성이 44.9%에서 52.4%로 증가하고 있어서 결혼이 선택이라는 가치관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 연도별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2005~2015)

(단위: %, 명)

성별	연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 겠다	계(수)
남성	2005	29.4	42.0	23.5	2.2	3.0	100.0(1,466)
	2009	23.4	46.4	25.1	2.4	2.8	100.0(1,732)
	2012	25.8	41.7	26.5	3.4	2.6	100.0(1,855)
	2015	18.1	42.7	33.0	3.9	2.4	100.0(1,096)
여성	2005	12.9	36.3	44.9	3.7	2.2	100.0(1,205)
	2009	16.9	46.3	31.8	2.8	2.2	100.0(1,580)
	2012	13.3	43.4	37.2	4.4	1.7	100.0(1,615)
	2015	7.7	32.0	52.4	5.7	2.3	100.0(1,28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9, 2012, 2015).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미혼자들의 생각을 보면 남성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있다’가 2005년 82.5%에서 2015년 74.5%,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73.8%에서 6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하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12〉 연도별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의향(2005~2015)

(단위: %, 명)

성별	연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계(수)
남성	2005	82.5	4.2	1.4	3.3	8.7	100.0(1,466)
	2009	75.7	5.8	1.8	7.2	9.5	100.0(1,732)
	2012	79.3	6.0	2.5	3.3	8.8	100.0(1,855)
	2015	74.5	7.8	2.1	6.0	9.6	100.0(1,096)
여성	2005	73.8	5.5	3.3	5.2	12.2	100.0(1,205)
	2009	73.1	6.8	3.2	7.7	9.2	100.0(1,580)
	2012	72.4	6.1	4.2	4.1	13.2	100.0(1,615)
	2015	64.7	8.8	5.1	7.7	13.8	100.0(1,28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9, 2012, 2015).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다. 가족제도의 변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들이 존재하는 양상은 사회의 변동을 그대로 투영하듯이 매우 다채롭게 펼쳐져 있다. 오늘날 조부모와 부모, 자녀 세대로 구성된 대가족 형태가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토대로 동일한 주거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견된다. 반면 전통 사회에서 백안시되고 차별되었던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비혼 싱글 등의 가족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호주제의 폐지로 상징화되는 봉건적 가족 질서의 해체와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수용적으로 변화되면서 과거에는 차별적 관점에서 ‘비정상’으로 치부되었던 가족 유형들에 대해서도 사회의 포용성이 확장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면서 가족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개인 생활 패턴의 변화, 여성의 상향된 교육수준 및 그로 인한 의식과 역할의 변화가 주 영향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즉 가족은 급속한 산업사회의 변동 속에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핵가족 중심의 획일적 유형을 벗어나 다양성을 띠게 된 것이다.

다양한 가족이 병존하게 되면서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사회 변화와 개인주의의 신장에서 기인하는 필연적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이를 가족제도가 무너지는 위기와 해체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문적 관점에 따라 논의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한 가족이 위기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사회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가족을 위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접점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 가족관이 아직도 가족 관련 지

원 제도들 내에 잔재해 있어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성인자녀나 노인을 부양하는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책들인 건강가정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들은 아직도 부양 책임을 가족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부양의 공백을 자초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현실에서 다양한 기능과 형태를 지닌 가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에도 결혼하여 자녀를 낳거나 입양으로 구성된 가족만을 전형으로 전제하는 편향성을 내재한다. 가족의 경제적 욕구와 의료적 욕구, 주거와 관련한 문제 등과 같이 타 사회정책들과의 연계 속에서 가족에 대해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하는 정책적 영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에 한계를 안고 있다. 법의 내용은 출산과 양육, 직장과 가족생활의 양립, 가족 대상의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1인 가구를 비롯한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족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진숙, 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출산과 자녀의 양육 및 돌봄, 노부모 부양을 위한 중요한 정책임에도 정책적 지원의 틀이 협소하고, 지원의 수준도 낮아 출산과 양육, 돌봄을 가족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 가족의 변화

가. 가족의 소규모화

산업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가족은 규모와 형태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가족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외형상으로 보았을 때 가족의 가장 큰 변화는 규모의 축소이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가구는 약 1937만 가구로, 2000년 1431만 가구에 비해 약 500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표 3-13〉 가구 수 및 가구당 평균가구원 수(2000T~2016R)

(단위: 천 가구, 천 명)

구 분	2000년T	2005년T	2010년R	2015년R	2016년R
일반 가구(A)	14,312	15,887	17,656	19,111	19,368
일반 가구원(B)	44,712	45,737	47,372	48,340	48,551
평균가구원 수(B/A)	3.12	2.88	2.68	2.53	2.51

주: 1) 2000년T와 2005년T는 전통적 방식을 말하며, 2010년R과 2015년R, 2016년R은 등록 센서스 방식을 말함.

2) 전통적 방식과 등록 센서스 방식은 〈표 3-3〉의 주 2)와 주 3) 참조.

자료: 통계청(2017d). 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 p.38.

가구원 수 규모별로는 2016년 1인 가구(27.9%)가 가장 많고, 2인 가구(26.2%), 3인 가구(21.4%), 4인 가구(18.3%), 5인 이상 가구(6.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가구원 수는 2000년 3.12명에서 2016년 2.51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2015년 570만 가구로 일반 가구의 29.8%로 나타났으며, 2016년 557만 가구(28.8%)로 2015년보다 13만 가구가 감소하였다(통계청, 2017d).

가구 유형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이후 2000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4인 가구에서 2010년에는 2인 가구, 2015년 이후로는 1인 가구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이후 2016년의 주된 가구 유형도 1인 가구(27.9%)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에 비해 12.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표 3-14〉 연도별 가구 규모 분포(2000T~2016R)

(단위: %, 천 가구)

가구원 수	2000년T	2005년T	2010년R	2015년R	2016년R
1인	15.5	20.0	23.9	27.2	27.9
2인	19.1	22.2	24.6	26.1	26.2
3인	20.9	20.9	21.5	21.5	21.4
4인	31.1	27.0	22.0	18.8	18.3
5인 이상	13.4	10.0	8.0	6.4	6.2
계(수)	100.0(14,312)	100.0(15,887)	100.0(17,656)	100.0(19,111)	100.0(19,368)

주: 1) 2000년T와 2005년T는 전통적 방식을 말하며, 2010년R과 2015년R, 2016년R은 등록 센서스 방식을 말함.

2) 전통적 방식과 등록 센서스 방식은 〈표 3-3〉의 주 2)와 주 3) 참조.

자료: 통계청(2017d). 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 p. 39.

가족 유형을 세대별로 구분해 보면 2세대 가구에는 부부와 자녀, 한부모와 자녀, 부부와 양친, 부부와 한부모, 부부와 자녀, 부부의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포함되는데, 2세대 가구는 2015년 47.2% (883만 4000가구)로 비중이 작아졌다(통계청, 2017. 8. 22.). 이러한 가족의 핵가족화는 자녀 수의 감소와 더불어 가족이 소규모화되는 데에 주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가족 형태의 다양화

가족 규모의 축소 현상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가 가족 형태의 ‘다양화(diversity)’ 현상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부부와 미혼 자녀, 직계가족의 수는 줄어들고, 과거에는 소수에 불과했던 다양한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표 3-15〉 연도별 가족 형태 분포(2000~2015)

(단위: 천 가구, %)

구분		2000	2005	2010	2015
혈연가구 수		11,928	12,490	12,995	13,694
핵가족	부부	14.8	18.0	20.6	21.8
	부부와 미혼 자녀	57.8	53.7	49.4	44.9
	한부모와 미혼 자녀	9.4	11.0	12.3	15.0
직계가족	부부와 양(편)친	1.2	1.2	1.2	1.1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6.8	5.7	5.0	4.2
기타가족		10.1	10.4	11.6	13.0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또한 아래의 〈표 3-16〉을 보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가구 유형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3세대 이상 기타 가구, 1인 가구는 2000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이 드러난다.

〈표 3-16〉 연도별 가구 유형 변화 추이(2000~2017)

(단위: 가구)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7
전체	14,507,010	16,038,858	17,494,884	19,012,895	19,523,587
부부	1,785,717	2,248,550	2,629,660	2,952,106	3,130,072
가구주+미혼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205,874	243,526	270,450	217,504	220,953
1세대 기타	67,993	79,723	98,704	124,687	135,036
부부+미혼 자녀	6,993,296	6,815,725	6,544,401	6,131,866	5,932,704
부+미혼 자녀	222,236	289,874	350,681	535,123	569,619
모+미혼 자녀	914,795	1,096,469	1,263,825	1,516,859	1,557,134
부부+부(모)	138,660	154,618	157,776	143,736	144,232
부부+미혼 자녀+형제자매	96,863	75,467	57,695	77,257	76,216
조부(모)+미혼 손자녀	105,536	124,424	113,449	111,654	114,251
2세대 기타	347,667	380,063	545,526	774,788	854,385
부부+미혼 자녀+부(모)	819,458	713,100	657,051	576,274	539,720
3세대 이상 기타	391,628	400,267	419,621	457,714	460,163
1인 가구	2,255,298	3,185,621	4,174,073	5,179,573	5,562,048
비친족 가구	161,989	231,431	211,972	213,754	227,054

주: 각 연도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1인 가구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6년 27.9%로 상향되어 독신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자료: 통계청 (2017. 8. 22.)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bSeq=&aSeq=36233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인출.

〈표 3-17〉 연도별 1인 가구 규모 및 분포(2000T~2016R)

(단위: 천 가구, %)

구분	2000년T	2005년T	2010년R	2015년R	2016년R
일반 가구(A)	14,312	15,887	17,656	19,111	19,368
1인 가구(B)	2,224	3,171	4,218	5,203	5,398
1인 가구 비율(B/A)	15.5	20.0	23.9	27.2	27.9

주: 1) 2000년T와 2005년T는 전통적 방식을 말하며, 2010년R과 2015년R, 2016년R은 등록 센서스 방식을 말함.

2) 전통적 방식과 등록 센서스 방식은 〈표 3-3〉의 주 2)와 주 3) 참조.

자료: 통계청(2017d). 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 p. 45.

사회 변화 속에서 가부장적 질서가 힘을 잃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면서 가족 내의 권력 구조가 민주적으로 재편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부부간의 관계나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수직적 위계 구조에서 수평적으로 재구성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과 재혼, 비혼 등의 현상도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양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여 분거가족이나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노인가족이 늘어 가는 것도 특징적 양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10만 6000건의 이혼이 발생하였는데, 2000년(11만 9500건)에 비하면 1만 3500건이 감소한 것이다. 조이혼율은 2.5에서 4.4로 증가하였다. 혼인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혼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이혼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8〉 연도별 총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2000~2017)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7
총 이혼 건수(천 건)	119.5	128.0	116.9	109.2	106.0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건)	2.5	2.6	2.3	2.1	4.4

자료: 통계청(2000c, 2005b, 2010c, 2015b, 2017c). 인구동향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이혼율의 상승은 대체로 한부모가족의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는 한부모가족의 수가 완만한 상승 곡선을 보이는 데 그쳤으나, 1990년대 후반기부터 심화된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한부모가족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5년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8.6%였으나 2017년에는 10.9%로 증가하였다.

〈표 3-19〉 연도별 한부모가구 현황 변화 추이(2005~2017)

(단위: 천 가구, %)

구분	2005	2010	2015	2017
전체 가구	15,887	17,339	19,013	19,524
한부모가구	1,370	1,594	2,052	2,127
한부모가구 비율	8.6	9.2	10.8	10.9

자료: 통계청. (2017. 8. 22.)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bSeq=&aSeq=36233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인출.

한부모가족의 형성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사별(약 50%), 이혼(11.6%), 미혼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통계청, 2015b).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사별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발생은 2005년 44만 4000건에서 2015년 35만 8000건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비해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발생은 같은 기간 14만 4000건에서 18만 건으로 급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발생이 이혼과 긴밀한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부모가족이 자연적 발생보다는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에 기인하는 인위적 구성 방식에 의해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혼 한부모의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재혼가족은 자녀가 있는 이혼 또는 사별한 부부가 재혼함으로써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 3-20〉을 보면 전체 혼인 수

와 재혼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혼인 수가 감소되는 쪽에 비해 재혼 수의 감소폭은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혼인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3-20〉 연도별 혼인 종류와 재혼 현황 변화 추이(2005~2017)

(단위: 건)

구분	2005	2010	2015	2017
전체	314,304	326,104	322,828	264,455
모두 초혼	232,048	254,630	258,275	206,095
남성 초혼+여성 재혼	20,079	18,275	18,036	16,219
남성 재혼+여성 초혼	13,061	13,873	11,670	10,516
모두 재혼	46,307	39,125	34,682	31,056

자료: 통계청(2005b, 2010c, 2015b, 2017c). 인구동향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2017년 평균 재혼 연령은 남성은 48.7세, 여성은 44.4세로, 2000년(남성 42.05세, 여성 37.45세)에 비해 남성은 5.65세, 여성은 6.98세 상향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혼 연령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7c).

〈표 3-21〉 연도별 재혼 연령의 변화 추이(2000~2017)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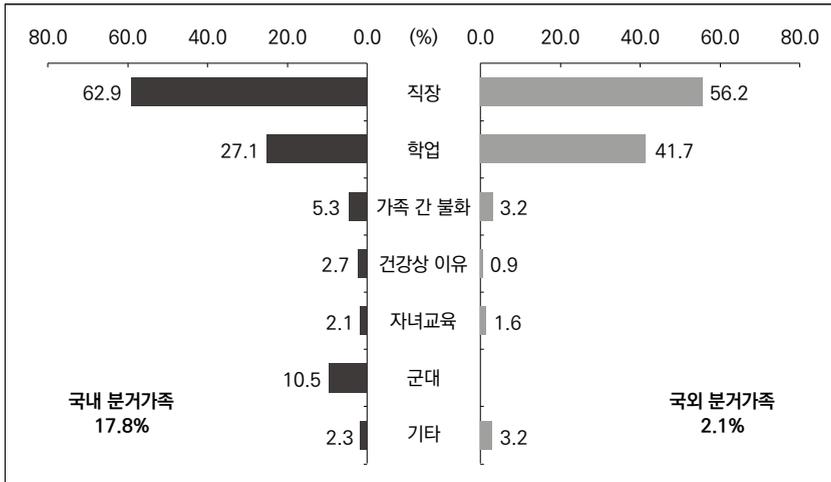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7	
	남편	아내								
재혼 연령	42.05	37.45	44.10	39.56	46.11	41.59	47.63	43.46	48.70	44.43

자료: 통계청(2000c, 2005b, 2010c, 2015b, 2017c). 인구동향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2016년에 국내에서 직장파업 등의 이유로 배우자나 미혼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가구(분거가족)는 17.8%이며, 분거의 주된 사유는 직장(62.9%)과 학업(27.1%) 순이었다. 가족의 분거 이유는 국내외에서 모두 직장파업과 학업에 기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국내에서는 직장으로 인한

경우가 학업으로 인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면, 국외에서는 학업보다 직장의 비율이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여 국내에서처럼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림 3-4]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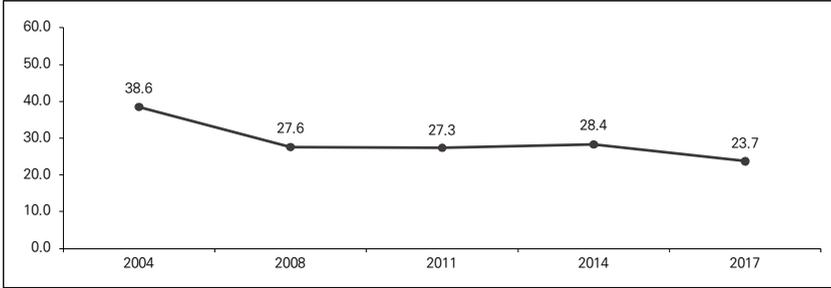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6b). 2016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p. 9.

다. 가족관계의 변화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결속력은 부모와 자녀 간의 동거 형태 및 교류 빈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 여부를 보면 2004년 자녀와의 동거 38.6%, 비동거 61.4%로 비동거가 동거보다 23% 포인트 높은 분포를 보였다. 최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고, 비동거는 증가하여 2017년에는 자녀와의 동거는 23.7%, 비동거는 76.3%로 비동거가 동거보다 3.2배 많았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보호 환경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5] 연도별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 비율 변화

(단위: %)



자료: 1)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외(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김한근, 이신영, 조준행 외(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3)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외(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와 같은 경향은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교류 빈도에서도 드러난다. 부모와의 연락 빈도에서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은 2004년 79.5%에서 2017년 81.0%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부모와의 만남은 동일한 빈도가 2004년 41.1%에서 2017년 38.0%로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비동거 거주 형태가 증가해 단순한 연락 빈도는 증가하였으나 만남을 통한 심층적인 교류 빈도가 적어져 가족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초고령 사회의 급속한 이행에 비해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비동거 거주 형태와 낮은 결속력은 가족 보호 체계의 약화와 함께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부양 부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3-22〉 연도별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교류 변화 추이(2004-2017)

(단위: %, 명)

구분	2004	2008	2011	2014	2017
부모와의 전화 통화					
거의 매일	29.7	25.4	23.9	25.9	28.3
일주일 한두 번	49.8	53.7	59.7	47.0	52.7
한 달에 한두 번	17.1	16.2	14.9	19.3	14.4
일 년에 몇 번	2.3	4.2	0.9	5.7	3.2
거의 하지 않음	1.2	0.6	0.7	2.0	1.4
부모와의 만남					
거의 매일	11.4	10.9	9.4	10.8	9.6
일주일 한두 번	29.7	34.9	38.9	26.9	28.4
한 달에 한두 번	36.2	30.0	46.5	31.5	37.0
일 년에 몇 번	20.4	7.1	4.2	29.0	23.0
거의 하지 않음	2.3	1.0	1.0	1.8	2.1
계(수)	100.0(2,892)	100.0(14,310)	100.0(10,153)	100.0(9,745)	100.0(9,629)

자료: 1) 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용찬, 변재관, 문현상(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외(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명화 외(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p. 196; 4) 정경희 외(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34-137; 5)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모들 중 다수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도 다양한 종류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많은 부모들이 성인기의 자립을 당연시하는 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원행위를 유지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Lee, 2011; 최여진, 이재림,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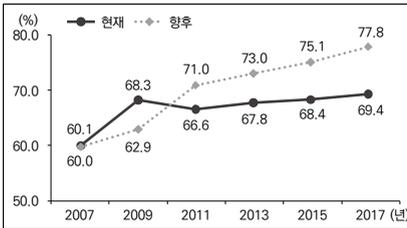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게 되면 이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 세대가 성인자녀의 부양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부담이 부모에

게는 노후 준비의 부족에 대한 우려나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최여진, 이재림, 2014, p.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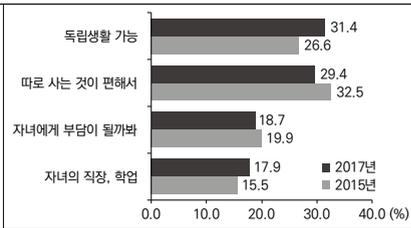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부양(특히 노부모에 대한 부양)에 대한 책임감은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족관계가 과거에는 가부장적 수직 질서에 토대를 두고, 애정적 친밀감보다는 명령과 복종의 불평등한 관계로 작동되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족관계가 성과 세대를 넘어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부양 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의무감과 암묵적인 강요로 부양이 수행되는 메커니즘은 더 이상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앞으로 그러한 부양은 서서히 감소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노부모의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의식을 보면 잘 나타난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69.4%는 자녀와 같이 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따로 사는 고령자는 ‘독립생활이 가능(31.4%)’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고, 그다음은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29.4%)’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77.8%는 향후에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가족관을 가진 노부모의 경우 단순한 부양 책임감에 의거한 ‘불편한’ 부양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완곡한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6] 자녀와 비동거 비율



[그림 3-7]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



자료: 통계청(2017b). 2017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p. 11.

제2절 중·장년층의 특성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장년층 가족은 중·장년층 부양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의미하므로 중·장년층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부양자로서의 인구·가족·사회적 위치 및 자원을 진단하는 데 중요하다.

이 연구의 중·장년층은 사전적 의미, 선행연구 및 정책 대상 등을 근거로 만 45~64세로 규정하였다(제2장 제1절 참조). 이에 이들 연령을 기준으로 중·장년층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층의 인구 및 가족 특성

가. 중·장년층의 인구 특성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보면 2000년도에 44세 이하 인구는 73.0%, 45~64세인 중·장년층 인구는 19.7%,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는 7.3% 분포를 보였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2005년에는 각각 67.2%, 23.1%, 9.7%로 44세 이하 인구는 5.8%포인트 감소하고 중·장년층 인구와 고령층 인구는 각각 3.4%포인트와 2.4%포인트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0년과 2015년에도 계속되어 2015년에 44세 이하 인구는 56.5%로 15년간 22.6% 감소하였다. 중·장년층 인구는 30.3%로 같은 기간 약 54% 증가하였고, 고령층 인구는 13.2%로 약 2배 증가하였다.

〈표 3-23〉 연도 및 연령별 인구의 분포(2000~2015)

(단위: 명)

	2000	2005	2010	2015
전체	45,983,421 (100.0%)	47,274,722 (100.0%)	47,990,761 (100.0%)	49,705,663 (100.0%)
44세 이하	33,552,021 (73.0%)	31,752,729 (67.2%)	29,745,674 (62.0%)	28,101,628 (56.5%)
45~64세	9,059,594 (19.7%)	10,923,487 (23.1%)	12,820,420 (26.7%)	15,034,953 (30.3%)
65세 이상	3,371,806 (7.3%)	4,598,506 (9.7%)	5,424,667 (11.3%)	6,569,082 (13.2%)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중·장년층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0년 45~54세 인구는 58.5%, 55~64세 인구는 41.5%로 45~54세 인구가 17%포인트 높은 분포를 보이다 2005년과 2010년에 오면서 그 간격이 더 벌어져 두 연령층 간에 각각 약 24%포인트와 2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2015년에는 45~54세 인구가 56.0%, 55~64세 인구가 44.0%로 간격이 12%포인트로 줄어들었다.

〈표 3-24〉 연도 및 연령별 중·장년층 인구의 분포(2000~2015)

(단위: 명)

	2000	2005	2010	2015
전체	9,059,594 (100.0%)	10,923,487 (100.0%)	12,820,420 (100.0%)	15,034,953 (100.0%)
45~54세	5,302,273 (58.5%)	6,756,196 (61.9%)	7,871,489 (61.4%)	8,412,917 (56.0%)
55~64세	3,757,321 (41.5%)	4,167,291 (38.1%)	4,948,931 (38.6%)	6,622,036 (44.0%)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중·장년층 인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2000년에 남성이 49.4%, 여성이 50.6%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다 2005년과 2010년의

로 오면서 남성이 소폭 증가하여 2015년에는 남성과 여성이 각 50%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5~54세 인구는 2000년에 남성이 50.6%, 여성이 49.4%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가 2005년에는 간격이 줄어들어 2010년에는 동일한 분포를 보이다 2015년에 다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지는 구조를 보였다. 55~64세 인구는 2000년에 남성이 47.8%, 여성이 52.2%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가 점차 간격이 줄어들어 2015년에는 각각 49.4%와 50.6% 분포를 보여 45~54세와 55~64세 인구의 남녀 간 분포는 차이를 보였다.

〈표 3-25〉 연도 및 연령별 중·장년층 인구의 성별 분포(2000~2015)

(단위: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5
전체	남성	4,477,488 (49.4%)	5,412,837 (49.6%)	6,350,396 (49.5%)	7,516,457 (50.0%)
	여성	4,582,106 (50.6%)	5,510,650 (54.4%)	6,470,024 (50.5%)	7,518,496 (50.0%)
45~54세	남성	2,681,343 (50.6%)	3,388,456 (50.2%)	3,932,614 (50.0%)	4,245,388 (50.5%)
	여성	2,620,930 (49.4%)	3,367,740 (49.8%)	3,938,875 (50.0%)	4,167,529 (49.5%)
55~64세	남성	1,796,145 (47.8%)	2,024,381 (48.6%)	2,417,782 (48.9%)	3,271,069 (49.4%)
	여성	1,961,176 (52.2%)	2,142,910 (51.4%)	2,531,149 (51.1%)	3,350,967 (50.6%)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중·장년층 인구의 혼인 상태별 분포를 보면 2000년에 유배우는 85.3%로 5분의 4를 초과하였고, 사별·이혼은 13.6%, 미혼은 1.1%로 상당히 미미하였다. 만혼화 및 가족해체의 영향으로 2005년 이후 유배우는 소폭으로 감소하고 사별·이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15년 유배우는

78.9%로 15년간 6.4%포인트 감소하였고, 사별·이혼은 15.2%, 미혼은 5.9%로 같은 기간 미혼은 약 5배 증가하였다.

45~54세 인구도 전체와 유사한 분포를 보여 2000년에 유배우 88.5%, 사별·이혼 10.0%, 미혼 1.5%에서 2015년에는 각각 79.1%, 12.9%, 8.0% 분포를 보였다. 55~64세 인구는 2000년에 유배우가 80.8%, 미혼은 0.5%로 45~54세 인구보다 다소 낮은 반면, 사별·이혼은 18.7%로 45~54세 인구보다 높았다. 유배우는 2010년 이후, 사별·이혼은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미혼은 소폭이나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서 45~54세 인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표 3-26〉 연도 및 연령별 중·장년층 인구의 혼인 상태별 분포(2000~2015)

구분		2000	2005	2010	2015
전체	유배우	7,681,129 (85.3%)	9,199,637 (84.2%)	10,582,184 (82.6%)	11,850,555 (78.9%)
	사별·이혼	1,228,381 (13.6%)	1,489,932 (13.6%)	1,812,226 (14.1%)	2,273,971 (15.2%)
	미혼	97,937 (1.1%)	233,918 (2.2%)	426,010 (3.3%)	886,860 (5.9%)
45~54세	유배우	4,659,867 (88.5%)	5,821,822 (86.2%)	6,575,160 (83.5%)	6,640,484 (79.1%)
	사별·이혼	528,374 (10.0%)	743,193 (11.0%)	953,062 (12.1%)	1,083,031 (12.9%)
	미혼	79,035 (1.5%)	191,181 (2.8%)	343,267 (4.4%)	675,046 (8.0%)
55~64세	유배우	3,021,262 (80.8%)	3,377,815 (81.1%)	4,007,024 (80.9%)	5,210,071 (78.8%)
	사별·이혼	700,007 (18.7%)	746,739 (17.9%)	859,164 (17.4%)	1,190,940 (18.0%)
	미혼	18,902 (0.5%)	42,737 (1.0%)	82,743 (1.7%)	211,814 (3.2%)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나. 중·장년층의 가족 특성

전체 가구주에서 차지하는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00년에 44세 이하 가구주는 51.5%로 절반을 다소 상회하였고, 45~64세인 중·장년층은 36.4%로 3분의 1보다 높았으며,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주는 12.1%의 분포를 보였다. 인구의 고령화 영향이 반영되어 2005년 이후 44세 이하 가구주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중·장년층과 고령층 가구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44세 이하 가구주는 33.9%로 15년간 약 34% 감소를 보였다. 이어서 중·장년층과 고령층 가구주는 각각 44.5%와 21.6%로 같은 기간 중·장년층은 약 22% 증가하였고, 고령층은 약 2배의 증가를 보였다.

〈표 3-27〉 연도 및 연령별 가구주 분포(2000~2015)

	(단위: 가구)			
	2000	2005	2010	2015
전체	14,311,014 (100.0%)	15,887,128 (100.0%)	17,339,422 (100.0%)	19,111,731 (100.0%)
44세 이하	7,371,380 (51.5%)	7,161,911 (45.1%)	6,897,753 (39.8%)	6,475,724 (33.9%)
45~64세	5,205,232 (36.4%)	6,276,869 (39.5%)	7,330,658 (42.3%)	8,517,226 (44.5%)
65세 이상	1,734,402 (12.1%)	2,448,348 (15.4%)	3,111,011 (17.9%)	4,118,781 (21.6%)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중·장년층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0년에 45~54세 가구주는 58.1%, 55~64세 가구주는 41.9%로 45~54세가 다소 높았고, 2005년과 2010년에 45~54세 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45~54세와 55~64세 간에 간격이 벌어지다가 2015년으로 오면서 45~54세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대신 55~64세 비율이 증가하여 간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가구주가 2000~2005년에는 45~54세 연령층 인구로 진입하고, 2010~2015에는 55~64세 연령층 인구가 진입한 데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표 3-28〉 연도별 중·장년층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2000~2015)

(단위: 가구)

	2000	2005	2010	2015
전체	5,205,232 (100.0%)	6,276,869 (100.0%)	7,330,658 (100.0%)	8,517,226 (100.0%)
45~54세	3,021,835 (58.1%)	3,822,383 (60.9%)	4,443,186 (60.6%)	4,649,616 (54.6%)
55~64세	2,183,397 (41.9%)	2,454,486 (39.1%)	2,887,472 (39.4%)	3,867,610 (45.4%)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중·장년층 가구주의 성별 분포를 보면 2000년에 남성 가구주가 81.9%, 여성가구주가 18.1%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4.5배 높다가 이혼 등의 증가로 2005년 이후 여성 가구주가 소폭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남성 74.3%, 여성 25.7%로 간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3-29〉 연도별 중·장년층 가구주의 성별 분포(2000~2015)

(단위: 가구)

구분		2000	2005	2010	2015
전체	남성	4,261,382 (81.9%)	5,081,676 (81.0%)	5,712,094 (77.9%)	6,327,485 (74.3%)
	여성	943,850 (18.1%)	1,195,193 (19.0%)	1,618,564 (22.1%)	2,189,741 (25.7%)
45~54세	남성	2,551,685 (84.4%)	3,162,790 (82.7%)	3,501,221 (78.8%)	3,471,867 (74.7%)
	여성	470,150 (15.6%)	659,593 (17.3%)	941,965 (21.2%)	1,177,749 (25.3%)
55~64세	남성	1,709,697 (78.3%)	1,918,886 (78.2%)	2,210,873 (76.6%)	2,855,618 (73.8%)
	여성	473,700 (21.7%)	535,600 (21.8%)	676,599 (23.4%)	1,011,992 (26.2%)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연령별로는 45~54세는 2000년에 남성 가구주가 84.4%, 여성 가구주가 15.6%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5.4배 많았다. 중·장년층 전체보다 남성 가구주 분포가 높았다. 2005년 이후 남성 가구주가 감소하고 여성 가구주가 증가하여 차이가 줄어들었다. 55~64세 가구주는 45~54세보다는 사별·이혼의 영향을 더 받아서 2000년 남성 가구주는 78.3%, 여성 가구주는 21.7%로 45~54세 가구주보다 여성 가구주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05년 이후 45~54세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2015년 남성 가구주는 약 74%, 여성 가구주는 약 26% 구조를 보였다.

중·장년층 가구주의 혼인 상태별 분포를 보면, 2000년에 유배우는 80%로 5분의 4의 분포를 보였고, 사별·이혼은 18.7%로 5분의 1보다 낮았으며, 미혼은 1.3%로 미미하였다. 만혼화 및 이혼 등의 가족해체로 2005년 이후 유배우는 감소하고 사별·이혼 및 미혼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2015년 유배우는 약 72%로 15년간 8.2%포인트 감소하였고, 사별·이혼과 미혼은 각각 22%와 6.2%로 같은 기간 미혼은 약 4.8배의 증가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5~54세 가구주는 2000년에 유배우 82.9%, 사별·이혼이 15.3%, 미혼이 1.8%로 55~64세보다 유배우와 미혼이 높은 데 비해 사별·이혼 분포는 다소 낮았다. 2005년 이후 유배우는 감소하고 사별·이혼과 미혼은 증가하여 2015년 유배우 72.5%, 사별·이혼과 미혼은 각각 19.3%와 8.2%로 증가하였다. 55~64세 가구주는 2000년에 유배우 75.9%, 사별·이혼과 미혼은 각각 23.4%와 0.7%로 45~54세 가구주보다 유배우와 미혼은 낮은 반면, 사별·이혼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05년 이후 55~64세 가구주의 혼인 상태는 45~54세 가구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3-30〉 연도별 중·장년층 가구주의 혼인 상태별 분포(2000~2015)

(단위: 가구)

구분		2000	2005	2010	2015
전체	유배우	4,163,571 (80.0%)	4,909,700 (78.2%)	5,563,548 (75.9%)	6,118,662 (71.8%)
	사별·이혼	972,271 (18.7%)	1,224,403 (19.5%)	1,496,328 (20.4%)	1,874,125 (22.0%)
	미혼	69,355 (1.3%)	142,766 (2.3%)	270,782 (3.7%)	524,439 (6.2%)
45~54세	유배우	2,506,024 (82.9%)	3,069,128 (80.3%)	3,425,838 (77.1%)	3,372,631 (72.5%)
	사별·이혼	460,727 (15.3%)	637,111 (16.7%)	802,693 (18.1%)	896,386 (19.3%)
	미혼	55,065 (1.8%)	116,144 (3.0%)	214,655 (4.8%)	380,599 (8.2%)
55~64세	유배우	1,657,547 (75.9%)	1,840,572 (75.0%)	2,137,710 (74.0%)	2,746,031 (71.0%)
	사별·이혼	511,544 (23.4%)	587,292 (23.9%)	693,635 (24.0%)	977,739 (25.3%)
	미혼	14,290 (0.7%)	26,622 (1.1%)	56,127 (2.0%)	143,840 (3.7%)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표 3-31〉 연도별 중·장년층 가구주의 가구원 규모(2000~2015)

(단위: 가구)

구분	2000	2005	2010	2015
전체	5,205,232 (100.0%)	6,276,869 (100.0%)	7,330,658 (100.0%)	8,517,226 (100.0%)
1인 가구	539,076 (10.4%)	799,433 (12.7%)	1,159,880 (15.8%)	1,643,825 (19.3%)
2인 가구	1,026,168 (19.7%)	1,381,388 (22.0%)	1,741,772 (23.8%)	2,205,962 (25.9%)
3인 가구	1,249,047 (24.0%)	1,607,836 (25.6%)	1,907,913 (26.0%)	2,180,410 (25.6%)
4인 가구	1,526,061 (29.3%)	1,785,219 (28.4%)	1,871,704 (25.5%)	1,899,341 (22.3%)
5인 이상 가구	864,880 (16.6%)	702,993 (11.2%)	649,389 (8.9%)	587,688 (6.9%)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중·장년층 가구주의 가구원 규모를 보면 2000년에 4~5인 이상 가구는 45.9%로 가장 높았고, 2~3인 가구는 43.7%였으며, 1인 가구는 10.4%로 미미하였다.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영향으로 2005년 이후 1인 가구와 2~3인 가구는 증가하는 데 비해 4~5인 가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5년 2~3인 가구와 1인 가구는 각각 51.5%와 19.3%였고, 4~5인 가구는 29.2%였다.

중·장년층의 가구 유형을 보면 2000년 핵가족이 73.4%로 3분의 2 이상을 상회하였다. 다음은 확대가족 12%, 1인 가구 10.4%로 중·장년층의 다수가 부부와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 2005년 이후 교육·직장 등 가족 분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증가, 만혼화 현상 및 이혼율 증가로 핵가족과 확대가족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5년 핵가족은 66.9%로 15년간 8.9% 감소하였고, 확대가족은 6.9%로 같은 기간 42.5% 감소하였다. 반면 1인 가구는 19.3%로 같은 기간 85.6%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유형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표 3-32〉 연도별 중·장년층 가구주의 가구 유형 분포(2000~2015)

구분	(단위: 가구)			
	2000	2005	2010	2015
전체	5,205,232 (100.0%)	6,276,869 (100.0%)	7,330,658 (100.0%)	8,568,106 (100.0%)
핵가족	3,819,394 (73.4%)	4,576,830 (72.9%)	5,157,361 (70.4%)	5,728,234 (66.9%)
확대가족	624,821 (12.0%)	616,367 (9.8%)	610,559 (8.3%)	589,526 (6.9%)
1인 가구	539,076 (10.4%)	799,433 (12.7%)	1,159,880 (15.8%)	1,653,301 (19.3%)
비혈연 가구	16,961 (0.3%)	30,760 (0.5%)	36,334 (0.5%)	88,169 (1.0%)
기타	204,980 (3.9%)	253,479 (4.0%)	366,524 (5.0%)	508,876 (5.9%)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중·장년층 가구 중에서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2000년 67.5%로 3분의 2 이상을 상회하였다. 2005년 이후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56.1%로 15년간 성인자녀와의 동거율은 약 17%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형태를 보여 중·장년층의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2000년 12%에서 2005년 이후 노부모와의 동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6.9%로 같은 기간 노부모와의 동거율은 약 43% 감소하여 성인자녀와의 동거보다 2.5배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이와 같이 노부모와의 비동거 확대에 따라 기존의 동거 중심 부양 형태에서 비동거 부양에 대응하는 중·장년층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장년층 가구 중에서 3세대 비율은 2000년 10.1%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 5.9%로 15년간 약 42%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족구조에서 3세대 형태는 절대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성인자녀의 독립지체 및 노부모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표 3-33〉 연도별 중·장년층 가구주의 성인자녀·노부모 동거 여부 및 3세대 분포(2000~2015)

(단위: 가구)

구분	2000	2005	2010	2015
전체	5,205,232	6,276,869	7,330,658	8,568,106
성인자녀 동거 가구	3,512,172 (67.5%)	4,021,600 (64.1%)	4,412,669 (60.2%)	4,804,292 (56.1%)
노부모 동거 가구	624,821 (12.0%)	616,367 (9.8%)	610,559 (8.3%)	589,526 (6.9%)
3세대 가구	523,468 (10.1%)	509,402 (8.1%)	504,901 (6.9%)	501,687 (5.9%)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2. 중·장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장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이들의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율, 고용 형태, 직종, 주거 소유, 주거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 교육수준

중·장년층의 교육수준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중·장년층 남성의 초졸 이하 비율은 2000년 22.5%에서 2015년 6.1%로 약 4분의 1로 낮아진 반면, 대졸 이상의 비율은 같은 기간 21.5%에서 40.7%로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연도 및 연령별 중·장년층 남성의 교육수준 분포(2000~2015)

(단위: %)

구분		초졸 이하	중고졸	대졸 이상
2000	전체	22.5	56.1	21.5
	45~54세	15.3	60.9	23.8
	55~64세	33.2	48.8	18.0
2005	전체	15.4	57.5	27.1
	45~54세	9.8	59.1	31.1
	55~64세	24.9	54.8	20.3
2010	전체	11.0	55.9	33.1
	45~54세	6.1	54.5	39.4
	55~64세	18.9	58.1	23.0
2015	전체	6.1	53.3	40.7
	45~54세	2.3	48.8	48.8
	55~64세	10.9	59.0	30.1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중·장년층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초졸 이하의 비율이 47.6%였으나, 2015년에는 12.1%로 약 4분의 1로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은 같은 기간 7.4%에서 25.1%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3-35〉 연도 및 연령별 중·장년층 여성의 교육수준 분포(2000~2015)

(단위: %)

구분		초졸 이하	중고졸	대졸 이상
2000	전체	47.6	45.0	7.4
	45~54세	32.6	57.7	9.7
	55~64세	67.5	28.1	4.3
2005	전체	31.8	56.6	11.5
	45~54세	18.9	66.6	14.5
	55~64세	52.2	40.9	6.8
2010	전체	21.6	61.1	17.4
	45~54세	11.2	66.7	22.1
	55~64세	37.8	52.3	9.9
2015	전체	12.1	62.8	25.1
	45~54세	4.0	62.3	33.7
	55~64세	22.2	63.4	14.4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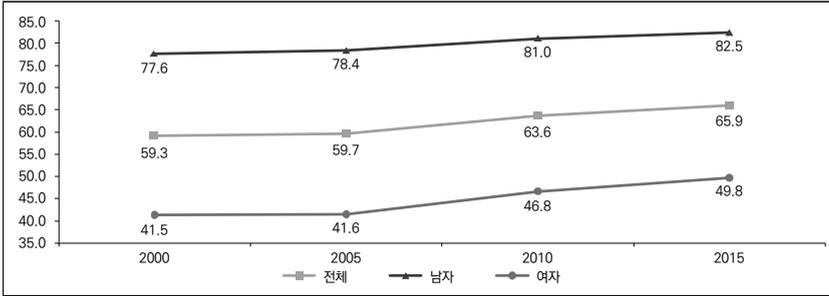
나. 경제활동 참가율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별 간의 차이가 매우 현저하여 남성은 2000년 77.6%에서 2015년 82.5%인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41.5%에서 49.8%로 남성의 절반 정도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5~5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기간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55~64세는 같은 기간 65.0%에서 74.8%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에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한 것은 55~64세 연령층의 비율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3-8] 연도별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2000~2015)

(단위: %)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표 3-36> 연도, 성 및 연령별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2000~2015)

(단위: %)

구분	연령	2000	2005	2010	2015
남성	45~54세	86.0	86.1	86.9	88.4
	55~64세	65.0	65.7	71.6	74.8
여성	45~54세	45.8	46.6	53.2	57.4
	55~64세	35.7	33.8	36.8	40.3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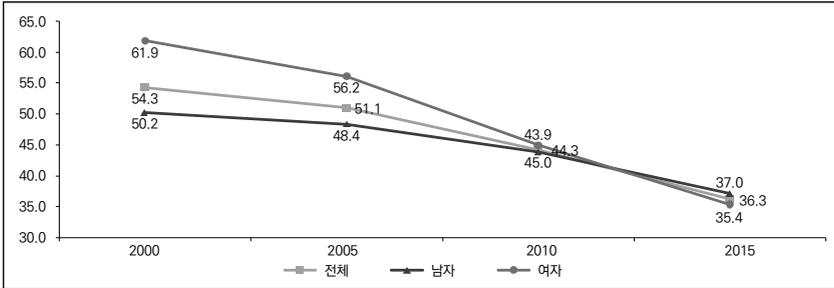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45~54세의 경우가 같은 기간 45.8%에서 57.4%로 증가하였고, 55~64세도 35.7%에서 40.3%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5~5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체 증가율을 견인하는 형태다.

다. 고용 형태

[그림 3-9]에서 중·장년층의 고용 형태는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임금 근로자와의 합이 100이기 때문에 100에서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 비율을 빼면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도출된다. 이

러한 배경에서 중·장년층의 고용 형태 그림을 보면 자영업자 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00년에는 61.9%였으나, 2015년에는 남성보다 더 낮은 35.4%로 약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남성의 경우도 여성의 감소폭 정도는 아니지만, 같은 기간 54.3%에서 36.3%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림 3-9] 연도별 중·장년층의 고용 형태(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 비율)(2000~2015)
(단위: %)



주: 고용 형태는 임금 근로자, 자영업 및 가족 종사자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100에서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 비율을 빼면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도출됨.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이를 연령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남녀 모두 연령과 관계없이 자영업 비율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여성 55~64세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7> 연도, 성 및 연령별 중·장년층의 고용 형태(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 비율)(2000~2015)
(단위: %)

구분	연령	2000	2005	2010	2015
남성	45~54세	46.3	45.3	40.5	32.9
	55~64세	58.0	55.0	50.5	43.2
여성	45~54세	54.4	50.3	41.2	30.6
	55~64세	74.8	68.9	53.3	43.7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라. 직종

중·장년층의 직종을 살펴보면 2000년 남성의 경우 거의 절반이 기능·장치·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관리자 및 전문직과 사무·서비스·판매직이 유사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 및 전문직 비율은 2000년 27.4%에서 2015년에는 18.4%로 감소하였다. 사무·서비스·판매직은 같은 기간 27.7%에서 31.4%로 증가하고, 기능·장치·단순노무직은 44.9%에서 50.3%로 증가했다.

〈표 3-38〉 연도 및 연령별 중·장년층 남성의 직종(2000~2015)

(단위: %)

구분		관리자 및 전문직	사무·서비스·판매직	기능·장치·단순노무직
2000	전체	27.4	27.7	44.9
	45~54세	27.9	28.5	43.6
	55~64세	26.2	25.6	48.2
2005	전체	25.3	28.9	45.8
	45~54세	26.0	30.2	43.9
	55~64세	23.5	25.7	50.8
2010	전체	20.5	30.3	49.3
	45~54세	21.7	31.5	46.8
	55~64세	17.9	27.6	54.6
2015	전체	18.4	31.4	50.3
	45~54세	20.1	33.7	46.2
	55~64세	15.6	27.6	56.8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2000년에는 중·장년의 모든 연령층에 관계 없이 유사한 비율로 분포하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55~64세 연령층의 관리자 및 전문직 비율이 감소하고, 사무·서비스·판매직과 기능·장치·단순노무직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기능·장치·단순노무직 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여성은 절반 이상이 사무·서비스·판매직(57.0%)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 기능·장치·단순노무직이 33.8%, 관리자 및 전문직이 9.2%로 분포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관리자 및 전문직 비율이 증가하여 2015년 16.8% 비율을 보였다. 사무·서비스·판매직은 52.9%, 기능·장치·단순노무직은 30.3%로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15년 간 관리자 및 전문직은 55~64세보다 45~54세의 비율이 높았고,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장치·단순노무직은 대체로 45~54세의 비율이 감소하고, 55~64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무·서비스, 판매직은 중·장년의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분포하였다.

〈표 3-39〉 연도 및 연령별 중·장년층 여성의 직종(2000~2015)

(단위: %)

구분	관리자 및 전문직	사무·서비스·판매직	기능·장치·단순노무직	
2000	전체	9.2	57.0	33.8
	45~54세	10.1	58.0	32.0
	55~64세	6.7	53.9	39.4
2005	전체	11.8	56.3	32.0
	45~54세	12.7	57.7	29.6
	55~64세	8.8	51.6	39.7
2010	전체	12.9	51.1	36.0
	45~54세	14.5	53.0	32.6
	55~64세	8.8	46.4	44.9
2015	전체	16.8	52.9	30.3
	45~54세	20.5	53.6	25.9
	55~64세	9.7	51.6	38.8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마. 주거 소유

중·장년층의 주거 소유 여부를 보면 대부분 자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자가 비율이 감소하였다. 자가 비율은 2000년 72.4%에서 2015년 60.9%로 감소하였다. 전세도 같은 기간 15.5%에서 13.4%로 소폭 감소했고, 기타(월세, 사글세 등)의 비율은 12.1%에서 25.8%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점점 중·장년층의 주거 상황이 열악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55~64세의 자가 비율이 45~54세보다 높았고, 2015년에는 중·장년의 모든 연령층에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3-40〉 연도별 중·장년층의 주거 소유 비율(2000~2015)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기타
2000	전체	72.4	15.5	12.1
	45~54세	68.8	17.3	13.9
	55~64세	77.6	12.9	9.6
2005	전체	71.9	13.2	14.9
	45~54세	68.5	14.9	16.6
	55~64세	77.5	10.3	12.2
2010	전체	67.9	14.7	17.4
	45~54세	64.1	16.7	19.3
	55~64세	74.1	11.5	14.4
2015	전체	60.9	13.4	25.8
	45~54세	60.8	13.5	25.8
	55~64세	61.0	13.2	25.8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바. 주거 형태

중·장년의 주거 형태는 2000년에는 단독주택(53.7%)이 아파트(31.1%)보다 많았으나, 2015년에는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연령별로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는데, 45~54세는 2000년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12.3%포인트 높다가 2015년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분포 간에 차이가 없었다. 55~64세도 2000년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2.5배 높다가 2015년으로 오면서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표 3-41〉 연도별 중·장년층의 주거 종류(2000~2015)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타	
2000	전체	53.7	31.1	9.6	5.7
	45~54세	48.2	35.9	10.0	5.9
	55~64세	61.3	24.3	9.0	5.5
2005	전체	45.2	41.0	10.9	2.8
	45~54세	40.3	45.8	11.1	2.8
	55~64세	53.2	33.4	10.6	2.8
2010	전체	38.9	48.3	10.3	2.6
	45~54세	34.9	52.3	10.4	2.5
	55~64세	45.2	41.8	10.3	2.8
2015	전체	42.9	42.7	10.2	4.3
	45~54세	42.8	42.7	10.3	4.2
	55~64세	43.0	42.6	10.1	4.3

주: 다세대주택에는 연립주택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2000d, 2005c, 2010d,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재구성.

제3절 시사점

지금까지 이 절에서는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환경에 대해 진단을 해 보았다. 중·장년층 가족은 소위 ‘낀 세대’ 부양자가 이끄는 가족으로서, 부양에 대한 사회와 가족 간의 이해 충돌, 가족 내 세대 간의 의식적 괴리, 가족제도와 가족적 생활양식 간의 불일치로 인해 타 연령대의 부양자 가족과는 상이한 부양 조건에 처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장기적 경기 침체와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인구·사회적 환경의 변화, 가족 내재적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 가족은 경제적 부양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핵가족 중심의 부양관이 확산되면서 가족 내적인 부양 구조에도 균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인자녀들이 성인 기에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존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중부양 부담의 현실은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세대나 노인 세대와 달리 중·장년층은 전통적 부양 의식의 유지와 새로운 생활양식의 수용이라는 두 가지 모순적인 압박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중·장년층 가족은 이러한 가족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강하게 도전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양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가족 가치관의 변화가 주로 사회경제적 구조와 핵가족 중심의 생활양식,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빚어낸 결과라고 할 때, 앞으로도 중·장년층 가족들이 노부모와 성인자녀에 대한 이중부양의 책임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부양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중·장년층 가족이 사적인 차원에서 부양을 수행하는 것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 불안정의 지속과 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부양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지만, 소규모화와 가족 내 돌봄의 한계로 인해 이중부양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은 갈수록 감소할 것이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규모화되고 다양화된다면 사적 부양의 공백은 더욱 커지고, 부양 욕구를 가진 가족 구성원은 더욱 증가할 것이기에 부양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중·장년층 가족들이 처해 있는 부양 환경은 현상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듯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상호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중 부양의 어려움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이중부양의 문제는 개인 차원의 노력이나 가족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사회는 기존의 가족 중심 부양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검토하고, 노부모뿐 아니라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까지도 고려하는 다층적인 부양 지원 체계의 구성을 고민해 봐야 할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다층적인 이중부양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 사회가 각각의 층위에서 어떻게 그 책임과 역할을 분담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

중·장년층의 부양 환경 진단과 함께 이중부양 주체인 중·장년층의 인구가족 및 사회경제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부양 구조와 자원 등 이중부양 부담의 요인을 진단하는 데 중요하게 자리매김한다.

전체 인구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44세 이하 인구는 약 57%로 2000년 이후 15년간 약 23% 감소하였다. 중·장년층인 45~64세 인구는 약 30%로 같은 기간 약 54% 증가하였으며, 고령층인 65세 이상 인구는 약 13%로 2배 많아졌다. 그중에서 중·장년층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45~54세 인구는 56.0%, 55~64세 인구는 44.0%로 15년간 간격이 줄어들어 1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성별 분포는 2000년 여성이 다소 높다가 남성이 소폭 증가하여 2015

년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이 각 50%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혼인 상태별 분포는 만혼화 및 가족해체의 영향으로 2015년 유배우는 약 79%로 15년간 다소 감소하였고, 사별·이혼과 미혼은 각각 약 15%와 약 6%로, 같은 기간 미혼은 약 5배 증가하였다.

중·장년층의 가구주 분포를 보면 대체로 인구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중·장년층 가구주의 가구원 규모를 보면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영향으로 2015년 기준으로 2~3인 가구와 1인 가구는 각각 52%와 19%로 증가하였고, 4~5인 가구는 29%로 감소하였다. 가구 유형은 2000년 중·장년층의 다수가 부부와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다 2005년 이후 교육·직장 등으로 인한 가족 분거, 고령화에 따른 노인 증가, 만혼화 현상 및 이혼율 증가로 핵가족과 확대가족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유형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이중부양의 중요한 요인인 자녀 및 노부모 동거, 3세대 가족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장년층 가구 중에서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약 56%로 15년간 성인자녀와의 동거율은 약 17% 감소하였다.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이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형태를 보여서 중·장년층의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약 7%로 같은 기간 약 43% 감소하여 자녀와의 동거보다 2.5배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이와 같이 노부모와의 비동거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동거 중심 부양 형태에서 비동거 부양에 대응하는 중·장년층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세대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약 6%로 42%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서 가족구조에서 3세대 형태는 절대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성인자녀의 독립 지체 및 노부모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의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중·장년층의 사회경제 특성은 부양 자원 및 부양 부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중·장년층의 교육수준을 보면 초졸 이하의 비율은 2000년 약 23%에서 2015년 약 6%로 15년간 4분의 1로 낮아진 반면, 대졸 이상의 비율은 같은 기간 약 22%에서 약 41%로 2배 증가하였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활발하나 성별 차가 매우 현저하여 남성은 2000년 약 78%에서 2015년 약 83%인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약 42%에서 약 50%로 남성의 절반 정도만이 경제활동을 하였다. 직종은 남성의 경우 2000년에는 거의 절반이 기능·장치·단순노무직에 집중되고, 관리자 및 전문직과 사무·서비스·판매직은 유사한 분포를 보이다 2015년으로 오면서 관리자 및 전문직은 감소하고, 사무·서비스·판매직과 기능·장치·단순노무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00~2015년간 관리자 및 전문직은 45~54세에서 비율과 증가율도 높았으나, 같은 기간 기능·장치·단순노무직은 대체로 45~54세의 비율이 감소하고 55~64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사무·서비스, 판매직은 중·장년층의 모든 연령층에서 고르게 분포하였다. 주거 소유 형태는 자가 비율이 2000년 약 72%에서 2015년 약 61%로 감소하였다. 전세도 같은 기간 약 16%에서 13%로 소폭 감소했다. 기타(월세, 사글세 등)는 약 12%에서 약 26%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점차 중·장년층의 주거 상황이 열악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등의 사회경제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서비스노동 집중의 직종 구조 및 주거 환경의 불안정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이중부양 주체인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배가되어 빈곤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45~54세 연령층보다는 55~64세 연령층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직종의 경우 기능·장치·단순 노무

에 종사하는 장년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주거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도 45~54세 연령층보다는 55~64세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평균적으로 자녀에게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시기가 55~64세 연령층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중·장년층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가족경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제 4 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 제1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분포 및 특성 변화 추이
- 제2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유형별 변화 추이 및 실태
- 제3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
- 제4절 중·장년층 가족의 정책 욕구
- 제5절 시사점



4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이 장에서는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을 위해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²⁾와 중·장년층(만 45~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장에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분포 및 특성별 변화 추이, 이중부양 유형별 변화 추이는 가용 자료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 2차에서 6차까지 활용하였다. 1차 자료에서는 중·장년층의 경제부양이 비동거 자녀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동거 자녀는 누락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장에서 활용한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고령화 패널 추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 4-1〉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의 추출 조건

구분		내용
연구 대상		• 우리나라 중·장년층(45~64세) 중에서 성인자녀(만 25세 이상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이중 부양하는 개인
추출 대상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 2~6차 연도에서 중·장년층(45~64세)이면서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이중부양하는 개인(1차 연도의 경우 동거 자녀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제외함)
주요 변수	경제적 부양 여부	• 조사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노부모 또는 성인자녀에게 현금 또는 현물지원 제공 여부
	비경제적 부양 여부	• 조사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노부모 또는 성인자녀에게 정서 및 신체적 지원 제공 여부
	동거 여부	• 조사 시점에 노부모 또는 성인자녀와의 동거 여부
	신체 수발 기간	• 조사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노부모 또는 성인자녀를 신체적으로 수발한 기간(단위: 주)
	신체 수발 시간	• 조사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노부모 또는 성인자녀를 신체적으로 수발한 시간

2)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대상은 전국 만 45세 이상자로 패널 자료의 특성인 연령별 코호트의 변화로 횡단 면적 조사처럼 일정 규모의 중·장년층 표본 확보 가능성은 제한되나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분포 변화를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제1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분포 및 특성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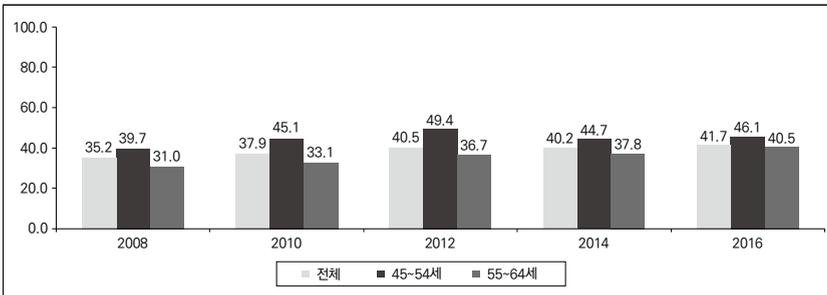
1.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분포 변화

우리나라 중·장년층(45~64세) 가족 중에서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이중부양하는 분포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중·장년층 가족 중에서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비율을 보면 2008년 35.2%에서 2010년 37.9%, 2012년 4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4년 40.2%로 다소 감소하였다. 2016년은 41.7%로 소폭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2008~2016년까지 9년간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분포는 18.5%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45~54세는 16.1% 증가하였고, 55~64세는 30.7% 증가하여서 55~64세 연령층이 45~54세 연령층보다 이중부양의 증가폭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 연도별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분포(2008~2016)

(단위: %)



주: 전체 중·장년층 대비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백분율임.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재구성.

2) 한국고용정보원(2010~2016).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재구성.

2. 중·장년층의 가족 특성별 이중부양 분포

중·장년층의 가족 특성별로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분포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가족 중에서 이중부양 비율은 2008년 34.9%에서 2016년 42.4%로 21.5% 증가를 보였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가족은 같은 기간 5.5% 증가를 보여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가족이 농촌보다 약 4배 증가폭이 높았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비율은 2008년 24.6%에서 2016년 29.5%로 9년간 19.9% 증가하였다. 2인과 3~4인 중·장년층 가족은 같은 기간 각각 25.8%와 14.3% 증가를 보인 데 비해 5인 이상 중·장년층 가족은 35.1%로 5인 미만 가족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높았다. 3~4인 가족을 제외하고 중·장년층 가족은 가구원 규모별로 이중부양 증가폭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증가폭이 가장 낮은 3~4인 가족과 가장 높은 5인 이상 가족은 약 2.5배의 차이를 보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1세대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비율은 2008년 30.1%에서 2016년 38.1%로 26.6% 증가를 보였다. 2세대와 3세대 중·장년층 가족은 같은 기간 각각 18.4%와 23.6% 증가하였으며, 4세대 이상을 포함한 기타 중·장년층 가족은 2008년 34.6%에서 2014년 38.1%로 10.1% 증가를 보였다. 대체로 이중부양은 2~3세대 중·장년층 가족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중부양 증가폭은 세대별로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1세대가 기타 세대에 비해 2.6배 이중부양 증가폭이 높았는데, 이는 이중부양이 비동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장년층 가족의 월평균 소득별로 이중부양 비율을 보면 200만 원 미만과 300만 원대 소득층은 2008~2016년간 각각 2.3%와 0.7% 감소하

였다. 200만 원대, 400만 원대 및 500만 원대 소득층은 같은 기간 각각 11.7%, 25.3%, 31.2% 증가하였다. 600만 원 이상의 소득층은 27.4% 증가를 보였다. 대체로 이중부양 분포는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높은 특성을 보였으나, 이중부양 증가폭은 일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300만 원대 이하의 소득층에 비해 400만 원대 이상 소득층의 경우 이중부양의 증가폭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중·장년층 가족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중·장년층 가족에 비해 노부모를 포함한 성인자녀의 부양까지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4-2〉 연도별 중·장년층의 가족 특성별 이중부양 분포(2008~2016)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9년간(2008~2016) 증감률
전체	35.2	37.9	40.5	40.2	41.7	18.5
지역						
도시	34.9	38.0	41.0	40.6	42.4	21.5
농어촌	36.5	37.6	38.6	38.4	38.5	5.5
가구원 수						
1명	24.6	25.8	31.2	31.1	29.5	19.9
2명	31.4	32.4	35.4	39.1	39.5	25.8
3~4명	39.1	41.5	43.8	43.0	44.7	14.3
5명 이상	34.8	42.1	43.2	39.9	47.0	35.1
가구 형태						
1세대	30.1	30.8	34.4	38.0	38.1	26.6
2세대	36.9	40.4	42.0	41.7	43.7	18.4
3세대	45.0	47.1	54.2	50.0	55.6	23.6
기타	34.6	48.3	44.0	38.1	0.0	10.1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30.8	31.8	33.9	30.9	30.1	-2.3
200만~299만 원	35.9	37.1	38.3	38.2	40.1	11.7
300만~399만 원	40.8	42.7	44.7	43.4	40.5	-0.7
400만~499만 원	38.3	41.9	46.9	44.8	48.0	25.3
500만~599만 원	38.1	47.1	47.4	45.5	50.0	31.2
600만 원 이상	40.5	50.5	51.3	47.8	51.6	27.4

주: 1) 전체 중·장년층 대비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백분율임; 2) 가구형태 중 기타에는 4세대 이상 포함.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재구성; 2) 한국고용정보원(2010~2016),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재구성.

3. 중·장년층의 특성별 이중부양 분포

중·장년층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중·장년층 중에서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비율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중·장년층 중에서 이중부양 비율은 2008년 32.6%에서 2016년 39.9%로 22.4% 증가를 보였다. 여성 중·장년층은 같은 기간 15.2% 증가를 보여 남성 중·장년층이 여성보다 7.2%포인트 증가폭이 높았다. 혼인 상태별로는 유배우(동거)인 중·장년층은 2008년 36.1%에서 2016년 42.9%로 18.8%의 이중부양 증가율을 보였다. 사별·이혼·별거인 중·장년층은 같은 기간 16.7% 증가하여 유배우(동거)인 중·장년층이 사별·이혼·별거보다 2.1%포인트 증가폭이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인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비율은 2008년 33.3%에서 2016년 33.7%로 1.2% 증가한 데 비해 고등학교와 (전문)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인 중·장년층은 같은 기간 각각 14.8%와 48.9% 증가하여 최종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증가폭이 높았다. 중학교 이하와 (전문) 대학 이상은 41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최종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은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최종 학력이 높은 중·장년층의 경우 최종 학력이 낮은 중·장년층에 비해 노부모를 포함한 성인자녀의 부양까지도 이중으로 부담하는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 중인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비율은 2008년 35.7%에서 2016년 42.1%로 17.9% 증가하였다. 비취업 중인 중·장년층은 같은 기간 18.8% 증가하여 취업 여부별로 이중부양 증가폭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3〉 연도별 중·장년층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 이중부양 분포(2008~2016)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9년간(2008~2016) 증감률
전체	35.2	37.9	40.5	40.2	41.7	18.5
성별						
남성	32.6	35.4	38.0	37.6	39.9	22.4
여성	37.4	39.9	42.4	42.2	43.1	15.2
연령						
45~54세	39.7	45.1	49.4	44.7	46.1	16.1
55~64세	31.0	33.1	36.7	37.8	40.5	30.7
혼인 상태						
유배우(동거)	36.1	38.9	41.9	41.5	42.9	18.8
사별/이혼/별거	32.3	34.0	33.3	34.2	37.7	16.7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33.3	33.2	34.4	34.1	33.7	1.2
고등학교	38.4	42.1	44.8	42.9	44.1	14.8
(전문)대학 이상	32.7	41.6	47.1	44.0	48.7	48.9
취업 여부						
취업	35.7	39.1	40.7	40.3	42.1	17.9
비취업	34.5	36.0	40.2	40.0	41.0	18.8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재구성.
 2) 한국고용정보원(2010~2016),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재구성.

4.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 가족의 변화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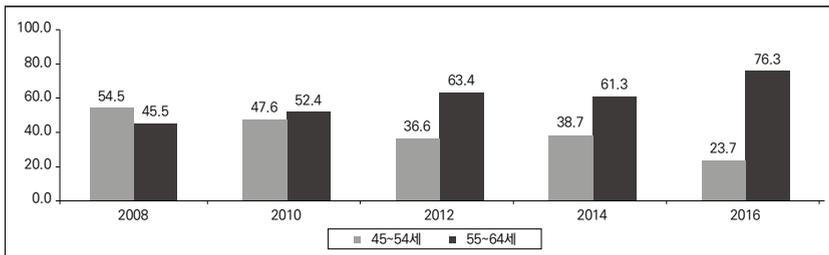
가.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 가족의 변화 추이

전체 중·장년층 가족 중에서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특성 및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 구성은 2008년 45~54세가 54.5%, 55~64세가 45.5%로 45~54세 연령층이 55~64세 연령층보다 다소 높았다. 2010~2016년까지 45~54세 연령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55~64세 연령층은 증가하였다. 2016년 기준 45~54세 연령층은 23.7%로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데 비해 55~64세 연령층은 76.3%로 5분의 4에 근접하였다. 9년간 45~54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7% 감소하였고, 55~64세 연령층은 약 68%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인구연령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8년에는 다수의 베이비붐 세대가 45~54세 연령층의 진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16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다수가 55~64세 연령층의 진입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된다.

[그림 4-2] 연도별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의 연령 분포(2008~2016)

(단위: %)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재구성.

2) 한국고용정보원(2010~2016).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재구성.

나.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의 가족 특성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의 가족 특성 및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이중부양 부담 가족 중에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2008년 79.9%로 농촌 지역 거주 20.1%에 비해 약 4배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10~2016년까지 도시 지역 거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비해 농촌 지역 거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거주는 각각 84.3%와 15.7%로 도시와 농촌 간에 5.4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9년간 이중부양 비율은 도시 지역이 5.5% 증가한 데 비해 농촌 지역은 21.9% 감소하였다.

가구원 수별로는 2008년 이중부양 부담 가족 중에서 3~4인 중·장년층 가족은 54.4%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다음으로 2인 중·장년층 가족이 30.6%로 높은 분포를 보여 이중부양 부담 가족의 5분의 4 이상이 2~4인 가족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특성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8~2012년까지는 이중부양 부담 가족 중에서 3~4인 가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4~2016년에는 2인 가족이 큰 폭으로 증가하다 다소 감소하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2008년 이중부양 부담 가족 중에서 2세대가 55.6%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이어서 1세대가 30.6%로 높아서 이중부양 부담 가족의 5분의 4 이상이 1~2세대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2008~2012년까지 1세대는 감소, 2세대는 증가하는 데 비해 2014~2016년에는 1세대는 증가, 2세대는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3세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원 규모와 가구 형태는 2~4인 가족과 1~2세대에 집중되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이중부양 부담 가족 중에서 2008년 200만~300만 원대 소득층이 42.4%로 5분의 2 분포를 보였다. 다음은 200만 원 미만 소득층이 34.6%로 높은 분포를 보여 이중부양 부담 가족의 77%가 300만 원대 이하 소득층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 2008년 이후부터는 소득 분포의 변화를 보여서 2010~2016년 300만 원대 이하 소득층은 감소하고, 400만 원대 이상 소득층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중부양 부담 가족 중에서 300만 원대 이하 소득층이 9년간 약 58~77%의 분포를 보여서 저소득층의 중·장년층 가족에서 이중부양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4) 연도별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의 가족 특성(2008~2016)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지역					
도시	79.9	80.0	80.8	83.1	84.3
농촌	20.1	20.0	19.2	16.9	15.7
가구원 수					
1명	3.4	3.4	3.6	5.0	4.5
2명	30.6	26.9	27.3	46.2	39.5
3~4명	54.4	56.9	57.8	43.1	48.7
5명 이상	11.7	12.8	11.3	5.8	7.3
가구 형태					
1세대	30.6	26.9	27.3	47.4	41.9
2세대	55.6	60.4	61.4	45.2	51.6
3세대	12.7	11.7	10.5	6.6	6.5
기타	1.1	0.9	0.8	0.7	0.0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34.6	31.2	28.0	18.7	16.5
200만~299만 원	24.4	24.5	22.1	20.0	18.9
300만~399만 원	18.0	17.3	18.5	19.6	17.7
400만~499만 원	10.7	11.4	13.3	15.4	15.2
500만~599만 원	7.0	9.3	10.6	13.3	15.5
600만 원 이상	5.2	6.2	7.5	13.0	16.1
계(수)	100.0(1,638)	100.0(1,481)	100.0(1,358)	100.0(1,483)	100.0(1,316)

(단위: %, 명)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재구성.

2) 한국고용정보원(20010~2016),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재구성.

다.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 중에서 여성은 2008년 58.5%로 절반을 상회한 데 비해 남성은 41.5%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이와 같은 성별 분포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성별 간에 차이 폭이 미미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2008년에는 남녀 간의 차이가 17.0%포인트에서 2016년에는 16.4%포인트로 감소하였다. 혼인 상태별로는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 중에서 유배우(동거)가 90.5%로 대다수의 분포를 보였고, 사별·이혼·별거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포는 2016년까지 지속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처럼 이중부양 부담 가구 중에서 거의 10%는 해체가족으로 나타나서 유배우 중·장년층 가구에 비해 경제 및 비경제부양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종 학력별로는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 중에서 2008년 고등학교 이하인 저학력 소지자가 87.6%로 다수의 분포를 보인 데 비해 (전문) 대학 이상인 고학력 소지자는 12.4%로 미미하였다. 2010~2016년까지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는 점차 감소하고,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가 증가하여 고등학교 이하와 (전문) 대학 이상 간의 차이는 2008년 7.1배에서 2016년에는 4.1배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이중부양 부담 가구 중에서 대다수가 저학력 소지자로 나타나서 학력, 직업, 재산 등 자원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적 부양에서의 어려움이 예측된다. 취업 여부별로는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 중에서 2008년 취업자는 60.3%, 비취업자는 39.7%로 취업자가 약 21%포인트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08년 이후인 2010~2016년까지 취업자와 비취업자는 증감을 반복하여 2016년 취업자는 비취업자에 비해 거의 2배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4-5〉 연도별 이중부양 부담 중·장년층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2008~2016)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성별	연령								
성별										
남성	41.5	41.3	40.9	41.3	40.9	41.3	41.3	41.8	41.8	41.8
여성	58.5	58.7	59.1	58.7	59.1	58.7	58.7	58.2	58.2	58.2
연령										
45~54세	54.5	47.6	36.6	47.6	36.6	38.7	38.7	23.7	23.7	23.7
55~64세	45.5	52.4	63.4	52.4	63.4	61.3	61.3	76.3	76.3	76.3
혼인 상태										
유배우(동거)	90.5	90.8	91.6	90.8	91.6	92.0	92.0	91.5	91.5	91.5
사별·이혼·별거	9.5	9.2	8.4	9.2	8.4	8.0	8.0	8.5	8.5	8.5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45.1	40.7	37.5	40.7	37.5	28.4	28.4	24.4	24.4	24.4
고등학교	42.5	44.5	45.7	44.5	45.7	50.4	50.4	55.9	55.9	55.9
(전문)대학 이상	12.4	14.8	16.8	14.8	16.8	21.2	21.2	19.8	19.8	19.8
취업 여부										
취업	60.3	63.7	60.5	63.7	60.5	65.8	65.8	65.3	65.3	65.3
비취업	39.7	36.3	39.5	36.3	39.5	34.2	34.2	34.7	34.7	34.7
계(수)	100.0(1,638)	100.0(1,481)	100.0(1,358)	100.0(1,481)	100.0(1,358)	100.0(1,483)	100.0(1,483)	100.0(1,316)	100.0(1,316)	100.0(1,316)

(단위: %, 명)

자료: 1) 한국노동연구원(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재구성.

2) 한국고용정보원(20010~2016),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재구성.

제2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유형별 변화 추이 및 실태

이 절에서는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실태를 부양 대상인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중심으로 경제부양과 비경제부양 측면에서 변화 양상과 부양 수준을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는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유형별 변화 추이 분석에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실태 심층 분석, 이중부양 부담 및 이중부양 부담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 정책 욕구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1. 경제적 이중부양

가. 경제적 이중부양 유형별 교환 실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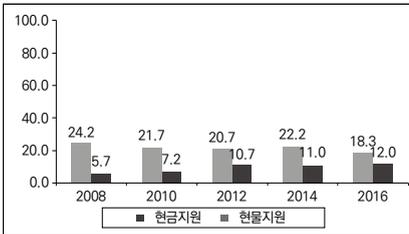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및 노부모 간의 경제적 부양 유형별 교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지원한 경제부양 유형의 변화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현금지원은 24.2%로 현물지원인 5.7%에 비해 4.3배 높았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현금지원은 2014년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현물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9년간 현금지원은 24.4% 감소한 데 비해 현물지원은 2.1배 증가하였다.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간 차이는 2008년 4.3배까지 차이를 보이다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1.5배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로부터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지원받은 경제부양 유형의 변화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현금지원은 25.9%로 현물지원인 5.9%에 비해 4.4배 높았다. 현금지원은 2008~2012년까지 증가하다 2014년부터 감소하는 반면, 현물지원은 2008~2010년까지 감소하다 2012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9년간 현금지원은 15.1% 감소한 데 비해 현물지원은 2.2배 증가하였다.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간 차이는 2008년 4.4배까지 차이를 보이다 2016년에는 1.7배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08~2016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 경제적 부양 유형별 교환 추이를 보면 현금지원이 현물지원보다 높았다. 그러나 점차 현금지원은 감소하고 현물지원이 증가하는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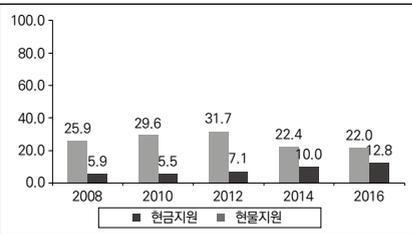
[그림 4-3] 연도별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에게 지원한 경제적 부양 유형별 변화(2008~2016)

(단위: %)



[그림 4-4] 연도별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로부터 받은 경제 부양 유형별 변화(2008~20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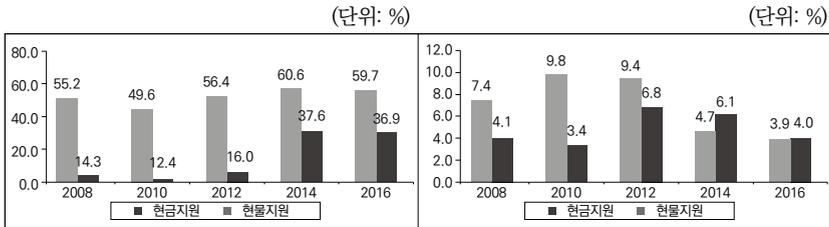


자료: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 파일] 재구성.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증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중·장년과 노부모 간 양방향의 경제지원 교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증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현금과 현물을 지원한 수준은 2008~

2016년까지 9년간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지원의 경우 2008년 약 55%에서 2016년 약 60%로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다. 현물지원은 현금지원에 비해 비율은 낮지만 증가폭이 훨씬 커서 2008년 14%에서 2016년 37%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연도별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경제적 부양 유형별 변화(2008~2016) [그림 4-6] 연도별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노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부양 유형별 변화(2008~2016)



자료: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 파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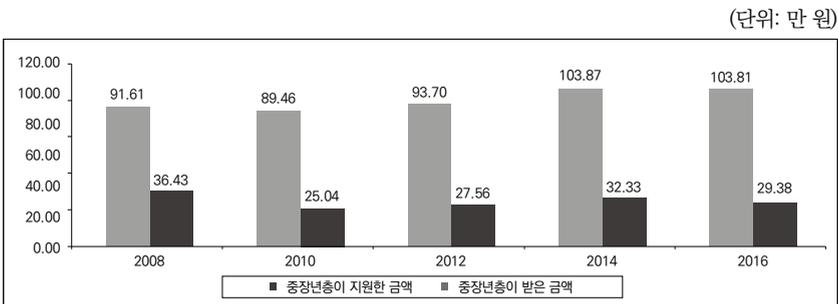
이에 비해 노부모가 이중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한 비율은 일관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중·장년층의 노부모 지원과는 달리 노부모의 중·장년층 자녀 지원은 2008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락하는 상이한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노부모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현금과 현물지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현금지원 약 9%와 현물지원 약 7%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으로 오면서 현금과 현물지원 비율은 상당히 감소하여 이전과는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2014년 고령연구패널조사자료의 경우 기존 대상자에 신규 대상자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이전 3개년도와 상이한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

으로 2016년의 경우에는 2014년의 지원 비율보다도 그 수준이 감소하여 현금과 현물지원은 약 4%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증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에 주고받은 현금 수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이증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이 지원한 월평균 금액은 2008년 91만 6100원에서 2010년 89만 4600원으로 2.4% 감소를 보이다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103만 8100원으로 9년간 중·장년층이 피부양자에게 지원한 월평균 금액은 13.3% 늘어났다. 이에 비해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피부양자로부터 지원받은 평균 금액은 2008년 36만 4300원에서 2010년 25만 400원으로 31% 감소하였다.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6년에는 29만 3800원으로 줄어들어서 같은 기간 중·장년층이 피부양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액은 19.4% 감소하였다.

[그림 4-7] 연도별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에 주고받은 월평균 현금 수준 추이(2008~2016)



주: 1) 중·장년층이 성인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월 단위로 조사된 부분을 반영하고, 비 정기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함.

2)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은 연 단위로 조사되어 월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함.

자료: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 파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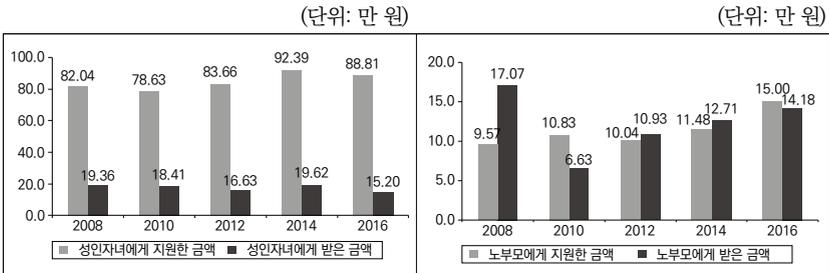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피부양자에게 지원한 평균 금액은 받은 평균 금액에 비해 2008년에는 2.5배 높았고, 2010년에는 3.6배까지 벌어졌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소 감소하다 2016년에 증가하여서 9년간 중·장년층이 지원한 평균 금액과 받은 평균 금액의 차이는 1.4배까지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중·장년층과 성인자녀 및 노부모 간에 주고받은 현금 수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에게 지원한 월평균 금액은 2008년 82만 400원에서 2010년 78만 6300원으로 4.2% 감소하였다. 2012~2016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9년간 미혼 성인자녀에게 지원한 평균금액은 8.3%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로부터 지원받은 평균 금액은 2008년 19만 3600원에서 2014년 소폭의 증가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여 9년간 미혼 성인자녀에게 지원받은 평균 금액은 21.5% 줄어들었다.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에게 지원한 평균 금액은 받은 평균 금액에 비해 2008년에 4.2배 높았다. 2014년에 다소 감소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여 2016년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에게 지원한 평균 금액은 5.8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월평균 금액은 2008년에 9만 5700원에서 2012년 소폭의 감소를 제외하고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년간 노부모에게 지원한 평균 금액은 56.7% 늘어났다. 이에 비해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노부모로부터 받은 평균 금액은 2008년 17만 700원에서 2010년 6만 6300원으로 5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다소 증가하여 9년간 노부모로부터 받은 평균 금액은 16.9% 줄어들었다. 지난 1년

간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 현금지원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여 2008년과 2012년, 2014년에는 중·장년층이 노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지원한 금액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0년과 2016년에는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이 받은 금액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4-8] 연도별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가 주고받은 월평균 현금 수준 차이(2008~2016) [그림 4-9] 연도별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노부모가 주고받은 월평균 현금 수준 차이(2008~2016)



자료: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 파일] 재구성.

나. 중·장년층 가족의 특성별 경제적 이중부양 교환 실태

중·장년층 가족을 대상으로 이중부양의 특성 및 욕구 도출을 위해 중·장년층(만 45~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 완료된 중·장년층의 특성,³⁾ 조사 결과 나타난 중·장년층의 부양 환경,⁴⁾⁵⁾ 피부양자⁶⁾⁷⁾ 및 이중부양 특성⁸⁾은 각주

3) 조사 완료된 중·장년층은 도시(시부) 거주자가 905명, 농·어·산촌 거주자가 95명으로 대다수 응답자가 도시에 거주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471명, 여성이 529명으로 여성이 다소 많았다. 연령별로는 45~54세 연령층이 484명, 55~64세 연령층이 516명으로 다소 많았고, 평균 연령은 55세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는 유배우 또는 동거가 874명으로 대다수에 해당되며, 사별·이혼·별거는 83명, 미혼은 44명으로 약 13%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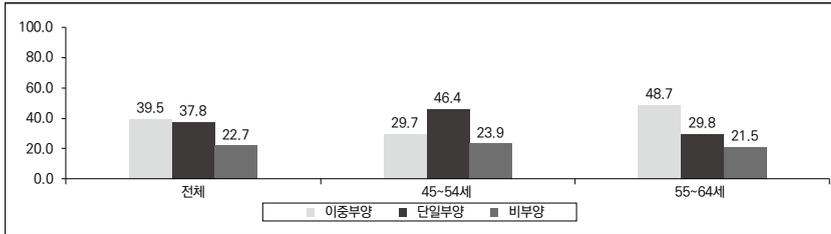
4) 조사 완료된 중·장년 1000명 중에서 만 25세 이상의 미혼 성인자녀가 있는 비율은 58.6%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그중에서 미혼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은 53.7%로 과반

로 제시하였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이 39.5%로 응답자 중에서 5분의 2의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미혼 성인자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단일부양은 37.8%, 이들을 부양하지 않는 비부양은 22.7%였다.

[그림 4-10] 응답자의 연령별 부양 유형

(단위: %)



주: 중·장년층의 부양 유형 분석 대상은 1000명임.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그중 이중부양은 45~54세 연령층이 29.7%, 55~64세 연령층이 48.7%로 55~64세 연령층이 45~54세 연령층에 비해 19%포인트 높았

수로 조사되었다. 부양하는 미혼 성인자녀 수는 1명이 62.3%, 2명이 35.7%로 응답자의 98%가 2명 이하로 조사되었고, 전체 평균은 1.4명이었다. 또한 부양하는 미혼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72.4%로 3분의 2를 훨씬 상회하였다.

- 5) 조사 완료된 중·장년 1000명 중에서 본인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살아 계신다는 응답이 65%, 배우자 부모는 59%로 본인 부모가 다소 높았다. 그중에서 본인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14%, 배우자 부모는 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상당히 낮았으며, 특히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는 더 낮게 조사되었다.
- 6) 피부양자인 미혼 성인자녀의 연령은 30대 미만(72%)이 30대 이상(28%)에 비해 2.6배 높았고, 평균 연령은 28.1세로 조사되었다. 취업 상태는 근로자 비율이 65.1%, 비근로자와 학생은 각각 18%와 17%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 7) 피부양자로 본인 부모 62%, 배우자 부모 31%, 양 부모 모두는 7%로 조사되었다. 주로 부양하는 부의 평균 연령은 84세, 모의 평균 연령은 83세로 조사되었다. 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는 비율은 67%, 모의 건강 상태는 59%로 조사되어 부모보다 모의 건강 상태가 더 열악하였다.
- 8)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를 부양한 평균 기간은 3.2년, 부모를 부양한 평균 기간은 24년으로 조사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는 가족주기상의 이행에서 오는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 395명을 대상으로 특성별로 경제적 이중부양의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부양에는 용돈, 생활비, 병원비(의료비), 학비, 부동산 구매, 여행 및 관광,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 및 음식물, 상품권 등이 포함된다.

1) 경제적 이중부양 빈도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의 정기적 지원은 58.3%, 비정기적 지원은 66.6%로 비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8.3%포인트 높았다. 이에 비해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의 정기적 지원은 24.8%, 비정기적 지원은 63.4%로 비정기적 지원이 2.6배 높아서 중·장년층은 미혼 성인자녀에게 정기적과 비정기적 방식으로 균형적으로 부양하는 데 비해 미혼 성인자녀는 비정기적인 방식에 편중하여 부양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노부모의 정기적 지원은 약 67%, 비정기적 지원은 약 80%로 비정기적 지원이 더 높았다. 이에 비해 노부모→중·장년층의 정기적 지원은 약 9%, 비정기적 지원은 약 31%로 비정기적 지원이 더 높았으나 중·장년층→노부모의 부양 지원에 비해 지원 비율이 낮았다.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은 미혼 성인자녀보다 노부모에게 정기적과 비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비율이 높았고, 피부양자 중에는 미혼 성인자녀가 노부모보다 중·장년층에 정기적과 비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기적 지원에는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에 2.4배,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에 7.3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비정기적 지원에는 각각 3.2%포인트와 49%포인트 차이가 났다.

〈표 4-6〉 지난 1년간 미혼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빈도 비교: 중·장년층→미혼 성인
자녀와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

(단위: %, 명)

구분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		
	정기적	비정기적	(분석 대상 수)	정기적	비정기적	(분석 대상 수)
전체	58.3	66.6	(395)	24.8	63.4	(395)
지역						
도시(시부)	58.2	66.9	(371)	25.4	63.6	(371)
농·어·산촌(군부)	59.1	62.4	(24)	16.3	59.9	(24)
응답자의 성별						
남성	62.1	63.5	(152)	19.2	51.8	(152)
여성	55.8	68.6	(243)	28.3	70.6	(243)
응답자의 연령						
45~54세	65.1	74.7	(144)	26.3	63.7	(144)
55~64세	54.3	62.0	(251)	24.0	63.2	(251)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38.5	51.2	(21)	6.6	27.9	(21)
고등학교	46.5	63.6	(135)	31.9	67.5	(135)
(전문)대학 이상	66.6	69.7	(239)	22.5	64.2	(239)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32.8	56.3	(22)	29.3	57.7	(22)
200만~299만 원	27.5	58.8	(37)	45.2	64.9	(37)
300만~399만 원	58.9	68.2	(56)	8.6	61.8	(56)
400만~499만 원	59.5	55.7	(50)	21.9	70.2	(50)
500만~599만 원	61.2	72.1	(67)	18.7	60.8	(67)
600만~699만 원	62.3	61.7	(28)	27.4	59.2	(28)
700만~799만 원	59.7	73.1	(31)	19.6	68.1	(31)
800만 원 이상	73.9	71.8	(92)	32.7	65.5	(92)
가구 형태						
1인 가구	47.7	61.1	(6)	36.2	77.6	(6)
부부 가구	41.9	66.8	(51)	20.5	71.1	(51)
(한)부모+미혼 자녀	62.3	66.1	(274)	25.7	61.6	(274)
3세대 가구	65.8	70.2	(43)	24.9	65.7	(43)
기타 가구	32.5	67.6	(21)	20.3	59.3	(21)

주: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의 경우 경제적 부양 빈도는 중·장년층의 모 든 특성에서 전체와 유사하게 비정기적 지원이 높았다. 그 차이는 동일한 수준부터 4.2배까지 간격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도시 거주자가 농·어·산

촌 거주자보다 비정기적 지원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연령 및 혼인 상태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가 중학교 이하보다 높았고, 취업 여부 및 맞벌이부부 여부별로는 비취업자와 맞벌이부부인 경우가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관되지 않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인 경우 다른 가구에 비해 비정기적 지원이 높은 편이었다.

중·장년층→노부모의 경우 경제적 부양 빈도는 지역별로는 큰 특성이 없이 전체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정기적 지원이, 여성의 경우 비정기적 지원이 높았다. 연령별 정기적 지원은 차이가 없었으나 비정기 지원의 경우 45~54세가 높았다. 가구 형태의 경우 3세대 가구의 정기적과 비정기적 지원이 가장 높아 그 외 가구 특성보다 지원 교류가 더 수시로 이뤄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노부모→중·장년층의 경우 경제적 부양 빈도는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 보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혼인 상태는 유배우 집단이 그 외 집단보다, 연령은 45~54세가 55~65세보다 정기적과 비정기적 경제적 지원이 더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 정기적 지원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집단(10.4%)에서, 비정기적 지원은 고등학교 집단(36.1%)에서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정기적과 비정기적 지원이 증가하였다. 특히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에서 그 이하의 소득 집단보다 경제적 지원 빈도가 상승하였다. 가구 형태의 경우 중·장년층→노부모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3세대 가구에서의 정기적과 비정기적 경제적 부양 빈도가 가장 높았다.

〈표 4-7〉 지난 1년간 노부모와의 경제적 부양 빈도 비교: 중·장년층→노부모와 노부모→중·장년층

(단위: %, 명)

구분	중·장년층→노부모			노부모→중·장년층		
	정기적	비정기적	(분석 대상 수)	정기적	비정기적	(분석 대상 수)
전체	67.1	79.7	(392)	9.2	30.7	(394)
지역						
도시(시부)	67.2	79.7	(368)	9.3	31.0	(370)
농·어·산촌(군부)	66.0	79.6	(24)	7.9	27.0	(24)
응답자의 성별						
남성	68.8	76.0	(150)	9.0	23.8	(150)
여성	66.1	82.0	(242)	9.3	35.0	(243)
응답자의 연령						
45~54세	67.0	82.0	(144)	11.2	43.4	(144)
55~64세	67.2	78.4	(248)	8.1	23.5	(250)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69.6	76.1	(20)	0.0	9.7	(21)
고등학교	59.4	78.4	(134)	8.5	36.1	(134)
(전문)대학 이상	71.3	80.8	(237)	10.4	29.6	(23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55.3	75.4	(22)	6.5	22.5	(22)
200만~299만 원	61.1	72.5	(37)	6.5	18.2	(37)
300만~399만 원	58.2	80.5	(56)	6.8	33.5	(56)
400만~499만 원	66.2	76.9	(50)	4.5	33.6	(50)
500만~599만 원	67.2	77.9	(67)	12.6	22.3	(67)
600만~699만 원	67.0	81.4	(26)	9.2	36.2	(27)
700만~799만 원	75.9	84.2	(31)	6.5	45.3	(31)
800만 원 이상	77.0	85.8	(92)	14.7	35.0	(92)
가구 형태						
1인 가구	52.2	38.7	(6)	22.5	38.7	(6)
부부 가구	66.8	74.5	(51)	5.5	31.5	(51)
(한)부모+미혼 자녀	65.2	80.8	(272)	7.9	30.5	(274)
3세대 가구	82.9	84.5	(43)	24.6	38.8	(43)
기타 가구	66.9	80.8	(20)	0.0	12.6	(20)

주: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2) 경제적 이중부양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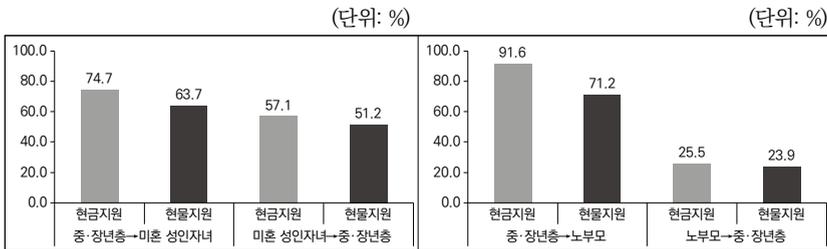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의 경우 현금 지원은 74.7%, 현물지원은 63.7%로 현금지원이 11%포인트 높았다. 이

에 비해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의 경우 현금지원은 57.1%, 현물지원은 51.2%로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보다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모두에서 높았다. 부양 정도도 현금지원이 약 18%포인트, 현물지원이 13%포인트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노부모의 현금지원은 약 92%, 현물지원은 약 71%로 현금지원이 더 많았다. 이에 비해 노부모→중·장년층도 현금지원은 약 26%, 현물지원은 약 24%로 현금지원이 더 많았으나 중·장년층→노부모의 부양 지원에 비해 지원 비율이 낮았다.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은 미혼 성인자녀보다 노부모에게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을 하는 비율이 높았고, 피부양자 중에는 미혼 성인자녀가 노부모보다 중·장년층에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금 지원은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에 약 18%포인트,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에 약 6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현물지원은 각각 약 13%포인트와 약 47%포인트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4-13]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의 경제적 부양 유형 [그림 4-14]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 유형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다음은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 경제적 부양 유형인데,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의 경우 경제적 부양 유형은 다수의 특성에서 전체와 유사하게 현금지원이 높았으며,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차이는 0.1~24%포인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거주자는 농·어·산촌 거주자보다 현금과 현물지원 모두 높았다. 성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45~54세 연령층이 55~64세 연령층에 비해 현금과 현물지원이 모두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현금지원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자인 경우가 높았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500만 원 이하보다 높았으나 일관되지 않았다.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의 경우 경제적 부양 유형도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와 유사하게 다수의 특성에서 현금지원이 높았다.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차이는 1.5~32%포인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거주자는 농·어·산촌 거주자보다 현금과 현물지원 모두 높았다. 농·어·산촌 거주자는 현금과 현물지원 간에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금지원이 높았고, 연령 및 혼인 상태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최종 학력별로는 대체로 고등학교 이상이 중학교 이하보다 현금지원이 높은 편이었으나 일정하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관되지 않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현금지원이 높은 편이었다.

15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표 4-8〉 지난 1년간 미혼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유형 비교: 중·장년층→미혼 성인 자녀와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

(단위: %, 명)

구분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		
	현금지원	현물지원	(분석 대상 수)	현금지원	현물지원	(분석 대상 수)
전체	74.7	63.7	(395)	57.1	51.2	(395)
지역						
도시(시부)	74.8	64.4	(371)	58.2	51.8	(371)
농·어·산촌(군부)	73.2	52.3	(24)	39.3	40.5	(24)
응답자의 성별						
남성	74.4	57.8	(152)	47.6	40.3	(152)
여성	74.8	67.3	(243)	62.9	57.9	(243)
응답자의 연령						
45~54세	82.9	72.5	(144)	57.3	51.0	(144)
55~64세	69.9	58.6	(251)	56.9	51.3	(251)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65.5	31.5	(21)	23.7	17.4	(21)
고등학교	66.5	58.2	(135)	61.8	55.6	(135)
(전문)대학 이상	80.1	69.6	(239)	57.3	51.6	(239)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63.3	48.9	(22)	57.7	53.8	(22)
200만~299만 원	53.9	47.8	(37)	64.4	54.0	(37)
300만~399만 원	76.2	64.8	(56)	48.3	41.9	(56)
400만~499만 원	58.5	55.9	(50)	57.1	61.1	(50)
500만~599만 원	86.4	62.7	(67)	58.2	39.9	(67)
600만~699만 원	79.5	67.6	(28)	49.4	55.2	(28)
700만~799만 원	82.4	73.2	(31)	55.6	61.5	(31)
800만 원 이상	82.9	75.1	(92)	61.4	55.3	(92)
가구 형태						
1인 가구	47.7	61.1	(6)	61.4	29.8	(6)
부부 가구	66.1	52.2	(51)	66.2	56.9	(51)
(한)부모+미혼 자녀	76.8	65.0	(274)	56.2	50.7	(274)
3세대 가구	83.1	79.8	(43)	50.3	48.4	(43)
기타 가구	58.7	42.2	(21)	58.8	55.1	(21)

주: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중·장년층→노부모의 경우 경제적 부양 유형을 보면 지역별로는 현금과 현물지원 모두 도시 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는 남녀 간 현물지원 비율은 71%로 비슷했으나 현금지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

다 높았다. 연령의 경우 현금지원은 92% 수준으로 유사했으나 현물지원은 45~54세가 55~64세에 비해 약 4%포인트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현금과 현물지원이 높아져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에서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현금과 현물지원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700만~799만 원 소득층의 현금지원이 약 97%로 가장 높았다. 현물지원은 600만~699만 원 소득층에서 약 88%로 가장 높았다. 가구 형태의 경우 기타 가구의 현금지원이 1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부 가구(약 93%) 및 (한)부모+미혼 자녀(약 92%)의 지원 비율이 높았다. 현물지원의 경우 3세대 가구(약 84%)의 지원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부모+미혼 자녀(약 71%)의 지원 비율이 높았다. 가구 특성의 경우 가구의 구조 및 특성에 따른 부양 유형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중·장년층의 경제적 부양 유형은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이 농·어·산촌지역보다 현금과 현물지원에서 높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금과 현물지원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45~54세가 55~64세보다 현금지원은 19%포인트, 현물지원은 약 15%포인트 높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최종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소지자와 (전문) 대학 이상의 소지자의 지원 비율은 유사한 반면, 중학교 이하 소지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현금지원은 800만 원 이상 소득층이 약 33%, 현물지원은 700만~799만 원 소득층이 약 32%로 가장 높았다. 가구 형태에 따른 부양 유형은 차이가 커서 현물지원의 경우 3세대 가구가 약 42%로 가장 높았고, 현물지원은 1인 가구가 약 39%로 가장 높았다.

160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표 4-9〉 지난 1년간 노부모와의 경제적 부양 유형 비교: 중·장년층→노부모와 노부모→중·장년층
(단위: %, 명)

구분	중·장년층→노부모			노부모→중·장년층		
	현금지원	현물지원	(분석 대상 수)	현금지원	현물지원	(분석 대상 수)
전체	91.6	71.2	(394)	25.5	23.9	(394)
지역						
도시(시부)	92.1	71.7	(370)	25.9	24.5	(370)
농·어·산촌(군부)	84.5	63.4	(24)	20.1	14.8	(24)
응답자의 성별						
남성	89.2	71.1	(150)	21.2	18.9	(150)
여성	93.1	71.3	(243)	28.2	27.0	(243)
응답자의 연령						
45~54세	91.6	73.5	(144)	37.6	33.2	(144)
55~64세	91.7	69.9	(250)	18.6	18.6	(250)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89.2	58.3	(21)	7.4	9.7	(21)
고등학교	89.9	66.5	(134)	28.6	26.9	(134)
(전문)대학 이상	92.9	75.0	(238)	25.4	23.5	(23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73.7	70.6	(22)	15.6	29.1	(22)
200만~299만 원	91.8	58.2	(37)	13.1	11.7	(37)
300만~399만 원	91.0	64.4	(56)	30.4	22.1	(56)
400만~499만 원	95.7	62.0	(50)	27.6	21.0	(50)
500만~599만 원	88.8	72.2	(67)	20.5	19.3	(67)
600만~699만 원	93.3	87.7	(27)	25.1	23.6	(27)
700만~799만 원	96.7	73.2	(31)	26.3	32.2	(31)
800만 원 이상	95.1	79.1	(92)	32.8	31.6	(92)
가구 형태						
1인 가구	52.3	38.6	(6)	22.5	38.7	(6)
부부 가구	92.9	68.7	(51)	16.8	24.5	(51)
(한)부모+미혼 자녀	92.3	70.8	(274)	25.9	23.4	(274)
3세대 가구	87.9	84.2	(43)	41.6	31.8	(43)
기타 가구	100.0	66.3	(20)	9.2	8.5	(20)

주: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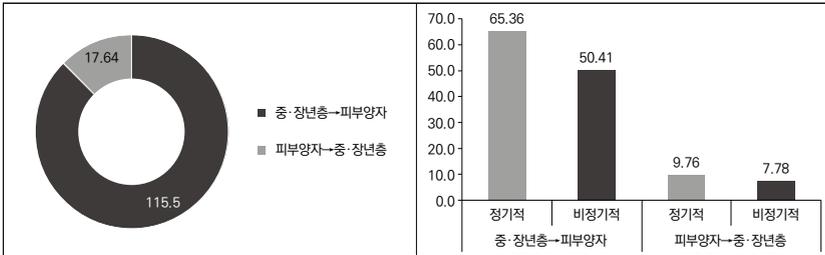
3) 경제적 이중부양 수준

이중부양자인 중·장년층과 피부양자인 미혼 성인자녀, 부모 간의 현금 지원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피부양자의 현금지원은 월평균 115만 5000원인 데 비해 피부양자→

중·장년의 현금지원은 월평균 17만 6400원으로 이중부양자인 중·장년층이 피부양자에게 월평균 97만 8600원을 더 많이 지원하여 6.6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중·장년층→피부양자는 정기적으로 월평균 65만 3600원, 비정기적으로는 50만 4100원을 지원하였다. 피부양자→중·장년층은 정기적으로 월평균 9만 7600원, 비정기적으로 월평균 7만 7800원을 지원하였다. 이중부양자인 중·장년층은 피부양자에 비해 정기적으로 55만 6000원, 비정기적으로 42만 6300원을 더 많이 지원하여 각각 6.7배와 6.5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4-15]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의 현금지원 규모

(단위: 만 원)



[그림 4-16]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의 현금지원 빈도 비교

(단위: 만 원)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중·장년층의 특성별 현금지원 규모를 보면 중·장년층→피부양자의 경우 지역별로는 정기적 지원은 도시 거주자가 농·어·산촌 거주자보다 약 11만 원이 더 많았다. 비정기적 지원은 지역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성별로는 정기적 지원은 남성이 약 25만 원 더 많았고, 비정기적 지원은 여성이 약 29만 원 더 많아서 정기적과 비정기적 지원 모두 남녀 간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정기적 지원은 45~54세에서 약 16만 원이 더 많았고, 비정기적 지원은 55~64세에서 약 26만 원이 더 많아서 비정

기적 지원에서 연령 간에 차이가 벌어졌다. 최종 학력별로는 정기적 지원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현금지원이 더 많은 특성을 보였다. 중학교 이하와 (전문) 대학 이상은 2.3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비정기적 지원은 일정하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정기적과 비정기적 모두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정기적 지원은 1인 가구와 3세대 가구가, 비정기적 지원은 부부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현금지원이 더 많은 편이었다.

피부양자→중·장년층인 경우 지역별로는 정기적 지원과 비정기적 지원 모두 도시 거주자가 농·어·산촌 거주자보다 3만~8만 원 더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기적 지원과 비정기적 지원 모두 현금지원이 더 많았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정기적 지원은 45~54세에서 현금지원이 다소 많은 데 비해 비정기적 지원은 55~64세에서 현금지원이 더 많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정기적 지원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현금지원이 더 많았고, 중학교 이하와 (전문) 대학 이상은 11배의 차이를 보였다. 비정기적 지원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가 (전문) 대학 이상보다 현금지원이 더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하지 않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정기적 지원과 비정기적 지원 모두 (한) 부모+미혼 자녀 가구와 3세대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정기적 지원에서 3세대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13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표 4-10〉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피부양자의 현금지원 비교: 중·장년층→피부양자와
 피부양자→중·장년층

(단위: 만 원, 명)

구분	중·장년층→피부양자				피부양자→중·장년층			
	정기적	비정기적	합계	(분석 대상 수)	정기적	비정기적	합계	(분석 대상 수)
전체	65.36	50.41	115.50	(386)	9.76	7.78	17.64	(388)
지역								
도시(시부)	65.96	50.39	116.19	(366)	10.20	7.95	18.23	(367)
농·어·산촌(군부)	54.85	50.88	102.95	(20)	2.45	4.88	7.44	(21)
응답자의 성별								
남성	80.67	32.28	112.67	(146)	8.70	5.72	14.53	(148)
여성	55.98	61.43	117.23	(239)	10.41	9.06	19.56	(240)
응답자의 연령								
45~54세	75.36	33.79	107.97	(139)	13.27	5.75	19.15	(141)
55~64세	59.68	59.89	119.76	(246)	7.75	8.93	16.77	(247)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36.16	13.85	47.67	(20)	1.06	10.50	11.57	(21)
고등학교	40.21	79.89	118.73	(131)	8.24	10.62	18.95	(132)
(전문)대학 이상	82.14	36.95	119.62	(234)	11.39	5.95	17.45	(235)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22.46	377.86	400.31	(22)	6.78	2.74	9.52	(22)
200만~299만 원	17.85	12.29	30.14	(37)	5.72	9.44	15.15	(37)
300만~399만 원	44.18	21.92	66.10	(54)	2.49	8.40	10.89	(56)
400만~499만 원	58.94	18.21	77.16	(49)	4.31	11.63	16.20	(48)
500만~599만 원	59.33	31.15	89.15	(65)	18.02	6.32	24.73	(65)
600만~699만 원	52.85	48.66	104.09	(25)	8.13	5.80	14.25	(26)
700만~799만 원	72.90	35.91	108.81	(31)	7.51	8.50	16.01	(31)
800만 원 이상	116.51	42.02	157.41	(91)	15.68	7.50	23.18	(91)
가구 형태								
1인 가구	102.14	16.05	118.20	(6)	4.98	4.60	9.58	(6)
부부 가구	58.63	177.40	236.80	(50)	5.81	6.30	12.22	(50)
(합)부모+미혼 자녀	64.89	29.13	93.80	(270)	8.53	8.60	17.21	(271)
3세대 가구	79.17	48.01	124.82	(40)	27.15	7.13	34.28	(41)
기타 가구	49.46	33.21	82.67	(19)	2.07	2.63	4.80	(19)

주: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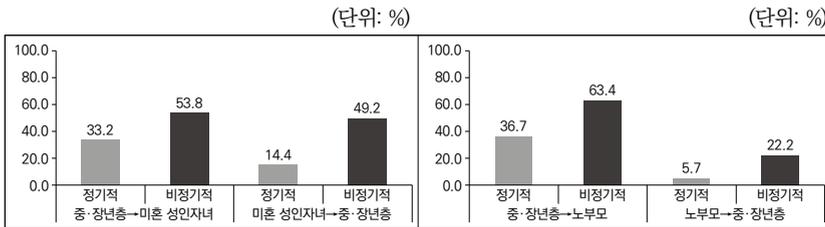
이중부양자인 중·장년층과 피부양자인 미혼 성인자녀, 노부모 간의 현물지원 수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의 정기적 현물지원은 33.2%, 비정기적 현물지원은

53.8%로 비정기적 지원이 정기적보다 약 21%포인트 높았다. 이에 비해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의 정기적 현물지원은 14.4%, 비정기적 현물지원은 49.2%로 비정기적 지원이 3.4배 높았다. 중·장년층은 미혼 성인자녀보다 정기적 현물지원은 18.8%포인트 많았으나 비정기적 현물지원은 4.6%포인트 많아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노부모의 정기적 현물지원은 37%, 비정기적 현물지원은 63%로 정기적인 형태보다 비정기적 형태의 현물지원이 높았다. 이에 비해 노부모→중·장년층의 정기적 현물지원은 6%, 비정기적 현물지원은 22%로 정기적 지원에 비해 비정기적 지원이 3.7배 많았으나 중·장년층→노부모의 지원 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은 미혼 성인자녀보다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정기적 현물지원과 비정기적 현물지원 비율이 모두 높았다. 피부양자 중에서는 미혼 성인자녀가 노부모보다 중·장년층에게 제공하는 정기적 현물지원과 비정기적 현물지원 비율이 모두 높았다. 정기적 지원에서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에 2.3배,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에 6.4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4-17]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의 현물지원 비교 [그림 4-18] 지난 1년간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의 현물지원 비교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중·장년층의 특성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중·장년층과 노부모간 현물지원 빈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의 경우 현물지원 빈도를 보면 지역별로는 도시 거주자가 농·어·산촌거주자보다 정기적 현물지원과 비정기적 현물지원 모두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기적 현물지원과 비정기적 현물지원 모두 높았으나 정기적인 경우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5~54세가 55~64세보다 정기적 현물지원과 비정기적 현물지원 모두 높았으며, 특히 비정기적 지원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정기적 현물지원과 비정기적 현물지원이 높은 분포를 보여서 중학교 이하와 (전문)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는 정기적 지원은 3.8배, 비정기적 지원은 2.7배의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관되지 않았고,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와 3세대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정기적 현물지원과 비정기적 현물지원 모두 높은 편이었다. 이 외에 (한)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도 정기적 현물지원에서 전체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의 경우 현물지원 빈도는 도시 거주자가 농·어·산촌거주자보다 정기적 현물지원과 비정기적 현물지원 모두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정기적 현물지원에서는 2.8배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기적 현물지원과 비정기적 현물지원 모두 높았으며,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5~64세가 45~54세보다 정기적 현물지원과 비정기적 현물지원 모두 높았으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최종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상이 중학교 이하보다 정기적 현물지원과 비정기적 현물지원 모두 높은 편이었으나 일관되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정기적 현물지원에서는 3세대 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비율이 높은 데 비해 비정기적 현물지원은 부부 가구와 기타 가구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4-11〉 지난 1년간 미혼 성인자녀와의 현물지원 비교: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와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

(단위: %, 명)

구분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		
	정기적	비정기적	(분석 대상 수)	정기적	비정기적	(분석 대상 수)
전체	33.2	53.8	(395)	14.4	49.2	(395)
지역						
도시(시부)	33.7	54.4	(371)	14.9	49.7	(371)
농·어·산촌(군부)	26.2	43.6	(24)	5.3	40.5	(24)
응답자의 성별						
남성	31.3	46.8	(152)	9.6	38.3	(152)
여성	34.4	58.1	(243)	17.3	55.9	(243)
응답자의 연령						
45~54세	36.4	63.6	(144)	14.2	49.0	(144)
55~64세	31.4	48.2	(251)	14.4	49.3	(251)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9.6	21.9	(21)	0.0	17.4	(21)
고등학교	30.5	48.9	(135)	17.5	53.5	(135)
(전문)대학 이상	36.8	59.3	(239)	13.9	49.5	(239)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20.0	44.4	(22)	14.9	53.8	(22)
200만~299만 원	14.8	39.6	(37)	29.7	51.4	(37)
300만~399만 원	34.7	54.6	(56)	5.1	40.1	(56)
400만~499만 원	32.8	42.3	(50)	13.1	57.1	(50)
500만~599만 원	25.4	57.6	(67)	7.8	39.9	(67)
600만~699만 원	40.0	47.4	(28)	20.2	52.0	(28)
700만~799만 원	37.1	63.4	(31)	9.8	61.5	(31)
800만 원 이상	45.3	63.7	(92)	19.2	52.0	(92)
가구 형태						
1인 가구	38.6	61.1	(6)	0.0	29.8	(6)
부부 가구	23.0	48.3	(51)	10.0	56.9	(51)
(한)부모+미혼 자녀	35.4	53.5	(274)	14.7	48.2	(274)
3세대 가구	41.9	68.7	(43)	19.2	48.4	(43)
기타 가구	9.9	38.3	(21)	14.8	50.3	(21)

주: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중·장년층→노부모의 현물지원 빈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정기적 현물지원은 37~38%로 지원 비율이 유사한 반면 비정기적 현물지원은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약 3%포인트 더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

보다 정기적, 비정기적 현물지원 모두 더 높았다. 연령에 따른 현물지원 특성은 큰 차이가 없어 정기적 현물지원은 약 36~39%, 비정기적 현물지원은 약 61~68%의 분포를 보였다.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져 정기적 현물지원(약 38%)과 비정기적 현물지원(약 68%) 모두 (전문) 대학 이상이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기적, 비정기적 현물지원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소득 집단의 지원 비율은 유사하나 정기적 지원(49%)과 비정기적 지원(73%) 모두 600만~699만 원 집단이 가장 높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정기적 현물지원(약 48%)과 비정기적 현물지원(약 80%) 모두 3세대 가구가 가장 높았고, 다른 집단과의 격차도 컸다.

노부모→중·장년층의 경우 지역별 정기적 현물지원은 약 5~6%로 지원 비율이 유사했으나, 비정기적 현물지원은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약 8%포인트 높았다. 성별로는 정기적, 비정기적 현물지원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정기적 현물지원은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비정기적 현물지원에서 차이가 났다. 45~54세의 지원 비율은 약 31%, 55~64세는 약 18%로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 현물지원 특성은 차이가 크게 나타나 중학교 이하 소지자의 정기적, 비정기적 현물지원은 매우 낮은 반면, 고등학교 소지자의 비정기적 현물지원은 25%로 격차가 컸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정기적, 비정기적 현물지원 비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정기적 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약 9%, 비정기적 지원은 700만~799만 원 집단이 약 32%로 가장 높았다. 가구 형태의 경우 정기적 현물지원(약 23%)과 비정기적 현물지원(약 39%) 모두 1인 가구가 가장 높았고, 다른 집단과의 격차도 컸다.

<표 4-12> 지난 1년간 노부모와의 현물지원 비교: 중·장년층→노부모와 노부모→중·장년층

(단위: %, 명)

구분	중·장년층→노부모			노부모→중·장년층		
	정기적	비정기적	(분석 대상 수)	정기적	비정기적	(분석 대상 수)
전체	36.7	63.4	(394)	5.7	22.2	(394)
지역						
도시(시부)	36.6	63.6	(370)	5.7	22.7	(370)
농·어·산촌(군부)	38.3	60.7	(24)	5.3	14.8	(24)
응답자의 성별						
남성	39.4	60.5	(150)	3.3	17.1	(150)
여성	35.1	65.3	(243)	7.2	25.4	(243)
응답자의 연령						
45~54세	38.9	67.3	(144)	6.6	30.5	(144)
55~64세	35.5	61.2	(250)	5.2	17.5	(250)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31.0	42.6	(21)	0.0	9.7	(21)
고등학교	35.1	59.2	(134)	6.7	25.0	(134)
(전문)대학 이상	38.1	67.7	(238)	5.7	21.8	(23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29.6	62.2	(22)	6.5	22.5	(22)
200만~299만 원	24.2	55.5	(37)	6.5	11.7	(37)
300만~399만 원	30.3	57.2	(56)	3.2	22.1	(56)
400만~499만 원	31.1	59.0	(50)	2.0	21.0	(50)
500만~599만 원	34.3	62.8	(67)	5.8	14.9	(67)
600만~699만 원	49.0	73.0	(27)	5.5	21.8	(27)
700만~799만 원	37.7	63.4	(31)	6.5	32.2	(31)
800만 원 이상	48.0	72.5	(92)	9.2	29.7	(92)
가구 형태						
1인 가구	22.4	16.2	(6)	22.5	38.7	(6)
부부 가구	38.0	62.9	(51)	5.5	24.5	(51)
(한)부모+미혼 자녀	35.7	62.5	(274)	5.2	21.7	(274)
3세대 가구	47.9	80.2	(43)	9.7	27.3	(43)
기타 가구	28.9	56.3	(20)	0.0	8.5	(20)

주: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2. 비경제적 이중부양

가. 비경제적 이중부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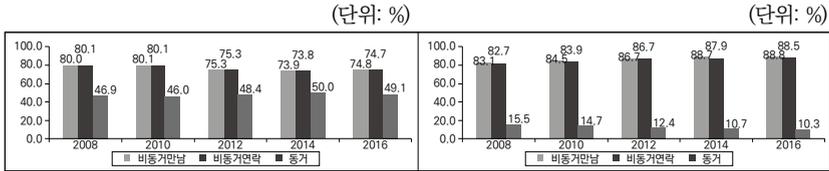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차 자료를 활용하여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자녀에게 지원한 비경제부양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비경제부양에는 정서부양과 신체부양, 도구부양이 포함되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차 분석 결과 수행이 불편한 미혼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수발 및 도구부양을 경험한 사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정서부양 중심으로 비경제부양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정서부양은 동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요인을 포함한다. 미혼 성인자녀와 비동거의 경우는 정기적인 만남 및 연락 빈도를 지표로 포함하였고, 미혼 성인자녀와 동거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정서부양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2008년 46.9%에서 2016년까지 계속 증감하여서 2016년에는 49.1%로 9년간 4.7% 증가하였다.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가 비동거하는 경우 만나는 비율은 2008년 80.0%에서 2010~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감 양상을 보여서 2016년에는 74.8%로 9년간 6.5% 감소하였다. 연락하는 비율도 2008년 80.1%에서 2016년까지 계속 증감 추세를 보여서 2016년에는 74.7%로 9년간 6.7% 감소하여 만나는 비율과 연락하는 비율이 유사한 변화 추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2008~2016년간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의 정서부양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19] 연도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 [그림 4-20] 연도별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 자녀 간 정서적 부양 정도의 변
정서적 부양 정도의 변화(2008 ~2016)



자료: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 파일] 재구성.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부모의 정서부양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부양의 경우 이중부양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중·장년 개인들 중 비동거 노부모와 정기적인 만남 및 연락을 유지하는 비율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장년 개인이 노부모와 동거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해 동거 비율의 연도별 변화 수준을 정서부양의 한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이중부양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중장년 개인들의 정서부양 부담 중 노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2008년 16%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6년에는 10%로 나타났다. 비동거 노부모와의 만남과 연락 비율은 2008년에서 2016까지 약 86%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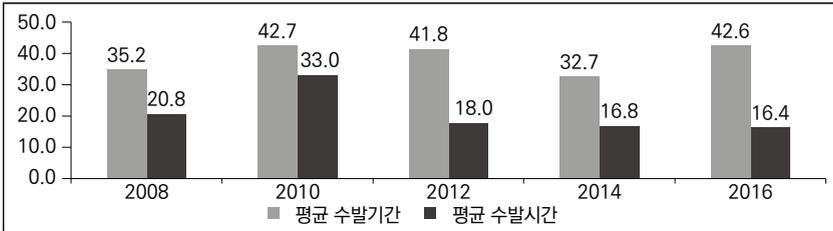
한편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부모 수발부양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수발부양의 구체적인 변수로 노부모 평균 수발 기간과 주당 평균 수발 시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반적 수발 기간은 시간의 변화에 관계없이 40주 내외의 수준이 유지되는 반면, 평균 수발 시간은 최근으로 올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8년의 경우 이중부양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중·장년 개인 중 노부모에게 수발부양을 제공하는 중·장년의 평균 수발 기간은 35주, 주당 평균 수발 시간은 22시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

로 올수록 평균 수발 기간은 증가하지만, 평균 주당 수발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16년 데이터에서는 평균 수발 기간이 43주, 주당 평균 수발 시간이 16시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산과 함께 고소득 가구에서 간병 인력 활용이 활성화된 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심도 있는 분석으로 조명해 볼 것을 제언한다.

[그림 4-21] 연도별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 신체 부양 정도의 변화(2008~2016)

(단위: 주, 주당 시간)



주: 부양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부양자 정보를 활용함.

자료: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 파일] 재구성.

나. 중·장년층 가족의 특성별 비경제적 이중부양 교환 실태

중·장년층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은 395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395명을 대상으로 특성별로 비경제적 이중부양의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경제적 부양에는 고민상담, 말벗, 이야기 상대 등 정서적 부양, 간벌·수발 등 신체적 부양, 청소·식사준비·세탁·병원동행 등 도구적 부양이 포함된다.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 비경제 이중부양 정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의 정서적 부양은 96.5%로 대다수에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도구적 부양은 70.6%로 3분의 2를 상회하였다. 신체적 부양은 17.9%로 5분 1에도 못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의 경우 비경제 부양 정도를 보면 지역별로는 정서적 부양 차이가 거의 없었다. 신체적 부양 및 도구적 부양은 도시 거주자가 농·어·산촌 거주자보다 훨씬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다. 신체적 부양 및 도구적 부양에 비해 정서적 부양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정서적 부양 차이가 거의 없었다. 신체적 부양 및 도구적 부양은 45~54세가 55~64세에 비해 제공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최종 학력별로는 정서적 부양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다. 신체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은 고등학교 이상이 중학교 이하보다 높았으나 일관되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모든 비경제적 부양에서 일관되지 않아서 경제 수준과 비경제적 부양은 관련성이 적음을 보여 준다. 가구 형태별로는 정서적 부양은 분석 대상 수가 적은 1인 가구를 제외하고, 부부 가구와 3세대 가구 및 기타 가구 등은 제공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신체적 부양 및 도구적 부양은 (한)부모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및 3세대 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분포가 높았다.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의 경우 지역별 비경제적 부양 정도는 도시 거주자가 농·어·산촌 거주자보다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서적 부양은 다른 부양에 비해 지역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녀 간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신체적 부양은 2배까지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5~54세가 55~64세보다 모든 비경제적 부양에서 높았으나 연령 간에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정서적 부양은 고등학교 이상이 중학교 이하보다 높았다. 신체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은 고등학교 이하가 (전문) 대학 이상보다 높아서 부양 종류별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정서적 부양

은 분석 대상 수가 적은 1인 가구를 제외하고, (한)부모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와 기타 가구 제공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신체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은 (한)부모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및 3세 대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분포가 높았다.

〈표 4-13〉 지난 1년간 미혼 성인자녀와의 비경제적 부양 비교: 중·장년층→미혼 성인 자녀와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

(단위: %, 명)

구분	중·장년층→미혼 성인자녀				미혼 성인자녀→중·장년층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도구적 부양	(분석 대상 수)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도구적 부양	(분석 대상 수)
전체	96.5	17.9	70.6	(394)	85.6	24.4	57.4	(394)
지역								
도시(시부)	96.4	18.5	71.6	(371)	85.8	25.0	58.0	(371)
농·어·산촌(군부)	97.6	8.0	54.6	(23)	83.2	16.2	47.7	(24)
응답자의 성별								
남성	95.7	12.1	51.4	(152)	74.2	15.3	50.7	(151)
여성	96.9	21.5	82.7	(242)	92.7	30.1	61.5	(243)
응답자의 연령								
45~54세	96.0	25.5	80.2	(144)	86.3	26.5	59.2	(144)
55~64세	96.7	13.5	65.2	(250)	85.2	23.2	56.3	(250)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86.9	18.3	42.5	(21)	76.1	29.4	68.9	(21)
고등학교	96.3	20.5	79.1	(135)	88.4	31.4	63.6	(135)
(전문)대학 이상	97.4	16.4	68.3	(238)	84.8	20.0	52.8	(23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93.8	15.4	71.0	(22)	76.5	19.5	52.4	(22)
200만~299만 원	84.6	15.6	60.1	(37)	85.0	19.9	50.1	(37)
300만~399만 원	97.1	18.9	67.2	(56)	90.2	36.7	61.1	(56)
400만~499만 원	98.0	4.7	66.2	(49)	84.8	19.6	41.7	(50)
500만~599만 원	100.0	11.7	72.3	(67)	83.8	16.9	60.7	(67)
600만~699만 원	97.0	27.5	85.8	(28)	86.9	38.7	72.2	(28)
700만~799만 원	100.0	9.7	78.1	(31)	82.0	22.9	53.0	(31)
800만 원 이상	96.2	31.4	71.9	(92)	87.0	24.3	63.8	(92)
가구 형태								
1인 가구	100.0	16.2	61.1	(6)	100.0	22.4	29.8	(6)
부부 가구	96.7	16.7	40.1	(50)	78.8	11.6	36.3	(51)
(한)부모+미혼 자녀	95.7	18.5	77.3	(274)	86.7	27.1	61.4	(274)
3세대 가구	98.7	21.7	78.7	(43)	82.0	28.8	74.0	(43)
기타 가구	100.0	4.8	43.1	(21)	91.5	12.5	30.0	(20)

주: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중·장년층→노부모의 비경제적 부양 정도를 보면 지역별로는 정서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이 전체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신체적 부양은 농촌 지역의 지원 비율이 약 58%로 전체 비율과 약 7%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는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모든 부양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높았고, 특히 도구적 부양은 남성과 약 17%포인트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5~54세와 55~64세는 약 3%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였고, 전체 분포와 유사했다. 최종 학력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전문)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정서적 부양 95%, 도구적 부양 약 67%로 가장 높았다. 신체적 부양은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가 약 53%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원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정서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은 600만 원 이상의 소득층이 그 아래의 소득층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신체적 부양은 200만~299만 원 소득층이 약 66%로 가장 높아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3세대 가구가 신체적 부양 약 65%, 도구적 부양 약 84%로 다른 가구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부양은 1인 가구가 100%로 가장 높았다.

노부모→중·장년층의 비경제적 부양 정도는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은 전체와 유사한데, 농촌 지역은 차이를 보인다. 농촌 지역은 전체보다 신체적 부양이 약 5%포인트, 도구적 부양이 약 4%포인트 더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별로는 45~54세 집단이 55~64세 집단보다 모든 부양 수준이 일관되게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전문)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의 정서 및 도구적 부양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는 신체적 부양이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층이 그 아래 소득층보다 지원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3세대 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모든 부양에서 일관되게 가장 높았다.

176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표 4-14〉 지난 1년간 노부모와의 비경제적 부양 비교: 중·장년층→노부모와 노부모→중·장년층

(단위: %, 명)

구분	중·장년층→노부모				노부모→중·장년층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도구적 부양	(분석 대상 수)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도구적 부양	(분석 대상 수)
전체	94.2	51.6	64.5	(393)	62.0	3.4	10.0	(394)
지역								
도시(시부)	94.3	51.2	64.5	(370)	62.1	3.1	9.8	(370)
농·어·산촌(군부)	93.2	58.3	63.9	(23)	60.6	8.0	14.3	(24)
응답자의 성별								
남성	90.1	46.7	53.6	(150)	55.0	3.0	10.0	(150)
여성	96.8	54.7	71.3	(242)	66.3	3.6	10.0	(243)
응답자의 연령								
45~54세	97.7	50.9	68.4	(144)	66.6	4.6	12.9	(144)
55~64세	92.2	52.1	62.2	(249)	59.4	2.7	8.4	(250)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93.1	42.6	39.2	(21)	47.3	6.5	5.7	(21)
고등학교	92.9	52.8	63.2	(134)	61.2	2.9	8.2	(134)
(전문)대학 이상	95.0	51.8	67.4	(237)	63.8	3.4	11.5	(23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88.3	36.3	40.5	(22)	55.3	3.9	8.3	(22)
200만~299만 원	85.1	65.7	55.8	(37)	44.2	2.4	11.3	(37)
300만~399만 원	98.2	50.2	67.0	(56)	65.6	1.3	10.9	(56)
400만~499만 원	96.7	46.4	66.2	(49)	56.3	0.0	2.5	(50)
500만~599만 원	92.0	46.2	70.0	(67)	59.7	3.7	11.5	(67)
600만~699만 원	96.9	53.8	74.8	(27)	74.1	7.3	11.1	(27)
700만~799만 원	93.2	54.5	65.7	(31)	66.3	3.3	9.3	(31)
800만 원 이상	96.5	57.3	66.0	(92)	69.7	5.9	12.5	(92)
가구 형태								
1인 가구	100.0	0.0	22.5	(6)	54.8	0.0	22.5	(6)
부부 가구	95.7	44.7	60.4	(50)	60.8	1.9	7.1	(51)
(한)부모+미혼 자녀	94.1	51.3	62.1	(274)	62.1	2.6	4.9	(274)
3세대 가구	94.0	65.2	83.5	(43)	63.6	10.5	38.2	(43)
기타 가구	90.0	60.7	79.9	(20)	62.0	4.3	24.9	(20)

주: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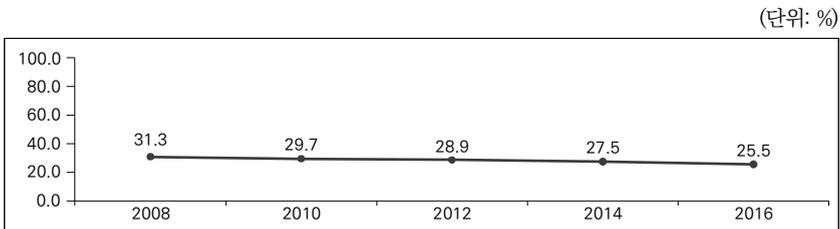
제3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

1.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수준

가. 경제적 부양과 가구 부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6차 자료를 활용하여 2008~2016년 각 연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부담하는 이중부양의 월평균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월평균 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1.3%로 3분의 1에 근접하다가 2010년 29.7%로 1.6%포인트 감소하였다.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25.5%로 9년간 18.5%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림 4-24] 연도별 중·장년층 이중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화 추이 (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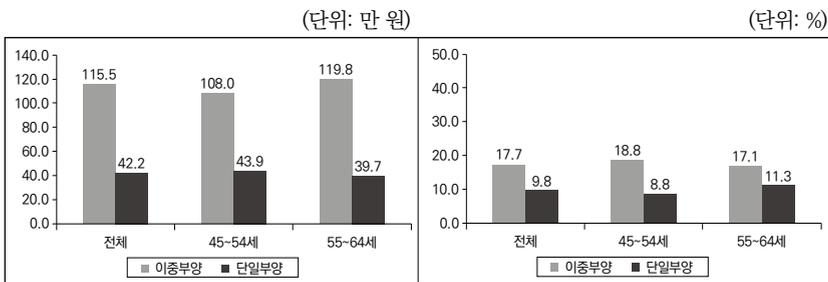
자료: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 파일] 재구성.

한편 중·장년층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하여 이중부양을 하는 중·장년층 386명의 이중부양 부담 관련 지표로 이중부양에 지출한 총 부양 비용과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경제적 부양에 대한 주관적인 가계부담 정도를 살펴보았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이중부양에 지출한 총부양

비용은 월평균 115만 5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단일부양에 지출한 총부양 비용 42만 2000원보다 2.7배 많은 것이다. 그중 45~54세가 이중부양과 단일부양에 지출한 총부양 비용은 월평균 각각 108만 원과 43만 9000원이었다. 55~64세는 월평균 각각 119만 8000원과 39만 7000원으로 55~64세가 45~54세보다 이중부양 비용으로 11만 8000원을 더 지출하였다. 이중부양 비용과 단일부양 비용 차이도 45~54세는 2.5배, 55~64세는 3배로 55~64세 연령층이 0.5배 더 높았다. 55~64세 연령층이 45~54세 연령층보다 경제적 부양으로 인한 이중부양 부담이 다소 높음을 시사한다.

[그림 4-25] 응답자의 연령별 지난 1년간 이중부양에 지출한 월평균 총 부양 비용
 [그림 4-26] 응답자의 연령별 지난 1년간 월평균 이중부양 비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간 중·장년층의 총부양 비용을 특성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도시 거주자가 농·어·산촌 거주자보다 이중부양에 지출한 총부양 비용이 월평균 13만 3000원 더 많았다. 도시 거주자는 이중부양 비용이 단일부양보다 2.6배 높았고, 농·어·산촌 거주자는 3.7배 높아서 농·어·산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보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간 차이가 더 벌어졌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중부양 비용으로 평균 4만

5000원을 더 지출하였다. 남성은 이중부양 비용이 단일부양에 비해 2.4배 높았고, 여성은 3.3배 높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간 차이가 더 컸다. 형제자매 순위별로는 장녀가 이중부양 비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장남, 차남 이하, 차녀 이하 순이었다. 장녀와 차녀 이하 간에 이중부양 비용은 2.3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중부양 비용과 단일부양 비용 간 차이는 장녀가 5배로 가장 컸고, 다음은 차남 이하 2.5배, 장남 2.3배, 차녀 이하 2.2배 순으로 나타났다. 장녀가 장남보다 부양 비용이 더 많아 아들 중심의 전통적인 부양관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부양 비용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전문) 대학 이상과 중학교 이하 간의 이중부양 비용은 2.5배 차이를 보였다. 이중부양 비용과 단일부양 비용 간의 차이는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가 2.7배로 가장 컸고, 다음은 (전문) 대학 이상 2.6배, 중학교 1.9배 순으로 일관되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199만 원 이하를 제외하고,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중부양 비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0만~299만 원 소득층과 800만 원 이상 소득층 간의 이중부양 비용은 5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의 비용 차이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경우 차이가 많아서 300만~399만 원 소득층은 1.5배, 800만 원 이상은 2.6배의 차이를 보였다. 200만~299만 원 소득층은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비용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부부 가구가 이중부양 비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세대 가구 및 1인 가구 등이 많은 편이었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간의 비용 차이는 부부 가구가 5.8배로 가장 컸고, 다음은 3세대 가구 4.9배, 기타 가구 2.7배, 1인 가구 및 (한)부모+미혼 자녀 가구 모두 2.1배 차이를 보였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이중부양에 지출한 월평균 부양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7%로 단일부양의 9.8%보

다 7.9%포인트 높았다. 이 중에서 45~54세와 55~64세는 각각 18.8%와 17.1%로 45~54세 연령층이 55~64세보다 이중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 경제적 부양 부담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간의 차이는 45~54세 2.1배, 55~64세 1.5배로 45~54세 연령층이 55~64세 연령층보다 그 간격이 넓었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간 경제적 부양 부담의 차이가 많음을 보여 준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간 중·장년층의 총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특성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이중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의 차이는 도시 거주자는 7.6%포인트, 농·어·산촌 거주자는 10.8%포인트로 3배까지 차이를 보여 농·어·산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보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간 간격이 벌어졌다. 성별로는 이중부양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차이가 미미하였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간에는 남성은 6.6%포인트, 여성은 9.4%포인트로 2.1배의 차이를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간 차이가 더 컸다. 형제자매 순위별로 이중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장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녀, 차녀 이하, 차남 이하 순이었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의 차이는 대체로 6.2~9.9%포인트를 보였다. 특히 차녀 이하는 2.3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전문) 대학 이상은 이중부양이 단일부양보다 9.9%포인트로 2배까지 높았다. 중학교 이하와 고등학교는 각각 6.2%포인트, 4.2%포인트로 다소 낮았으나 일관되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관되지 않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3세대 가구와 기타 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이중부양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 간에도 3세대 가구와 기타 가구는 각각 3.8배와 3.3배의 차이를 보여 다른 가구에 비해 간격이 상당히 벌어졌다.

〈표 4-15〉 지난 1년간 이중부양에 지출한 총부양 비용 및 가계소득의 비율

(단위: 만 원,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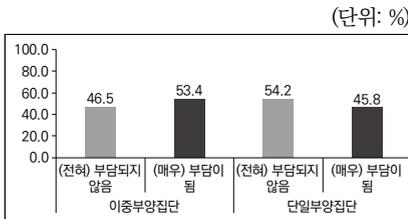
구분	부양에 지출한 총부양 비용				총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중부양		단일부양		이중부양		단일부양	
	평균	(분석 대상 수)	평균	(분석 대상 수)	평균	(분석 대상 수)	평균	(분석 대상 수)
전체	115.5	(386)	42.2	(377)	17.7	(379)	9.8	(341)
지역								
도시(시부)	116.2	(366)	44.2	(332)	17.8	(355)	10.2	(308)
농·어·산촌(군부)	102.9	(20)	27.7	(45)	16.4	(24)	5.6	(32)
응답자의 성별								
남성	112.7	(146)	48.0	(205)	17.5	(143)	10.9	(187)
여성	117.2	(239)	35.4	(172)	17.8	(235)	8.4	(154)
응답자의 연령								
45~54세	108.0	(139)	43.9	(224)	18.8	(138)	8.8	(202)
55~64세	119.8	(246)	39.7	(153)	17.1	(240)	11.3	(139)
응답자의 형제·자매 순위								
장남	121.4	(66)	53.9	(95)	19.4	(64)	12.1	(88)
장녀	178.1	(96)	36.0	(66)	17.9	(94)	9.5	(58)
차남 이하	105.4	(80)	42.8	(110)	16.1	(80)	9.9	(99)
차녀 이하	76.3	(143)	34.9	(106)	17.7	(141)	7.8	(96)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47.7	(20)	25.7	(57)	14.1	(20)	7.9	(52)
고등학교	118.7	(131)	43.8	(131)	15.7	(127)	11.5	(119)
(전문)대학 이상	119.6	(234)	46.1	(189)	19.1	(232)	9.2	(170)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400.3	(22)	22.3	(50)	40.6	(19)	12.0	(42)
200만~299만 원	30.1	(37)	30.0	(44)	12.5	(37)	12.9	(44)
300만~399만 원	66.1	(54)	45.7	(48)	19.8	(56)	13.2	(48)
400만~499만 원	77.2	(49)	35.1	(53)	17.4	(50)	7.7	(53)
500만~599만 원	89.2	(65)	54.2	(53)	16.9	(67)	10.3	(53)
600만~699만 원	104.1	(25)	44.3	(29)	14.5	(28)	6.8	(29)
700만~799만 원	108.8	(31)	49.4	(21)	14.2	(31)	6.6	(21)
800만 원 이상	157.4	(91)	60.9	(50)	16.8	(92)	6.7	(50)
가구 형태								
1인 가구	118.2	(6)	57.2	(26)	8.8	(5)	18.4	(22)
부부 가구	236.8	(50)	41.1	(65)	15.6	(49)	11.0	(62)
(한)부모+미혼 자녀	93.8	(270)	44.0	(234)	16.9	(264)	9.1	(211)
3세대 가구	124.8	(40)	25.7	(27)	20.6	(40)	5.4	(24)
기타 가구	82.7	(19)	30.7	(25)	28.8	(21)	8.7	(21)

주: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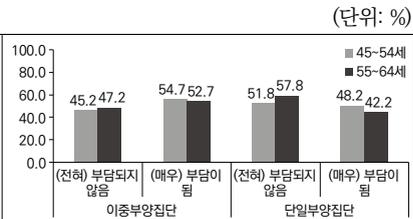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지출한 총비용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를 보면 이중부양집단은 (매우+약간)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전혀+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에 비해 약 7%포인트 높았다. 단일부양집단은 (전혀+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매우+약간) 부담이 된다는 응답보다 약 8%포인트 높았다. 이중부양집단이 단일부양집단에 비해 주관적인 가계 부담 정도가 높았다. 그중에서 (매우+약간) 부담이 된다는 비율은 이중부양집단의 경우 45~54세 연령층이 55~64세 연령층보다 다소 높았다. 부담 비율은 45~54세와 55~64세 모두 이중부양집단이 단일부양집단보다 높았다.

[그림 4-27] 지난 1년간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경제적 부양의 가계 부담 정도



[그림 4-28] 응답자의 연령별 지난 1년간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경제적 부양의 가계 부담 정도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중·장년층이 이중부양에 지출한 총비용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를 특성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매우+약간) 부담이 된다는 비율은 이중부양 집단의 경우 도시 거주자가 농·어·산촌 거주자보다 약 7%포인트 높았고 모든 지역에서 이중부양집단이 단일부양집단보다 부담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이중부양집단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 4%포인트 높았다. 이 중부양집단이 단일부양집단보다 남녀 모두 부담 비율이 높았고 남녀 간에 부담 비율의 차이는 단일부양집단이 컸다. 형제자매 순위별로는 이중

부양집단의 경우 차녀 이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장남, 장녀, 차남 이하 순으로 높아져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장녀를 제외하고 이중부양 집단이 단일부양집단보다 부담 비율이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이중부양집단의 경우 중학교 이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문) 대학 이상, 고등학교 순으로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모든 학력 층에서 이중부양 집단이 단일부양집단보다 부담 비율이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이중부양집단의 경우 대체로 400만 원 이하 소득층이 500만 원 이상 소득층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199만 원 이하 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층에서 이중부양집단이 단일부양집단보다 부담 비율이 높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이중부양집단의 경우 1인 가구와 기타 가구가 다른 가구에 부담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부부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에서 이중부양집단이 단일부양집단보다 부담 비율이 높았다.

구분	이혼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진해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이 됨	매우 부담이 됨	계(수)	χ^2	평균	F(t)	진해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이 됨	매우 부담이 됨	계(수)	χ^2	평균	F(t)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27.1	17.9	38.4	16.6	100.0(22)		2.4		35.0	4.1	41.2	19.7	100.0(49)		2.5		
200만~299만 원	27.0	10.4	43.7	18.9	100.0(37)		2.5	35.4	27.8	20.7	23.6	20.3	100.0(44)		2.3		
300만~399만 원	15.6	26.0	36.9	21.5	100.0(56)		2.6		27.8	14.2	44.9	13.1	100.0(48)		2.4		
400만~499만 원	18.6	22.8	33.8	24.9	100.0(50)		2.6		31.7	27.8	21.0	19.4	100.0(53)	36.417*	2.3	0.663	
500만~599만 원	23.0	25.8	31.6	19.7	100.0(67)	12.271	2.5	0.572	26.7	28.3	25.3	19.8	100.0(53)		2.4		
600만~699만 원	22.9	32.0	37.8	7.2	100.0(28)		2.3		37.1	18.0	23.6	21.3	100.0(29)		2.3		
700만~799만 원	21.7	26.5	35.8	15.9	100.0(31)		2.5		41.1	29.9	25.6	3.4	100.0(21)		1.9		
800만 원 이상	21.2	27.6	38.5	12.7	100.0(92)		2.4		19.4	32.5	41.5	6.6	100.0(50)		2.4		
가구 형태																	
1인 가구	22.5	16.2	38.9	22.4	100.0(6)		2.6		37.2	16.3	31.3	15.2	100.0(26)		2.2		
부부 가구	33.4	26.0	33.4	7.1	100.0(51)		2.1		41.1	16.4	25.6	16.9	100.0(64)		2.2		
(한)부모+미혼 자녀	18.9	26.9	36.6	17.6	100.0(274)	10.838	2.5	1.986	27.2	25.9	30.8	16.1	100.0(234)	9.586	2.4	0.523	
3세대 가구	24.2	17.7	34.6	23.5	100.0(43)		2.6		34.5	21.6	27.2	16.7	100.0(28)		2.3		
기타 가구	18.4	18.0	37.2	26.5	100.0(21)		2.7		43.5	11.2	33.5	11.9	100.0(25)		2.1		

주: 1)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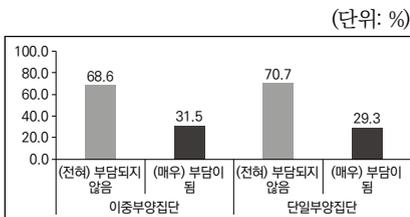
2)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혼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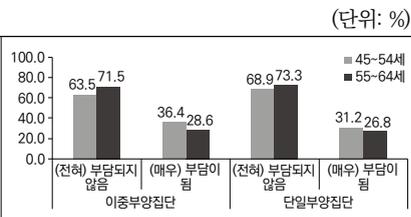
나. 비경제적 부양과 가구 부담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수행한 비경제적 부양이 미치는 부담 정도를 보면 이중부양집단은 (전혀+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매우+약간) 부담이 된다는 응답에 비해 2배 높았다. 단일부양집단은 (전혀+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매우+약간) 부담이 된다는 응답보다 2.4배 높아 이중부양집단이 단일부양집단에 비해 주관적인 부담 정도는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중에서 (매우+약간) 부담이 된다는 비율은 이중부양집단의 경우 45~54세 연령층이 55~64세 연령층보다 다소 높았다. 부담 비율은 45~54세와 55~64세 모두 이중부양집단이 단일부양집단에 비해 높았다.

[그림 4-29] 지난 1년간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비경제적 부양의 가계 부담 정도



[그림 4-30] 응답자의 연령별 지난 1년간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비경제적 부양의 가계 부담 정도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수행한 비경제적 부양이 미치는 부담 정도를 특성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매우+약간) 부담이 된다는 비율은 이중부양집단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중부양집단과 단일부양집단의 모든 지역에서 부담 비율의 차이가 적었다. 성별로는 이중부양집단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 12%포인트 높았고, 이중부양

집단과 단일부양집단 간 부담 비율의 차이는 남녀 간에 거의 없었다. 여성의 경우 단일부양집단이 이중부양집단보다 다소 높았다. 형제자매 순위별로는 이중부양집단의 경우 차녀 이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장녀, 차남 이하, 장남 순으로 높아서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차남 이하를 제외하고 단일부양집단이 이중부양집단보다 부담 비율이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이중부양집단의 경우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부담 비율이 높았다. 이중부양집단과 단일부양집단 간 부담 비율 차이는 중학교 이하가 약 17%포인트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는 두 집단 간 부담 비율이 동일하였다. (전문) 대학 이상은 이중부양집단이 단일부양집단보다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미미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관되지 않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이중부양집단의 경우 기타 가구와 3세대 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부담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중부양집단과 단일부양집단 간 부담비율의 차이는 3세대 가구 및 기타 가구는 이중부양집단이 컸고, 1인 가구와 부부 가구, (한)부모+미혼 자녀 가구는 단일부양집단이 컸다.

〈표 4-17〉 지난 1년간 이혼부양 중·장년층의 비경제적 부담의 기계 부담 정도

구분	이혼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이 됨	매우 부담이 됨	계(수)	χ^2	평균	F(t)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이 됨	매우 부담이 됨	계(수)	χ^2	평균	F(t)	
전체	39.0	29.6	26.3	5.2	100.0(395)		2.0		48.6	22.1	21.0	8.3	100.0(378)		1.9		
지역																	
도시(시·부)	39.1	29.5	25.9	5.5	100.0(371)	1.417	2.0	(0.215)	47.7	22.7	20.9	8.7	100.0(332)	1.909	1.9	(0.814)	
농·어·산촌(군·부)	37.6	31.2	31.2	0.0	100.0(24)		1.9		55.3	17.2	22.1	5.4	100.0(45)		1.8		
응답자의 성별																	
남성	45.6	30.2	20.2	4.0	100.0(152)	6.549	1.8	(-2.555*)	56.0	20.8	18.0	5.1	100.0(205)	12.604**	1.7	(-3.594***)	
여성	34.9	29.2	30.0	5.9	100.0(243)		2.1		39.7	23.6	24.6	12.1	100.0(172)		2.1		
응답자의 연령																	
45~54세	36.7	26.8	30.6	5.8	100.0(144)	2.415	2.1	(1.281)	43.8	25.1	22.1	9.1	100.0(224)	5.394	2.0	(1.697)	
55~64세	40.3	31.2	23.8	4.8	100.0(251)		1.9		55.6	17.7	19.5	7.3	100.0(153)		1.8		
응답자의 형제·자매 순위																	
장남	39.0	39.7	20.3	1.1	100.0(67)		1.8		54.4	20.8	19.1	5.7	100.0(96)		1.8		
장녀	31.8	34.4	30.2	3.5	100.0(96)	17.262*	2.1	2.181	35.9	29.7	25.1	9.2	100.0(66)	17.210*	2.1	4.379**	
차남 이하	50.9	22.6	20.2	6.3	100.0(85)		1.8		57.5	20.9	17.0	4.6	100.0(109)		1.7		
차녀 이하	36.9	25.8	29.9	7.4	100.0(147)		2.1		42.1	19.7	24.3	14.0	100.0(106)		2.1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38.9	16.2	28.2	16.7	100.0(21)	10.829	2.2	0.817	45.2	26.7	20.6	7.5	100.0(57)		1.9		
고등학교	40.5	27.2	28.0	4.3	100.0(135)		2.0		51.5	16.3	22.2	10.1	100.0(131)	4.608	1.9	0.051	
(전문)대학 이상	38.1	32.1	25.1	4.7	100.0(239)		2.0		47.6	24.7	20.3	7.3	100.0(189)		1.9		

(단위: %, 명, 점)

구분	이중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이 됨	매우 부담이 됨	계(수)	χ^2	평균	F(t)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이 됨	매우 부담이 됨	계(수)	χ^2	평균	F(t)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33.8	23.2	26.4	16.6	100.0(22)		2.3		47.8	17.4	21.0	13.8	100.0(49)		2.0	
200만~299만 원	30.4	33.6	31.4	4.6	100.0(37)		2.1		53.4	20.7	18.9	7.1	100.0(44)		1.8	
300만~399만 원	37.4	34.2	24.8	3.6	100.0(56)		1.9		43.1	27.6	25.7	3.6	100.0(48)		1.9	
400만~499만 원	39.5	30.2	28.5	1.7	100.0(50)		1.9	2.233*	50.1	25.4	17.9	6.6	100.0(53)	14.880	1.8	0.597
500만~599만 원	33.5	20.7	38.6	7.2	100.0(67)	27.279	2.2		38.3	23.2	30.3	8.2	100.0(53)		2.1	
600만~699만 원	57.4	34.2	8.5	0.0	100.0(28)		1.5		53.6	5.9	25.5	15.0	100.0(29)		2.0	
700만~799만 원	49.2	28.0	19.5	3.3	100.0(31)		1.8		55.1	18.7	19.6	6.5	100.0(21)		1.8	
800만 원 이상	35.9	32.8	25.0	6.2	100.0(92)		2.0		52.3	22.5	16.6	8.5	100.0(50)		1.8	
가구 형태																
1인 가구	83.8	16.2	0.0	0.0	100.0(6)		1.2		56.5	21.7	12.6	9.2	100.0(26)		1.7	
부부 가구	33.4	42.5	24.2	0.0	100.0(51)		1.9		48.4	26.0	23.0	2.6	100.0(64)		1.8	
(한부모+미혼 자녀	39.6	28.5	26.7	5.2	100.0(274)	21.558*	2.0	2.755*	47.4	20.2	22.7	9.6	100.0(234)	8.700	1.9	0.788
3세대 가구	47.5	19.4	23.7	9.4	100.0(43)		1.9		54.5	27.1	13.5	5.0	100.0(28)		1.7	
기타 가구	13.8	36.8	38.5	10.9	100.0(21)		2.5		45.1	24.2	17.0	13.7	100.0(25)		2.0	

주: 1)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2) * p<0.05, ** p<0.01, *** p<0.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2.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이 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도별 가족경제 수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다른 하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전화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부양 여부별로 가족경제 수준을 분석하였다.

가구경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는 가구 총소득, 가구 순자산, 총소득 대비 소비지출비율,⁹⁾ 경제상태, 가계부담 항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중·장년층의 특성별 경제 수준 변화 추이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의 특성별로 경제 수준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중부양가구의 가구 총소득은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의 총소득보다 많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두 집단 모두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45~54세의 총소득이 장년층보다 많았으며, 기간의 경과와 함께 두 집단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총소득이 많은 편이었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모든 집단에서 총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보면 일하지 않는 경우가 일하는 경우의 총소득보다 적으며, 기간이 지날수록 두 집단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는 불명확하나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 소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일수록 총소득이 많고, 대체로 기간의 경과와

9) 총소득 대비 소비지출비율은 다시 총소비, 생활비로 세부 분류한다. 총소득 대비 소비지출비율 계산 방법은 먼저 소득을 도출하는데,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지난해 가구 총소득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눈 월소득을 계산하였다. 그 이유는 소비 지출이 월평균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총소비지출에는 생활비, 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피복비로 구성되어 있다. 지출 비율이 100을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였다.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이증부양 중·장년층의 특성별 가구 총소득(2008~2016)

(단위: 만 원, 명)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3,510.3	3,619.2	3,888.0	4,528.4	4,880.7
성별					
남성	3,565.9	3,831.5	4,089.3	4,839.7	5,275.1
여성	3,470.9	3,470.2	3,748.4	4,309.5	4,598.4
연령					
45~54세	3,820.7	4,217.2	4,562.4	5,316.6	5,701.3
55~64세	3,138.0	3,074.5	3,497.7	4,032.0	4,627.7
학력					
초졸 이하	2,590.3	2,280.6	2,570.5	2,511.8	2,687.8
중고졸	3,505.2	3,630.0	3,833.1	4,301.4	4,634.0
대졸 이상	5,271.2	5,370.2	5,493.5	6,405.0	6,862.2
경제활동 상태					
일하고 없음	3,145.1	3,181.2	3,449.3	3,957.9	4,320.1
일하지 있음	3,745.6	3,862.1	4,168.7	4,820.1	5,179.7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자	3,937.8	3,800.3	4,111.8	4,873.3	5,226.1
자영업 및 가족 종사자	3,559.6	3,895.3	4,236.2	4,739.5	5,091.9
주택 소유 형태					
자가	3,684.4	3,773.9	4,012.3	4,615.8	4,974.7
전세	3,197.0	3,306.2	3,805.9	4,348.6	5,259.9
기타	2,300.8	2,356.2	2,728.1	3,804.5	3,495.6
(분석 대상 수)	(1,623)	(1,477)	(1,353)	(1,475)	(1,311)

주: 종사상 지위의 사례 수는 일하는 경우에만 관찰되므로 총사례 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 파일] 재구성.

이증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의 특성별 가구 순자산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순자산 차이가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두 집단 모두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45~54세 연령층과 55~64세 연령층의 순자산 차이가 명확하지 않지만,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간의 경과와 함께 두 집단에서 모두 증가

하였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순자산이 높은 편이었다. 대출 이상 이외에서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순자산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19〉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특성별 가구 순자산(2008~2016)

(단위: 만 원, 명)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23,231.9	24,357.0	26,960.5	30,113.4	31,542.1
성별					
남성	22,244.9	23,887.8	26,394.7	30,364.1	31,735.7
여성	23,924.7	24,682.0	27,349.5	29,936.4	31,403.4
연령					
45~54세	22,722.4	24,418.0	28,118.5	28,075.6	31,803.6
55~64세	23,851.8	24,300.8	26,277.7	31,429.5	31,460.6
학력					
초졸 이하	13,994.2	14,502.2	17,031.6	18,488.6	18,542.9
중고졸	22,474.8	23,377.6	25,961.8	27,987.2	29,360.7
대출 이상	44,511.4	41,751.7	41,380.0	43,397.9	45,707.0
경제활동 상태					
일하고 없음	23,356.5	26,499.9	27,015.4	33,615.6	33,710.6
일하지 있음	23,152.4	23,157.2	26,925.5	28,336.8	30,383.7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자	21,550.9	19,913.0	23,147.3	26,188.2	29,640.8
자영업 및 가족 종사자	24,547.3	25,979.5	31,168.6	30,431.9	31,080.9
주택 소유 형태					
자가	26,716.6	27,563.9	30,479.1	33,100.1	34,483.6
전세	13,334.6	14,097.8	13,316.3	22,995.4	27,874.0
기타	2,310.9	2,726.1	5,247.7	6,634.0	5,779.8
(분석 대상 수)	(1,576)	(1,432)	(1,313)	(1,450)	(1,301)

주: 종사상 지위의 사례 수는 일하는 경우에만 관찰되므로 총사례 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 파일] 재구성.

경제활동 상태에서는 일하지 않는 경우가 일하는 경우의 순자산보다 많으며, 기간이 지날수록 두 집단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이것은 정년 이후에 일을 하지 않는 대상이 많을 경우 순자산이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 및 가족 종사자의 경우가 순자산이 높다. 기간의 경과에 따른 순자산의 증가 경향은 임

금 근로자에서는 명확하나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에서는 불명확하게 나타났다. 주택 소유 형태별로는 자가일수록 순자산이 많으며, 대체로 기간의 경과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순자산의 크기는 자가>전세>기타로 나타났다.

이증부양하는 중·장년층의 특성별 총소득 대비 총소비 지출 비율을 보면 성별로는 2008년 이후 초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지출 비율이 유사하였다. 기간의 경과와 함께 여성의 비율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이증부양 중·장년층의 특성별 총소득 대비 총소비 지출 비율(2008~2016)

(단위: %, 명)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150.7	130.6	125.3	140.3	119.4
성별					
남성	150.5	132.4	115.7	118.8	116.2
여성	150.7	130.1	127.9	146.9	120.5
연령					
45~54세	138.9	128.3	117.7	117.6	115.6
55~64세	167.7	133.2	131.0	159.3	121.0
학력					
초졸 이하	147.4	137.3	130.1	147.2	134.4
중고졸	155.6	128.9	126.9	147.0	121.2
대졸 이상	125.2	128.3	111.0	109.9	102.2
경제활동 상태					
일하고 없음	175.0	136.4	133.5	179.9	132.3
일하지 있음	128.5	126.3	118.1	114.6	111.0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자	113.0	126.3	113.4	113.4	112.0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	144.0	124.9	123.8	116.1	109.8
주택 소유 형태					
자가	152.4	126.6	122.3	115.9	115.6
전세	119.5	161.0	143.4	143.1	125.2
기타	163.0	136.7	136.6	414.5	149.5
(분석 대상 수)	(995)	(897)	(827)	(924)	(832)

주: 종사상 지위의 사례 수는 일하는 경우에만 관찰되므로 총사례 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 파일] 재구성.

연령별로는 대체로 55~64세 연령층의 지출 비율이 45~54세 연령층보다 크지만, 그 차이는 좁혀지는 경향이 있다. 학력은 낮을수록 지출 비율이 높은 분포를 보였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지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보면 일하지 않는 경우가 일하는 경우의 지출 비율보다 높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 및 가족 종사자의 지출 비율이 등락을 거듭하며 명확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주택 소유 형태에서는 대체로 자가일수록 지출 비율이 낮은 분포를 보였다.

〈표 4-21〉 이중부양 중·장년층의 특성별 총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 비율(2008~2016)

(단위: %, 명)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전체	88.6	77.8	75.5	88.1	77.4
성별					
남성	87.0	79.4	68.3	76.5	75.8
여성	89.0	77.2	77.5	91.7	78.0
연령					
45~54세	80.6	77.1	71.1	75.9	76.0
55~64세	100.2	78.5	78.8	98.4	78.0
학력					
초졸 이하	85.7	81.5	77.4	93.1	86.0
중고졸	91.9	76.8	77.0	91.8	78.6
대졸 이상	73.5	76.7	65.5	70.6	66.9
경제활동 상태					
일하고 없음	103.8	80.7	80.5	109.5	84.7
일하지 있음	74.7	75.6	71.1	74.3	72.7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자	65.7	74.4	67.0	73.1	73.2
자영업 및 가족 종사자	83.6	76.1	76.0	75.9	72.2
주택 소유 형태					
자가	90.1	75.7	74.0	75.0	75.5
전세	70.8	94.6	85.0	91.0	81.4
기타	91.5	79.2	80.8	234.7	91.8
(분석 대상 수)	(995)	(897)	(827)	(924)	(832)

주: 종사상 지위의 사례는 일하는 경우에만 관찰되므로 총사례 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 파일] 재구성.

이증부양 가구의 총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 비율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기간의 경과에 따른 증감 경향도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총소비 지출 비율과 유사하게 대체로 55~64세 연령층의 생활비 지출 비율이 45~54세 연령층보다 크지만, 그 차이는 좁혀지는 경향이 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지출 비율이 낮았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일하지 않는 경우가 일하는 경우의 지출 비율보다 높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대체로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 및 가족 종사자의 지출 비율이 높았다. 주택 소유 형태별로 보면 소유 형태에 따른 지출 비율의 명확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나.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여부별 가구경제 수준

1)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한 변화 추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층의 부양 여부별 경제 수준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소득은 이증부양집단이 비부양집단보다 많다. 기간이 경과할수록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커지며, 두 집단에서 증가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순자산은 이증부양집단의 순자산이 비부양집단보다 많았으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 집단의 차이가 벌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총소득 대비 총소비 지출 비율과 총소득 대비 생활비 지출비율 모두 부양집단보다 비부양집단의 지출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이증부양집단과 비부양집단 간에 경제력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2〉 연도 및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여부별 가구경제 수준 변화 추이(2008~2016)

(단위: 만 원,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이증부양 가구	총소득	3,510.3	3,619.2	3,888.0	4,528.4	4,880.7	
	순자산	23,231.9	24,357.0	26,960.5	30,113.4	31,542.1	
	소비지출비율	총소비	150.7	130.6	125.3	140.3	119.4
		생활비	88.6	77.8	75.5	88.1	77.4
비부양 가구	총소득	3,097.7	3,062.2	3,267.0	4,011.4	4,029.8	
	순자산	22,164.4	21,075.3	23,527.4	25,899.0	27,642.6	
	소비지출비율	총소비	200.0	175.4	167.3	146.9	183.5
		생활비	116.2	102.8	98.3	93.7	119.0

자료: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 파일] 재구성.

2) 전화 조사 결과를 활용한 가구경제 수준

전화 조사에서는 중·장년층 가족의 경제 상태와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 중심으로 가구경제 수준을 살펴보았다. 전화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장년층의 부양 여부별 경제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장년층 가족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 상태는 부양 부담을 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 경제적으로 (매우+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_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비부양집단이 41.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단일부양집단 33.3%, 이증부양집단 31.4%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부양집단별로 응답한 것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부양집단의 절대적 크기의 차이로 해석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중·장년층 가족의 특성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이증부양집단의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농·어·산촌이 44.4%, 도시가 30.5%로 농·어·산촌이 다소 높았다. 단일부양집단도 도시와 농·어·

산촌이 각각 33.1%와 35.0%로 농·어·산촌이 다소 높았다. 이에 비해 비부양집단은 42.4%와 34.9%로 도시가 농·어·산촌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이증부양집단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33.4%와 30.0%였고, 비부양집단에서는 44.2%와 38.9%로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으로 (매우+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단일부양집단은 남성이 32.7%, 여성이 33.9%로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이증부양집단의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45~54세와 55~64세는 각각 27.6%와 33.5%였고, 비부양집단은 39.7%와 43.4%로 이증부양집단과 비부양집단 모두 55~64세 연령층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에 비해 단일부양집단은 35.1%와 30.5%로 45~54세 연령층에서 경제적으로 (매우+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경제적으로 (매우+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학교 이하와 (전문) 대학 이상 간에 이증부양집단은 3배, 단일부양집단과 비부양집단은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도 학력과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모든 집단에서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199만 원 이하 소득층이 응답한 비율은 이증부양집단은 91.8%, 단일부양집단과 비부양집단은 각각 64.9%와 78.8%로 이증부양집단이 단일부양집단 및 비부양집단에 비해 훨씬 높은 분포를 보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경제적으로 (매우+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단일부양집단과 비부양집단 모두 1인 가구, 부부 가구 및 기타 가구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증부양집단은 모든 가구 형태에서 낮게 나타났다.

〈표 4-23〉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집단별 현재 경제 상태 비교

구분	이중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비부양집단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보통			여유가 있는 편임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보통			여유가 있는 편임			매우 어려움			조금 어려움			보통			여유가 있는 편임		
	평균	F(t)	χ^2	평균	F(t)	χ^2	평균	F(t)	χ^2	평균	F(t)	χ^2	평균	F(t)	χ^2	평균	F(t)	χ^2	평균	F(t)	χ^2	평균	F(t)	χ^2	평균	F(t)	χ^2	평균	F(t)	χ^2	평균	F(t)	χ^2			
전체	8.8	22.6	50.5	15.3	2.8	100.0 (395)	2.8	12.8	20.5	50.1	13.8	2.8	100.0 (378)	2.7	18.1	23.5	44.2	13.0	1.2	100.0 (227)	2.6															
지역																																				
도시(사부)	8.5	22.0	51.6	15.2	2.7	100.0 (371)	2.8	13.4	19.7	51.1	13.3	2.6	100.0 (333)	2.7	18.6	23.8	43.8	12.3	1.4	100.0 (200)	2.5															
농·어·산촌(군부)	12.5	31.9	34.4	17.0	4.2	100.0 (24)	2.7	8.8	26.2	42.6	17.7	4.7	100.0 (45)	2.8	14.0	20.9	46.9	18.2	0.0	100.0 (26)	2.7															
응답자의 성별																																				
남성	9.7	23.7	48.4	15.6	2.6	100.0 (152)	2.8	15.5	17.2	50.2	14.0	3.1	100.0 (206)	2.7	14.8	29.4	45.3	8.1	2.5	100.0 (113)	2.5															
여성	8.2	21.8	51.9	15.2	2.9	100.0 (243)	2.8	9.6	24.3	50.0	13.6	2.5	100.0 (172)	2.8	21.3	17.6	43.0	18.0	0.0	100.0 (113)	2.6															
응답자의 연령																																				
45~54세	6.0	21.6	52.4	17.8	2.3	100.0 (144)	2.9	12.7	22.4	49.3	12.2	3.4	100.0 (224)	2.7	9.6	30.1	48.8	10.2	1.3	100.0 (116)	2.6															
55~64세	10.4	23.1	49.5	13.9	3.1	100.0 (251)	2.8	12.9	17.6	51.3	16.2	2.0	100.0 (154)	2.8	26.8	16.6	39.4	16.0	1.2	100.0 (111)	2.5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30.5	39.8	20.5	9.2	0.0	100.0 (21)	2.1	18.4	34.1	41.7	5.8	0.0	100.0 (57)	2.3	34.2	19.7	38.3	7.8	0.0	100.0 (50)	2.2															
고등학교	9.9	30.9	47.8	9.3	2.1	100.0 (135)	2.6	14.6***	16.1	22.2	46.0	10.9	4.8	2.7	17.1	28.5	39.2	13.5	1.7	100.0 (89)	2.5															
(전문)대학 이상	6.2	16.3	54.8	19.3	3.5	100.0 (239)	3.0	8.9	15.2	55.5	18.2	2.3	100.0 (189)	2.9	9.8	20.7	52.6	15.5	1.5	100.0 (88)	2.8															

(단위: %, 명, 점)

구분	이중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비부양집단												
	매우 아쉬움 아쉬움	조금 아쉬움	보통	어유가 있는 편임	매우 아쉬움 아쉬움	F(t)	평균	χ^2	매우 아쉬움 아쉬움	조금 아쉬움	보통	어유가 있는 편임	매우 아쉬움 아쉬움	F(t)	평균	χ^2	매우 아쉬움 아쉬움	F(t)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41.3	50.5	8.2	0.0	100.0 (22)	1.7		38.8	26.1	31.5	2.0	1.7	100.0 (50)	2.0		42.5	36.3	16.5	4.7	0.0	100.0 (61)	1.8	
200만~299만 원	15.2	39.9	44.9	0.0	100.0 (37)	2.3		23.9	25.3	47.7	3.1	0.0	100.0 (44)	2.3		23.2	9.4	51.1	16.4	0.0	100.0 (29)	2.6	
300만~399만 원	12.9	39.7	41.4	4.2	100.0 (56)	2.4		7.7	32.2	48.8	11.3	0.0	100.0 (48)	2.6		7.4	48.0	44.5	0.0	0.0	100.0 (40)	2.4	
400만~499만 원	11.4	32.7	46.2	9.8	100.0 (50)	2.5		6.5	32.1	52.8	8.5	0.0	100.0 (53)	2.6		2.7	17.5	69.5	10.3	0.0	100.0 (23)	2.9	
500만~599만 원	5.3	16.9	66.2	9.7	100.0 (67)	2.9	22.2**	1.8	17.7	60.7	18.6	1.2	100.0 (53)	3.0	13.4***	4.5	0.0	63.7	31.8	0.0	100.0 (19)	3.2	
600만~699만 원	0.0	5.4	70.7	18.0	100.0 (28)	3.2		13.7	0.0	64.6	21.7	0.0	100.0 (29)	2.9		0.0	17.7	57.5	24.7	0.0	100.0 (8)	3.1	
700만~799만 원	0.0	3.3	79.1	14.9	100.0 (31)	3.2		3.0	13.2	61.5	3.2	19.0	100.0 (21)	3.2		0.0	5.6	76.8	8.3	9.3	100.0 (9)	3.2	
800만 원 이상	2.9	8.3	42.0	39.9	100.0 (92)	3.4		4.2	8.6	37.7	39.3	10.3	100.0 (50)	3.4		3.7	0.0	45.7	41.5	9.0	100.0 (22)	3.5	
가구형태																							
1인가구	8.2	18.4	65.6	7.8	100.0 (39)	2.7		16.5	34.0	33.2	13.4	2.8	100.0 (53)	2.5		4.2	40.2	49.2	6.3	0.0	100.0 (23)	2.6	
부부가구	0.0	36.1	54.8	9.1	100.0 (6)	2.7		28.7	25.8	40.3	5.1	0.0	100.0 (26)	2.2		41.1	24.2	27.9	5.2	1.6	100.0 (52)	2.0	
(형)부모+미혼 자녀	3.6	20.8	52.0	23.6	100.0 (51)	3.0	12.238	9.8	14.9	51.3	22.7	1.3	100.0 (65)	2.9	30.315*	14.4	19.9	45.2	19.9	0.6	100.0 (81)	2.7	
3세대가구	8.6	21.6	51.1	15.4	100.0 (274)	2.8		10.8	19.3	53.8	12.6	3.6	100.0 (234)	2.8		7.9	23.7	56.0	10.3	2.1	100.0 (70)	2.8	
기타가구	12.7	25.2	50.4	9.4	100.0 (43)	2.6		13.8	43.3	29.8	10.3	2.9	100.0 (28)	2.5		8.6	47.1	31.4	12.9	0.0	100.0 (11)	2.5	

주: 1)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2)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중·장년층 가족이 가계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1순위)을 살펴보면 이중부양집단에서는 세금·보험료가 22.8%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18.0%, 자녀부양 비용이 14.2% 순으로 높았다. 단일부양집단에서는 이중부양집단과 다른 경향을 보여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22.2%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자녀부양 비용이 19.3%, 세금·보험료가 17.2%로 나타났다. 비부양집단은 단일부양집단과 유사하게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18.6%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자녀부양 비용 17.7%, 의료비 15.4%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가족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이중부양집단은 전체와 유사하나 농·어·산촌은 자녀부양 비용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채무의 원리금 상환, 주거비 순이었다. 단일부양집단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경향을 보여서 도시는 단일부양집단 전체와 유사하나 농·어·산촌은 세금·보험료가 가장 높았다. 다음은 채무의 원리금 상환, 자녀부양 비용 순이었다. 비부양집단은 도시와 농·어·산촌 모두 전체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도시 거주자는 자녀부양 비용과 채무의 원리금 상환 등에 부담을 느끼는 데 비해 농·어·산촌 거주자는 세금·보험료와 채무의 원리금 상환 등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이중부양집단의 경우 여성은 전체와 유사하지만, 남성은 채무의 원리금 상환과 세금·보험료가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높았다. 단일부양집단은 전체 및 성별 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비부양집단은 대체로 전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이중부양집단에서 45~54세와 55~64세는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단일부양집단은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45~54세 연령층은 전체와 유사한 반면, 55~64세 연령층은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이 없음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세금·보험료로 나타났다. 비부양집단은 45~54세에서는

자녀부양 비용과 채무의 원리금 상황이 높았고, 55~64세는 없음과 세금·보험료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최종 학력별로는 이증부양집단에서 중학교 이하는 주거비와 세금·보험료가 높은 데 비해 고등학교와 (전문) 대학 이상은 채무의 원리금 상황과 세금·보험료가 높았다. 단일부양집단에서 중학교 이하는 세금·보험료와 채무의 원리금 상황이 동일하게 높았고, 고등학교는 채무의 원리금 상황과 세금·보험료가 높았다. (전문) 대학 이상은 자녀부양 비용과 채무의 원리금 상황이 높게 나타났다. 비부양집단에서 중학교 이하는 없음과 의료비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고등학교는 채무의 원리금 상황과 자녀부양 비용이, (전문) 대학 이상은 자녀부양 비용과 채무의 원리금 상황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이증부양집단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른 뚜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으나 대체로 세금·보험료와 채무의 원리금 상황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단일부양집단도 이증부양 가구와 동일하게 대체로 세금·보험료와 채무의 원리금 상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비부양집단은 뚜렷한 특성은 없으나 대체로 세금·보험료와 채무의 원리금 상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이증부양집단의 경우 부부 가구와 (한)부모+미혼 자녀 가구, 그리고 기타 가구는 세금·보험료가 모두 높았다. 이 외에 부부 가구는 주거비도 높았다. 이에 비해 3세대 가구는 채무의 원리금 상황이 높았다. 1인 가구는 분석 대상 수가 적어 제외하였다. 단일부양집단의 경우 1인 가구와 부부 가구, 3세대 가구 및 기타 가구는 세금·보험료가 모두 높았다. 이 외에 1인 가구는 의료비가, 부부 가구와 기타 가구는 채무의 원리금 상황이, 3세대 가구는 식비도 높았다. (한)부모+미혼 자녀 가구는 채무의 원리금 상황과 자녀부양 비용이 높았다. 비부양집단의 경우 1인 가구와 기타 가구는 모두 의료비가 높았고, 이 외에 1인 가구는 주거

비도 높았다. 부부 가구와 3세대 가구는 모두 세금·보험료가 높았고, 이외에 부부 가구는 부담을 느끼는 항목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3세대 가구는 자녀부양 비용이 높은 편이었다. (한)부모+미혼 자녀 가구는 단일부양집단과 유사하게 채무의 원리금 상환과 자녀부양 비용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4-24〉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집단별 가계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 비교(1순위)

구분	이중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비부양집단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식비	의료비	주거비	세금·보험료	채무의 상환	미혼	상인자	부모부	기타	(분석 대상 수)	식비	의료비	주거비	세금·보험료	채무의 상환	미혼	상인자	부모부	기타	(분석 대상 수)	식비	의료비	주거비	세금·보험료	채무의 상환	미혼	상인자	부모부	기타	(분석 대상 수)	식비	의료비	주거비	세금·보험료	채무의 상환	미혼	상인자	부모부	기타	(분석 대상 수)			
전체	4.9	10.6	10.5	13.3	22.8	18.0	14.2	5.2	0.6	(332)	12.8	7.0	9.1	7.7	17.2	22.2	19.3	2.5	2.3	(314)	15.6	6.8	15.4	9.7	13.0	18.6	17.7	0.0	3.1	(222)	15.6	6.8	15.4	9.7	13.0	18.6	17.7	0.0	3.1	(222)			
지역																																											
도시(시부)	5.2	11.1	10.1	13.0	23.1	17.9	13.8	5.4	0.3	(317)	11.8	7.8	9.2	7.8	15.6	22.6	20.1	2.6	2.6	(281)	15.8	7.2	13.9	9.6	12.1	18.7	19.2	0.0	3.6	(196)	15.8	7.2	13.9	9.6	12.1	18.7	19.2	0.0	3.6	(196)			
농·어·산촌(군부)	0.0	0.0	18.2	18.9	16.8	19.6	21.1	0.0	5.4	(16)	21.5	0.0	7.6	6.9	31.2	18.9	12.1	1.9	0.0	(32)	14.4	3.4	27.5	10.5	19.6	17.9	6.7	0.0	0.0	(26)	14.4	3.4	27.5	10.5	19.6	17.9	6.7	0.0	0.0	(26)			
응답자의 성별																																											
남성	7.4	4.0	12.3	12.8	19.2	21.4	16.7	6.1	0.0	(122)	12.6	7.7	7.7	8.2	18.0	22.0	19.7	1.8	2.2	(169)	12.2	8.2	14.6	8.8	10.2	20.0	21.6	0.0	4.5	(111)	12.2	8.2	14.6	8.8	10.2	20.0	21.6	0.0	4.5	(111)			
여성	3.4	14.4	9.4	13.6	24.8	16.0	12.8	4.6	0.9	(211)	12.9	6.1	10.6	7.1	16.2	22.4	18.7	3.4	2.4	(145)	19.0	5.5	16.3	10.6	15.7	17.2	14.0	0.0	1.8	(112)	19.0	5.5	16.3	10.6	15.7	17.2	14.0	0.0	1.8	(112)			
응답자의 연령																																											
45~54세	2.0	10.3	9.3	14.8	22.8	22.1	17.2	1.7	0.0	(121)	6.3	8.2	7.7	5.5	16.5	25.8	25.5	2.2	2.4	(172)	7.6	5.8	14.5	7.9	9.5	22.4	26.4	0.0	6.0	(116)	7.6	5.8	14.5	7.9	9.5	22.4	26.4	0.0	6.0	(116)			
55~64세	6.6	10.8	11.2	12.5	22.7	15.7	12.5	7.2	0.9	(211)	20.6	5.5	10.8	10.4	18.1	17.8	11.7	2.9	2.2	(141)	24.3	7.9	16.5	11.7	16.7	14.5	8.4	0.0	0.0	(107)	24.3	7.9	16.5	11.7	16.7	14.5	8.4	0.0	0.0	(107)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8.1	0.0	10.2	29.6	25.1	16.8	10.2	0.0	0.0	(13)	12.6	6.1	15.7	8.3	21.8	21.8	7.4	2.9	3.3	(50)	27.1	3.8	18.9	14.6	17.3	14.7	3.7	0.0	0.0	(50)	27.1	3.8	18.9	14.6	17.3	14.7	3.7	0.0	0.0	(50)			
고졸학교	4.1	16.0	11.4	11.6	20.2	21.7	11.8	2.4	0.9	(115)	11.9	8.2	12.7	9.0	19.2	21.4	15.9	1.7	0.0	(104)	10.1	8.3	16.8	6.6	14.9	22.9	17.5	0.0	2.8	(87)	10.1	8.3	16.8	6.6	14.9	22.9	17.5	0.0	2.8	(87)			
(전문대학 이상)	5.2	8.3	10.0	13.2	24.1	16.0	15.8	7.0	0.4	(205)	13.4	6.5	4.6	6.7	14.4	22.9	25.1	2.9	3.5	(160)	14.5	7.1	12.0	10.0	8.4	16.5	26.2	0.0	5.3	(86)	14.5	7.1	12.0	10.0	8.4	16.5	26.2	0.0	5.3	(86)			

(단위: %, 명)

204 **해안도시가계의 이혼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연구**

구분	이혼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비부양집단									
	없음			식비			의료비			주거비			세금·보험료			채무·원리금			생활			미성년			기타			(분석 대상 수)		
	없음	식비	의료비	주거비	세금·보험료	채무·원리금	생활	미성년	성인자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부양	
월평균 가구소득	0.0	11.9	13.2	32.3	14.8	20.9	6.9	0.0	0.0	(22)	9.2	10.4	22.5	10.5	13.3	23.4	7.2	3.6	0.0	(40)	14.0	11.1	20.1	23.3	9.9	12.0	7.8	0.0	1.8	(59)
1989년 월 이하	5.7	21.9	16.8	16.9	11.5	22.4	2.2	2.6	0.0	(32)	11.2	15.1	16.6	10.9	16.8	17.7	8.0	3.6	0.0	(41)	15.1	7.9	26.0	2.3	15.7	20.7	12.3	0.0	0.0	(28)
200만~299만 원	6.1	10.2	6.9	10.0	32.0	23.2	7.4	4.2	0.0	(47)	10.8	3.3	5.7	7.0	30.9	21.8	17.3	2.0	1.3	(42)	4.3	12.4	14.8	6.0	8.5	24.1	26.4	0.0	3.5	(40)
300만~399만 원	6.8	0.0	9.2	13.6	30.6	15.7	17.2	4.7	2.0	(42)	9.9	1.8	3.1	5.2	13.6	23.2	31.9	4.0	7.3	(46)	17.4	6.2	17.8	6.4	16.4	15.4	15.9	0.0	4.5	(22)
400만~499만 원	4.5	12.7	14.4	16.1	15.9	12.8	18.6	5.0	0.0	(53)	5.1	10.0	12.7	9.2	6.6	17.3	37.1	0.0	2.0	(42)	13.7	0.0	17.8	9.9	10.0	22.8	25.9	0.0	0.0	(19)
500만~599만 원	3.1	7.0	10.7	3.7	36.1	16.0	16.7	6.6	0.0	(27)	3.3	12.2	3.4	5.7	20.8	24.0	22.5	5.7	2.3	(24)	26.0	0.0	0.0	8.8	16.5	13.4	35.3	0.0	0.0	(8)
600만~699만 원	0.0	20.4	15.6	0.0	15.5	21.6	15.2	11.6	0.0	(26)	24.7	0.0	3.4	3.8	15.0	38.5	11.0	0.0	3.6	(19)	15.3	0.0	0.0	0.0	39.3	0.0	45.4	0.0	0.0	(9)
700만~799만 원	7.5	6.7	6.8	13.3	22.3	16.9	18.5	6.7	1.4	(74)	22.4	6.1	4.2	6.4	15.5	21.8	21.5	0.0	2.2	(33)	23.1	0.0	2.3	3.8	8.0	18.9	27.2	0.0	16.7	(21)
800만 원 이상	0.0	0.0	48.6	0.0	0.0	0.0	51.4	0.0	0.0	(4)	14.0	12.6	23.4	7.4	25.4	9.9	7.3	0.0	0.0	(21)	17.3	8.7	29.4	19.6	6.2	13.9	2.9	0.0	2.1	(51)
가구 형태	12.6	4.3	13.9	24.6	28.1	8.8	5.8	0.0	2.0	(43)	18.8	2.7	11.7	7.5	19.9	19.0	11.3	7.6	1.5	(56)	23.6	6.7	14.6	7.2	22.4	19.1	5.1	0.0	1.3	(78)
1인 가구	4.3	11.3	9.9	12.6	23.6	18.8	14.7	4.8	0.0	(234)	13.1	5.8	7.3	8.1	13.1	25.3	24.2	0.7	2.3	(192)	7.5	5.9	1.2	6.1	5.7	23.6	43.0	0.0	7.1	(70)
부부 가구	0.0	15.2	5.9	4.4	14.6	30.8	15.0	11.2	2.9	(34)	3.1	18.4	0.0	11.0	24.4	16.5	16.0	3.2	7.5	(26)	12.3	0.0	7.5	15.8	20.4	13.9	30.2	0.0	0.0	(11)
(형)부모+미혼 자녀	5.6	10.3	11.6	15.9	19.5	8.4	17.6	11.1	0.0	(18)	3.4	9.2	15.9	0.0	31.1	21.8	10.8	7.8	0.0	(19)	8.1	10.6	48.7	0.0	15.6	11.6	5.4	0.0	0.0	(13)
3세대 가구																														
기타 가구																														

주: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계의 이혼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3.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이 가족생활 및 가족기능에 미치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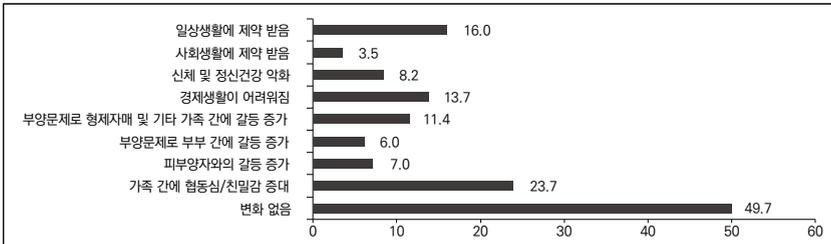
중·장년층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하여 이중부양을 하는 중·장년층 395명의 이중부양 전후 가족생활 및 가족기능 변화에 대해 살펴 보았다.

가. 이중부양 부담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변화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 가족을 대상으로 이중부양 전후 가족생활의 변화 여부를 보면 변화가 있다는 비율이 50.3%, 변화가 없다는 49.7%로 변화가 있는 중·장년층 가족이 절반으로 나타났다.

[그림 4-31] 이중부양 전·후의 가족생활 변화 분포(중복응답)

(단위: %)



주: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이중부양 부담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변화 유형을 보면 '가족 간에 협동심/친밀감 증대'(23.7%)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개인시간 감소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음'(16.0%), '경제 부담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짐'(13.7%), '부양 문제로 형제자매 및 기타 가족 간에 갈등 증가'(11.4%) 순이었다. 이 외에 10% 미만이나 '부양하는 성인자녀 및 노부모와의 갈등'

등 증가', '부양 문제로 부부 간에 갈등 증가', '신체 및 정신건강의 악화', '퇴사 및 휴직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음' 등도 가족생활의 변화로 나타났다. 변화의 특징은 이중부양으로 인한 부양자 간 갈등,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 갈등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 외에 부양자의 일상 및 사회생활 제약, 경제 및 건강 악화 등에 집중되었다.

중·장년층 가족의 특성별로 이중부양 전후에 나타난 가족생활의 변화를 보면 지역별로는 농·어·산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보다 이중부양 전후에 가족생활에 변화가 다소 높았다. 도시 거주자는 '가족 간에 협동심/친밀감 증대'와 '개인시간 감소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음' 등이 다소 높았다. 농·어·산촌 거주자는 '부양하는 성인자녀 및 노부모와의 갈등 증가', '부양 문제로 부부 간에 갈등 증가' 등이 비교적 높았다. 나머지는 전체와 유사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중부양 전후에 가족생활 변화가 높았다. 남성은 '가족 간에 협동심/친밀감 증대', '경제 부담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짐' 등이 높았다. 여성은 '부양 문제로 부부 간에 갈등 증가', '신체 및 정신건강의 악화', '퇴사 및 휴직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음', '개인시간 감소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음' 등이 높았다. 특히 주부양자인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부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에 제약을 받는 비율이 높아서 주부양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령별로는 45~54세 연령층이 55~64세 연령층보다 이중부양 전후에 가족생활 변화가 높은 편이었다. 45~54세 연령층은 '가족 간에 협동심/친밀감 증대', '부양하는 성인자녀 및 노부모와의 갈등 증가', '부양 문제로 부부 간에 갈등 증가', '개인시간 감소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음' 등이 높았다. 55~64세 연령층은 '부양 문제로 형제자매 및 기타 가족 간에 갈등 증가', '경제 부담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짐' 등이 높았으며 나머

지는 전체와 유사하였다.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부양 전후에 가족생활 변화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학교 이하는 다른 학력 수준에 비해 '부양 문제로 부부 간에 갈등 증가', '부양 문제로 형제자매 및 기타 가족 간에 갈등 증가', '신체 및 정신건강의 악화' 등이 높았다. 고등학교는 '부양하는 성인자녀 및 노부모와의 갈등 증가', '개인시간 감소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음' 등이 높았다. (전문) 대학 이상은 '가족 간에 협동심/친밀감 증대'와 '퇴사 및 휴직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음'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경제 부담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짐'은 중학교 이하와 (전문) 대학 이상에서 양극적으로 나타나서 주목된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 3세대 가구 및 기타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이중부양 전후에 가족생활의 변화가 높은 편이었다.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부양하는 성인자녀 및 노부모와의 갈등 증가'와 '개인시간 감소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음'이 높았다. (한)부모+미혼 자녀 및 3세대 가구는 '가족 간에 협동심/친밀감 증대'가 높았다. 3세대 가구와 기타 가구는 모든 부정적인 변화에서 다른 가구보다 높은 분포를 보여 가구 유형별로 이중부양 전후 가족생활 변화에 차이를 보였다.

〈표 4-25〉 이중부양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전후 변화(중복응답)

구분	변화 없음	가족 간에 협동심/책임감 증대	부양하는 성인자녀 및 노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함	부양 문제로 부부 간에 갈등이 증가함	부양 문제로 형제자매 및 기타 가족 간에 갈등이 증가함	경제적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짐	신체 및 정신건강이 악화된	퇴사 및 휴직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음	개인시간 감소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음	(단위: %, 명)
전체	49.7	23.7	7.0	6.0	11.4	13.7	8.2	3.5	16.0	(395)
지역										
도시(시부)	50.0	23.9	6.8	5.9	11.4	13.7	8.1	3.5	16.5	(371)
농·어·산촌(군부)	45.2	20.7	9.8	7.0	11.9	14.3	8.7	3.5	8.8	(24)
응답자의 성별										
남성	54.1	25.5	6.5	4.4	11.1	15.5	5.9	0.7	9.2	(152)
여성	47.0	22.6	7.3	7.0	11.6	12.6	9.6	5.3	20.2	(243)
응답자의 연령										
45~54세	45.4	27.4	8.3	7.4	9.9	12.3	8.0	2.8	18.8	(144)
55~64세	52.2	21.6	6.2	5.2	12.3	14.5	8.2	3.9	14.4	(251)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62.3	6.4	6.9	10.4	20.8	14.2	25.4	0.0	0.0	(21)
고등학교	52.0	18.4	8.0	3.5	10.3	11.9	2.9	2.9	18.2	(135)
(전문)대학 이상	47.4	28.2	6.4	7.0	11.2	14.7	9.6	4.2	16.1	(239)

구분	변화 없음	가족 간에 협동심/책임감 증대	부양하는 성인자녀 및 노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함	부양 문제로 간에 갈등이 증가함	부양 문제로 형제자매 및 기타 가족 간에 갈등이 증가함	경제 부담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짐	신체 및 정신건강이 악화됨	퇴사 및 휴직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음	개인시간 감소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음	(분석 대상 수)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53.2	0.0	10.4	17.6	16.4	28.7	12.5	4.6	15.1	(22)
200만~299만 원	52.9	14.1	0.0	0.0	10.2	10.1	4.1	2.8	18.6	(37)
300만~399만 원	55.8	16.1	5.9	1.3	4.8	18.9	7.9	0.0	15.9	(56)
400만~499만 원	60.6	19.5	2.0	5.4	7.7	9.6	4.1	6.0	17.0	(50)
500만~599만 원	39.2	33.7	5.8	10.7	15.3	11.4	10.4	6.1	17.5	(67)
600만~699만 원	38.8	41.3	1.8	3.8	11.2	10.5	0.0	0.0	11.2	(28)
700만~799만 원	52.9	36.9	9.8	3.3	9.8	13.2	16.2	3.3	13.1	(31)
800만 원 이상	46.9	24.8	12.3	7.1	13.5	14.5	8.8	4.1	18.3	(92)
가구 형태										
1인 가구	41.4	0.0	22.4	0.0	22.4	13.6	0.0	0.0	22.5	(6)
부부 가구	60.1	20.4	3.9	5.2	8.3	13.4	1.9	1.9	14.2	(51)
(핵부모+미혼 자녀	52.1	25.2	6.0	4.0	10.3	12.4	7.8	2.9	12.7	(274)
3세대 가구	26.9	28.3	12.8	19.8	20.9	20.5	15.6	9.2	28.1	(43)
기타 가구	40.4	10.0	11.7	8.5	11.7	17.5	15.9	5.0	37.1	(21)

주: 가구 형태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진화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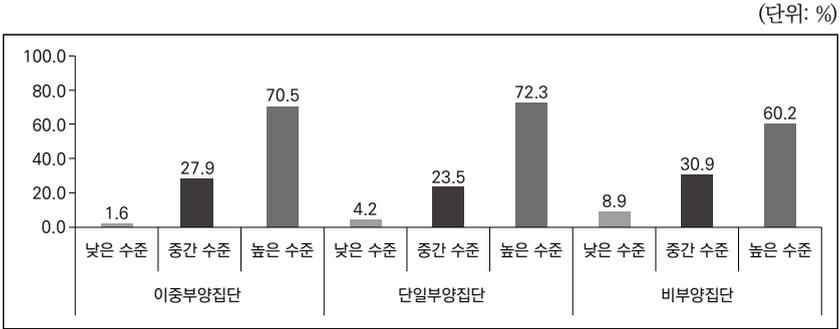
나. 이중부양 부담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변화

가족건강성은 가족의 내부 자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개념이다.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다르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상 가정 혹은 비정상 가정이라는 정태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가족원의 적응력과 응집력, 그리고 융통성과 자율성 등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외부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Olson, Russell, & Sprenkle, 1983, pp. 4-7; Beavers & Voeller, 1983, pp. 85-98). 즉 이 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성을 가족 위기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잘 빠르게 적응하여 상황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적응력과 더불어 가족 성원들이 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앞에 응집하되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둔다.¹⁰⁾ 가족건강성 정도는 총 10점 중에서 0~3점을 가족건강성이 낮은 수준, 4~6점을 가족건강성이 중간인 수준, 7~10점을 가족건강성이 높은 수준으로 분류한다.

중·장년층의 가족건강성을 이중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비부양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집단별로 가족건강성은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으로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응답은 단일부양집단이 72.3%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이중부양집단 70.5%, 비부양집단 60.2% 순으로 비부양집단이 이중부양집단과 단일부양집단에 비해 비율이 낮았다. 평균 점수도 이중부양집단과 단일부양집단은 각 7.4점인 데 비해 비부양집단은 6.8점이었다.

10) 적응력과 응집성 및 자율성을 건강한 가족의 요건으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한다. 구체적인 척도의 기본개념으로 "① 가정생활이 원만하다 ②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 ③ 가정 구성원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로 구성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가족건강성은 0점(매우 건강하지 않음)~10점(매우 건강함)으로 개별 가구의 주관적 가족건강성을 측정한다. 이 척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바 있는 가족실태조사(2012년, 2015년)에서 우리나라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여 검증된 척도로 본 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림 4-32]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집단별 가족건강성 수준 비교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중·장년층 가족의 특성별로 집단별 가족건강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단일부양집단 내 농·어·산촌 지역에서 가족건강성을 높게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77.7%) 도시 지역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는 단일부양집단 내 여성이 가족건강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73%) 남성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단일부양집단에서 특이성이 나타나서 45~54세의 경우 가족건강성을 높게 평가한 비율이 77.7%였다. 55~64세는 64.3%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모든 집단에서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중부양집단과 비부양집단에서 (전문) 대학 이상인 경우 가족건강성을 높게 평가한 비율이 72.6~80.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별 가족건강성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중부양과 단일부양집단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800만 원 이상의 최상위 소득집단에서 가족건강성을 높게 평가한 비율이 82.7~92.3%로 다른 집단과 비교해 매우 높았다. 비부양집단의 경우에도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그 이하 소득층에 비해 가족건강성을 높게 평가했다. 가구 형태에 따른 집단별 가족건강성의 경우 이중부양집단은 전체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단일부양 및 비부양집단에서는 가구 형태별로 특이성이 나타났다. 단일부양과 비부양집단에서 가족건강성을 높게 평가한 경우는 (한)부모+미혼 자녀 가구로 74.3~76.5% 분포를 보여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비부양집단에 비해 이중부양집단과 단일부양집단의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응집력이 높은 가족 즉 가족건강성 높은 집단의 경우 부양 부담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더 높기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부양과 가족건강성의 관계는 일방향의 해석보다는 양방향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6〉 중 장년층 가족의 특성 및 부양집단별 가족건강성 수준 비교

(단위: %, 명, 점)

구분	이중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비부양집단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계(수)	χ^2	F(t)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계(수)	χ^2	F(t)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계(수)	χ^2	F(t)	
전체	1.6	27.9	70.5	100.0(395)		7.4	4.2	23.5	72.3	100.0(378)		7.4	8.9	30.9	60.2	100.0(226)		6.8	
지역																			
도시(시부)	1.7	27.2	71.1	100.0(371)	1.797	7.4 (0.552)	4.0	24.5	71.5	100.0(333)	2.237	7.4 (-0.766)	8.5	32.2	59.3	100.0(200)	1.150	6.7 (-0.497)	
농·어·산촌(군부)	0.0	39.1	60.9	100.0(24)		7.2	5.9	16.5	77.7	100.0(45)		7.7	11.9	21.3	66.8	100.0(26)		7.2	
응답자의 성별																			
남성	2.5	28.4	69.1	100.0(152)		7.4 (-0.196)	4.5	23.8	71.7	100.0(205)		7.4 (-0.538)	9.6	30.5	59.9	100.0(113)		6.9 (0.208)	
여성	1.0	27.6	71.4	100.0(243)	2.115	7.4	3.8	23.2	73.0	100.0(172)	0.067	7.5	8.3	31.2	60.4	100.0(113)	0.222	6.7	
응답자의 연령																			
45~54세	2.4	25.7	71.9	100.0(144)		7.4 (0.698)	3.0	19.3	77.7	100.0(224)	8.276*	7.6 (2.329*)	6.7	31.6	61.6	100.0(116)	1.135	6.9 (0.601)	
55~64세	1.1	29.1	69.7	100.0(251)	0.892	7.3	6.0	29.7	64.3	100.0(153)		7.2	11.3	30.1	58.6	100.0(110)		6.7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6.6	40.5	52.9	100.0(21)		6.5	3.9	23.5	72.6	100.0(57)		7.7	23.3	32.2	44.5	100.0(49)		6.0	
고등학교	2.1	29.7	68.2	100.0(135)	6.098	7.2 3.721*	6.6	33.1	60.4	100.0(131)	16.066**	7.1 5.089**	6.5	36.9	56.6	100.0(89)	22.876**	6.6 6.263**	
(전문)대학 이상	0.8	25.8	73.4	100.0(239)		7.5	2.7	16.9	80.4	100.0(189)		7.6	3.4	24.1	72.6	100.0(88)		7.3	

구분	이중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비부양집단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계(수)	χ^2	평균	F(t)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계(수)	χ^2	평균	F(t)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계(수)	χ^2	평균	F(t)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6.2	55.9	37.9	100.0(22)		6.1		15.8	32.0	52.2	100.0(50)		6.8		24.9	42.5	32.6	100.0(61)		5.0		
200만 ~ 299만 원	2.7	34.4	62.9	100.0(37)		6.9		1.9	28.1	70.0	100.0(44)		7.1		12.8	46.6	40.6	100.0(29)		6.0		
300만 ~ 399만 원	1.8	32.9	65.3	100.0(56)		7.2		4.3	30.8	64.9	100.0(48)		7.3		0.0	31.4	68.6	100.0(40)		7.3		
400만 ~ 499만 원	0.0	35.8	64.2	100.0(50)	31.720**	7.4	3.119**	3.2	25.8	71.0	100.0(53)	41.527***	7.6	2.027	0.0	16.0	84.0	100.0(23)	49.102***	8.2	8.851***	
500만 ~ 599만 원	0.0	24.4	75.6	100.0(67)		7.6		0.0	34.6	65.4	100.0(53)		7.4		0.0	23.9	76.1	100.0(19)		7.8		
600만 ~ 699만 원	3.6	24.8	71.6	100.0(28)		7.4		6.7	7.8	85.5	100.0(29)		7.9		0.0	35.5	64.5	100.0(8)		7.3		
700만 ~ 799만 원	5.9	19.5	74.6	100.0(31)		7.5		0.0	22.6	77.4	100.0(21)		7.2		0.0	14.3	85.7	100.0(9)		7.4		
800만 원 이상	0.0	17.3	82.7	100.0(92)		7.8		1.5	6.2	92.3	100.0(50)		8.1		0.0	25.5	74.5	100.0(22)		8.0		
가구 형태																						
1인가구	0.0	13.6	86.4	100.0(6)		8.1		18.5	29.8	51.7	100.0(26)		6.6		24.6	38.5	37.0	100.0(51)		5.3		
부부가구	1.9	27.0	71.0	100.0(51)		7.5		2.4	31.1	66.4	100.0(65)		7.2		6.8	24.9	68.3	100.0(81)		7.3		
(한)부모+미혼 자녀	1.2	25.2	73.6	100.0(274)	11.123	7.4	1.586	3.8	19.7	76.5	100.0(233)	19.993*	7.6	1.563	0.0	25.7	74.3	100.0(70)	40.450***	7.4	8.183***	
3세대 가구	1.9	39.6	58.5	100.0(43)		7.3		0.0	29.5	70.5	100.0(28)		7.6		0.0	42.3	57.7	100.0(11)		7.0		
기타가구	4.8	46.2	49.0	100.0(21)		6.5		2.6	26.4	71.0	100.0(25)		7.5		17.1	56.5	26.3	100.0(13)		6.1		

주: 1) 가족건강성이 낮은 수준 0~3점, 중간 수준 4~6점, 높은 수준 7~10점을 말함.

2)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3)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4.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장년층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하여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 395명의 가족관계를 살펴보았다. 가족관계 지표로는 가족 간의 갈등 경험 정도와 가족관계 만족도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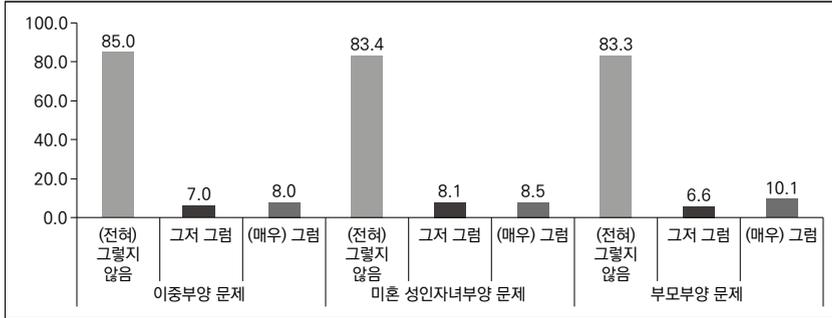
가. 이중부양과 가족 갈등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가족 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심한 갈등을 경험한 비율을 이중부양 문제, 미혼 성인자녀 부양 문제, 부모부양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중부양 문제로 갈등을 (전혀+별로)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85%로 다수에 해당되었다. (매우+대체로) 경험한 경우는 8%, 그저 그렇고 7% 분포를 보였다. 미혼 성인자녀 부양 문제로 갈등을 (전혀+별로)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8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대체로) 경험한 경우는 8.5%, 그저 그렇고 8.1%로 미미하였다. 부모부양 문제로 갈등을 (전혀+별로)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83.3%로 다수의 분포를 보였고, (매우+대체로) 경험한 경우는 10.1%, 그저 그렇고 6.6%였다.

전반적으로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 가족 중에서 지난 1년간 가족 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이중부양 문제가 8%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부모부양 문제로 인한 갈등이 미혼 성인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보다 1.6%포인트 높았다.

[그림 4-33] 지난 1년간 부양 문제로 가족 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심한 갈등을 경험한 비율 (단위: %)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중·장년층 가족의 특성별로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가족 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심한 갈등을 경험한 비율을 이중부양 문제, 미혼 성인자녀 부양 문제, 부모부양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이중부양 문제로 갈등을 (매우+대체로) 경험한 비율은 도시 지역 거주자가 농·어·산촌 거주자보다 약 2배 높았다. 그중에서 미혼 성인자녀 부양 문제와 부모부양 문제로 갈등을 (매우+대체로) 경험한 비율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이중부양 문제로 갈등을 (매우+대체로) 경험한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차이가 미미하였다. 미혼 성인자녀 부양 문제와 부모부양 문제로 갈등을 (매우+대체로) 경험한 비율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이중부양 문제로 갈등을 (매우+대체로) 경험한 비율은 55~64세 연령층이 45~54세 연령층보다 높았으나 차이가 적었다. 미혼 성인자녀부양 문제와 부모부양 문제로 갈등을 (매우+대체로) 경험한 비율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형제자매 순위별로는 이중부양 문제로 갈등을 (매우+대체로) 경험한 비율은 차남 이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장녀, 차녀 이하, 장남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미혼 성인자녀 부양 문제로 갈등을 (매우+대체로) 경험한 비율은 장녀가 가장 높았다. 이어

차남 이하, 차녀 이하, 장남 순으로 높았다. 부모부양 문제로 갈등을 (매우+대체로) 경험한 비율은 차녀 이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장녀, 차남 이하, 장남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양자가 장남보다 차남 또는 딸인 경우 부양으로 인한 가족 갈등이 다소 높아서 장남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에서 오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이중부양 문제로 갈등을 (매우+대체로) 경험한 비율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 중 미혼 성인자녀 부양 문제와 부모부양 문제 모두 갈등을 (매우+대체로) 경험한 비율은 중학교 이하가 다른 학력에 비해 높았다. 다음은 (전문) 대학 이상, 고등학교 순으로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형태별로는 이중부양 문제로 갈등을 (매우+대체로) 경험한 비율은 3세대 가구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한) 부모+미혼 자녀 가구, 부부 가구 순으로 높았다. 미혼 성인자녀 부양 문제로 갈등을 (매우+대체로) 경험한 비율도 이중부양 문제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부모부양 문제로 갈등을 (매우+대체로) 경험한 비율은 3세대 가구, 부부 가구, 기타 가구, (한) 부모+미혼 자녀 가구 순으로 높아서 대체로 3세대 가구와 핵가족 형태에서 갈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4-27〉 지난 1년간 부양 문제로 가족 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심한 갈등을 경험한 비율

구분	이중부양 문제										미혼 성인 자녀 부양 문제										부양부양 문제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지 않음	매우 그렇지 않음	계(수)	χ^2	F(0)	전혀 있음	별로 그렇지 있음	그저 그렇지 있음	대체로 그렇지 있음	매우 그렇지 있음	계(수)	χ^2	F(0)	전혀 있음	별로 그렇지 있음	그저 그렇지 있음	대체로 그렇지 있음	매우 그렇지 있음	계(수)	χ^2	F(0)	전혀 없음	별로 그렇지 없음	그저 그렇지 없음	대체로 그렇지 없음	매우 그렇지 없음	계(수)	χ^2	F(0)	
전체	66.8	18.2	7.0	7.7	0.3	100.0(393)	1.6		68.2	15.2	8.1	7.9	0.6	100.0(395)	1.6		65.6	17.7	6.6	8.8	1.3	100.0(394)	1.6		65.6	17.7	6.6	8.8	1.3	100.0(394)	1.6		
지역																																	
도시(사부)	66.3	18.7	6.8	8.0	0.3	100.0(369)	3.094	0.595)	68.3	14.8	8.4	7.9	0.6	100.0(371)	1.172	0.322)	65.7	18.0	6.0	8.9	1.4	100.0(370)	4.692	0.322)	65.7	18.0	6.0	8.9	1.4	100.0(370)	4.692	0.322)	
농·어·산촌(군부)	74.3	10.3	11.2	4.2	0.0	100.0(24)	1.5		66.7	22.7	3.5	7.2	0.0	100.0(24)	1.5		64.7	12.2	16.2	7.0	0.0	100.0(24)	1.7		64.7	12.2	16.2	7.0	0.0	100.0(24)	1.7		
응답자의 성별																																	
남성	72.3	16.2	3.9	7.0	0.7	100.0(150)	7.116	1.504)	72.7	14.8	5.4	7.2	0.0	100.0(152)	4.572	1.734)	69.9	17.9	4.0	6.8	1.3	100.0(150)	4.325	1.734)	69.9	17.9	4.0	6.8	1.3	100.0(150)	4.325	1.734)	
여성	63.3	19.5	9.0	8.2	0.0	100.0(242)	1.6		65.4	15.5	9.8	8.3	1.0	100.0(243)	1.6		62.9	17.5	8.3	10.0	1.3	100.0(243)	1.7		62.9	17.5	8.3	10.0	1.3	100.0(243)	1.7		
응답자의 연령																																	
45~54세	67.3	18.2	7.4	7.0	0.0	100.0(144)	0.818	0.389)	66.9	16.6	9.0	6.5	1.0	100.0(144)	1.528	0.100)	66.2	19.6	6.7	7.4	0.0	100.0(144)	3.803	0.100)	66.2	19.6	6.7	7.4	0.0	100.0(144)	3.803	0.100)	
55~64세	66.4	18.2	6.8	8.2	0.4	100.0(249)	1.6		68.9	14.5	7.6	8.6	0.4	100.0(251)	1.6		65.3	16.5	6.6	9.6	2.0	100.0(250)	1.7		65.3	16.5	6.6	9.6	2.0	100.0(250)	1.7		
응답자의 형태·자매 순위																																	
장남	73.4	19.9	1.5	5.2	0.0	100.0(67)	1.4		75.2	16.8	1.5	6.5	0.0	100.0(67)	1.4		73.4	15.4	4.5	6.7	0.0	100.0(67)	1.4		73.4	15.4	4.5	6.7	0.0	100.0(67)	1.4		
장녀	63.2	19.3	9.2	8.3	0.0	100.0(96)	1.6	1.115	60.8	14.8	12.5	9.4	2.5	100.0(96)	14.683	2.329	65.5	13.7	9.8	9.9	1.0	100.0(96)	8.476	2.329	65.5	13.7	9.8	9.9	1.0	100.0(96)	8.476	2.329	
차남 이하	71.5	13.2	5.8	8.4	1.2	100.0(83)	1.5		70.7	13.1	8.4	7.7	0.0	100.0(85)	1.5		67.1	20.0	3.6	6.9	2.4	100.0(83)	1.6		67.1	20.0	3.6	6.9	2.4	100.0(83)	1.6		
차녀 이하	63.4	19.6	8.9	8.1	0.0	100.0(146)	1.6		68.4	16.0	8.0	7.5	0.0	100.0(147)	1.5		61.2	20.1	7.3	10.1	1.4	100.0(147)	1.7		61.2	20.1	7.3	10.1	1.4	100.0(147)	1.7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55.0	27.1	4.2	13.7	0.0	100.0(21)	1.8		75.7	13.7	0.0	4.0	6.6	100.0(21)	1.5		60.3	27.6	0.0	7.1	5.0	100.0(21)	1.7		60.3	27.6	0.0	7.1	5.0	100.0(21)	1.7		
고등학교	66.0	17.9	7.7	8.4	0.0	100.0(134)	3.888	0.624	67.1	13.3	12.1	6.8	0.7	100.0(135)	14.985	0.135	65.2	20.6	7.1	6.3	0.7	100.0(134)	9.390	0.135	65.2	20.6	7.1	6.3	0.7	100.0(134)	9.390	0.135	
(전문)대학 이상	68.2	17.6	6.9	6.8	0.4	100.0(238)	1.5		68.2	16.5	6.6	8.8	0.0	100.0(239)	1.6		66.3	15.2	6.9	10.3	1.3	100.0(238)	1.7		66.3	15.2	6.9	10.3	1.3	100.0(238)	1.7		

(단위: %, 명, 점)

구분	이혼부양 문제						미혼 성인 자녀 부양 문제						부모부양 문제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렇음	대체로 그렇음	매우 그렇음	계(수)	평균	F(t)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렇음	대체로 그렇음	매우 그렇음	계(수)	평균	F(t)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렇음	대체로 그렇음	매우 그렇음	계(수)	평균	F(t)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6.3	20.4	21.3	12.0	0.0	100.0(22)	2.0		67.5	12.6	10.7	2.9	6.2	100.0(22)	1.7		58.7	19.6	0.0	21.7	0.0	100.0(22)	1.8		
200만~299만원	71.2	12.0	5.2	8.8	2.8	100.0(36)	1.6		68.7	13.3	4.5	13.5	0.0	100.0(37)	1.6		65.2	14.9	12.5	4.7	2.7	100.0(37)	1.6		
300만~399만원	66.2	20.8	6.6	6.4	0.0	100.0(50)	1.5		68.2	10.2	13.4	8.2	0.0	100.0(56)	1.6		63.7	26.1	5.2	3.1	1.9	100.0(56)	1.5		
400만~499만원	74.1	14.6	7.3	3.9	0.0	100.0(50)	1.4	0.844	78.1	13.4	5.1	3.3	0.0	100.0(50)	1.3	0.648	77.6	9.4	5.7	7.2	0.0	100.0(50)	1.4	0.869	
500만~599만원	65.1	17.9	9.5	7.5	0.0	100.0(67)	1.6		68.2	17.8	7.5	6.5	0.0	100.0(67)	1.5		59.4	19.8	11.8	7.5	1.5	100.0(67)	1.7		
600만~699만원	61.7	25.5	5.5	7.3	0.0	100.0(27)	1.6		61.7	20.5	7.1	10.7	0.0	100.0(28)	1.7		76.5	10.7	3.7	9.1	0.0	100.0(27)	1.5		
700만~799만원	68.0	16.3	6.5	9.2	0.0	100.0(31)	1.6		71.6	6.0	10.0	12.4	0.0	100.0(31)	1.6		71.2	9.8	6.5	12.4	0.0	100.0(31)	1.6		
800만원 이상	67.1	18.6	4.2	10.0	0.0	100.0(92)	1.6		63.3	18.3	8.6	8.8	1.1	100.0(92)	1.7		61.2	18.7	5.4	12.5	2.2	100.0(92)	1.8		
가구 형태																									
1인가구	100.0	0.0	0.0	0.0	0.0	100.0(6)	1.0		100.0	0.0	0.0	0.0	0.0	100.0(6)	1.0		77.6	22.4	0.0	0.0	0.0	100.0(6)	1.2		
부부가구	55.1	24.7	13.4	6.7	0.0	100.0(51)	1.7		58.3	21.4	14.8	5.5	0.0	100.0(51)	1.7		54.1	26.8	9.1	10.0	0.0	100.0(51)	1.8		
총부모+미혼자녀	69.3	16.6	6.8	7.2	0.0	100.0(27)	1.5	2.295	68.5	14.7	8.5	7.7	0.5	100.0(27)	1.6	1.498	68.9	15.8	6.7	7.8	0.8	100.0(27)	1.6	2.334	
3세대 가구	56.6	23.5	0.0	17.5	2.4	100.0(42)	1.9		66.6	13.8	2.4	14.8	2.4	100.0(43)	1.7		53.5	20.2	4.7	14.5	7.1	100.0(43)	2.0		
기타가구	72.1	17.9	10.0	0.0	0.0	100.0(20)	1.4		81.8	14.7	0.0	3.5	0.0	100.0(21)	1.3		72.1	13.7	5.0	9.2	0.0	100.0(20)	1.5		

주: 1)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2)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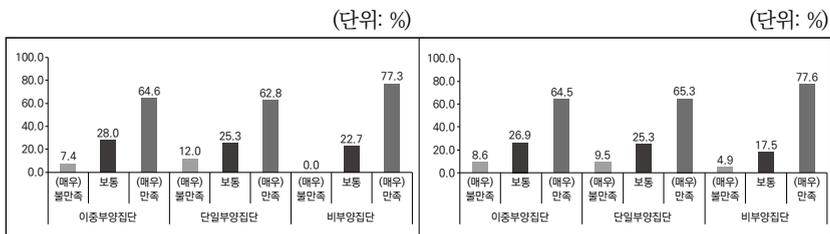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혼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나. 이증부양과 가족관계

이증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 395명을 대상으로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의 가족관계 만족도,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단일부양집단 및 비부양집단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이증부양집단(매우+대체로) 만족하다가 64.6%로 절반을 훨씬 상회하였고, 보통은 28.0%, (매우+다소) 불만족은 7.4%로 미미하였다. 단일부양집단은 (매우+대체로) 만족하다 62.8%, 보통 25.3%, (매우+다소) 불만족은 12.0%였다. 비부양집단은 (매우+대체로) 만족이 77.3%로 3분의 2를 훨씬 상회하였고, 보통이 22.7%였으며, (매우+다소) 불만족은 전혀 없었다.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비부양집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증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순으로 높았으며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그림 4-34] 중·장년층의 미혼성인자녀와 [그림 4-35] 중·장년층의 노부모와의 가족관계 만족도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증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 가족관계 만족도는 이증부양집단은 (매우+대체로) 만족하다가 6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통 26.9%, (매우+다소) 불만족이 8.6%로 미미하였다. 단일부양집단은 (매우+대체로) 만족하

는 비율이 65.3%, 보통 25.3%, (매우+다소) 불만족이 9.5% 순으로 높았다. 비부양집단은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7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 17.5%, (매우+다소) 불만족이 4.9%로 낮았다.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비부양집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단일부양집단, 이증부양집단 순으로 높았으나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이증부양집단과 비부양집단에서는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에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단일부양집단에서는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에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미혼 성인자녀보다 다소 높았다.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모든 피부양자에서 비부양집단이 가장 높았다.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이증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비부양집단과 특성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지역별로는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가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이증부양집단과 비부양집단 모두 도시 거주자가 농·어·산촌 거주자보다 높았다. 단일부양집단은 농·어·산촌 거주자가 도시 거주자보다 높아서 부양 유형별로 가족관계 만족도는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가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만족도는 비부양집단, 이증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가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45~54세 연령층이 55~64세 연령층보다 높았다. 만족도는 비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이증부양집단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최종 학력별로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가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이중부양집단과 비부양집단은 고등학교 이상이 중학교 이하보다 높았다. 단일부양집단은 (전문) 대학 이상과 중학교 이하가 고등학교보다 높은 분포를 보여서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만족도는 중학교 이하는 단일부양집단이 높았고, 고등학교 이상은 비부양집단이 높았다. 중학교 이하와 (전문) 대학 이상 학력층에서 이중부양집단이 가장 낮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가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이중부양집단의 경우 부부 가구와 (한)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높았다. 단일부양집단은 1인 가구, 부부 가구, 3세대 가구, 기타 가구에서 높았다. 비부양집단은 (한)부모+미혼 자녀 가구 및 기타 가구에서 높았다. 만족도는 3세대 가구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에서 비부양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중부양집단은 1인 가구, 3세대 가구 및 기타 가구에서 가장 낮았다.

〈표 4-28〉 중 장년층 가족의 특성별 미혼 성인자녀와의 가족관계 만족도 비교

(단위: %, 명, 점)

구분	이중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비부양집단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F(t)	평균	χ ²	계(수)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F(t)	평균	χ ²	계(수)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F(t)	
전체	1.2	6.2	28.0	43.5	21.1	100.0 (994)	3.8		100.0 (149)	1.1	10.9	25.3	27.7	35.1	100.0 (149)	3.8		100.0 (17)	0.0	0.0	22.7	69.7	7.6	100.0 (17)	3.8
지역																									
도시(사부)	1.0	5.9	28.1	45.1	19.9	100.0 (571)	3.8		100.0 (132)	1.3	11.6	26.6	26.4	34.1	100.0 (132)	3.8		100.0 (15)	0.0	0.0	20.5	70.9	8.7	100.0 (15)	3.9
농어·산촌(군부)	3.5	10.6	27.1	19.6	39.2	100.0 (24)	3.8	9.643* (-0.138)	100.0 (17)	0.0	4.9	14.8	37.2	43.1	100.0 (17)	4.2	1.782 (-1.405)	100.0 (2)	0.0	0.0	38.9	61.1	0.0	100.0 (2)	3.6
응답자의 성별																									
남성	1.9	7.4	28.9	39.4	22.4	100.0 (151)	3.7		100.0 (70)	2.3	14.0	23.5	30.8	29.4	100.0 (70)	3.7		100.0 (9)	0.0	0.0	31.2	54.6	14.2	100.0 (9)	3.8
여성	0.7	5.5	27.5	46.1	20.2	100.0 (243)	3.8		100.0 (78)	0.0	8.0	26.9	24.9	40.2	100.0 (78)	4.0	5.862 (-1.535)	100.0 (8)	0.0	0.0	13.0	87.0	0.0	100.0 (8)	3.9
응답자의 연령																									
45~54세	0.0	5.8	23.5	51.1	19.7	100.0 (144)	3.8		100.0 (40)	0.0	9.1	17.6	23.5	49.8	100.0 (40)	4.1		100.0 (6)	0.0	0.0	0.0	100.0	0.0	100.0 (6)	4.0
55~64세	1.8	6.5	30.7	39.2	21.9	100.0 (250)	3.7	8.063 (1.326)	100.0 (108)	1.5	11.5	28.1	29.2	29.7	100.0 (108)	3.7	5.990 (2.053*)	100.0 (11)	0.0	0.0	35.0	53.3	11.7	100.0 (11)	3.8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4.0	7.7	30.4	27.9	30.0	100.0 (21)	3.7		100.0 (36)	0.0	2.3	35.3	31.7	30.7	100.0 (36)	3.9		100.0 (6)	0.0	0.0	39.6	60.4	0.0	100.0 (6)	3.6
고등학교	1.2	5.5	26.7	44.3	22.3	100.0 (134)	3.8	4.476 (0.211)	100.0 (50)	3.3	12.2	27.5	25.7	31.3	100.0 (50)	3.7	12.309 (0.784)	100.0 (7)	0.0	0.0	24.9	63.3	11.7	100.0 (7)	3.9
(전문대학 이상)	0.9	6.5	28.6	44.5	19.6	100.0 (239)	3.8		100.0 (63)	0.0	14.6	17.8	27.0	40.6	100.0 (63)	3.9		100.0 (5)	0.0	0.0	0.0	89.8	10.2	100.0 (5)	4.1

224 **아 조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구분	이중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비부양집단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	평균	F(t)	χ ²	계(수) (%)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	χ ²	평균	F(t)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2.9	2.9	51.5	27.8	14.9	100.0 (22)	3.5		0.0	15.2	26.9	28.6	29.3	100.0 (17)	100.0 (5)	0.0	14.1	85.9	0.0	100.0 (5)	3.9
200만~299만 원	2.2	5.3	26.4	42.8	23.3	100.0 (37)	3.8		3.5	6.7	37.2	38.3	14.2	100.0 (23)	100.0 (2)	0.0	34.2	65.8	0.0	100.0 (2)	3.7
300만~399만 원	1.5	7.3	32.8	46.0	12.4	100.0 (56)	3.6		0.0	8.0	37.5	25.6	28.9	100.0 (24)	100.0 (2)	0.0	31.0	69.0	0.0	100.0 (2)	3.7
400만~499만 원	0.0	7.0	31.3	36.8	24.9	100.0 (50)	3.8	0.859	3.7	20.3	19.2	18.1	38.8	100.0 (22)	100.0 (1)	0.0	0.0	100.0	0.0	100.0 (1)	4.0
500만~599만 원	0.0	6.0	26.0	44.0	24.0	100.0 (67)	3.9	22.080	0.0	23.7	24.3	30.4	21.6	100.0 (17)	100.0 (1)	0.0	0.0	100.0	0.0	100.0 (1)	4.0
600만~699만 원	0.0	6.4	18.8	51.3	23.5	100.0 (28)	3.9		0.0	0.0	20.3	36.8	42.9	100.0 (8)	100.0 (1)	0.0	0.0	100.0	0.0	100.0 (1)	4.0
700만~799만 원	2.6	3.3	32.6	47.7	13.8	100.0 (31)	3.7		0.0	0.0	8.3	26.5	65.2	100.0 (8)	100.0 (0)	0.0	0.0	0.0	0.0	100.0 (0)	0.0
800만 원 이상	1.6	7.5	23.3	46.7	21.0	100.0 (92)	3.8		0.0	12.2	11.3	40.4	36.1	100.0 (11)	100.0 (2)	0.0	78.5	0.0	21.5	100.0 (2)	3.4
가구 형태																					
1인가구	0.0	0.0	52.2	31.6	16.2	100.0 (6)	3.6		0.0	0.0	31.4	43.9	24.7	100.0 (7)	100.0 (3)	0.0	27.8	72.2	0.0	100.0 (3)	3.7
부부가구	1.6	4.8	23.8	53.1	16.6	100.0 (51)	3.8		0.0	13.3	23.1	37.5	26.1	100.0 (33)	100.0 (9)	0.0	29.0	55.7	15.3	100.0 (9)	3.9
(한)부모+미혼자녀	1.1	5.4	28.2	45.8	21.5	100.0 (274)	3.8	0.398	1.6	10.3	26.9	24.3	36.8	100.0 (100)	100.0 (5)	0.0	15.1	84.9	0.0	100.0 (5)	3.8
3세대가구	1.9	15.1	23.0	39.3	20.7	100.0 (43)	3.6		0.0	28.6	0.0	0.0	71.4	100.0 (5)	100.0 (0)	0.0	0.0	0.0	0.0	100.0 (0)	0.0
기타가구	0.0	4.0	39.2	29.0	27.8	100.0 (21)	3.8		0.0	0.0	22.2	37.5	40.3	100.0 (4)	100.0 (1)	0.0	0.0	100.0	0.0	100.0 (1)	4.0

주: 1)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2)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전화 조사 결과임.

한편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지역별로는 단일부양 및 비부양집단의 경우 농촌 지역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도시지역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는 비부양집단을 제외하고 이증부양집단과 단일부양집단에서 남성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령별로는 비부양집단에서 세부 집단에 따른 특이성이 나타났다. 45~54세는 가족관계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약 82%, 55~64세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약 6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분포의 차이가 나타났다.

최종 학력별로는 단일부양집단에서만 분포의 특이성이 나타났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해 (전문) 대학 이상 집단의 (매우) 만족 비율은 약 70%인 반면, 중학교 이하 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약 4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비부양집단에서 특이성이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 점수는 유사했으나 만족도 분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구체적으로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500만 원 이상 소득층이 그 아래 소득층보다 높아서 고소득층인 비부양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고소득층 이증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과 비교해도 고소득층 비부양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이증부양집단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1인 가구에서 유의미하게 높았고, 단일부양집단의 경우 기타 가구 및 3세대 가구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비부양집단의 경우는 가족관계 만족도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만족도 분포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부모+미혼 자녀의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약 90%로 전체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4-29〉 중 장년층 가족의 특성별 노부모와의 가족관계 만족도 비교

구분	이중부양집단										단일부양집단										F(t)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χ ²	F(t)	평균	개수	비율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χ ²	F(t)	평균	개수	비율			
성별	2.2	6.4	26.9	43.7	20.8	100.0(933)	3.7	2.0	7.5	25.3	39.7	25.6	100.0(924)	3.8	1.4	3.5	17.5	38.5	39.1	100.0(99)	4.1		
지역	1.8	6.3	26.8	44.2	20.9	100.0(970)	3.8	2.2	7.5	24.3	41.6	24.3	100.0(962)	3.8	1.5	3.9	18.6	38.1	37.9	100.0(89)	4.1	(-1.133)	
노·아·신촌(군)부	8.7	8.9	29.0	34.5	18.9	100.0(24)	3.5	0.0	7.1%	33.1	24.5	35.3	100.0(32)	3.9	0.0	0.0	8.4	41.8	49.8	100.0(10)	4.4		
응답자의 성별	0.9	5.5	20.7	46.1	26.8	100.0(151)	3.9	1.1	3.6	24.9	41.7	28.7	100.0(65)	3.9	2.5	3.7	20.3	39.4	34.1	100.0(56)	4.0	(-1.429)	
여성	3.0	7.0	30.8	42.1	17.0	100.0(242)	3.6	3.1	12.4	25.9	37.1	21.5	100.0(130)	3.6	0.0	3.2	13.9	37.3	45.5	100.0(43)	4.3		
응답자의 연령	1.7	5.6	21.5	49.4	21.9	100.0(144)	4.991	1.2	6.8	23.7	41.2	27.1	100.0(210)	3.9	1.9	4.2	12.1	46.2	35.5	100.0(71)	4.1	(-0.202)	
45~54세	2.5	6.9	30.1	40.3	20.2	100.0(249)	3.7	4.0	9.0	29.4	35.9	21.7	100.0(84)	3.6	0.0	1.7	31.3	18.7	48.2	100.0(28)	4.1		
응답자의 최종학력	7.0	12.6	27.7	35.7	17.0	100.0(20)	3.4	0.0	15.1	44.2	30.3	10.5	100.0(28)	3.4	0.0	4.4	32.6	22.7	40.3	100.0(11)	4.0		
중학교 이하	1.4	3.7	32.8	37.9	24.2	100.0(135)	11.588	4.8	5.2	26.2	36.9	27.0	100.0(66)	3.8	3.3	3.4	19.7	33.5	40.0	100.0(41)	6.135	4.0	
고등학교	2.3	7.4	23.6	47.6	19.2	100.0(238)	3.7	0.5	7.6	21.3	43.2	27.3	100.0(60)	3.9	0.0	3.3	12.1	46.5	38.0	100.0(47)	4.2		
월평균 가구소득	0.0	7.0	42.8	35.0	15.3	100.0(21)	3.6	4.8	10.4	33.5	26.7	24.7	100.0(36)	3.6	0.0	0.0	24.2	41.8	33.9	100.0(17)	4.1		
198만원 이하	1.5	4.6	40.6	30.1	23.2	100.0(37)	3.7	0.0	13.1	31.6	40.6	14.7	100.0(27)	3.6	12.3	0.0	30.2	36.2	21.4	100.0(11)	3.5		
200만~299만원	4.2	7.7	25.3	49.1	13.7	100.0(56)	3.6	5.7	1.7	30.9	42.6	19.0	100.0(32)	3.7	0.0	2.1	8.5	32.8	56.7	100.0(23)	4.4		
300만~399만원	2.0	7.9	37.9	36.0	16.2	100.0(50)	3.6	0.0	7.0	20.3	50.7	22.0	100.0(43)	3.9	0.0	0.0	29.3	48.6	22.2	100.0(10)	3.9	1.780	
400만~499만원	0.0	5.1	27.0	47.2	20.7	100.0(67)	3.8	3.5	5.5	23.0	40.7	27.3	100.0(43)	3.8	0.976	0.0	16.4	25.1	58.5	100.0(8)	4.4		
500만~599만원	3.0	0.0	21.9	47.4	27.7	100.0(28)	4.0	0.0	7.1	29.2	36.0	27.6	100.0(28)	3.8	0.0	0.0	27.1	47.7	25.2	100.0(5)	4.0		
600만~699만원	0.0	9.8	26.0	44.5	19.8	100.0(31)	3.7	0.0	19.4	16.0	39.7	24.9	100.0(17)	3.7	0.0	0.0	0.0	41.1	58.9	100.0(7)	4.6		
700만~799만원	4.2	6.7	16.5	50.1	22.4	100.0(91)	3.8	1.8	4.7	12.8	52.0	28.7	100.0(46)	4.0	0.0	24.5	0.0	46.1	29.3	100.0(6)	3.8		
800만원 이상	0.0	0.0	13.6	54.0	32.3	100.0(6)	4.2	4.6	14.7	21.9	34.8	24.0	100.0(19)	3.6	9.8	0.0	20.5	24.3	45.5	100.0(14)	4.0		
가구 형태	1.7	4.7	26.9	46.0	20.7	100.0(270)	30.699*	8.7	7.9	28.5	38.7	16.2	100.0(40)	3.5	0.0	0.0	33.1	19.3	47.6	100.0(24)	4.1		
1인 가구	0.0	0.0	0.0	0.0	0.0	0.0(0)	3.7	0.0	0.0	0.0	0.0	0.0	0.0(0)	3.8	3.233*	0.0	7.5	27.2	42.1	23.2	100.0(62)	33.116**	4.1
부부 가구	1.0	7.4	26.9	46.0	20.7	100.0(270)	30.699*	8.7	7.9	28.5	38.7	16.2	100.0(40)	3.5	0.0	0.0	33.1	19.3	47.6	100.0(24)	4.1	1.037	
(한부모)이혼 자녀	6.0	9.7	12.1	46.1	26.0	100.0(43)	3.8	5.4	5.0	25.3	19.9	44.5	100.0(28)	3.9	0.0	6.8	2.9	49.4	41.0	100.0(44)	26.778*	4.5	
3세대 가구	7.2	21.7	40.1	16.7	14.3	100.0(21)	3.1	0.0	3.4	8.5	49.9	38.2	100.0(25)	4.2	0.0	0.0	26.2	50.2	23.5	100.0(11)	4.0		

주: 1)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2) * p<0.05, ** p<0.01, *** p<0.001, **** p<0.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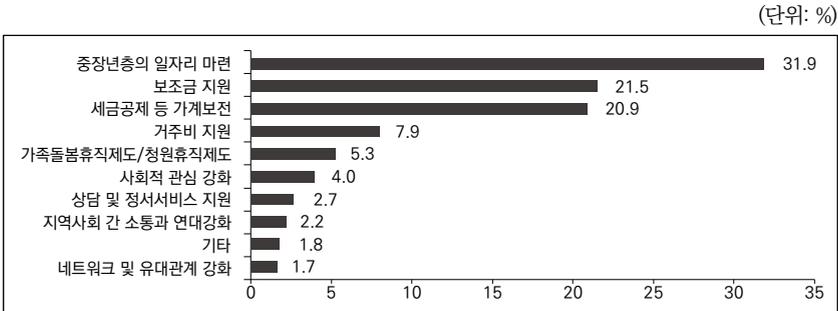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단위: %, 명, 점)

제4절 중·장년층 가족의 정책 욕구

이증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 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1순위 정책 지원을 조사한 결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마련’ 응답이 3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보조금 지원(22%), 세금공제 등 가계보전(21%), 거주비 지원(8%), 가족돌봄휴직제도 및 청원휴직제도(5%), 사회적 관심 강화(4%), 상담 및 정서서비스 지원(3%), 지역사회 간 소통과 연대강화(2%), 네트워크 및 유대관계 강화(2%) 순으로 정책 욕구가 나타났다.

[그림 4-36] 이증부양 중·장년층 가족의 정책 욕구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증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이증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의 특성별 중·장년층 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중·장년 일자리 마련이 가장 높았으며,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12.1%포인트 높았다. 성별의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일자리 마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도 45~54세와 55~64세 모두에서 일자리 마련이 높았다. 55~64세 집단이 2.2%포인트 높았다. 혼인 상태별로는 차이가 나타나 사별·이혼·별거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5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는 다른 정책 욕

구 분포와 동일하게 일자리 마련이 32.9%로 가장 높았다. 최종 학력별로는 학력 차이와 무관하게 1순위 정책 욕구가 모두 일자리 마련이었다. 2순위 정책 욕구는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여 중학교 이하는 거주비 지원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는 세금공제 등 가계보전이, (전문) 대학 이상은 보조금 지원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취업 여부별로는 모두 일자리 마련 욕구가 가장 높았다. 비율은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12.9%포인트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차이가 없이 일자리 마련의 욕구가 가장 높았다. 특히 199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과(54%)과 600만~799만 원의 고소득층(40~50%)에서 비율이 높아 양극적인 특성을 보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3세대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일자리 마련 욕구가 가장 높았다. 3세대 가구는 보조금 지원(28.5%)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이중부양을 수행하고 있는 중·장년층 가족이 20% 이상의 응답 비율을 보인 정책 욕구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마련(32%), 보조금 지원(22%), 세금공제 등 가계보전(21%) 같은 경제적 지원 욕구로 나타났다. 이 중 일자리 마련은 모든 중·장년층 가족에서 일관되게 1순위로 나타났다.

〈표 4-30〉 이중부양 중·장년층 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구분	중·장년층의 일자리 마련	보조금 지원	가주비 지원	세입자 등 가계지원	가족돌봄휴직제도/장원 휴직제도	상담 및 장서비스지원	사회적 관심 강화	지역사회 간 소통과 연대강화	네트워킹 및 유대관계 강화	기타	(단위: %, 명)
											(분석 대상 수)
전체	31.9	21.5	7.9	20.9	5.3	2.7	4.0	2.2	1.7	1.8	(337)
지역											
도시(시부)	32.4	22.0	7.5	21.0	5.2	2.6	3.8	2.3	1.7	1.5	(322)
농·어·산촌(군부)	20.3	10.6	16.2	18.9	6.5	5.5	9.7	0.0	3.2	9.0	(15)
응답자의 성별											
남성	28.8	24.2	9.3	16.8	5.3	2.4	6.6	2.9	1.2	2.5	(123)
여성	33.6	20.0	7.2	23.3	5.3	2.8	2.5	1.8	2.0	1.4	(214)
응답자의 연령											
45~54세	30.5	17.5	6.7	29.7	3.5	3.3	2.6	2.6	2.6	1.0	(132)
55~64세	32.7	24.1	8.7	15.3	6.5	2.3	5.0	1.9	1.2	2.3	(206)
응답자의 혼인상태											
유배우(동거)	32.9	19.5	8.2	21.2	5.4	2.9	4.1	2.3	1.9	1.6	(315)
사별·이혼·별거	16.8	50.0	3.9	17.3	4.6	0.0	2.9	0.0	0.0	4.4	(22)
응답자의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37.8	8.4	16.6	16.5	5.5	5.6	9.6	0.0	0.0	0.0	(15)
고등학교	30.4	20.4	8.9	22.5	8.9	2.9	3.5	1.6	0.9	0.0	(116)
(전문)대학 이상	32.2	23.1	6.7	20.4	3.3	2.4	3.9	2.7	2.4	3.0	(206)
응답자의 취업 여부											
취업	27.5	25.4	9.9	21.9	4.7	2.3	3.4	1.6	1.5	1.8	(223)
비취업	40.4	14.0	4.0	19.0	6.5	3.4	5.4	3.4	2.1	1.8	(114)

구분	중·장년층의 일자리 마련	보조금 지원	거주비 지원	세금공제 등 기타보조	가족돌봄휴 직제도/청원 휴직제도	상담 및 정서서비스 지원	사회적 관심 강화	지역사회 간 소통과 연대강화	네트워크 및 유대관계 강화	기타	(분석 대상 수)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 원 이하	53.5	25.2	12.3	0.0	0.0	0.0	3.5	5.5	0.0	0.0	(18)
200만~299만 원	27.9	24.5	5.7	20.0	8.7	0.0	7.9	0.0	0.0	5.3	(32)
300만~399만 원	26.9	25.1	3.7	14.2	7.8	9.8	5.7	0.0	2.0	4.8	(49)
400만~499만 원	33.8	27.5	15.2	12.3	2.4	2.0	2.0	0.0	2.4	2.4	(42)
500만~599만 원	23.7	21.0	5.4	27.9	4.9	0.0	4.8	6.1	6.1	0.0	(55)
600만~699만 원	50.2	10.2	11.6	20.2	3.7	0.0	0.0	4.1	0.0	0.0	(24)
700만~799만 원	40.4	18.6	0.0	26.8	6.7	0.0	0.0	7.4	0.0	0.0	(27)
800만 원 이상	29.5	19.2	10.0	27.1	4.8	4.2	3.4	0.0	0.6	1.2	(80)
가구 형태											
1인 가구	32.8	0.0	0.0	42.5	0.0	0.0	24.7	0.0	0.0	0.0	(6)
부부 가구	34.4	22.2	14.5	17.9	2.2	4.9	2.7	0.0	1.3	0.0	(38)
(형)부모+미혼 자녀	32.8	20.6	8.1	20.6	5.2	3.0	3.7	3.1	1.4	1.5	(240)
3세대 가구	21.1	28.5	4.6	28.2	4.6	0.0	1.8	0.0	5.0	6.0	(39)
기타 가구	38.9	24.8	0.0	6.7	18.1	0.0	11.3	0.0	0.0	0.0	(15)

주: 가구 형태의 기타에는 조부모+손자녀 포함됨.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제5절 시사점

1.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분포 및 특성 변화 추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장년층(45~64세) 중에서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이중부양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분포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8~2016년까지 9년간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분포는 약 19% 증가를 보였다. 그중 55~64세 연령층이 45~54세 연령층보다 이중부양의 증가폭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 지역 거주 가족, 5인 이상 가구, 1세대 가족, 4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가족에서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장년층 중에서는 남성, 유배우자, 고학력 소지자인 경우 이중부양 증가폭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중·장년층 인구 중에서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 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2016년 기준으로 55~64세 연령층(76%)이 45~54세 연령층(24%)보다 3.2배 높았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인 45~54세와 55~64세 연령층의 진입에 따른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중부양하는 비율은 도시 거주 가족, 2~4인 가구, 1~2세대, 300만 원 이하 소득층의 경우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들 가족의 경우 이중부양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300만 원대 이하 소득층이 절반을 훨씬 상회하여 저소득층에서 이중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의 분포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대다수가 유배우자(동거)였으나 10%는 해체가족으로 나타나 경제 및 비경제부양에서 이중부양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으로 오면서 중학교 이

하의 저학력 소지자는 점차 감소하고, 고등학교 이상은 증가하여 고등학교 이하와 (전문) 대학 이상 간의 차이는 2016년에 4.1배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중부양 부담 가구 중 대다수가 저학력 소지자로 나타나 학력과 직업 및 재산 등의 자원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적 부양에서의 어려움이 예측된다.

2.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유형별 변화 추이 및 실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통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실태를 경제 부양과 비경제부양 측면에서 변화 양상과 부양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간의 경제적 부양 유형별 교환 추이는 현금지원이 현물지원보다 높았으나, 점차 현금지원은 감소하고 현물지원이 증가하는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수준은 현금지원은 과반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다. 현물지원은 현금지원의 절반 내외 수준으로 비율은 낮았으나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비율은 일관되게 낮은 분포를 보였다.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에 주고받은 현금 수준을 보면 2008년에 중·장년층이 피부양자에게 지원한 평균 금액(91만 6100원)은 피부양자로부터 받은 평균 금액(36만 4300원)에 비해 2.5배 높다가 2016년에는 3.5배(중·장년층이 지원한 금액 103만 8100원, 피부양자에게 받은 금액 29만 3800원)로 나타나서 9년간 중·장년층이 지원한 평균 금액과 받은 평균 금액의 차이는 1.4배까지 벌어졌다. 전화 조사 결과를 통한 현금지원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중·장년층(115만 5000원)이 피부양자(17만 6400원)에게 월평균 97만 8600원(6.6배) 더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은 피부양자보다 정기적으로 55만

6000원, 비정기적으로 42만 6300원 더 많이 지원하여 각각 6.7배와 6.5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통한 비경제적 이중부양을 정서부양과 신체부양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정서부양은 동거 여부와 비동거인 경우 접촉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2008~2016년까지 9년간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자녀,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의 정서부양은 감소하거나 정체 양상을 보였다. 동거 형태는 미혼 성인자녀가 노부모보다 높았으나, 만나거나 연락하는 접촉 정도는 노부모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이 불편한 미혼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신체부양을 경험한 사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노부모를 중심으로 신체부양의 변화 양상을 보면 노부모를 수발한 평균 기간과 시간은 2008년 평균 35주, 평균 22시간에서 2016년 평균 43주, 평균 16시간으로 대체로 평균 수발 기간은 증가했지만, 평균 주당 수발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화 조사 결과를 통한 비경제적 부양 실태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지원한 비경제적 부양은 전반적으로 노부모보다 미혼 성인자녀에게 정서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을 지원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신체적 부양은 미혼 성인자녀보다 노부모에게 약 3배 높은 지원을 보였다. 피부양자 중에는 미혼 성인자녀가 노부모보다 중·장년층에게 비경제적 부양을 지원하는 비율이 모두 높았다. 특히 신체적 부양은 다른 비경제 부양과는 다르게 미혼 성인자녀가 중·장년층보다 지원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양이란 교환적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도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에 주고받는 교환 행태에서 부양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

양은 부양 유형 및 피부양자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부양은 중·장년층이 피부양자보다 지원 비율 및 지원 수준이 높았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경제부양 중에서 정서부양은 감소하거나 정체 수준을 보였다. 노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신체부양은 최근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산과 함께 고소득 가구에서의 간병 인력 활용이 활성화됨에 따른 결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중·장년층이 지원하는 도구부양은 미혼 성인자녀에게, 신체부양은 노부모에게 많이 제공되어 피부양자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이한 것은 신체부양의 경우 중·장년보다 미혼 성인자녀가 지원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신체가 불편한 부모를 자녀가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인 부양관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3.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관련 지표로 이중부양에 지출한 총부양 비용과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경제적 부양에 대한 주관적인 가계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월평균 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약 31%로 3분의 1에 근접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26% 분포를 보였다. 전화 조사 결과를 통하여 부양집단별로 경제적 부양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지출한 총비용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는 이중부양집단이 약 18%로 단일부양집단의 약 10%보다 다소 높았다.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총비용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를 보면 이중부양집단(53%)이 단일부양집단(46%)에 비해 주관적인 가계 부담 정도가 높았다. 중·장년층이 수행한 비

경제적 부양이 미치는 부담 정도에서 이중부양집단(32%)이 단일부양집단(29%)에 비해 주관적인 부담 정도는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여부별 가족경제 수준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총소득과 순자산은 모두 이중부양 가구가 비부양 가구보다 많았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커지며, 두 집단 모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소득 대비 총소비 지출 비율과 총소득 대비 및 생활비 지출 비율은 이중부양 가구보다 비부양 가구에서 지출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중부양 가구의 경우 이중부양을 할 정도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중부담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중부양 가구의 총소득은 45~54세에서 높았으며, 순자산은 55~64세가 높았으나 45~54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5~64세 연령층에서 이중부양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여 45~54세 연령층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편 전화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장년층의 주관적인 경제 상태 및 가계 부담 항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주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비부양집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단일부양집단, 이중부양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양집단별 응답을 비교한 것으로 이 차이가 부양집단별 절대적 크기의 차이로 해석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이중부양집단은 세금·보험료와 채무의 원리금 상환으로 나타났다. 단일부양집단과 비부양집단은 유사하게 채무의 원리금 상환과 자녀부양 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가족생활 변화 및 가족기능, 가족관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장년

층 가족의 이중부양 전후 가족생활 변화 여부를 보면 변화가 있다는 비율이 약 50%로 절반이었다. 변화로는 이중부양으로 인한 부양자 간의 갈등,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의 갈등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 외에 부양자의 일상 및 사회생활 제약, 경제 및 건강 악화 등에 집중된다.

한편 가족기능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이중부양집단과 단일부양집단의 가족건강성이 비부양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대 간에 부양부담을 교류하고 지원하는 행동이 가족건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 응집력(가족건강성)이 높은 경우 부양 부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집단별 특성에 무관하게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족건강성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가족 내 소득 자원의 확보는 추후 가족의 문제적 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 가족 중에서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가족 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이중부양 문제가 8%로 나타났다. 그중 부모부양 문제로 인한 갈등이 미혼 성인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보다 다소 높았다. 실제적으로 부담 수준은 노부모보다 미혼 성인자녀가 높으나 부양 부담으로 인한 갈등 차이는 미미하지만 노부모가 미혼 성인자녀보다 다소 높아 주목된다.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이중부양집단과 비부양집단에서는 중·장년층과 피부양자 간에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단일부양집단에서는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에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미혼 성인자녀보다 다소 높았다. (매우+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은 모든 피부양자에서 비부양집단이 가장 높아서 부양 부담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가구경제 수준은 총

소득, 순자산 및 소득 대비 지출 비율 지표를 기준으로 경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 가족이 체감하는 부양 부담은 객관적 및 주관적 지표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부양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6년 기준 총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을 차지하였고, 주관적인 가계 부담 정도는 이중부양집단이 절반을 초과하였다. 이중부양 가구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높았음에도 이중부양 부담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생활상의 제약과 경제, 건강상의 어려움 등 부정적인 요인이 발견되었다.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양이라는 부담은 가족 간 관계에서 심리·정서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가족 간 응집력을 고취하는 영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이중부양을 부담하는 중·장년층이라도 부양 환경에 대응하는 자원이 마련된 경우에는 가족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중부양 환경에 필요한 자원을 보전·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4. 중·장년층 가족의 정책 욕구

전화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의 정책 욕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중부양 부담을 수행하고 있는 중·장년 가족이 20% 이상의 응답 비율을 보인 정책 욕구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마련, 보조금 지원, 세금공제 등 가계보전 정책 욕구로 경제적 지원 욕구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욕구가 경제적 지원으로 수렴되는 현상은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건강성 결과 등 경제적 자원이 가구의 보호요인으로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중·장년층 일자리 마련 정책은 55~64세 연령층, 비취업자, 유배우, 월평균 가

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정책 욕구가 높았다. 보조금 지원은 55~64세 연령층, 사별·이혼·별거, 취업자에서 정책 욕구가 높았고, 세금공제는 45~54세 연령층, 1인 가구와 3인 가구에서 정책 욕구가 높았다. 거주비 지원은 농·어·산촌 지역 거주자와 중학교 이하 학력, 부부 가구에서 정책 욕구가 높았다. 사회적 관심 강화 정책은 농·어·산촌 지역 거주자와 1인 가구, 그리고 남성에서 정책 욕구가 높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중·장년 집단의 이중부양 정책 욕구는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욕구 이외의 정책 욕구는 집단별 특성에 따라 매우 상이해 보편성에 기초한 정책 수립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중부양 부담 경감의 정책 설계는 중·장년층의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정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국내외 이중부양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비교 분석

제1절 국내외 제도 및 정책 사례 비교 분석의 틀

제2절 국내 이중부양 관련 정책

제3절 국외 이중부양 관련 정책

제4절 시사점



5

국내외 이중부양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비교 분석

제1절 국내외 제도 및 정책 사례 비교 분석의 틀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부모 부양 부담 증가와 함께 청년 실업과 비혼화·만혼화 등 성인자녀의 독립이 지연됨에 따라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함께 부양하는 중·장년층 샌드위치 세대의 책임과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세대 간의 사회경제적 지원 및 교환은 가족생활과 복지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Albertini, 2016). 가족 내 지원 및 교환은 국가의 복지 수준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국가의 가족정책 수준에 따라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부모와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부양 부담감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장년층 가족의 피부양자인 노부모와 성인자녀 각각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정책 수준에 따라 중·장년층 가족이 경험하는 부양 부담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고찰에서 노부모나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중·장년층 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 제도와 피부양자인 노부모 및 성인자녀를 개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대상은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체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들로 구성된 일반적인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관련 정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제2장 제2절 1. 참조).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 논의에 앞서 부양의 주체에 따른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

하다. 국가는 개별 국가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와 가족 간의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었느냐는 공적 부양의 보편성과 범위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려는 노력이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되어 왔다(Motel-Klingebiel, Tesch-Roemer, & Kondratowitz, 2005). Millar와 Warman(1996)은 유럽 16개국의 법과 정책에서 규정한 가족부양의 범위를 분석하여 가족의 의무를 최소화하고 국가가 개인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국가(individual autonomy), 핵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한 국가(nuclear family), 확대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까지 규정한 국가(extended family) 등 세 가지 유형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의 의무를 최소화하고 국가가 개인을 직접 지원하는 국가에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 국가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개인적 권리와 시민권을 강조한다.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보다 국가에 부양을 기대하고 가족의 부양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핵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한 두 번째 유형의 국가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포함된다. 이 국가들은 가족의 부양의무를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와 자녀 등 핵가족에 제한한다. 급여와 세금은 이러한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공되며, 서비스는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세 번째 유형인 확대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까지 규정한 국가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포함된다. 이 국가들에서는 조부모, 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 확대가족에 대한 부양까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한편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표적인 학자인 Esping-Andersen(1999)은 가족 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가족의 책임 정도에 따라 가족 의존적 복지

시스템(familialistic welfare system)과 탈가족적 복지 시스템(de-familialistic welfare system)으로 구분하였다(정지아, 최석현, 2010 재인용). 가족 의존적 복지 시스템이 가족에 대한 복지 제공의 의무를 가족에게 두는 복지체제라면, 탈가족적 복지 시스템은 가족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 주는 복지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가족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주요 돌봄 책임자로 인식하여 온 가족주의 이념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돌봄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사회적 시민권 논의로 연결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Saraceno(2010)는 노인 지원 체계를 가족 지원 체제(unsupported familialism), 가족주의 보조 모델(supported familialism), 가족돌봄 사회화 체제(de-familialization)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가족 지원 체제는 가족이 돌봄 및 경제적 부양의 주체로 강조되며, 국가는 가족 돌봄에 대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하더라도 잔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가족주의 보조 모델은 가족이 여전히 돌봄의 주체이지만 돌봄에 필요한 시간과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조하는 방식의 정책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사회화 체제는 사회권의 개별화(소득 지원, 실업급여, 돌봄 지원 등)를 통해 가족에 대한 의존과 책임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이때 돌봄의 사회화는 국가나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와 가족 간의 책임 소재 인식 또한 위의 세 가지 유형과 유사하게 구분된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은 정부와 가족이 함께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은 주로 가족이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Verbeek-Oudijk, Woittiez, Eggink, & Putman, 2014). 이처럼 서구 국가들은 가족부양에서 국가와 가족의 역

할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부양에 대한 국내외 정책 사례를 고찰할 때, 각 국가의 가족 이념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지아, 최석현, 2010).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부양의 주체가 국가보다 가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치가 우세하였다. 일부 빈곤 관련 제도에서도 부양의무자 규정을 두어 빈곤 가구에 대한 일차적 부양 책임을 가족에게 두고 있다(최병근, 2017). 최근 가족부양의 국가 책임 인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김유경, 2017)을 고려할 때, 확대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기대나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국가의 정책 사례는 국내 정책에 시사점을 주기 어렵다. 그러나 나머지 유형의 국가군에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지원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중부양 관련 정책 방안 마련에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가족 중심의 부양 체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는 국가의 정책 사례와 시민권, 사회권에 대한 가치를 바탕으로 가족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의 정책 사례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중·장년층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이중부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국내에서 마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외 정책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증가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내외 가족정책은 성인자녀 관련 정책이나 노부모 부양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을 뿐 이중부양 관련 정책은 부재하다. 따라서 제2절 및 제3절의 국내외 이중부양 관련 법·정책 고찰에서는 부양 대상에 따라 성인자녀 관련 정책과 노부모 관련 정책을 각각 살펴본 후, 제4절 시사점에서 대상별로 살펴본 부양 관련 정책을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관점에서 통합하여 논의하였다.

제2절 국내 이종부양 관련 정책

1. 성인자녀 부양가족 관련 정책 현황

가. 성인자녀 부양가족 대상 경제적 지원 제도

중·장년층의 성인자녀들이 학업, 취업, 결혼 등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청년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2017). 이는 상당수의 성인자녀들이 중·장년층 부모 세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인자녀의 독립 지연은 중·장년층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오지만 성인자녀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소득보장 정책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년 지원 정책으로 보기 어렵고(김태완, 최준영, 2017), 그 수준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청년들의 사회부조 수혜 비율이 청년 인구 대비 2%에 불과하고(OECD 평균 15%), 청년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2014년 기준 3.1%로 28.2%인 OECD 국가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실업급여가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채창균, 2017).

따라서 성인자녀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경제 지원은 없으므로 중·장년층 가족의 피부양자인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한 청년소득지원 제도, 청년주거지원제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청년소득지원제도

심각한 청년 취업난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구직 청년에 대한 소득 지원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채창균, 2017)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성남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청년소득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표 5-1〉 참조).

〈표 5-1〉 2018 지방자치단체 청년 지원 예시

구분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광주 '광주청년드림수당'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34세 구직 활동 중인 청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급여 내용	매달 50만 원 (최소 2개월~최대 6개월간 지급)	매달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급)	매월 40만 원 (6개월)
급여 방식	클린카드	청.바.G카드(체크카드)	현금

- 자료: 1) 각 지역 자료를 재구성함.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https://youthhope.seoul.go.kr/front/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18634fec499e45158eaac8369b66130f. 2018. 5. 15. 인출.)
 2)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홈페이지. (https://www.gjf.or.kr/?portfolio_page=%EA%B2%BD%EA%B8%B0%EB%8F%84-%EC%B2%AD%EB%85%84-%EA%B5%AC%EC%A7%81%EC%A7%80%EC%9B%90%EA%B8%88, 2018. 5. 15. 인출.)
 3)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archives/3886860>. 2018. 5. 15. 인출.)
 4) 광주시청 홈페이지. (<https://gj3dreams.modoo.at/?link=b4y9vxeY>. 2018. 5. 15. 인출.)

서울시의 경우 '청년수당'을 도입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인 경우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클린카드로 지급되는데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 활동뿐 아니라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 창구에서 인출 가능하며, 현금 사용 시 자기활동기록서에 현금

사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도 ‘청년구직지원금’이란 명목하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34세의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구직지원금을 제공한다. 그 밖에 인천시, 광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또한 청년소득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소득지원제도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소득 지원,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추세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서울시 청년수당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5,000명의 지원자를 선발하는 데 8329명이 신청했으며, 그중 4909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2018).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7000명 지원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다. 2017년 참여자에 대한 추적 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의 97.2%가 청년수당이 청년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호, 서복경, 2018).

그러나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청년소득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의 범위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최병근, 2017). 예를 들어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도 청년수당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년수당이 급여에 포함됨으로써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소득지원제도 대상 연령이나 지원 정도 및 범위가 달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에 따라 지원 정도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청년주거지원제도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청년주택 30만 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맞춤형 전월세 대출 등을 통해 5년간 최대 56만 5000가구의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관계 부처 합동, 2018).

청년주거지원제도로는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공공지원주택,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이 있다(마이홈포털 홈페이지, 2018).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최대 6년의 임대 기간 동안 전용면적 45㎡ 이하의 주택을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에서 공급한다. 입주 대상은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여야 하고,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 2017).

청년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다. 임대료는 입주 순위에 따라 시세의 30~50% 수준에서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은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인 경우 입주 대상이 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70~85% 수준에서 공급되며, 최초 2년 계약하고,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7).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하고 있다. 그중 주거

안정월세대출은 주거 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이나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이 대출 대상이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의 금리는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 2017). 대출은 최장 10년간 이용(2년 단위 4회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예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기간을 확대하였다. 신혼부부의 상당수가 결혼 전 주거지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결혼 전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5).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18년 5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행복주택 4740실을 공급했고, 공공지원주택 800실의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6800실의 부지를 확보하였다. 청년전월세대출은 5월까지 270명에게 지원하였다(관계 부처 합동, 2018).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년층 대상의 주거 안정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소득 계층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정책 대상이 불명확하고, 명확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이수욱, 2016). 따라서 가구 구성, 연령, 소득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2년형과 청년 3년형으로 구분된다. 청년 2년형의 적립 및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매월 12만 5000원을 2년간 300만 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청년에게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 원을, 기업이 400만 원(정부 지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년 3년형은 청년 본인이 매월 16만 5000원을 3년간 적립하면 정부(1800만 원)와 기업(600만 원)이 공동 적립하여 3년 후 3000만 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2016년 시범 사업에는 6800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7년의 경우 10월까지 2만 8000명이 참여하였다(이성희, 2018). 참여 기업들의 초임 수준은 월 172만~174만 원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적립금을 고려하면 청년들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들의 고용 유지 기간을 비참여자들과 비교한 결과 고용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참여 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된다(이성희, 2018).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가 신규 근로자 채용, 근로 의욕 도움, 장기근속 유도 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청년 및 기업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박철우, 이영민, 정동열, 김기용, 2017).

이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실질적인 근로 환경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장호성, 2018). 이와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입사

후 3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해서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의 재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에 초점을 두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이성희,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들의 장기근속 가능성을 높이고 재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성인자녀 부양가족 대상 비경제적 지원 제도: 성인자녀 대상 고용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성인자녀 부양가족 대상 비경제적 지원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인자녀 대상 비경제적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청년 지원 정책은 고용 지원 정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완, 최준영, 2017; 최준영, 2017).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에게 다양한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법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업 진로 및 상담 지원, 교육 훈련 지원, 체험 및 인턴 지원, 해외 취업, 지원금 및 보조금, 창업 등을 지원한다(대한민국 정부, 2017).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의 청년 연령 규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뜻하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 대상 다양한 고용 지원 서비스 중 성인자녀 대상 고용 지원 제도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해외취업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8~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단 및 상담, 의욕 증진 및 능력개발 훈련, 취업 알선에 이르는 취업의 전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워크넷 홈페이지, 2018). 대상자는 18~34세 청년층 중고교 마지막 학년, 대학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대졸 이상 미취업자 등이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 내용은 아래 <표 5-2>와 같다. 각 단계에 성실하게 참여한 대상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혹은 훈련 기간 동안의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참여수당으로 지급한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지원에 일부 기여를 하였으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청년층 지원 범위를 설정함에 따라 비효율성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 준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직업훈련 일변도의 지원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정병순, 김태욱, 2016).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2015년부터 대학 재학생의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미취업자보다 대학 재학생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니트족의 참여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채창균 외, 2017).

<표 5-2>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 내용

내용	1단계(상담, 진단)	2단계(직업능력 향상)	3단계(취업 알선)
기간	- 1주~1개월	- 최장 8개월	- 최장 3개월
서비스 내용	-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일경험, 훈련, 해외 취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 동행면접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알선
참여수당	- 최대 20만 원	- 훈련비 200만 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50%) - 참여수당 최대 40만 원(6개월)	-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 원, 최대 3개월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4.do>(2018. 4. 26.)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총참여자 수는 2015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19만 335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문대 및 대학교 재학생 참여자는 2015년 21.3%에서 2016년 32.4%로 증가한 반면 대졸 이상 미취업자는 48.7%에서 38.0%로 감소하였다(이병희, 김혜원, 길현중, 이민홍, 2017). 청년 니트족은 발굴도 쉽지 않고,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2) 해외취업지원(K-Move)

해외취업지원사업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해외 구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여 해외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한민국 정부, 2017).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해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외 취업 알선에서는 해외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후 해외 취업에 성공할 경우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제공한다.

해외취업지원사업 예산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구직 등록자 수(2013년 1만 2984명, 2016년 2만 4037명)와 구인 인원 수(2013년 6212명, 2016년 9363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용, 조성웅, 노경희, 지재현, 2018).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영역을 확장하고, 최근 중남미 취업을 추진하고 있다(한다원, 2018). 국가별 해외 취업 비중을 보면, 호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취업국의 비중이 낮아지고(2016년 기준 31.4%), 미국, 싱가포르, 중동, 베트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김기용 외, 2018). 그러나 일부 해외 취업 노동조건은 한국보다 열악하여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3) 서울형뉴딜일자리

서울형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서비스를 일자리로 발전시킴으로써 참여자에게 일터 기반 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울을 가지세요 서비스 홈페이지, 2018). 대상은 18~39세 이하의 서울 거주 시민으로 실업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사업 규모는 2016년 1500명으로 5년간 1만 5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서울특별시, 2016). 급여는 2018년 기준 시급 922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월 최대 195만 원을 지급한다. 최대 23개월간 근무할 수 있으며 연간 500시간의 취업교육, 자격증 응시 비용, 전문 멘토의 1:1 취업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3년 사업 시행 이후 2018년 11월까지 약 1만 9000명에게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다(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2018).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 일자리에서 직업 경험을 쌓은 뒤 관련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한다. 그러나 뉴딜일자리 경험과 무관한 민간 업종으로 취업하거나 공공 일자리에 재진입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 민간 일자리 진입 촉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전성무, 2016).

2. 노부모 부양가족 관련 정책 현황

가.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경제적 지원 제도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등에 불과하다(황남희, 김경래, 배혜원, 김재호, 2017). 이에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제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노부모 부양가족 경제적 지원 제도에서 먼저 살펴본다. 이어 피부양자인 노부모에게 경제 지원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부양자의 경제부양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효도수당을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1) 노부모 부양가족 경제적 지원 제도

종합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8)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부모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과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부모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공제(제51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8)에 따라 연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등)에 따라 부양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부양 요건은 직계존속인 부모의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는 부양자와 동거하고 있거나 비동거 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으로 인정된다. 2018년 7월부터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는데(이에 스터, 2018),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살펴보면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 없을 것 등의 소득 요건과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의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살펴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따라 주택 건설량의 일정 비율(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을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자가 청약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주택도시보증 홈페이지, 2018).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다(단,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각자 생활하다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동거봉양 합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이미경, 2017).

2) 국민연금제도

노후생활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법」¹¹⁾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제3조의 2)로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가입 대상이다.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수급하게 된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2012년까지는 60세였으나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여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8). 2018년 현재 신규 수급자 수급 연령은 62세이다.

연금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이 있다. 노령연금 수급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341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82.3%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8a).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급여액 비중은 2016년 12월 기준 20만~30만 원인 수급자가 27.7%로 가장 높다(국민연금공단, 2017). 월평균 급여액이 30만 원 미만의 연금 수급자 비중은 55.8%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사각지대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 장치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노후 보장 수준이나 노인에 대한 보건, 사회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여유진 외,

11) 국민연금법, 법률 제16240호 (2018).

2016). 이에 따라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서 가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3〉 국민연금 급여 종류

연금급여(매월 지급)		일시금급여	
노령 연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성격
장애 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 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 연금	가입자(있던 자) 또는 수급권 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자료: 국민연금공단(2018).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2018. 7. 1. 인출)

급여 수준 결정에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급여의 경우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합산된다. 부양가족연금제도는 「국민연금법」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에 따라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부가 급여라고 할 수 있다(민기채, 송창길, 이재은, 2017).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미성년자녀, 고령의 부모가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에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노부모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며 주거를 같이하거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는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 해당되며, 2018년 4월 현재 기준 17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8). 2015년 기준 전체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6.9%가 부모부양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다(민기채 외, 2017).

최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됨에 따른 연금 재정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연금제도가 가족관계 강화에 기여하는 소득 효과가 큰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연금제도가 확대되는 시점까지 부양가족연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민기채 외, 2017).

2016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38%에 불과하고 평균 연금액도 37만 8000원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황보연, 2017).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OECD, 2017), 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낮은 도입과 실물자산 선호로 현금소득이 낮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윤석명, 2017).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기 어려우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인상,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3)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법」을 근간으로 한다. 「기초연금법」은 소득 기반이 취약한 노인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목적(제1조)으로 2014년에 도입되었다. 기초연금제도의 대상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제3조). 2017년 기준 65세 인구 711만 명 중 482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였으며(국회 정책예산처, 2017),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 가구 전반의 소득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탁현우, 2016).

기초연금액은 2018년 4월 기준 최고 20만 996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8)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5만 원으로 인상된다(이율, 2018). 이때 가구 유형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데,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 구성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하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소득 역전을 최소화한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보건복지부, 2018a).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보장 수준과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탁현우, 2016). 또한 소득이 낮은 집단(소득 1~3분위)보다 소득이 높은 집단의 수급액이 더 크게 나타나는 등 기초연금이 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 집단에서 역진적일 가능성이 제시되는 등 기초연금의 대상 범위 및 보장 범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 효도수당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도수당이란 명목으로 36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강혜규 외, 2015). 예를 들어 수원시는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6개월에 5만 원이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

페이지, 2018). 시흥시도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 월 3만 원을 지급한다(복지로 홈페이지, 2018). 충청남도 보령시는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중 만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1명당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정부 24 홈페이지, 2018). 이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조례에 따라 노부모나 노부모 부양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효도수당이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사업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효도수당의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효도수당을 폐지하기도 하였다(김병규, 2015).

나.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비경제적 지원 제도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비경제적 지원 제도는 노부모 부양자의 신체적, 정서적 부양 부담 완화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서비스, 가족돌봄휴직제도, 치매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¹²⁾을 근거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 혼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 16244호 (2018).

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와 가족의 부담 완화를 통한 노인 및 그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대상자가 2008년 14만 7000명에서 2016년 44만 3000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8c).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되는데, 판정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급여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 요양비)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급여는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에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정부 24 홈페이지, 2018). 재가급여 비용이나 시설급여 비용의 일부는 수급자가 부담하는데,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게 된다(제40조). 이 같은 재가급여 우선 원칙은 공적 제도 도입에도 가족의 비공식적 지원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윤경, 2010).

재가 서비스 영역에서의 대표적인 가족부양자 지원 정책으로는 가족요양비, 가족인 요양보호사 지원 제도, 가족부양자를 위한 휴식,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가족 요양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도서, 벽지 등 요양기관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의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제24조)하고 있다. 이때 월 15만 원의 가족

요양비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해당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급여를 제공할 경우 방문요양기관에 고용 및 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표 5-4〉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

유형	급여 내용
방문요양	-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 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 업무 대행 등 -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방문목욕	-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방문간호	- 간호 사정 및 진단 등 기본 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검사 관련 사항, 투약 관련 지도, 환자·가족 대상 건강 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주야간 보호	- 생활지도 및 일상 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취미·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일상 동작 훈련(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 등) - 급식 및 목욕 서비스 등: 몸 청결, 머리 감기, 얼굴 씻기, 손 씻기, 구강 관리,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배설, 식사 도움 - 이동 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단기 보호	- 신체활동 지원, 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등 구입 품목(9종)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대여 품목(8종)

자료: 보건복지부(2018c) 재구성.

노부모 돌봄과 관련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및 목욕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일 60분, 월 20일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목욕 서비스는 월 한도

내에서 주 1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은 월 28만~63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이한세, 2018), 가족요양보호사가 1일 8시간, 월 20시간 이상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가족요양보호사 서비스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13)).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제도 도입 후 제도 개편을 통해 급여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왔으나, 가족요양보호사 기준을 동거 가족으로 한정하던 것을 동거 여부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였다(이선희, 2017).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에 의한 요양임에도 타인에게 서비스를 받는 경우와 비교해 낮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윤경, 2010). 이에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합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18c).

또한 서비스 제공자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과 돌봄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가족부양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휴식 서비스로 2014년 치매가족휴가제가 도입되었다.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노인을 돌볼 경우 연간 6인 내에서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연속하여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 2). 단기보호급여의 경우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고, 24시간 방문요양급여의 경우 1, 2등급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상생활의 장애 정도가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나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서비스가 다양하지 않고,

13)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84호 (2018).

재가급여 서비스에서는 야간이나 심야 재가 케어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족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1, 2등급의 중증 장기요양 대상자의 40%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선우덕 외, 2015) 심야 재가 케어의 부재,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용의 제한 등 공식적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가족원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설 입소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 소득자는 요양병원 이용을 선호하는 반면 기초수급자는 요양시설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요양시설의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5년 단위로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지지원 등급’ 대상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및 본인 부담 경감 혜택 대상 확대, 가족상담 지원 및 돌봄교육 강화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신규 재가 서비스 도입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8c). 그중 가족의 부양 부담 감소를 위해 가족지원 상담 서비스 강화 계획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의 부양 상황, 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급여 수준 확대, 지역별 분포의 불균등 해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이윤경, 2015; 맹진영, 이용재, 2017).

2)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와 제27조의 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을 근거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81년 제정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중 2007년 일부 개정에서 가족부양 의식 약화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하였다(김유경 외, 2015). 이를 바탕으로 노인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과 노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그들의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및 활동 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8f). 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 잇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구성된다. 그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으로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독거노인 중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요보호 독거노인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가 2012년 14만 2000명에서 2017년 24만 명으로 69%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8d).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단 단기 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 부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표 5-5〉 참조). 노인종합서비스 이용자는 2011년 3만 7728명에서 2016년 4만 429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보건복지부, 2018d)

〈표 5-5〉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구분	연령	건강 기준	소득 기준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 만 65세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시군구청장 인정자(장애 1~3등급 또는 중증 질환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시군구청장 인정자(차상위 계층 이하)
단기가사서비스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자료: 보건복지부(2018f). 2018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pp. 97-98.

제공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서비스(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서비스 제공), 주간보호서비스(심신기능 회복 서비스, 급식 및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치매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를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18c). 서비스 이용은 이용자의 소득수준 및 월 서비스 시간량, 서비스 이용 일수 등에 따라 차등화되어 월 본인 부담금이 무료에서 8만 8000원까지 차등화된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제공되는데, 치매 노인을 연간 6일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치매 노인 대상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

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 노인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요보호 독거노인의 급증에 따른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사전 예방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e).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들의 낮은 신체 케어 욕구나 가사 지원 욕구를 고려할 때 현재 제공되고 있는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보다 기능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기능 개선 프로그램이나 영양 개선 및 구강관리 등 특화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선우덕 외, 2015).

3)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이다(정부 24 홈페이지, 2018). 이때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족돌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60.8%이고, 제도 도입률과 활용률은 각각 26.5%와 23.4%에 그치고 있다(김영옥, 김종숙, 이선행, 2017).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도입한 경우 무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60.4%로 가장 많았고,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8.7%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최소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이다 보니 근로자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가족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직보다 짧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8년 2월 발의되었다(전수현, 2018).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제도를 가족돌봄휴가로 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휴직제도를 포함한 일·가정 양립 제도는 자녀 양육기에만 집중되어 노부모 돌봄과 경제 활동을 함께 양립해야 하는 가족부양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노부모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부양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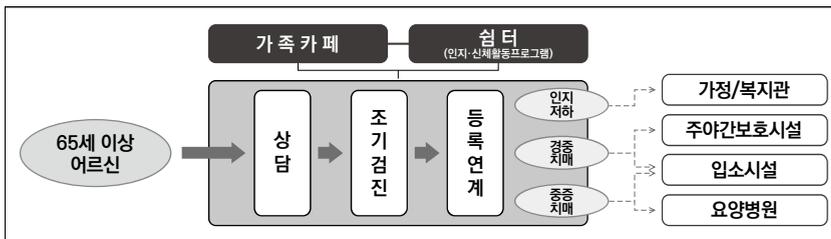
4) 치매가족지원사업

치매가족지원사업은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치매 환자 가족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8c).¹⁴⁾ 최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관련 맞춤형 사례 관리, 장기요양 확대, 치매 환자 의료 지원 강화, 요양비

14) 2012년부터 시행된 ‘치매관리법’은 치매와 관련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서비스 확대 추진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이와 함께 2018년 6월 「치매관리법」의 일부 개정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18c).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8c).

[그림 5-1]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자료: 보건복지부. (2018. 5. 28.).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p. 2.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SEARCHKEY=&SEARCHVALUE=&page=1&CONT_SEQ=344924에서 인출.

치매가족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분석, 가족 대상 직간접적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운영, 치매 환자 가족 대상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다. 돌봄 부담 분석 및 치매 환자 가족 상담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카페에 가족 상담자가 1명 이상 상주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분석,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치매 환자 돌봄 정보 제공, 가족의 고충 상담, 가족카페 서비스 안내 등을 제공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 분석 결과 돌봄 부담이 높은 경우 6개월 단위로 추적 관리하고, 심한 우울증 또는 문제 행동 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증진기관으

로 연계한다. 또한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 가족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표 5-6〉 돌봄 부담 분석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연계

내용	연계 목적	연계 서비스	접수 기준
공통	-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경감 지원의 연속성 유지 - 가족 지원 서비스 상시 제공	- 치매상담콜센터 - 등록관리팀 연계(치매 환자 등록 및 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	- PHQ-9≥5 - 점수에 관계없음
정보 지원	- 치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해 향상 - 환자 돌봄 역량 강화활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가족교실 소개 및 등록	- 점수에 관계없음
		- 치매 및 돌봄 관련 정보 제공(마음 읽어 주기, 치매 체크, 나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북, 알짜 정보 내비게이션 등)	- NPI-Q 고통 정도 2 이상인 항목이 있을 경우 점수에 관계없음
정서 지원	- 사회적 교류를 통한 우울감 감소 - 비약물적 요법 통한 기분 조절 - 전문적 심리상담	- 치매 가족 자조모임 소개 및 등록	- PHQ-9≥5 - S-ZBI≥17
		- 가족카페 힐링 프로그램	
		-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 의뢰	- PHQ-9≥10
돌봄 지원	- 치매 관련 서비스 신청 - 치매 환자의 인지건강 및 가족의 셀프케어 지원	- 등록관리팀 연계(치매 환자 등록 및 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	-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 신청을 원할 경우
		- 요양시설 이용을 하지 않고 재가 중인 환자인 경우 쉽터 연계	

자료: 보건복지부(2018g). 2018 치매정책 사업안내. p. 68.

연중 상시 운영되는 가족교실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치매 환자 가족의 치매와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교실 운영 방법 및 주요 내용은 아래 〈표 5-7〉과 같다.

〈표 5-7〉 가족교실 운영 방법 및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운영 방법	- 8회기(주 1회 2개월 과정 또는 주 2회 1개월 과정)
기수별 규모	- 10명 이내(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주요 내용	- 치매 알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신행동 증상, 치매 종류별 초기 증상, 치매의 위험요인, 치매 진단 및 치료와 관리 - 돌보는 지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마음 이해하기,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학습 및 응용, 치매 환자의 남아 있는 능력 찾기, 치매 환자 가족의 자기 돌보기 - 알짜 정보: 치매 관련 서비스 및 제도 관련 정보 활용

자료: 보건복지부(2018g). 2018 치매정책 사업안내. pp. 70-71.

이와 같은 치매 지원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치매 가족을 위한 직접 서비스의 부족, 치매 지원 서비스의 지역 격차 등이 지적된다(권중돈, 2018).

제3절 국외 이중부양 관련 정책

가족부양에 대한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 간의 분담 정도는 개별 국가의 국가와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국외 국가의 공사 간 부양 분담 구조는 사회권의 개별화를 통해 부양에 대한 가족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국가, 가족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가가 가족부양을 보조하는 국가, 가족이 부양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고 국가는 잔여주의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국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국가의 정책 사례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은 각 세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때 감소할 수 있으

므로 보편적이고 관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 국가의 정책 사례는 국내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가족부양을 중심으로 국가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외 국가들의 정책 사례에 대한 고찰은 국내 정책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시민권 보장을 바탕으로 한 보편주의적 급여가 발달해 있는 북유럽 국가와 국가가 가족부양을 보조하는 방식의 정책을 펼치는 가족주의 보조 모델 국가의 제도 및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성인자녀 부양의 경우 핀란드, 독일 등의 정책 사례를 주로 검토하고, 노부모 부양의 경우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독일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편 동서양의 가족부양에 대한 가치와 행동이 상이한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문화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의 이증부양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를 함께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과 싱가포르의 이증부양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인자녀 부양가족 대상 지원 제도 및 정책

서구 사회에서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교육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은 부모의 의무로 간주되지 않는다(이철선 외, 2016b; Goldfarb, 2014). 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국외 국가의 지원은 미성년 자녀나 교육 중에 있는 성인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교육비 지원, 아동수당, 부양가족 세제 혜택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안종석, 박수진, 이서현, 2017; 채창균 외, 2017) 이 연구의 중·장년층 가족의 이증부양 대상자인 대학 졸업 이후의 미혼 성인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인자녀 부양가족 대상 지원 제도 및 정책 고찰에서는 독립적인 성인기 이행을 돕기 위한 청년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성인자녀 부양가족 대상 경제적 지원 제도

청년층에 대한 OECD 국가의 소득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실업부조, 사회부조, 주거급여, 장애급여 등으로 구성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그중 성인자녀가 주요 정책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실업부조와 청년 대상의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실업부조: 핀란드, 영국, 일본

고용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실업부조를 지원하는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다(OECD, 2016a). 핀란드의 실업급여는 소득기반급여(earning-related allowance), 기본급여(basic allowance), 노동시장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으로 구분된다(Europa 홈페이지, 2018).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나 고용 경험이 없는 노동시장 첫 진입자에게는 노동시장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을 지급함으로써 고용 경험이 없는 청년이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Kela 홈페이지, 2018). 노동시장보조금의 대상자는 17~64세 사이의 핀란드 거주 중인 미취업 구직자이다(Nordsoc 홈페이지, 2018). 노동시장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노동시장보조금은 자산조사 기반의 보조금 형태로 다른 소득이 있거나 부모와

동거할 경우 부모의 소득에 따라 감액 지급되며 과세소득이다. 지급 금액은 하루 32.40유로로 주 5일 동안 지급한다. 노동시장보조금을 받는 65일간의 활동이 모니터링되는데, 구직 서비스 참여나 최소 18시간 노동 등의 활동 요건 충족 시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고, 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보조금이 감액된다.

영국의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JSA 이하)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에 기반을 둔 구직자 수당인 신유형 구직자수당(new style JSA) 및 기여기반구직자수당(contribution-base JSA)과 당사자의 소득 및 저축 수준에 따른 소득기반구직자수당(income-based JSA)으로 나눌 수 있다(UK 홈페이지, 2018). 노동시장 참여 경험이 없는 성인자녀의 경우 소득기반구직자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기반구직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중에 있지 않고, 근로 의지가 있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6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기반 구직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잡센터 플러스(Jobcenter Plus)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직 등록, CV 작성, 구직 활동 시간 설정 등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2주에 한 번 잡센터 플러스를 방문해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구직수당은 2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주당 최대 73.10파운드를 지급한다.

일본에서는 젊은 구직자들에 대한 소득 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OECD, 2017). 최소 12개월 실업보험 기여 기록이 있는 실업 청년들은 비교적 관대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고, 계약 기간이 갱신되지 않아 실직된 청년들은 6개월 정도만 기여해도 자격을 얻는다. 보통 젊은 구직자들을 3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20대 구직 청년의 15% 정도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 저소득 청년들은 자산조사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데, 젊은이들의 약 0.5%만이 이러한 혜택을 받

고 있다. 공공부조의 주요 지원 대상은 노인이나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실업급여 자격이 없는 구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와 공공부조 사이에 두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구직자 지원 체계(Support System for Jobseekers)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빈곤 가계의 구직자에게 구직 지원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고 일시적인 임대료를 지급하는 제도(support system for the self-reliance for poor)를 마련하였다. 일본의 경우 청년들의 가구 형태, 특히 부모나 소득이 있는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니트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데, 많은 실업 청년들이 가족이나 비공식적 네트워크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국가에서만 고용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업부조를 제공한다. 부모의 소득이나 개인의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실업부조가 있는 국가의 청년 취업률은 실업부조가 없는 국가의 청년 취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채창균 외, 2017). 이는 실업부조 지원과 함께 구직활동 지원 등이 함께 제공됨에 따라 실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주거급여: 스웨덴, 핀란드

스웨덴은 여러 형태의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18~29세 사이의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대 60㎡의 거주 공간, 1800스웨덴크로나를 초과하는 주택 비용에 대해 최대 1300스웨덴크로나 상당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Europa 홈페이지, 2018). 청년이 혼자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8만 6720스웨덴크로나

이하여야 하고, 동거하거나 결혼을 한 경우에는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10만 3720스웨덴크로나 이하여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한 성인자녀들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더욱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Thévenon, 2015). 그러나 이 국가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지원보다 전체적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Kela 홈페이지, 2018). 주택보조금은 가구원 수, 주택의 위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거 비용의 일부만을 보조금으로 제공한다.

나. 성인자녀 부양가족 대상 비경제적 지원 제도

1) 핀란드 청년보장

핀란드의 청년보장 대상 연령은 30세 미만까지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넓은 편이다. 핀란드는 청년정책에 관한 단일 법령(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에 따라 청년보장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이철선 외, 2016b), 매년 6000만 유로를 청년보장제도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2). 청년보장제도는 청년들이 교육, 훈련, 고용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2). 이를 통해 청년의 성장 및 자립을 지원하고 상황에 관계 없이 평등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노력한다(이철선 외, 2016b).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25세 미만의 모든 청년과 30세 미만의 대졸자에게 교육, 훈련,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 특히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모와 비동거하거나 단독 가구인 경우

부모의 소득을 학비 지원에 고려하지 않는다. 즉 20세 이상 성인자녀의 부양에 대한 부모의 책무를 강조하지 않는 구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여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학교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서비스 제공의 책무를 지도록 한다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2). 또한 청년들을 견습생으로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니트에 대한 조기 개입의 일환으로 워크숍과 아웃리치 활동을 펼치는데, 워크숍에서는 청년들의 생활기술 향상, 사회적 역량 강화,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고용주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 매달 670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시카드(Sanssi Card)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2) 프랑스 성인자녀 고용 지원 제도

프랑스는 청년 대상 고용 지원 제도의 상당수가 2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한다(이철선, 김문길, 임성은, 2016a). 그러나 청년신서비스직종정책(Nouveaux Services Emplois Jenunes)은 만 26~29세의 청년 중 취업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업자와 구직 활동 중인 만 18~25세 청년을 함께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지방단체기관, 공공 및 준정부단체 등의 공공 부문과 스포츠, 문화, 환경 등의 비영리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는 법정 최저임금과 연계된 사회보장분담금의 80%를 보조금으로 5년간 지급한다.

3) 일본의 성인자녀 고용 지원 제도

일본의 경우 직업 훈련은 전통적으로 고용주가 제공한다. 이때 고용주는 학교와 헬로워크>Hello Work)란 공공 고용 안정 서비스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게 된다(OECD, 2017). 헬로워크는 젊은 구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잡카페는 비공식적 세팅에서 진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160개의 지역 청년 지원 기관에서는 구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니트를 돕고 그들이 직업 장벽을 해소하도록 한다. 이때 지역 청년 지원 기관 종사자들이 대상자들에게 개별화된 밀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 사례 수를 낮게 조정하였다. 일본에서 니트는 종합적인 사회 및 고용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 히키코모리지원센터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도피한 채로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상담과 다른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 단위 히키코모리지원센터에서는 히키코모리 청년에 대한 진단, 평가, 상담, 훈련뿐 아니라 히키코모리 가족 대상 전화 상담 또한 제공한다(Kato, Kanba, & Teo, 2018). 그 밖의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 또한 사회 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OECD, 2017).

2.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지원 제도 및 정책 사례

가.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경제적 지원 제도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의무를 최소화한 국가들의 경우 노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경제적 지원 제도가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 반면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의 책임을 일부

강조하는 가족주의 부양 보조 모델 국가들은 가족부양을 장려하기 위해 노부모 부양에 따른 상속제도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OECD 국가들은 노부모에게 신체 및 도구적 부양을 제공하는 가족 부양자에게 돌봄자수당이나 간병수당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부양을 장려하기 위한 독일, 프랑스, 일본의 상속제도 및 세제 혜택과 자녀의 노부모 부양 책임을 강제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부담세 할인 제도를 살펴본 후 노부모에 대한 가족의 직접적인 신체 및 도구적 부양 행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를 핀란드,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1) 부양자에 대한 상속제도: 독일, 프랑스, 일본

부모부양을 재산상속과 연계하여 가족부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족주의 보조 모델 국가에서 일부 발견된다. 이 국가들은 부양의무 이행자에 대해 상속상의 혜택을 주어 부양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방법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 대해 제재 혹은 불이익을 주는 소극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김남영, 2011). 상속 시 혜택을 주는 예로는 독일과 일본 등을 들 수 있는데,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 대해 상속가급을 인정한다. 독일의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는 재산상속 시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57조). 일본은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한다(제904조의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있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도덕적 행위를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제727조). 독일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

해 부양의무 비이행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제1938조). 일본의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반인륜적 행위가 있을 경우 상속 결격 사유(제892조)가 되며, 피상속인의 상속 폐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제893조).

2) 노부모 부양에 대한 세제 혜택: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일부 국가는 부양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세금 감면은 가족부양을 장려하기 위해 간접적 경제 지원 형태이다(OECD, 2011).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3단계일 경우 진료비 총액을 신고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자가 돌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않을 경우 연간 924유로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최대 2347유로의 경로인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인적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의 수준에 따라 축소되는데, 종합소득이 2만 3720유로를 초과할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연로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75세 이상의 노부모 소득이 9600유로 이하일 경우 증빙자료 없이 최대 3410유로(2016년 기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즉 경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인적공제를 허용하지만, 엄격한 소득 요건을 적용하여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안종석 외, 2017).

일본의 경우 부양 친족에 대한 기본인적공제를 제공하는데, 총소득금액이 38만 엔 이하이고,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총소득금액이 65만 엔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로자인 경우에는 동거 직계존속 외의 경우에는 10만 엔, 동거 직계존속일 경우 20만 엔을 추가 인적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친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최대 200만 엔 한도로 소득을 공제한다(안종석 외, 2017).

노부모 부양과 관련해 가족의 역할을 강조해 온 싱가포르에서는 49%의 노부모 돌봄 가족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 정부는 가족의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납부해야 할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부담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UNESCAP, 2015).

3) 돌봄자수당과 간병수당: 핀란드, 독일, 프랑스

상당수의 OECD 국가들은 부양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부양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돌봄자수당을 직접 지급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간병수당을 지급하여 돌봄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OECD, 2011). 간병수당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급자의 선택권 보장을 강조한다. 유럽 23개국의 비공식 돌봄 제공자 대상 경제적 지원 방식을 조사한 연구(Courtin, Jemai, & Mossialos, 2014)에 따르면 돌봄자에 대한 간접 지원인 간병수당이 돌봄자수당보다 빈번하게 지급되고 있었으며, 9개국만이 돌봄자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수당은 일반적으로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기회비용이나 공식적 돌봄을 구매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된다(Muir, 2017). 돌봄자에 대한 직접 지원인 돌봄자수당은 소득수준, 돌봄자와 돌봄 수혜자 간의 관계, 돌봄 수혜자의 장애 정도, 비공식 돌봄의 강도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Courtin, et al., 2014).

〈표 5-8〉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국가	부양자 직접 지원 (Carer allowance)	부양자 간접 지원 (Attendance allowance)	조건
오스트리아	X	O	- 자산조사에 기반하지 않은 욕구조사
벨기에	X	O	- 자산조사
덴마크	O	X	- 최대 6개월
영국	O	O	- 돌봄자수당: 부양자가 16세 이상이고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을 주당 최소 35시간 돌봄 경우(자산조사) - 간병수당(자산조사 X)
핀란드	O	X	- 자산조사 X
프랑스	X	O	- 돌봄 수혜자의 장애 정도 및 소득수준에 따름
독일	O	X	- 돌봄 수혜자의 욕구 정도에 따름. 최소 14시간의 돌봄이 제공되어야 함.
이탈리아	X	O	- 돌봄 수혜자의 욕구 및 자산조사
스웨덴	O	O	- 돌봄자수당: 돌봄 수혜자의 욕구 수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고용 계약 - 간병수당: 자산조사에 기반하지 않은 욕구조사, 주당 최소 17시간의 돌봄이 제공되어야 함.

자료: Courtin, et al. (2014), p. 34. 표 재구성.

핀란드에서는 노부모를 돌보는 가족부양자는 돌봄자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돌봄의 어려움,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최소 매달 392유로), 돌봄자수당은 과세 대상이 된다(Helsinki City 홈페이지, 2018; Suomi 홈페이지, 2018). 돌봄자수당에는 돌봄 수혜자의 자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제공되며, 돌봄자의 근로 여부와도 관계없이 제공된다. 실업자 또한 비공식 돌봄자가 될 수 있다. 이는 기본 실업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노동시장보조금 지급을 위한 욕구조사 시에는 고려된다. 비공식 돌봄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고용 관계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제공 중에 발생할 모든 종류의 상해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또한 노부모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하루 7시간 정도) 외부에서

돌봄을 제공받더라도 비공식 돌봄 제공자는 종일 돌봄자로 간주된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가족들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돌봄 수혜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자수당을 제공한다(European Commission, 2017). 독립성이 심하게 손상된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2017년 기준 매달 901유로를 지급한다. 필요할 경우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 장비(일회용 장갑, 침상 등)를 제공하고, 거주 공간 개선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가족 등의 비공식 돌봄자들은 특정 조건하에서 연금보험과 실업보험 가입이 인정되고, 무료로 상해보험에도 가입된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돌봄 수혜자에게 수당(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이하 APA)을 지급하여 공식적 돌봄이나 비공식적 돌봄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OECD, 2011). 그러나 배우자 간의 연대성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APA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APA를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이처럼 국외 국가들은 가족 돌봄자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돌봄 수혜자의 동일한 욕구가 전문적(공식적) 돌봄자에 의해 충족될 경우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Muir, 2017).

나.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비경제적 지원 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서구 국가들의 경우 가족부양은 경제적 부양보다 신체적 돌봄이나 가사노동 등의 도구적 지원을 주로 하게 된다(Albertini, 2016).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가족 부양자의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가족부양자 지원에 대한 관심은 복지정책이 발달한 유럽

지역에서도 높지 않다(Courtin, et al., 2014). OECD 국가의 가족 부양자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유럽 국가의 서비스 제공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음을 알 수 있다(OECD, 2011).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부양자 수당, 간병수당, 유급 가족휴가, 부양자 훈련 및 교육, 부양자 휴식 지원,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노인 대상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달했지만, 가족 부양자 대상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비경제적 지원 제도에서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중 휴식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과 가족 돌봄자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돌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휴식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핀란드,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유럽 지역의 경우 휴식 지원 서비스가 가장 흔히 제공되고 다음으로 정보 제공 및 훈련, 상담 등이 빈번히 제공된다(OECD, 2011). 노부모 부양자는 부양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여가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핀란드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비공식 돌봄 지원 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공식 돌봄자들은 매달 최소 2일 이상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Helsinki City 홈페이지, 2018). 매달 주어지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휴가 일수를 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현금으로 보상되지는 않는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비공식 돌봄자의 건강검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비공식 돌봄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9년 사회서비스법 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책

임이 강화되었다(Albin, Siwertsson, & Svensson, 2011). 스웨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비스 제공 범위가 상이한데, 벅세 지역의 경우 한 달에 15~25시간 정도의 부양자 무료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돌봄자를 위해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돌봄과 관련한 법률 및 질병 정보 제공, 돌봄 기술 교육 등을 제공한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특별 그룹 활동도 운영한다. 그 밖에 단기 보호 서비스, 데이케어, 초기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돌봄 정보 제공 시스템, 돌봄자 지원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독일의 경우 비공식 가족 돌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Act to Strengthen Long-Term Care)이 시행되어 단기 보호, 주간 보호, 휴식 지원 등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긴급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열흘간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이때 돌봄지원수당을 제공한다(Wetzstein, Rommel, & Lange, 2015). 또한 2009년부터 돌봄보험기금을 통해 돌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아일랜드의 경우 돌봄자보호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있는데, 전국 109개의 돌봄자 그룹과 16만 명의 비공식 돌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Courtin et al., 2014). 돌봄자보호네트워크에서는 가족 돌봄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해 돌봄자 클리닉을 운영하여 훈련된 간호사들이 무료로 정보나 조언 등을 제공한다. 노인 학대 예방, 운동, 식이 등을 포함한 13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2) 돌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덴마크, 스웨덴, 독일, 일본

최근 여러 국외 국가들이 돌봄과 일의 양립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는 노부모 돌봄을 위

한 유급·무급 휴가와 유연근무제도를 갖추고 있다(Courtin et al., 2014; OECD, 2011). 덴마크의 경우 돌봄 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제한이나 기간 제한 없이 유급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돌봄 대상자의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라는 근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돌봄휴가 중 급여는 병가 급여의 최소 82%를 지급한다. 스웨덴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임종 과정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최대 100일까지 유급 휴가를 주고, 임금의 80%를 제공한다. 프랑스에서는 가족의 임종 돌봄을 위해 3개월의 가족연대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는 한 번 연장될 수 있다. 고용주는 휴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휴가 기간 동안 최대 21일까지 급여가 지급된다. 일본은 93일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OECD, 2011). 이때 고용주가 임금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소득의 40%까지 지급한다.

독일의 경우 2015년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법률들(Family Caregiver Leave Act, Caregiver Leave Act)이 개정되어 다양한 돌봄휴가제도가 마련되었다(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2015; Wetzstein et al., 2015).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를 준비할 상황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 10일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임금보전수당을 장기요양보험기금에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대 6개월간의 무급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임금 손실에 대한 보호조치로 무이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원이 6개월 이상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대 24개월 동안 주당 근무시간을 최소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생계 지원으로서의 무이자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무급 휴가의 제공 조건은 대륙별로 나뉘는데, 한 그룹(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은 일 년 이상의 긴 휴가를 제공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무급 휴

가는 법률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므로 고용주가 거절할 수 있다(OECD, 2011). 프랑스의 경우 무급 휴가 요청을 고용주가 거절할 수는 없으나 이용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가족 돌봄 무급 휴가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근무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최소 80%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어야 한다. 반면 다른 집단은 석 달 정도의 짧은 휴가를 제공하거나(영어권 국가, 네덜란드 등) 여섯 달 정도의 중간 기간(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휴가를 제공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임종 간호에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여러 OECD 국가들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돌봄휴가를 확대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가족 휴가와 비교했을 때 제공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OECD, 2011).

영국의 경우 2003년 유연근무제도가 시행되어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와 18세 미만의 장애 자녀를 둔 경우 고용주에게 유연근무(유연근무 혹은 근로시간 단축)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OECD, 2016b). 이러한 제도가 2007년에는 성인을 부양하는 노동자에게 확대되었고, 2014년부터는 근속 기간이 최소 26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까지 유연근무제도를 확대하였다. 돌봄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도도 육아기 노동자와 비교해 노부모를 돌보는 가족 돌봄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OECD, 2011). 일본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 93일 이상 허용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와의 합의 하에 가족연대휴가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절 시사점

국내외 중·장년층 가족의 이증부양 관련 정책 고찰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 정책의 경우 성인자녀 부양가족과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은 어느 정도 존재하나 이증부양 부담 완화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급속한 가족 환경 변화로 인해 가족부양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으나, 부양에서 가족의 역할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간 사적 이전 규모를 살펴보면 자신의 생활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어느 정도의 자발적 부양 행위인 생활부조적 부양을 넘어 생계 공동적 부양인 생활 유지적 부양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장경섭 외, 2013). 바꾸어 말하면 중·장년층 가족이 가진 자원의 규모와 이전 정도에 따라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삶의 질과 기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이증부양 부담 완화와 관련된 정책은 전무하였다. 따라서 공적 체계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두 세대를 부양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이증부양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구의 노부모 부양 지원과 청년 지원 정책 사례 분석을 종합하면 서구의 중·장년층 가족은 성인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게 경험하고, 노부모 부양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이증부양 부담은 국내와 비교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서구 국가들은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모에게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인자녀 부양에 따른 부담감을 높게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노인부양에서는 가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며(Jensen, 2008; Saraceno, 2010 재인

용) 노인부양 가족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의 노부모 부양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개괄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대상인 성인자녀 및 노부모 관련 국내외 정책을 경제적, 비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성인자녀 대상 경제적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성인자녀, 즉 청년은 여러 OECD 국가에서 관심을 쏟고 있는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학 졸업 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가족이 개별 가족 수준에서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성인자녀 대상 경제적 지원 정책 고찰 결과 소득 지원 및 주거 지원 제도는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제공되므로 부모의 소득이 낮은 경우에만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또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모든 저소득 가족의 성인자녀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부모의 소득이 정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의 경우 공적 제도보다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성인자녀의 독립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서구 사회에서도 성인자녀에 대한 고등교육, 직업훈련, 주거 등의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Goldfarb, 2014; Tosi & Grundy, 2018). 덴마크와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들에게 교육, 주거, 고용, 공공부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직업 세계로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Thévenon, 2015). 반면 남유럽 국가의 빈약한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가족 의존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Fingerman,

2017; Thévenon, 2015). 일부 유럽 국가는 청년보장제도라는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청년정책은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인 대학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입 대상인 성인 자녀 지원은 국내의 청년정책과 유사하게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부조 제도하에서 지원되었다. 고용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와 달리 핀란드와 영국 같은 국가들은 고용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실업부조를 지원하였다. 특히 실업부조는 직업교육 훈련과 함께 제공될 때 효과적이므로 구직활동 및 교육에 대한 조건하에 실업부조가 제공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들에게 수당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 청년들이 양질의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고용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제도 도입이나 구직활동 과정 동안에 지급하는 수당의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당 지급과 관련해 자산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채창균 외, 2017).

둘째, 국내외 성인자녀 대상 비경제적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국내 성인 자녀 대상 비경제적 지원은 일자리 제공 등의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저성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고용정책 중심의 청년정책에는 한계가 있다(이철선 외, 2016b). 또한 대학생 중심의 청년정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인 소득 없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면서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 취업준비생, 근로 빈곤 청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이철선 외, 2016b).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년 집단을 고려할 때 고용 중심의 청년정

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공부조, 사회정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등 통합적인 청년정책 마련을 통해 청년의 학업·취업·결혼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30세 미만의 청년까지 청년 보장 대상으로 설정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핀란드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청년정책을 비교 고찰할 때는 청년정책의 대상 연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주도성과 독립성을 주요한 가치로 여기는 북유럽 및 일부 서유럽 국가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청년의 규범적 발달로 여기기 때문에(Tosi & Grundy, 2018) 2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주거, 고용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대학 졸업 이후 성인자녀의 경우 실업이나 질병 등의 상황에서 가족에게 털 의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30대 초반까지 포함하는 국내 청년정책은 우리 부모·자녀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성인자녀 부양가족 지원 정책 마련 시 우리나라 가족의 특수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노부모 부양 관련 경제적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노부모의 중·장년층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주택특별공급, 합가 시 양도소득세 면제 정도에 불과하였다. 노부모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부모에게 지원하는 경제 지원 정책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지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장년층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 노부모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시민권을 강조하는 북유럽

국가와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의 정책 차이가 일부 발견되었다.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상속제도나 세제 혜택과 같은 경제적 지원 제도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족부양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상속제도와 세제 혜택을 통해 가족부양을 장려하였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OECD 국가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자에게 돌봄자수당이나 간병수당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노부모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이는 노인부양을 가족의 책임 하에 두기보다 관대한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노부모 부양과 관련한 비경제적 지원은 가족 돌봄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자 지원 형태로 주로 제공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족의 노부모 부양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시설급여보다 가정에서의 재가급여를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부양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부모 부양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휴식 지원, 상담 등의 부양자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부양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공식적 돌봄을 활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가족요양보호사의 돌봄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거나 낮은 사회적 지지와 높은 돌봄 부담 등 가족요양보호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다각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반면 비공식 돌봄자 지원이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는 서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구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 돌봄자에게 그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휴식 지원, 상담, 훈련 등의 지원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은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치매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데 비해 핀란드의 경우 비공식 돌봄자가 매달 2일 이상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가족 돌봄자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돌봄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노부모가 외부 기관에서 하루 7시간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더라도 종일 돌봄자로 인정하여 돌봄자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상이 낮은 우리나라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가족 돌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독일의 경우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다양한 돌봄휴가제도를 마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서구의 가족 돌봄자 대상 서비스가 국내보다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가족 돌봄자를 위한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OECD, 2011). 국외 노인 부양 지원 정책 사례는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 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 자원 확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부양자 휴식 지원, 상담, 훈련 등 가족 부양자 지원 확대 및 방문의료, 외출동행, 단기보호 서비스 등의 지역사회 자원 확대 등을 통해 부양가족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소하는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2017; 최인희, 김정현, 2013).

한편 우리나라 중·장년층 가족은 이전 세대보다 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부모 돌봄 정책에서는

아직까지 돌봄·일·가정 양립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 활성화 등 중·장년층의 일·가정 양립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부양에 대한 요구 증가는 경제활동 참여 중단으로 인한 소득 상실뿐 아니라 향후 연금 수령액 감소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에서는 가족 돌봄자가 돌봄 제공과 함께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Colombo, & Mercier, 2012). 핀란드의 경우 돌봄자의 근로 여부는 돌봄자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실업수당 수혜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 비공식 돌봄자에게 연금보험과 실업보험 가입 혜택을 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비공식 돌봄자의 신체적 부담에 대한 보호 조치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가족 돌봄자 지원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상에서 이증부양 관련 정책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돌봄의 주요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가족주의적 가치가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중·장년층 가족은 이증부양 부담을 스스로 견뎌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향후 가족 부양부담 완화 정책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중·장년층 가족의 이증부양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증부양의 상황이나 부담 정도는 가족마다 상이할 것이다. 중·장년층의 이증부양 부담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중·장년층 세대가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두 세대에 대한 직접적 지원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 가족에 대한 의존성을 완화하는 것이 중·장년층 가족의 이증부양 부담 구조 완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고령화, 노인 빈곤, 청년 실업, 주택 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증부양을 담당하는 중·

장년층 가족이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한 중·장년층 대상 일자리 안정화 정책이나 이들의 일·가족생활 양립을 돕기 위한 가족휴가 제도의 활성화, 부양가족 지원 확대 등은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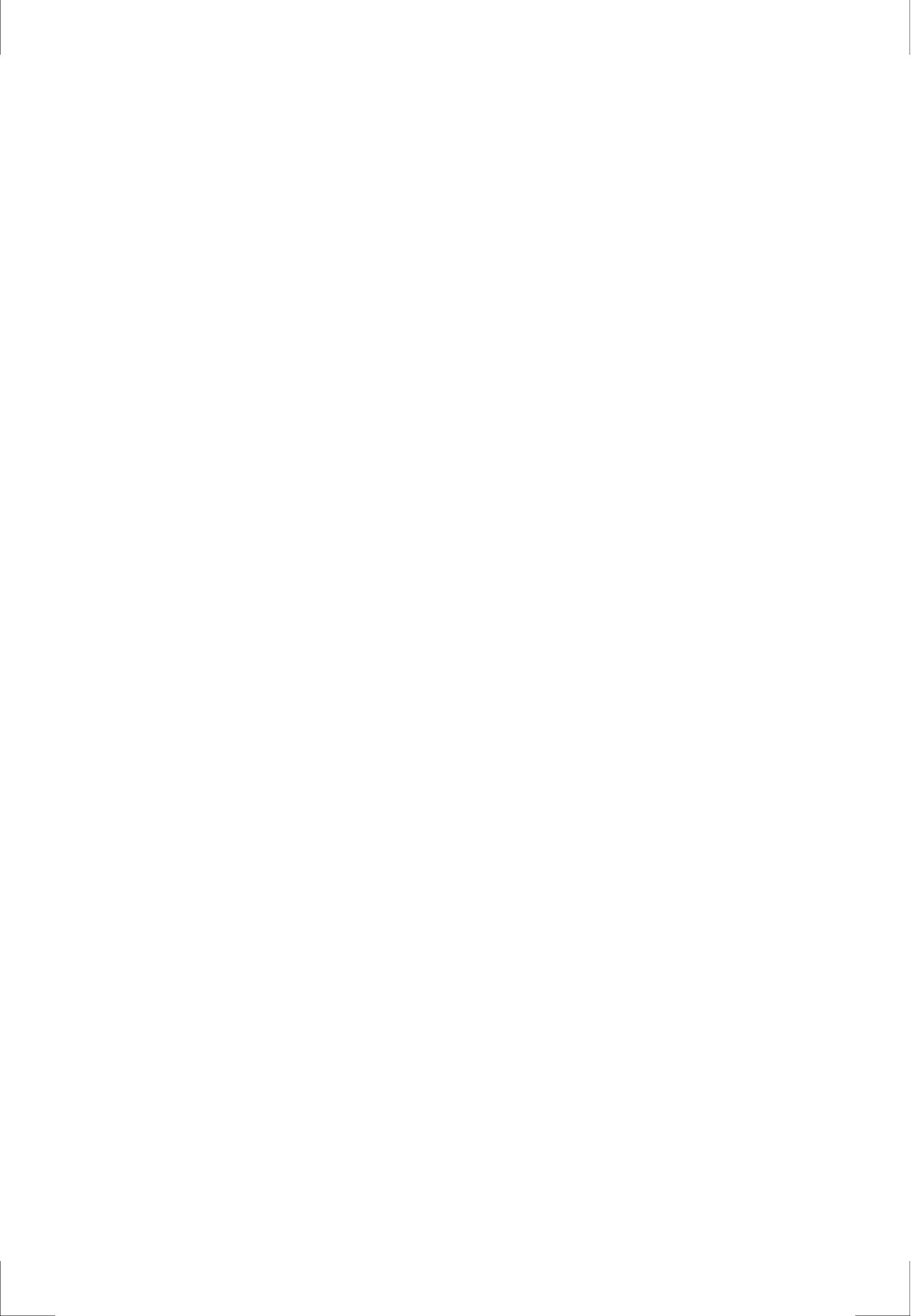
제 6 장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전망과 정책 함의

제1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환경 변화 전망

제2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전망

제3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전망을 통한 정책 함의



6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 구조 전망과 정책 함의

이 장에서는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견해 및 이중부양 구조를 전망하기 위해 일반 국민(만 20~65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를 하였다. 조사 완료된 응답자의 특성¹⁵⁾은 각주에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향후 이중부양 환경 변화 전망, 이중부양 유형별 구조 변화 및 부양 부담,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양 주체 간 부양 부담 변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석한 전문가 명단은 연구 방법에 제시하였다(제1장 제2절 참조).

제1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환경 변화 전망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부양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구조와 기능상으로 과거와는 상이해진 가족은 갈수록 부양 능력을 현저히 상실하고 있다. 게다가 1990년대 말부터 금융위기로 촉발된 장기적 경제 위기와 변모된 산업구조는 고용시장 전반에서 불안정성을 높이고, 중·장년 부모들의 임금소득의 확보와 장성한 성인자녀들의 경제적 독립마저

15) 조사 완료된 응답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508명, 6대 광역시 거주자가 209명, 8대 도지역 거주자 283명으로 응답자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였다. 남성이 510명, 여성이 490명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고, 만 45~64세가 전체 연령의 69.5%로 평균 연령은 43.1세로 조사되었다. 혼인 상태는 유배우 또는 동거가 635명으로 절반을 훨씬 상회하였다. 사별·이혼·별거 32명, 미혼 334명으로 3분의 1 분포에 이른다. 응답자 중에서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중부양 가구는 134명으로 약 13%의 분포를 보였다.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세대별로 추구하고 있는 가족 및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간극 또한 더욱 차이를 벌려 가고 있다. 노인들이 살아온 시대와 젊은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는 동일하지 않고, 그러한 세대 간 생활환경의 차이가 가족과 부양에 대한 의식의 틈새를 더욱 키워 놓고 있다.

향후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얼마나 가속화될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동향이 유사하게 지속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되고 있다. 가족의 구조는 더욱 핵가족화 중심으로 공고화되면서 소규모화되고 다양화될 것이고, 그로 인한 가족 내외적인 기능들의 위축이 예견된다. 인구·사회적 환경과 가족의 구조 및 기능이 이대로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면 향후 가족의 삶은 더욱 척박해지고, 부양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부담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양 부담은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와 가족 간, 부양 세대와 피부양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와 돌봄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층이 떠안게 되는 부양의 무게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년층은 한편으로는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세대와 청년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첫 세대로서 앞으로 사적 부양의 짐을 사회와 분담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사회는 중·장년층 가족들의 이중부양 부담을 해소하고, 이중부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 간의 구조적 균형을 어떻게 새로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양정책의 새로운 조망을 위해 이중부양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 및 각종 통계자료 그리고, 이중부양에 대한 전화 조사와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중부양에 대한 의식, 인구·사회적 및 가족 측면에서 이중부양 환경의 변화를 전망코자 한다.

1. 이중부양 의식의 변화 전망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성인기가 되면 개인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족의 동지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확산되어 있다. 가족에 대한 관념에서 가족주의적 집합 의식보다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개인주의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어 있다. 그러한 사회적 인식의 영향으로 청년들은 학교교육이 종료됨과 동시에 가족과 분거를 시작하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고도의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자율성은 결국 사회경제적 자립 능력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자립 능력이 미흡한 청년들은 캥거루처럼 가족의 동지 속으로 다시 복귀하여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도구적으로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처럼 구직난이 심각하여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면서 일도 안 하고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 이른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이 늘어나는 현상은 안타깝게도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자립에 대한 열망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의 품게 만든다. 이러한 가정처럼 현실과 기대 간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면 청년들의 열패감과 박탈감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은 청년들에 비하면 아직은 가족에 의한 전통적

인 부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장성한 자녀들과의 공동 주거와 공동 가계는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들에게도 불편하다는 인식 역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도 서구적 생활양식의 확산에서 기인하는 가치관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본인의 노후를 독립적으로 꾸려 나가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노인들은 스스로는 성인자녀 및 손자녀들과 함께하는 대가족적 삶 또는 서로 지근거리에 거주하며 일상의 부분들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선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노인들 스스로도 가족 구성원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적인 생활보다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노후에 대한 기대를 넓혀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노인에 대한 부양 환경이 변화하고, 사회와 노인 스스로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관은 가족과 친족 및 이웃을 통한 사적 부양보다는 정부나 사회 내 비영리단체들(NPOs)에 의한 사회적 부양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성인자녀들에 대한 부양 양상이 가족의 기대나 선호와 균형적으로 매칭되지 않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듯이 공적 부양제도의 구축이 지체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노인에 대한 부양은 가족이 담당해야 하는 현실과 사회가 부양을 분담하기를 희망하는 기대 또는 의식 간의 간극 또한 점차 크게 벌어지고 있다.

부양 의식의 변화는 이 연구의 전화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추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중부양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전화 조사 결과에서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의 경우에 공적 부양 주체와 사적 부양 주체 간에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자들은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즉 공사 간 부양의 분담 역할에 대한 균형적인 부양관을 가진 경우가 40.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와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한다’를 합친 사적 부양관이 29.8%,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와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한다’라는 공적 부양관이 29.6%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부양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가족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전통적인 사적 부양관에서 공적 부양관으로 상당히 전환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공사 간 균형적인 부양관이 40.6%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남성은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와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한다’를 합친 사적 부양관이 높은 데 비해 여성은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와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한다’를 합친 공적 부양관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공사 간 균형적인 부양관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40대 이하는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와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한다’를 합친 공적 부양관이 높은 데 비해 50대 이상은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와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한다’를 합친 사적 부양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중부양 가구 여부별로는 이중부양 가구가 비이중부양 가구보다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공사 간 균형적인 부양관을 많이 견지하고 있는 편이었다.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와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한다’는 사적 부양관은 이중부양 가구가 높은 편인 데 비해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와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한다’는 공적 부양관은 비이중부양 가구가 많았다. 이는 이중부양 가구 중 거의 절반이 공사 간 균형적인 부양관의 특성을 보이거나 사적 부양관도 약 35%로 3분의 1을 초과하여서 부양관이 이중부양의 행태와 관련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6-1〉 응답자의 특성별 이중부양의 경우 바람직한 책임 주체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함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함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함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함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함	계(수)	χ^2
전체	3.5	26.3	40.6	25.8	3.8	100.0(994)	
응답자의 성별							
남성	3.9	31.6	40.6	19.4	4.5	100.0(504)	28.800***
여성	3.0	20.8	40.6	32.5	3.2	100.0(489)	
응답자의 연령							
20~29세	3.7	21.4	33.7	35.3	5.9	100.0(191)	68.132***
30~39세	2.5	26.0	34.5	29.9	7.1	100.0(206)	
40~49세	2.1	20.3	42.8	31.6	3.2	100.0(241)	
50~59세	4.2	33.6	46.0	14.3	1.8	100.0(243)	
60~65세	6.2	32.2	46.9	14.7	0.0	100.0(112)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8.0	26.6	48.4	15.4	1.7	100.0(134)	20.352***
이중부양 가구 아님	2.8	26.2	39.4	27.5	4.2	100.0(86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전화 조사 결과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의 경우 누구를 얼마만큼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성인자녀보다 노부모를 좀 더 중점적으로 부양한다’는 응답이 56.1%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다음은 ‘성인자녀와 노부모 양쪽 다 가능한 최대로 부양한다’는 응답이 18.9%, ‘성인자녀와 노부모 모두 최소한만 부양한다’는 응답은 14.5%였다. 이 외에 ‘노부모보다 성인자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부양한다’는 응답은 8.9%로 노부모의 2분에 1에 불과하였다. ‘성인자녀와 노부모 모두 부양하지 않는다’는 미미하였다. 이는 국민의 부양관이 성인자녀보다 노부모 부양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그럼에도 3분의 1은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서 국민의 다수에서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부양관이 강함을 보여 준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성인자녀보다 노부모를 중점적으로 부양한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음으로 남성은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양쪽 다 가능한 최대한 부양한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 여성은 ‘성인자녀와 노부모 모두 최소한만 부양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남녀 모두 성인자녀보다 노부모 부양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부양 범위가 넓은 특성을 보였다.

〈표 6-2〉 응답자의 특성별 이중부양의 경우 바람직한 책임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성인자녀와 노부모 양쪽 다 가능한 최대한 부양함	성인자녀보다 노부모를 좀 더 중점적으로 부양함	노부모보다 성인자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부양함	성인자녀와 노부모 모두 최소한만 부양함	성인자녀와 노부모 모두 부양하지 않음	계(수)	χ^2
전체	18.9	56.1	8.9	14.5	1.6	100.0(989)	
응답자의 성별							
남성	22.8	57.5	8.7	9.7	1.3	100.0(505)	25.091***
여성	14.9	54.5	9.2	19.4	2.0	100.0(483)	
응답자의 연령							
20~29세	18.1	52.7	15.6	12.2	1.5	100.0(190)	21.751
30~39세	19.4	53.7	7.5	17.1	2.3	100.0(207)	
40~49세	15.5	63.0	5.5	14.5	1.5	100.0(242)	
50~59세	20.9	55.6	7.9	14.2	1.3	100.0(240)	
60~65세	22.6	52.0	10.0	13.7	1.6	100.0(111)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21.4	48.8	10.5	15.9	3.5	100.0(132)	6.485
이중부양 가구 아님	18.5	57.2	8.7	14.2	1.3	100.0(857)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성인자녀보다 노부모를 좀 더 중점적으로 부양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40~5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인자녀와 노부모 양쪽 다 가능한 최대한 부양한

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이 40대 이하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나머지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중부양 가구 여부별로는 모두 ‘성인자녀보다 노부모를 좀 더 중점적으로 부양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특히 비이중부양 가구가 이중부양 가구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성인자녀와 노부모 양쪽 다 가능한 최대로 부양한다’와 ‘성인자녀와 노부모 모두 최소한만 부양한다’는 응답은 이중부양 가구가 비이중부양 가구보다 높아서 부양 범위는 이중부양 여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였다.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노부모의 부양은 완전히 사회로 이양된 서구와 달리 아직도 노부모에 대해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양식은 서구화 되었으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가족이 담당해야 한다는 사고가 중심적임을 알 수 있다.

피부양 가족 구성원과의 동거에 대한 의식은 전통적인 부양관 및 가족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시화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준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전화 조사 결과에서 ‘성인자녀가 독립하지 못하여 부모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고 노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거주하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성인자녀와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인자녀와는 따로 살되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는 응답이 31.0%, ‘성인자녀와 부모님과 따로 살겠다’ 19.8%, ‘성인자녀와는 함께 살되 부모님과과는 따로 살겠다’는 14.4%의 분포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이중부양의 경우 선호하는 거주 방식으로 부양자와 동거하는 방식이 별거하는 방식보다 약 2배 높았다. 이중부양자 중에서는 부모님과 동거를 선호하는 비율이 성인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하는 비율보다 2.2배 높았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선호하는 거주 방식은 남성과 여성 모

두 ‘성인자녀와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동거를 선호하는 부양자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성인자녀와는 따로 살되 부모님과는 함께 살겠다’는 응답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 선호하는 거주 방식은 30~39세를 제외하고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성인자녀와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동거를 선호하는 부양자는 연령별로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6-3〉 응답자의 특성별 이중부양의 경우 희망하는 거주 방식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성인자녀와 부모님과 함께 살겠음	성인자녀와는 따로 살되 부모님과는 함께 살겠음	성인자녀와는 함께 살되 부모님과는 따로 살겠음	성인자녀와 부모님과 따로 살겠음	기타	계(수)	χ^2
전체	33.7	31.0	14.4	19.8	1.2	100.0(976)	
응답자의 성별							
남성	35.9	34.6	9.9	18.3	1.3	100.0(503)	21.848***
여성	31.3	27.1	19.2	21.4	1.1	100.0(473)	
응답자의 연령							
20~29세	37.3	32.2	14.5	15.5	0.5	100.0(190)	24.883
30~39세	33.6	23.9	18.7	23.1	0.8	100.0(204)	
40~49세	36.9	30.3	13.1	19.1	0.6	100.0(234)	
50~59세	29.6	32.2	13.5	22.0	2.7	100.0(240)	
60~65세	29.6	41.1	10.9	17.6	0.8	100.0(107)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31.6	28.9	18.0	19.7	1.7	100.0(132)	2.069
이중부양 가구 아님	34.0	31.3	13.8	19.8	1.1	100.0(84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이중부양 가구 여부별로 선호하는 거주 형태는 비이중부양자가 이중부양자에 비해 ‘성인자녀와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으나 ‘성인자녀와 부모님과 따로 살겠다’는 응답과 차이가 없었다. 동거를 선호하는 부양자로 ‘성인자녀와는 따로 살되 부모님과는 함께 살겠다’는 응

답은 비이중부양자에서 높았고, ‘성인자녀와는 함께 살되 부모님과과는 따로 살겠다’는 응답은 이중부양자에서 높아서 동거를 선호하는 부양자는 이중부양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중부양을 하는 경우에 분거보다는 동거를 선호하는 이면에는 이중부양과정에서 수행되는 활동들, 예를 들면 경제적 부양이나 돌봄, 그리고 심리정서적 지원 등에서 실질적으로는 동거가 분거보다 현실적으로 부양자들에게 이롭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전화 조사 결과 ‘성인자녀가 독립하지 못하여 부모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고 노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부양하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성인자녀와는 일시적으로 부양, 부모님은 지속적으로 부양’이 62.0%로 절반을 훨씬 상회하였다. 다음은 ‘성인자녀와 부모님 모두 지속적으로 부양’이 20.6%인 데 비해 ‘성인자녀와 부모님 모두 일시적으로 부양’이 12.9%로 지속적 부양이 일시적 부양에 비해 약 8%포인트 높았다. 이 외에 ‘성인자녀는 지속적으로 부양, 부모님은 일시적으로 부양’은 미미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중부양의 경우 선호하는 부양 방식은 지속적인 부양이 일시적인 부양에 비해 높았다. 지속적인 부양자로 부모님을 선호하는 비율은 거의 3분의 2 분포를 보인 데 비해 성인자녀를 선호하는 비율은 상당히 미미하였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 선호하는 부양 방식은 남성은 ‘성인자녀와 부모님 모두 지속적으로 부양’이 높은 데 비해 여성은 ‘성인자녀와 부모님 모두 일시적으로 부양’이 높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성인자녀와는 일시적으로 부양, 부모님은 지속적으로 부양’이 절반을 상회하였으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지속적인 부양자로 부모님을 선호하는 비율은 성별로 유사하였다. 연령별로 선호하는 부양 방식은 대체로 연령이 높은 경우 ‘성인자녀와 부모님 모두 지속적으로 부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인

자녀와 부모님 모두 일시적으로 부양'은 연령별로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성인자녀와는 일시적으로 부양, 부모님은 지속적으로 부양'은 대체로 연령이 낮은 경우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속적인 부양자로 부모님을 선호하는 비율은 젊은 연령층에서 높고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서 낮아서 실제로 이중부양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층의 경우 부양 기간이 지속될 때 부양자와의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6-4〉 응답자의 특성별 이중부양의 경우 희망하는 부양 방식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성인 자녀와 부모님 모두 지속적으 로 부양	성인 자녀는 일시적으 로 부양, 부모님은 지속적으 로 부양	성인 자녀는 지속적으 로 부양, 부모님은 일시적으 로 부양	성인 자녀와 부모님 모두 일시적으 로 부양	성인 자녀와 부모님 모두 부양하지 않음	기타	계(수)	χ^2
전체	20.6	62.0	2.3	12.9	1.2	1.0	100.0(975)	
응답자의 성별								
남성	25.2	62.2	1.2	9.1	1.2	1.1	100.0(500)	28.605***
여성	15.6	61.8	3.5	17.0	1.2	0.9	100.0(475)	
응답자의 연령								
20~29세	14.3	69.2	2.3	13.2	1.0	0.0	100.0(188)	28.205
30~39세	15.5	62.8	3.5	16.5	0.3	1.5	100.0(205)	
40~49세	26.0	60.2	1.7	8.7	1.5	1.8	100.0(235)	
50~59세	22.6	58.7	2.5	14.0	1.2	1.1	100.0(240)	
60~65세	24.6	59.0	1.2	12.4	2.8	0.0	100.0(107)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29.1	47.6	4.4	15.8	0.9	2.3	100.0(130)	17.330**
이중부양 가구 아님	19.2	64.2	2.0	12.5	1.3	0.8	100.0(845)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이중부양 가구 여부별로 선호하는 부양방식은 이중부양 가구 모두에서 '성인자녀와 부모님 모두 지속적으로 부양'과 '성인자녀와 부모님 모두 일시적으로 부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인자녀와는 일시적으로 부양, 부모님은 지속적으로 부양'은 비이중부양 가구에서 높아서 지속적

인 부양자로 부모님을 선호하는 경향은 비이중부양가구가 이중부양가구보다 높았고 이중부양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제 이중부양 가구에서 부양 기간이 지속될 경우 부양자와의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중부양을 할 경우에 노부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부양을 선호하지만,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부양을 선호하는 경향은 노부모에 대한 전통적 부양관과 공적 부양제도의 미흡함이 결부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성인자녀에 대한 조속한 사회경제적 독립에 대한 기대가 일시적인 부양의 선호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될 것인가?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대체로 미혼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적정 책임 범위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이하였다.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취업 전까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성인자녀 관련해서는 어디까지가 적절한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어쨌든 미혼 성인자녀가 성인으로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다면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전까지가 부모가 해 줘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3)

“저는 대학에 대한 부분은, 대학의 등록금 문제가 있고, 대학 등록금을 버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대학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학자금 제도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고, 저리, 무이자로 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가게 된다면, 그런 계 형성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조금 앞당겨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1)

성인자녀의 부양 책임 시기에 대해 의견이 다양한 것은 성인자녀들의 독립기가 지체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적절한 책임 범위에 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국가가 책임져서 이니셔티브하게 그것들의 빈틈을 메워 주고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가족이 책임져 가는 형태가 확실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모든 노인들을 다 하기에는 실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가 함께 그것을 보완해주는 차원이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는 가족에게, 또 중·장년층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1)

“어쨌든 애정으로 키워 주는 가족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 책임 범위로 보자면 국가 책임이고, 그런 것들을 받쳐 주는 관계 같은 것은 중장년 세대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3)

이상과 같이 전문가들은 성인자녀나 노부모가 자립 능력이 미흡하다면 미래에 부양의 사회화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앞의 <표 6-4>와 <표 6-5>에서 노부모와의 동거나 가족의 부양 책임을 수용하는 응답 경향이 강했던 것과는 다소 상충되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조사 결과 간에 상이한 응답 경향이 도출된 데에는 한편으로 대다수의 한국 가족들이 부양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서구와

달리 가족들이 부담을 지더라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책임은 가족이 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규범성의 차원에서 국가나 사회가 부양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음을 드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양관을 견지하면서 향후에도 미혼 성인자녀에 대한 도구적 부양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거 분리의 비용이 여전히 높고 그것에 대한 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성인자녀 부양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가사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계속 가고요. 도구적 부양은 저변에 계속 깔려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1)

“자녀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거나 딸이나 이런 쪽에 황혼 육아를, 손자녀를 봐주는 입장에서도 내가 돈을 못 주지만 이저라도 해 준다는 식의 의사를 표현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경제적 부양이 안 되니까 도구적 부양으로 연결되는 쪽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부양관 자체가 내 자녀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데려갈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강하게 존재하는 한 이런 성인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잘 끊어지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1)

오늘날 부모들은 성인자녀들의 독립을 희망해도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

과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 부양관이 결부되어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경제적 지원을 못 한다 하더라도 도구적 부양은 지속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달리 노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향후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회구성원들은 노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본인의 삶 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부양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대가 올라오면서부터는 노부모를 내가 직접 모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약화될 거 같아요.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 봤을 때도 병원이나 이런 시설에 모시는 경우도 더 많았고, 지금 따로 당연히 살지만 그분들이 알아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셔야 한다는 생각은 좀 줄어들었다고 보거든요.”(1)

이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과 마찬가지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도 노부모의 경제적 독립 능력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태도에 서구적 부양관이 가세되면서 미래에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사회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양 의식과 태도에 토대를 두고 가정할 때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이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대상, 즉 부양의 객체가 노부모인가 아니면 자녀인가라는 문제에서 핵가족화라는 변화의 양상을 반영하여 노부모보다는 자녀에 대해 부양의 주체로서 가족을 우선적인 책임자로 보는 시각은 앞으로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노부모에 대한 가족의 부양은 갈수록 위축될 것이고, 그런 만큼 노인을 위한 사회적 부양에 대

한 기대는 증폭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부양의 객체에 대한 의식은 대상별로 다른 시각을 보인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1차적 부양 책임자로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을 가족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회경제적 구조가 미래에도 불안정성을 그대로 내재하고 있고, 청년들의 자율적 독립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부모 스스로도 스스로의 생활과 노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을 가족에게 책임지우기에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 사회전반의 개체화된 가족관과 부양관이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중부양에 대한 의식에서 사적 부양에 무게를 두는 부양관에 대해서는 미래에 그리 긍정적일 것으로 예견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러한 이중부양의 의식 변화를 미리 고려하여 성인자녀와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성인자녀들이 스스로의 부양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가족 갈등의 촉발 요인이 되어 종래에는 가족관계마저 흔들리게 할 것이고, 성인자녀 스스로의 결혼과 출산 등 사적 영역의 구축 또한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노부모들은 장기화되는 노후생활에 대한 스스로의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최후의 보루로 가족에게 의지하려 해도 가족은 이미 미성년자녀를 돌보기에도 벅찬 현실에서 노부모를 외면할 수도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2. 인구·사회적 변화 전망

가.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일반적으로 안정된 인구구조의 정형적 모습은 아동-청·장년-노인으로 구성되는 3세대 간에 부양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산 활동 세대(청·장년)와 미래(아동)의 생산 활동 세대가 두텁게 자리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래 사회의 주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아동 세대의 규모와 관련해 한국 사회에서 합계출산율은 2001년에 1.309명을 기록한 이후 17년 동안 줄곧 1.3명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OECD 회원국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없다. 2016년 12월 중위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장래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이 1.22명이고, 2020년에는 1.24명으로 약간 회복되다가 2030년에 1.32명으로 초저출산 현상에서 탈피하여 2065년까지 1.38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5〉 중위추계 장래 합계출산율(2018~2065)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2018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65년
합계출산율	1.22	1.24	1.32	1.38	1.38	1.38	1.38

주: 2016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자료: 통계청. (2016.12. 8.) 「장래인구추계: 2015~2065」 재구성.

단순하게 위의 표에 제시된 수치를 살펴보면 미래의 합계출산율은 2.1명이라는 인구대체율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해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2018년 8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낮아졌다. 상기한

2016년의 장래 합계출산을 추계치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갈수록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서 저출산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동향을 보여 주는 다른 하나의 지표인 고령 인구 규모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래 기대수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장래 기대수명은 2018년의 평균 82.8세(남자 79.8세, 여자 85.8세)에서 2065년에는 평균 90세(남자 88.4세, 여자 91.6세)로 상향될 것으로 예견된다. 평균 기대수명이 해당 기간 동안 약 7세가 연장되고, 남자와 여자 간의 기대수명 차이가 6세에서 3.3세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성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고령 인구의 수는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6〉 중위추계 장래 기대수명(2018~2065)

(단위: 세)

성별	2018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65년
전체	82.8	83.2	85.2	86.9	88.3	89.5	90.0
남자(A)	79.8	80.3	82.7	84.7	86.3	87.8	88.4
여자(B)	85.8	86.2	87.8	89.1	90.2	91.2	91.6
차이(B-A)	6.0	5.8	5.1	4.4	3.9	3.4	3.3

주: 2016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자료: 통계청. (2016.12. 8.) 「장래인구추계: 2015~2065」 재구성.

앞에서 살펴본 출산 동향과 고령화 현상을 전제로 하고, 2016년 합계출산율과 중위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을 전망해 보면 총인구는 2018년 5163만 5256명에서 2065년 4302만 4097명으로 약 5분의 1이 감소한다.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668만 843명에서 413만 1631명으로 약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고, 전체 인구 중 구성비는 12.9%에서 9.6%로 줄어든다. 15~64세의 경제활

동인구는 3757만 3903명에서 2061만 9500명으로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인구구성비는 72.8%에서 47.9%로 감소한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738만 510명에서 1827만 2966명으로 급증하여 구성비가 14.3%에서 42.5%로 약 3배 가까이 폭증한다.

총부양비는 37.4에서 108.7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그 가운데 유소년 부양비는 17.8에서 20, 노년 부양비는 19.6에서 88.6으로, 특히 노년 부양비가 현저하게 급증한다. 고령 인구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65~69세와 70~79세는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80세 이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0.5에서 442.3으로 약 4배 가까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7〉 현 수준 출산율과 중위 기대수명 기준 장래 인구구조와 부양비(2018~2065)

구분	2018	2020	2030	2040	2050	2060	2065
총인구(명)	51,635,256	51,973,817	52,941,342	52,197,882	49,432,752	45,245,985	43,024,097
0~14세(%)	6,680,843 (12.9)	6,574,424 (12.6)	6,108,720 (11.5)	5,646,728 (10.8)	4,715,511 (9.5)	4,265,150 (9.4)	4,131,631 (9.6)
15~64세(%)	37,573,903 (72.8)	37,265,725 (71.7)	33,877,527 (64.0)	29,431,144 (56.4)	25,904,596 (52.4)	22,444,457 (49.6)	20,619,500 (47.9)
65세 이상(%)	7,380,510 (14.3)	8,133,668 (15.6)	12,955,095 (24.5)	17,120,010 (32.8)	18,812,645 (38.1)	18,536,378 (41.0)	18,272,966 (42.5)
총부양비	37.4	39.5	56.3	77.4	90.8	101.6	108.7
유소년 부양비	17.8	17.6	18.0	19.2	18.2	19.0	20.0
노년 부양비	19.6	21.8	38.2	58.2	72.6	82.6	88.6
노령화지수	110.5	123.7	212.1	303.2	399.0	434.6	442.3

주: 1) 2016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로,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임.

2) 작성 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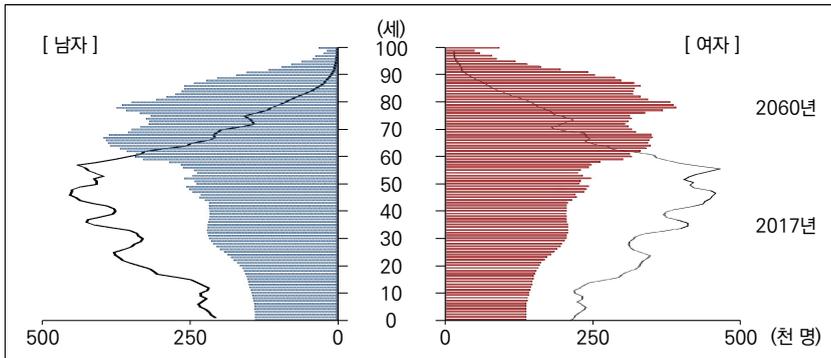
3) 1960~2015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16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4) 중위추계(기본추계)는 인구변동 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한 결과, 고위추계(최대인구 추계)는 인구변동 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고위가정을 조합한 결과, 저위추계(최소인구 추계)는 인구변동 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저위가정을 조합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2016.12. 8.) 「장래인구추계: 2015~2065」 재구성.

유소년 부양비에 비해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지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은 인구구조의 기형적 변형이 매우 심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결국 앞의 인구 추계표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령화의 심화와 유소년 인구 및 청장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인구구조의 변형을 야기한다. 미래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는 그래프로 유형화하였을 때 고령 인구층보다 하층 연령층이 더 넓고 두터운 분포를 보이는 종형에서 점진적으로 하층과 중층은 폭이 협소해지고 상층의 폭이 갈수록 넓어지는 방추형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림 6-1] 장래 인구구조 변화



자료: 통계청. (2016.12. 8.) 「장래인구추계: 2015~2065」 재구성.

장래 인구구조의 불균형적인 변형은 미래의 부양자가 될 아동 세대와 청·장년 세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 세대와 청·장년 세대가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노인 세대를 위한 경제활동과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해도 두 세대가 해결할 수 있는 부양의 범위와 총량에 대한 압박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사회적 변화 전망

유소년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사회의 생산력은 위축되고, 미래 사회의 경제와 사회보장 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동력 또한 쇠퇴할 것이다. 사회의 생산 주체로서, 그리고 사회보장의 비용 지불자로서 유소년과 경제활동인구가 가지는 의미는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만약 그러한 가정하에서 불균형적으로 증가하게 될 고령 인구들이 스스로의 사회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비용 지불자와 수혜자로서 각기 상이한 입장에 놓이게 될 연령 집단들은 그로 인한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감지된다고 할 수 있다.

가속화되는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그로 인해 야기될 사회경제의 침체 현상은 경제적 자립이 미진한 젊은 층의 결혼과 가족의 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혼인 상태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성과 상관없이 미혼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사회에서 직업 노동이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학력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는데, 사회경제적 구조가 개인들의 직업적, 사회적 성취를 어렵게 한다면 그 귀결은 결혼과 가족의 형성을 유보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결혼 연령을 뒤로 미루는 만혼 현상과 결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비혼 현상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미래에 인구구조의 변화로 야기될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개인들의 사적 영역과 공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어떤 여파들을 몰고 올지를 명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개인들의 생애주기별 단계가 길어지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삶이 허용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가족의 변화 전망

가. 가족의 소규모화

근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가족은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꾸준히 변신해 왔다. 산업화는 개인들의 삶이 직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인구는 도시로 밀집되도록 하는 결과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변동 속에서 가족은 기존의 대가족제도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동체적 돌봄에서 이탈하여 도시 속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소규모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의 트렌드는 유지될 것으로 예견된다.

한국 사회보다 앞서서 가족의 변화를 경험했던 서구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한국의 가족은 더 가파른 핵가족화와 소규모화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고령 인구의 증가라는 현상이 더해지면서 기존 가족 유형 중에 주류를 차지했던 핵가족의 위치는 갈수록 취약해지고, 다양한 가족 형태들의 약진이 눈에 띌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예측은 미래의 가구 변화 양상을 추계한 자료들을 통해서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가구 유형별로 추계를 해 보면 2018년에 우리나라의 총가구 수는 1975만 1807가구인데, 2045년에는 이 수가 2231만 7526가구로 증가한다. 상기한 것처럼 인구추계 결과(〈표 6-9〉 참조)를 보면 앞으로 인구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이처럼 가구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가구의 분화 현상이 상당히 촉발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8년에는 전체 가구 중에서 3세대 가구는 52만 1313가구에 불과하고,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가구 유형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

족(582만 5489가구) 가구이다. 바로 그 뒤를 잇는 가구 유형은 1인 가구로 573만 8931가구이다. 그런데 이 상황은 2045년에 이르면 3세대 가구는 24만 6099가구로,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는 354만 832가구로 감소한다. 1인 가구가 809만 8369가구로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역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핵가족(부부와 미혼 자녀, 부/모와 미혼 자녀) 전체를 놓고 보아도 2018년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45년에는 579만 8059가구로, 1인 가구의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미래에는 2세대 핵가족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 유형의 하나로 남기는 하겠으나, 점차 그 위상을 상실하게 되고, 기존에는 주류 유형에 포함되지 못했던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것은 가족이 핵가족 구조 내에서 더욱 개체화되는 변화를 보이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8〉 가구 유형별 추계 가구

(단위: 가구)

구분	2018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45년
전체	19,751,807	20,174,317	21,640,586	22,306,364	22,317,526
부부	3,219,483	3,404,157	4,270,743	4,707,330	4,741,902
가구주+미혼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222,826	226,185	215,155	199,130	191,945
1세대 기타	140,236	150,621	196,314	220,834	226,482
부부+미혼 자녀	5,825,489	5,603,371	4,654,105	3,868,443	3,540,832
부+미혼 자녀	585,265	614,204	715,777	748,538	751,487
모+미혼 자녀	1,573,031	1,599,368	1,634,384	1,565,090	1,505,740
부부+부(모)	144,027	143,550	141,200	151,857	168,688
부부+미혼 자녀+형제자매	75,719	74,625	71,741	68,860	66,465
조부(모)+미혼 손자녀	115,720	118,559	131,049	164,233	190,230
2세대 기타	895,445	980,393	1,346,118	1,688,307	1,899,151
부부+미혼 자녀+부(모)	521,313	484,815	345,341	268,779	246,099
3세대 이상 기타	460,560	460,095	452,065	428,086	399,278
1인 가구	5,738,931	6,067,878	7,196,471	7,953,010	8,098,369
비친족 가구	233,762	246,496	270,123	273,867	290,858

자료: 통계청. (2016.12. 8.) 「장래인구추계: 2015~2065」 재구성.

나. 가족 형태의 다양화

과거 전통사회에서도 가족들은 독신,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조손가족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그 수가 미미하여 주류 사회에서 일반적인 가족의 형태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부터 사회구조와 가족의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기존에 비주류로 사회에서 간과되었던 가족들이 빠른 속도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 가족이 하나의 표준화된 모습으로만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가족도 다양화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이혼 가족의 변화 양상을 미리 전망해 보면 가족의 다양성이 향후에 얼마나 확산될 것인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이혼은 재혼 또는 독신, 그리고 동거 등 소위 말하는 가족의 정형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족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토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가구주가 있는 가구수의 추계를 통해 이혼가족의 변화 양상을 전망해 보면 2018년에는 총가구 1975만 1807가구 중 194만 935가구로 9.83%를 차지하는데, 2045년에는 총가구 2231만 7526가구 중 294만 3444가구로 13.2%로 증가한다.

〈표 6-9〉 이혼 가구주 장래가구 추계(2018~2045)

(단위: 가구)

구분	2018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45년
총가구	19,751,807	20,174,317	21,640,586	22,306,364	22,317,526
이혼가구주 가구	1,940,935	2,084,368	2,663,345	2,923,030	2,943,444

자료: 통계청. (2016.12. 8.) 「장래인구추계: 2015~2065」 재구성.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혼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독신이나 한부모가족과 재혼가족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혼을 한 뒤에 이혼 당사자가 자녀와 여타의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면서 한부모가족을 구성할 수도 있다. 한부모가 재혼을 하게 되면 기존의 두 가족이 새로이 하나의 가족으로 재탄생하게 되면서 이들은 새로운 관계로 조합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자녀가 성장하여 분거가 독립을 하고 홀로 살아가게 되면 이들은 독신 가구를 형성하게 될 텐데, 갈수록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독신자들의 수 또한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정형으로 여겨졌던 핵가족 이외의 가족들이 사회에 다양하게 포진하게 되면 미래 사회에서는 다양성이 가족의 속성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다. 가구주의 고령화

인구의 고령화는 당연히 가족 구성원들의 고령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장래 가족의 변화 양상을 전망해 보면 가족의 고령화 양상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2018년에 전체 가구 중 65세 이상의 가구주가 있는 가구는 417만 5585가구이고, 가구주가 45~64세 사이인 중·장년층 가족이 904만 3344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반전되어 2040년부터는 65세 이상 가구주 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2045년에는 65세 이상의 가구주가 있는 가구가 1065만 2555가구로 증가한다. 중·장년층 가구주가 있는 가족은 751만 8833가구로 감소한다.

〈표 6-10〉 가구주의 연령별 장래가구 추계(2018~2045)

(단위: 가구)

구분	2018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45년
전체	19,751,807	20,174,317	21,640,586	22,306,364	22,317,526
19세 이하	76,875	69,621	64,760	60,401	64,277
20~24세	492,296	490,726	396,123	410,691	430,208
25~29세	908,203	970,752	776,186	768,350	717,987
30~34세	1,215,702	1,165,944	1,197,890	833,840	847,012
35~39세	1,886,307	1,759,535	1,547,780	1,083,600	965,310
40~44세	1,953,495	1,897,381	1,477,958	1,475,614	1,121,344
45~49세	2,426,959	2,326,275	1,958,195	1,755,128	1,615,484
50~54세	2,242,900	2,343,180	2,038,050	1,648,734	1,834,559
55~59세	2,433,579	2,369,252	2,423,303	2,141,912	1,817,205
60~64세	1,939,906	2,174,265	2,423,890	2,238,170	2,251,585
65세 이상	4,175,585	4,607,386	7,336,451	9,889,924	10,652,555

자료: 통계청. (2016.12. 8.) 「장래인구추계: 2015~2065」 재구성.

상술한 고령 가구주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로 가구주의 연령도 상향되면서 이들이 가지고 갈 부양의 몫이 그대로 이동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오늘날 중·장년층들은 현재 부양자로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들은 노령기에 접어들어도 가구주로 가계의 부양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기간이 갈수록 장기화될 것이고, 소득활동이 위축되고 스스로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증가할 것임을 함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구주의 고령화는 가족 전반의 부양 위기를 가시화해 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구주의 고령화가 야기할 가족의 부양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가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제2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전망

오늘날 개인과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투영하여 미래를 예측해 보면 개인과 가족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개체화되고 분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가족이라는 집단적 제도의 규범성은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부양관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되고, 개인주의화 혹은 개별화가 새로운 가족규범으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족의 이중부양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적 조건들도 중·장년층 가족들이 헤쳐 나가기에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향후를 내다보면 아동과 청년보다는 노인 세대의 양적 증가가 가장 눈에 띄는 인구적 변화라고 할 때, 그 세대들 간에 끼어 있는 중장년 세대는 본래 세대들을 잇는 허리와 그들을 받치는 주춧돌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구조적 유연화라는 사회경제적 변동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책임과 무게가 너무나 버겁게 될 것이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 또한 갈수록 더욱 소규모화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양의 욕구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내에서 생산 활동이 가능한 모든 구성원들은 생계와 돌봄의 공급 주체로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노부모의 부양 기간은 장기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어 중·장년층 부양자들은 설령 그들이 노후 은퇴기에 접어든다 해도 부양의 무게에서 놓여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중부양 환경에 대한 전망이 미래 사회에서 이중부양의 변화 추이와 얼마나 잘 들어맞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전화 조사와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를 토대로 향후의 이중부양 및 이중부양 부담의 변화 양상과 수준에 대해 진단

하고, 이중부양 부담의 변화가 가족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미리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이중부양의 변화 양상과 수준 전망

가. 이중부양의 변화 양상 전망

이중부양 환경이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것임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중부양이 향후에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추측해 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사회보장과 노동시장 지원 정책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가족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양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상은 전화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전화 조사 결과 중·장년층 세대의 이중부양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는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견해(43.7%)가 가장 많았다.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22.6%)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현재보다 매우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14.4%)과 현재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13.4%), 현재보다 매우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5.9%)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이중부양이 증가하리라는 견해가 감소하리라는 견해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성과 상관없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는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1순위를 차지하였다. 이중부양 여부에 따른 견해에서도 이중부양 가구 응답자와 이중부양 가구가 아닌 응답자 모두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표 6-11〉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전반적인 부양

(단위: %, 명, 점)

구분	현재보다 매우 줄어듦	현재보다 줄어듦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늘어남	현재보다 매우 늘어남	계(수)	χ^2	평균	F(t)
전체	5.9	22.6	13.4	43.7	14.4	100.0(989)		3.4	
응답자의 성별									
남성	5.1	21.3	15.8	43.1	14.7	100.0(506)	6.557	3.4	(0.795)
여성	6.7	24.0	10.9	44.3	14.1	100.0(483)		3.4	
응답자의 연령									
20~29세	3.0	25.3	21.2	36.6	13.9	100.0(192)	38.564***	3.3	3.159*
30~39세	4.2	17.2	12.9	48.0	17.6	100.0(206)		3.6	
40~49세	7.9	20.8	9.8	45.7	15.8	100.0(242)		3.4	
50~59세	6.5	24.5	8.9	47.8	12.3	100.0(240)		3.4	
60~65세	8.4	27.8	18.6	34.4	10.7	100.0(109)		3.1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10.8	28.4	11.8	36.8	12.2	100.0(133)	10.529*	3.1	(-271)**
이중부양 가구 아님	5.1	21.7	13.7	44.8	14.8	100.0(856)		3.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한편 FGI 결과에서도 부양 의식이 변화하고, 인구사회적 구조와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면서 새롭게 구축될 부양 환경으로 인해 앞의 표에서처럼 대다수의 개인들은 향후에 이중부양이 증가하리라는 전망을 우세하게 진단하고 있다. 즉 향후 부양에 대한 가족 환경이 변화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중부양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총량은 증가하고, 그 상황에서 개별 가족 구성원이면 구성원이 하는 것은 줄어듦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차별이 되지 않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는 게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4)

“노인들도 다 이제 주거 분리를 원하고 자기 돌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흐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식의 도구가 확산되면서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도 다들 공유하는 흐름으로 전반적인 사회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합니다.”(4)

전반적으로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위한 이중부양이 향후 증가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공공성의 확장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증대하리라는 조사 결과들은 향후 이중부양 지원 정책이 정책의 보편성이나 포괄성에서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정책의 전달 주체가 공적 주체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 이중부양 유형별 이중부양의 변화 수준 전망

앞에서 전반적인 이중부양의 변화 동향이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논의를 해 보았는데, 이중부양의 증감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이중부양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중부양 유형별로 향후 이중부양의 변화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경제적 부양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늘어남’(39.1%), ‘현재보다 줄어듦’(22.0%), ‘현재보다 매우 늘어남’(19.4%) 순으로 응답하였다. 정서적 부양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늘어남’(32.3%), ‘현재보다 줄어듦’(28.6%), ‘현재 수준임’(18.0%)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체적 부양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늘어남’(37.9%), ‘현재보다 줄어듦’(23.1%), ‘현재 수준임’(15.4%) 순으로 응답하였다. 도구적 부양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늘어남’(40.5%), ‘현재보다 줄어듦’(21.3%), ‘현재 수준임’(17.4%)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중부양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견 속에서 각 이중부양 유

형별로도 모든 유형에서 이중부양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앞으로 이중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표 6-12〉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 유형별 향후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
(단위: %, 명, 점)

구분	현재보다 매우 줄어듦	현재보다 줄어듦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늘어남	현재보다 매우 늘어남	계(수)	평균
경제부양	6.7	22.0	12.7	39.1	19.4	100.0(982)	3.4
정서부양	9.2	28.6	18.0	32.3	11.9	100.0(983)	3.1
신체부양	8.9	23.1	15.4	37.9	14.7	100.0(983)	3.3
도구부양	5.7	21.3	17.4	40.5	15.0	100.0(985)	3.4
전반적인 부양	5.9	22.6	13.4	43.7	14.4	100.0(989)	3.4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응답자의 특성별로 경제적 이중부양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를 살펴 보면 성별, 연령 및 이중부양 가구 여부별로도 모두 경제적 이중부양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6-13〉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경제적 부양
(단위: %, 명, 점)

구분	현재보다 매우 줄어듦	현재보다 줄어듦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늘어남	현재보다 매우 늘어남	계(수)	χ^2	평균	F(t)
전체	6.7	22.0	12.7	39.1	19.4	100.0(982)		3.4	
응답자의 성별									
남성	6.1	20.8	14.2	37.2	21.7	100.0(501)	6.638	3.5	(1.325)
여성	7.3	23.3	11.2	41.1	17.1	100.0(481)		3.4	
응답자의 연령									
20~29세	2.9	19.1	19.7	35.0	23.4	100.0(189)	50.730***	3.6	6.468***
30~39세	4.1	15.3	15.2	40.3	25.2	100.0(205)		3.7	
40~49세	8.3	22.9	6.9	42.7	19.2	100.0(241)		3.4	
50~59세	8.1	26.0	10.9	40.5	14.5	100.0(239)		3.3	
60~65세	12.1	29.5	12.7	33.1	12.6	100.0(108)		3.0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12.2	31.8	8.2	34.1	13.8	100.0(133)	19.156***	3.1	(-3.549)***
이중부양 가구 아님	5.9	20.5	13.4	39.9	20.3	100.0(849)		3.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이상과 같이 모든 집단이 경제적 이중부양의 증가를 전망하는 이유는 향후 성인자녀의 독립이 지체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노부모의 생존 기간이 연장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경제적 독립성을 지원할 정책들이 확장되지 않는다면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예측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는 경제적 부양의 변화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경제적 부양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블 케어나 이런 논의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자녀를 부양하는 것도 돈이 있는 가정이 하는 거거든요. 이미 돈을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1)

“경제적 부양은 아마 계층별로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지속할 거고, 못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물질적 토대가 없기 때문에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실 매꿔 나가는 게 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그게 다 돈이거든요. 서비스 쓰려고 해도 다 돈인데 이런 부분에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부양을 덜 해도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3)

또한 경제적 부양에 대해 계층별이 아닌 세대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중부양 환경 자체가 고령화 주기가 길게 되고 청년 실업이라든지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부정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서 이중부양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 부양은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3)

전문가들이 진단하듯이 경제적 이중부양이 계층별로 서로 다르게 전개되면서 경제적 부양 부담 능력이 있는 가족들은 경제적 이중부양을 지속하겠지만, 부담 능력이 없는 가족들은 경제적 이중부양을 포기할 가능성도 야기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에 부양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는 향후 이중부양 지원 정책이 가족의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들의 세대 차이를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정서적 이중부양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성과 상관없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현재보다 줄어든 것이라는 견해가 32.6%였지만, 30대에서 60대까지는 31.9~38.8%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중부양 가구 여부에서는 이중부양 가구가 아닌 응답자가 이중부양 가구인 경우보다 더 많이 정서적 측면의 이중부양이 향후 늘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정서적 부양은 가족이 지닌 가장 고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단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정서적 이중부양이 늘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이것은 성인자녀나 노부모 모두를 위해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대한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표 6-14〉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정서부양

(단위: %, 명, 점)

구분	현재보다 매우 줄어듦	현재보다 줄어듦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늘어남	현재보다 매우 늘어남	계(수)	χ^2	평균	F(t)
전체	9.2	28.6	18.0	32.3	11.9	100.0(983)		3.1	
응답자의 성별									
남성	9.6	26.2	19.3	33.1	11.9	100.0(502)	3.563	3.1	(0.539)
여성	8.6	31.1	16.7	31.6	12.0	100.0(481)			
응답자의 연령									
20~29세	6.6	32.6	24.1	23.6	13.1	100.0(192)	35.063***	3.0	3.981**
30~39세	5.6	22.1	17.7	38.8	15.9	100.0(205)		3.4	
40~49세	8.6	30.0	17.5	32.3	11.5	100.0(240)		3.1	
50~59세	12.4	30.2	13.5	34.1	9.9	100.0(239)		3.0	
60~65세	14.7	26.7	18.7	31.9	7.9	100.0(108)		2.9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18.7	32.5	6.2	33.4	9.3	100.0(131)	29.455***	2.8	(-2.573*)
이중부양 가구 아님	7.7	28.0	19.8	32.2	12.4	100.0(852)		3.1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신체적 측면의 이중부양의 향후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특성별 견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성과 상관없이 모두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현재보다 줄어듦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지만, 30대에서 60대까지는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중부양 가구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도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신체적 이중부양에 대해서 향후 증가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은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 내에서 고령자가 증가하여 신체적 돌봄의 욕구가 상승되는 양상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표 6-15〉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신체부양

(단위: %, 명, 점)

구분	현재보다 매우 줄어듦	현재보다 줄어듦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늘어남	현재보다 매우 늘어남	계(수)	χ^2	평균	F(t)
전체	8.9	23.1	15.4	37.9	14.7	100.0(983)		3.3	
응답자의 성별									
남성	8.8	20.5	17.0	39.7	14.0	100.0(502)	5.826	3.3	(0.837)
여성	9.0	25.8	13.8	36.0	15.4	100.0(481)		3.2	
응답자의 연령									
20~29세	7.4	30.2	22.7	26.6	13.1	100.0(191)	34.227***	3.1	2.694*
30~39세	7.6	18.6	15.8	39.4	18.7	100.0(205)		3.4	
40~49세	9.5	20.7	12.7	39.5	17.5	100.0(239)		3.3	
50~59세	9.7	22.7	12.2	44.4	11.0	100.0(239)		3.2	
60~65세	10.9	25.3	14.9	37.3	11.5	100.0(108)		3.1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13.9	24.2	11.4	38.5	12.0	100.0(131)	6.375	3.1	(-1.615)
이중부양 가구 아님	8.1	22.9	16.0	37.8	15.1	100.0(851)		3.3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도구적 측면의 이중부양의 향후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별 견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성과 무관하게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현재 수준을 1순위로 전망하였고, 30대에서 60대까지는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이중부양 가구 여부별로도 모두 현재보다 늘어날 전망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가사나 일상 활동상의 도움을 제공하는 도구적 이중부양이 늘 것이라는 전망은 한편으로는 동거를 하거나 분거를 하든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자녀가 취업이나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이 연장되면서 중·장년층 부모들이 도구적 지원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부모를 위한 일상 지원과 가사활동의 욕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334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표 6-16〉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도구부양

(단위: %, 명, 점)

구분	현재보다 매우 줄어듦	현재보다 줄어듦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늘어남	현재보다 매우 늘어남	계(수)	χ^2	평균	F(t)
전체	5.7	21.3	17.4	40.5	15.0	100.0(985)		3.4	
응답자의 성별									
남성	5.2	19.9	18.9	39.8	16.1	100.0(502)	3.607	3.4	(1.090)
여성	6.3	22.8	15.8	41.2	13.9	100.0(483)		3.3	
응답자의 연령									
20~29세	3.2	24.4	31.1	30.3	10.9	100.0(191)	62.664***	3.2	2.125
30~39세	4.4	16.3	21.5	38.8	19.0	100.0(205)		3.5	
40~49세	8.4	20.3	9.0	44.8	17.5	100.0(242)		3.4	
50~59세	6.1	22.3	11.2	47.5	12.9	100.0(241)		3.4	
60~65세	5.9	25.6	18.1	36.5	13.8	100.0(107)		3.3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10.1	23.3	10.0	43.1	13.4	100.0(131)	10.369*	3.3	(-1.121)
이중부양 가구 아님	5.1	21.0	18.6	40.1	15.2	100.0(854)		3.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표 6-17〉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중부양 순위

(단위: %, 명)

구분	1순위				계(수)	χ^2
	경제적 이중부양	정서적 이중부양	신체적 이중부양	도구적 이중부양		
전체	70.9	9.3	13.2	6.6	100.0(989)	
응답자의 성별						
남성	74.2	8.0	11.5	6.3	100.0(506)	5.717
여성	67.4	10.7	15.0	6.9	100.0(483)	
응답자의 연령						
20~29세	69.0	13.9	7.6	9.5	100.0(192)	32.856**
30~39세	67.6	11.4	12.7	8.3	100.0(207)	
40~49세	75.9	8.0	11.2	4.9	100.0(240)	
50~59세	72.8	7.3	15.0	4.8	100.0(240)	
60~65세	64.9	5.0	24.4	5.7	100.0(110)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68.2	6.0	23.7	2.1	100.0(132)	18.509***
이중부양 가구 아님	71.3	9.9	11.6	7.3	100.0(857)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지금까지 이중부양 유형별로 각각의 증감 추이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았다. 중·장년층 가족이 담당하는 이중부양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중부양 유형을 순위별로 조사한 전화 조사 결과에서는 모든 응답자들의 특성과 무관하게 1순위로 경제적 이중부양(70.9%)을 지목하였다. 그다음은 신체적 이중부양(13.2%), 정서적 이중부양(9.3%), 도구적 이중부양(6.6%) 순이었다.

경제적 이중부양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으로 신체적 이중부양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은 전통적으로 부양 욕구가 소득 및 건강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이다. 즉 부양은 그것이 이중부양이든 단일한 부양이든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의 자립 여부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중부양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양은 도구적 부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년층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양에 대한 부분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처음에는 더 클지 모르지만, 이후로는 도구적인 부양 형태로 몸을 쓰고 시간을 쓰는 형태로 부모가 자녀들을 부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1)

“우리나라 형태는 일자리가 대도시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 어쨌든 여기도 도구부양과 정서부양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중부양에서 가장 많이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은 도구부양이라고 생각합니다.”(3)

“전반적으로는 이제 노부모에 대해서는 병원에 동행한다든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삶을 챙겨 주는 형태의 도구적 부양이 당분간 지속될 거 같

고요.”(1)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에서 도구적 부양 부분은 가사 지원 쪽이 가깝지 않을까요.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가사를 지원하는 형태, 그다음에 손자녀를 봐주는 형태로의 가사 지원과 도구적 부양이 계속 강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1)

그러나 부양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인들도 사실 신체부양을 많이 하거든요. 신체부양은 요새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도구부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빨래나 청소, 김장해 주고, 쇼핑해 주고 장봐 주고 이런 거는 다 가족들이 하니까요. 그런 의미로는 도구부양이 늘지만 사실 도구부양에 이미 경제 비용이 수반되고 있어요. 시장 보고 이불 갈아 드리고 그럴 때 들어가는 게 다 돈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경제인가요, 도구인가요.”(3)

전문가들이 향후 증가할 이중부양 유형으로 전화 조사 결과와 상이하게 도구적 이중부양을 지목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전화 조사의 응답자들이 경제적인 이중부양이라는 현상 자체가 늘 것이라는 양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이중부양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면, 전문가들은 경제적 이중부양이 늘기는 할 것이나 경제적 이중부양 지원 정책의 강화가 병행될 것이므로 그보다는 가족이 그들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상관 없이 제공 가능한 도구적 이중부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중부양 유형별 증가 순위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보자면 향후 중·장년

층 가족들의 경제적 이중부양과 도구적 이중부양에 대한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 이중부양 부담의 변화 양상과 수준 전망

가. 이중부양 부담 변화 양상 전망

미래를 전망해 볼 때 이중부양 환경은 중·장년층 가족들에게 긍정적이지 않으며, 이중부양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이중부양 유형별로는 모든 이중부양 유형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이중부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부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전화 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변화 추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강화됨(48.6%)’, ‘현재보다 완화됨(20.3%)’, ‘현재 수준임(15.1%)’, ‘현재보다 매우 강화됨(14.5%)’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중부양 부담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중·장년층 가족들이 헤쳐 나가야 할 이중부양 문제가 그만큼 녹록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응답자의 특성별로 견해를 살펴봐도 성 및 연령대별, 이중부양 가구 여부별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집단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이 강화된다면 이중부양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부양지원 체계의 구축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가족의 이중부양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각 이중부양 유형의 속성을 고려하여 부양 지원 체계를 공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질 것이다.

〈표 6-18〉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전반적인 부양

(단위: %, 명, 점)

구분	현재보다 매우 완화됨	현재보다 완화됨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강화됨	현재보다 매우 강화됨	계(수)	χ^2	평균	F(t)
전체	1.6	20.3	15.1	48.6	14.5	100.0(987)		3.5	
응답자의 성별									
남성	1.5	20.0	16.3	49.5	12.8	100.0(506)	3.001	3.5	(-0.616)
여성	1.7	20.6	13.9	47.6	16.2	100.0(481)		3.6	
응답자의 연령									
20~29세	0.8	14.1	20.0	50.7	14.4	100.0(192)	28.727*	3.6	1.656
30~39세	1.0	16.2	17.5	50.3	14.9	100.0(205)		3.6	
40~49세	3.0	20.8	13.4	44.9	17.9	100.0(241)		3.5	
50~59세	1.4	25.3	12.4	47.7	13.2	100.0(243)		3.5	
60~65세	1.3	26.8	11.5	51.5	8.9	100.0(106)		3.4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3.0	26.3	11.9	42.9	15.8	100.0(132)	6.758	3.4	(-1.304)
이중부양 가구 아님	1.3	19.4	15.6	49.4	14.3	100.0(854)		3.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나. 이중부양 유형별 이중부양 부담의 변화 수준 전망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이중부양 부담도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중부양의 증가 추이가 이중부양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중부양 부담의 증가 양상도 이중부양의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일지 주목된다.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이중부양 유형별 향후 이중부양 부담의 변화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경제적 부양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됨'(49.4%), '현재보다 매우 강화됨'(18.3%), '현재보다 완화됨'(15.0%) 순으로 응답하였다. 정서적 부양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됨'(41.0%), '현재 수준임'(22.3%), '현재보다 완화됨'(20.8%)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체적 부양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됨'(45.1%), '현재보다 완화됨'(21.9%),

‘현재 수준임’(15.5%) 순으로 응답하였다. 도구적 부양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됨’(46.2%), ‘현재보다 완화됨’(21.1%), ‘현재 수준임’(17.5%) 순으로 응답하였다.

종합적으로 전반적 이중부양 부담의 추이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강화됨’(48.6%), ‘현재보다 완화됨’(20.3%), ‘현재 수준임’(15.1%)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6-19〉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

(단위: %, 명, 점)

구분	현재보다 매우 완화됨	현재보다 완화됨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강화됨	현재보다 매우 강화됨	계(수)	평균
경제부양	2.4	15.0	14.9	49.4	18.3	100.0(984)	3.7
정서부양	2.8	20.8	22.3	41.0	13.0	100.0(982)	3.4
신체부양	2.2	21.9	15.5	45.1	15.3	100.0(986)	3.5
도구부양	1.8	21.1	17.5	46.2	13.4	100.0(989)	3.5
전반적인 부양	1.6	20.3	15.1	48.6	14.5	100.0(987)	3.5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이중부양 유형별로 향후에 중·장년층 가족이 감당하게 될 이중부양 부담을 살펴봐도 모든 이중부양 유형들에서 이중부양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족의 기능이 위축되어 가는 현실로 미루어 짐작할 때 앞으로 중·장년층 가족이 이중부양 부담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야기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중부양 유형 중 경제적 이중부양에 대한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별, 이중부양 가구 여부별로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현재보다 강화됨’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340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표 6-20〉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경제부양

(단위: %, 명, 점)

구분	현재보다 매우 완화됨	현재보다 완화됨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강화됨	현재보다 매우 강화됨	계(수)	χ^2	평균	F(t)
전체	2.4	15.0	14.9	49.4	18.3	100.0(984)		3.7	
응답자의 성별									
남성	2.7	14.5	15.3	50.8	16.8	100.0(506)	2.743	3.6	(-0.631)
여성	2.0	15.5	14.6	48.0	20.0	100.0(478)			
응답자의 연령									
20~29세	2.0	10.6	17.2	49.7	20.4	100.0(191)	16.611	3.8	1.656
30~39세	1.9	12.4	15.2	50.1	20.4	100.0(205)		3.7	
40~49세	3.8	17.8	14.4	44.4	19.6	100.0(241)		3.6	
50~59세	1.3	15.7	14.3	52.9	15.7	100.0(241)		3.7	
60~65세	2.9	19.5	13.0	51.2	13.4	100.0(106)		3.5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3.0	21.2	16.0	42.9	16.8	100.0(131)	6.171	3.5	(-1.943)
이중부양 가구 아님	2.3	14.0	14.8	50.4	18.5	100.0(853)		3.7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표 6-21〉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정서부양

(단위: %, 명, 점)

구분	현재보다 매우 완화됨	현재보다 완화됨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강화됨	현재보다 매우 강화됨	계(수)	χ^2	평균	F(t)
전체	2.8	20.8	22.3	41.0	13.0	100.0(982)		3.4	
응답자의 성별									
남성	3.0	20.1	25.0	40.3	11.6	100.0(501)	5.488	3.4	(-1.019)
여성	2.6	21.6	19.6	41.8	14.5	100.0(481)		3.4	
응답자의 연령									
20~29세	1.0	17.1	31.0	37.8	13.2	100.0(191)	36.258**	3.5	3.139*
30~39세	2.2	14.6	22.8	45.4	14.9	100.0(205)		3.6	
40~49세	2.9	20.1	21.6	40.6	14.8	100.0(239)		3.4	
50~59세	4.5	29.5	16.3	37.8	11.8	100.0(240)		3.2	
60~65세	2.9	21.4	21.3	46.5	7.9	100.0(106)		3.4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6.3	25.4	16.2	36.3	15.8	100.0(130)	12.367*	3.3	(-1.121)
이중부양 가구 아님	2.2	20.1	23.3	41.7	12.6	100.0(852)		3.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정서적 이중부양과 관련하여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별 견해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별, 이중부양 가구 여부별로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집단이 '현재보다 강화됨'으로 전망하였다.

신체적 이중부양과 관련하여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별 견해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별, 이중부양 가구 여부별로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집단이 '현재보다 강화됨'으로 전망하였다.

〈표 6-22〉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신체부양

(단위: %, 명, 점)

구분	현재보다 매우 완화됨	현재보다 완화됨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강화됨	현재보다 매우 강화됨	계(수)	χ^2	평균	F(t)
전체	2.2	21.9	15.5	45.1	15.3	100.0(986)		3.5	
응답자의 성별									
남성	2.5	21.4	17.0	45.4	13.7	100.0(505)	4.037	3.5	(-0.941)
여성	1.9	22.4	13.8	44.9	17.1	100.0(480)		3.5	
응답자의 연령									
20~29세	0.8	16.6	21.0	46.3	15.2	100.0(191)	27.183*	3.6	1.106
30~39세	1.8	20.5	17.3	45.2	15.1	100.0(205)		3.5	
40~49세	3.3	21.5	13.7	41.4	20.2	100.0(242)		3.5	
50~59세	2.3	27.4	10.2	46.6	13.5	100.0(240)		3.4	
60~65세	2.7	22.4	17.8	48.2	8.9	100.0(108)		3.4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5.1	21.4	13.4	45.7	14.4	100.0(129)	7.285	3.4	(-0.771)
이중부양 가구 아님	1.7	22.0	15.8	45.1	15.5	100.0(857)		3.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도구적 이중부양에 대해 응답자의 특성별로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를 살펴봐도 성 및 연령대별, 그리고 이중부양 가구 여부별로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현재보다 강화됨'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상과 같이 모든 이중부양 유형별로 전체 응답 집단이 모두 동일하게 향후에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측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중부양 부담을 유형별로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를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모색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표 6-23〉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이중부양 부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 도구부양

(단위: %, 명, 점)

구분	현재보다 매우 완화됨	현재보다 완화됨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강화됨	현재보다 매우 강화됨	계(수)	χ^2	평균	F(t)
전체	1.8	21.1	17.5	46.2	13.4	100.0(989)		3.5	
응답자의 성별									
남성	1.9	19.3	19.1	47.5	12.2	100.0(506)	4.397	3.5	(0.129)
여성	1.7	22.9	15.9	44.8	14.7	100.0(483)		3.5	
응답자의 연령									
20~29세	0.5	15.7	27.7	44.3	11.8	100.0(192)	32.297**	3.5	0.810
30~39세	1.3	18.6	18.5	46.5	15.2	100.0(205)		3.6	
40~49세	2.6	22.2	15.1	43.0	17.1	100.0(241)		3.5	
50~59세	2.1	26.4	13.0	47.2	11.2	100.0(243)		3.4	
60~65세	2.3	21.1	13.1	53.7	9.9	100.0(109)		3.5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4.4	22.7	14.5	46.3	12.0	100.0(132)	7.455	3.4	(-1.161)
이중부양 가구 아님	1.4	20.8	18.0	46.2	13.6	100.0(857)		3.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본이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3. 이중부양 주체 간 부양 분담에 대한 변화 전망

가. 이중부양 주체 간 전반적인 이중부양 분담 구조의 변화 전망

이중부양을 가족이 주로 전담하면서 이중부양 제공이 사적 부양에 치중되어 있는 한국적 현실은 가족의 위기와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중부양이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이중부양의 주체에 대한 공사 간 분담 구조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균형적인 구조 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전반적인 분담 변화에 대한 전화 조사 결과 '사

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44.4%),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26.0%),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22.5%),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지게 될 것임’(3.7%),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지게 될 것임’(3.5%)의 순으로 응답이 분포되어 사회가 이중부양을 가족보다 더 담당하거나 가족과 사회가 동등하게 분담하는 방식의 이중부양이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향후에는 이중부양에서 가족을 통한 사적 부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공사가 함께 분담하는 부양 방식이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6-24〉 응답자의 특성별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변화에 대한 견해: 전반적인 부양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지게 될 것임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지게 될 것임	계(수)	χ^2
전체	3.7	22.5	26.0	44.4	3.5	100.0(993)	
응답자의 성별							
남성	4.4	25.9	26.8	39.5	3.4	100.0(506)	12.292*
여성	3.0	18.9	25.1	49.5	3.6	100.0(486)	
응답자의 연령							
20~29세	2.2	29.4	24.2	39.9	4.3	100.0(192)	25.858
30~39세	4.1	21.5	27.9	43.6	2.9	100.0(206)	
40~49세	4.5	17.7	21.2	53.9	2.7	100.0(240)	
50~59세	4.5	22.2	25.8	42.7	4.7	100.0(244)	
60~65세	2.3	22.9	36.1	36.8	2.0	100.0(111)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4.6	19.9	25.6	41.5	8.3	100.0(132)	11.768*
이중부양 가구 아님	3.6	22.9	26.0	44.8	2.7	100.0(860)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전반적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특성별로 견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으로 전망하였다.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 ‘가

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아도 모든 집단에서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을 전망하는 비율이 가족 높았다. 이중부양 가구 여부에 따른 견해에서는 두 집단 모두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을 전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위와 같이 전화 조사 결과에서 향후에는 이중부양에서 가족을 통한 사회적 부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공사가 함께 분담하는 부양 방식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그만큼 가족이 수행하는 이중부양에 한계와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한계와 공백이 가족 구성원 간에 부양 갈등과 부양 스트레스를 야기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이중부양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더 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여러 가지로 가족 내에 있을 때에 갈등, 그러니까 중·장년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녀에 대한 부담도 크고, 자녀에 대한 책임도 크죠. 그 다음에는 부모도 자기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등 상황이죠. 이거를 다 가정 문제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앞으로 전망한다면 이것을 가정 문제로 본다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인 영향밖에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2)

“청년은 청년이 알아서 살게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튼튼하지 않거든요. 50대도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근근이 월급을 받아

서 유지하고 있어서 연금으로 넘어가면 불안함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다
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청년도 청년수당과 같은 기본
소득제도가 들어올 거고, 노인도 기초연금 플러스 연금을 받게 되면서 이
중부양 주체는 어쨌든 사회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3)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사적 부양에서 공적 부양 중심으로
부양 제공 주체가 전이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공적 이중부양 지원
정책이 향후 확장될 것이라는 예상과 맞물리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이중부양 유형별 이중부양 주체 간 부양 분담의 변화에 대한 전망

이중부양의 제공 주체를 공과 사로 구분해 보았을 때, 현재에는 사적
부양이 주를 이루고 공적 부양은 취약하고 불균형적인 부양 분담 구조이
지만 향후에는 공적 부양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중부양 유형별로 구분해 볼 때 공사 부양 주체가 어떻게 부양 기능을 분
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필요하다.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이중부양 유형별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살펴보면 경제적 이중부양에 대해서는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40.7%),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26.3%), ‘가족
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23.0%) 순으로 응답하였다.

정서적 이중부양에 대해서는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
임’(34.6%),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31.8%),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21.9%)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체적 이중
부양에 대해서는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47.7%), ‘가
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25.7%),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

임지게 될 것임'(17.5%) 순으로 응답하였다. 도구적 이중부양에 대해서는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42.2%),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23.5%),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23.4%)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6-25〉 이중부양 유형별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지게 될 것임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지게 될 것임	계(수)
경제부양	4.5	23.0	26.3	40.7	5.6	100.0(989)
정서부양	8.2	34.6	21.9	31.8	3.5	100.0(988)
신체부양	3.2	17.5	25.7	47.7	5.8	100.0(994)
도구부양	5.3	23.4	23.5	42.2	5.6	100.0(992)
전반적인 부양	3.7	22.5	26.0	44.4	3.5	100.0(993)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전반적으로도 이중부양의 부양 주체별 분담 구조는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44.4%),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26.0%),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22.5%) 순으로 나타나 점차적으로 공적 부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전화 조사 결과에서 정서적 이중부양에 대해서는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듯이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중부양 유형별로 가족과 국가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가족이 책임을 지는 거고, 도구적인 부분에서는 국가가 사실은 노인 부양의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도구적 부양을 하는 주체로 가정이 들어가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1)

이는 이중부양에 대한 부양 주체 간의 분담에서 각기 상이한 이중부양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적 부양 주체와 공적 부양 주체 간의 적절한 분업 구조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이중부양 유형별 이중부양 주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경제적 이중부양의 주체와 관련하여 성별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으로 전망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50대에서는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을 전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60대에서는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지게 될 것임’을 전망하는 비율이 높아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중부양 가구 여부에서도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표 6-26〉 응답자의 특성별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변화에 대한 견해: 경제부양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지게 될 것임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지게 될 것임	계(수)	χ^2
전체	4.5	23.0	26.3	40.7	5.6	100.0(989)	
응답자의 성별							
남성	4.1	26.0	26.6	37.6	5.7	100.0(505)	6.918
여성	4.9	19.9	25.9	43.9	5.4	100.0(484)	
응답자의 연령							
20~29세	4.8	29.2	21.1	39.4	5.5	100.0(192)	17.199
30~39세	4.9	22.6	26.4	40.3	5.8	100.0(207)	
40~49세	4.0	17.3	26.6	45.8	6.4	100.0(240)	
50~59세	4.1	24.0	26.0	40.8	5.1	100.0(240)	
60~65세	4.8	23.3	35.2	32.2	4.5	100.0(110)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3.1	17.4	26.1	44.5	8.9	100.0(128)	5.726
이중부양 가구 아님	4.7	23.8	26.3	40.1	5.1	100.0(86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응답자의 특성별로 정서적 이중부양 주체에 대한 향후 변화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녀 모두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으로 전망하는 분포가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및 30대는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을 전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40~60대에서는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을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중부양 가구 여부에서는 이중부양 가구인 경우에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을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중부양 가구가 아닌 경우는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을 전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6-27〉 응답자의 특성별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변화에 대한 견해: 정서부양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지게 될 것임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지게 될 것임	계(수)	χ^2
전체	8.2	34.6	21.9	31.8	3.5	100.0(988)	
응답자의 성별							
남성	9.6	38.8	21.4	26.6	3.6	100.0(504)	16.932**
여성	6.7	30.3	22.3	37.3	3.4	100.0(484)	
응답자의 연령							
20~29세	11.5	46.3	15.9	23.2	3.1	100.0(192)	35.717**
30~39세	8.3	34.2	25.8	29.4	2.4	100.0(207)	
40~49세	8.2	31.6	20.9	36.1	3.1	100.0(239)	
50~59세	6.2	30.8	20.7	36.6	5.7	100.0(241)	
60~65세	6.4	30.1	29.7	31.7	2.2	100.0(110)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7.3	23.5	20.2	40.3	8.7	100.0(132)	19.562***
이중부양 가구 아님	8.3	36.3	22.1	30.5	2.7	100.0(857)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정서적 이중부양 주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에서 전반적으로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에 대한 사적 부양의 증가 전망이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을 전망하는 공적 부양의 증가

전망보다 많았다는 것은 정서적 이중부양이라는 유형이 부양의 속성상 공적인 부양 주체에 의해 대리되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사적 부양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보편적인 인식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신체적 이중부양과 관련하여 응답자 특성별 이중부양 주체의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모든 집단에서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을 전망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아도 20~60대의 모든 집단에서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을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중부양 가구 여부에서도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에 대한 전망이 많았다.

〈표 6-28〉 응답자의 특성별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변화에 대한 견해: 신체부양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지게 될 것임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지게 될 것임	계(수)	χ^2
전체	3.2	17.5	25.7	47.7	5.8	100.0(994)	
응답자의 성별							
남성	3.3	20.8	26.7	43.5	5.7	100.0(507)	10.123*
여성	3.2	14.1	24.7	52.1	5.9	100.0(487)	
응답자의 연령							
20~29세	3.2	26.6	23.5	40.4	6.4	100.0(192)	20.839
30~39세	4.0	14.5	26.8	50.0	4.6	100.0(207)	
40~49세	2.8	14.1	23.7	51.8	7.6	100.0(240)	
50~59세	3.6	16.3	25.4	49.6	5.2	100.0(244)	
60~65세	2.3	17.5	32.5	43.1	4.6	100.0(111)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2.4	13.7	26.5	48.6	8.9	100.0(133)	4.545
이중부양 가구 아님	3.4	18.1	25.6	47.6	5.3	100.0(861)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신체적 이중부양 주체와 관련하여 향후 변화에 대한 견해가 응답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

임'을 전망하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미래에는 특히 고령의 부모가 증가하면서 신체적 부양에 대한 수행은 주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는데, 노부모의 신체적 부양, 즉 신체 돌봄은 가족 부담과 가족 갈등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가족이 맡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신체적 부양은 노부모까지 포함하는 대가족적 방식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로 국한되는 핵가족 중심으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도구적 이중부양 주체의 향후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특성별로 견해를 살펴보면 성별이나 연령대별, 이중부양 가구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도구적 이중부양 주체에 대한 견해도 신체적 이중부양 주체와 유사하고 집단별 특성과 무관하게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에 일관성 있게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현대 가족에서 구성원 간의 분거 현상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족의 도구적 부양 기능은 핵가족 중심으로 축소되고, 특히 노부모를 위한 도구적 부양이 사회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29〉 응답자의 특성별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변화에 대한 견해: 도구부양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지게 될 것임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지게 될 것임	계(수)	χ^2
전체	5.3	23.4	23.5	42.2	5.6	100.0(992)	
응답자의 성별							
남성	7.0	25.1	23.5	40.0	4.4	100.0(507)	11.128*
여성	3.6	21.7	23.4	44.5	6.8	100.0(485)	
응답자의 연령							
20~29세	6.6	30.8	22.9	35.2	4.5	100.0(192)	24.903
30~39세	5.1	22.0	26.9	40.6	5.5	100.0(207)	
40~49세	5.8	18.2	19.6	51.0	5.5	100.0(240)	
50~59세	4.5	23.3	21.9	42.4	7.9	100.0(244)	
60~65세	4.3	25.1	30.0	37.8	2.8	100.0(109)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6.2	20.5	22.1	40.5	10.7	100.0(133)	7.930
이중부양 가구 아님	5.2	23.9	23.7	42.5	4.8	100.0(860)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4. 이중부양 부담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에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이 모든 이중부양 유형들에서 증가하면 그러한 부양 부담은 가족생활에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초점집단면접에서 이중부양 부담이 가족생활에 야기할 긍정적인 측면으로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부양 부담을 완화해 주고, 가족에게 사회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가족들이 이중부양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 가족 내의 연대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조적으로 자기들이 벼랑에 몰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서포트가

될 때 도구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매니저블한 상황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ICT가 발달하는 시점에서는 파편화되기보다는 훨씬 더 융합되는 형태의 변화는 보인다고 저는 느껴집니다..”(4)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재정적인 부양으로 이제 도구적인 부양이 전환될 때 재정적인 부담이 가계별로 너무 격차가 크지 않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준이 된다면... 사실 일본은 신 3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서로 부양을 해 주면서 자식은 떨어져 살지만 경제적인, 정서적인 부분에서 다시 연대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들었습니다.”(1)

그러나 이중부양 부담이 강화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과 사회의 적극적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이중부양은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중부양 부담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중부양으로 인해 중·장년층이 노년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장년층이 생애주기상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은퇴 이후의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인생 과업을 점점하고 노년기의 시작을 좀 지연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좀 더 성숙하고 후대에 대해서 건강하게 물려주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기들을 좀 놓치게 되지 않나 라는 것에서 가정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을 거 같고요.”(1)

“굉장히 갈등이 많아질 거고, 역학 사건들이 크게 터지겠죠. 가정생활과 어떤 부분에 역량을 가장 많이 투여하느냐, 사실 그것도 가 봐야 알겠지만, 가정생활도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경제 부양하고 자식도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나빠지겠죠. 사회생활도 사실은 50대, 60대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발목 잡힌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인 고립이나 소외감 이런 것도 상당할 거고요.”(3)

중·장년층이 부양으로 인해 부양자로서의 무게와 책임에 억눌리게 되고, 스스로의 노후에 대한 대비는 소홀하게 되는 상황이 심화되면 특히 경제적 부양이 어려운 가정은 가족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되었다.

“우리가 이중부양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경제적 부양은 있어야지만 부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독거노인, 홀거노인 이런 분들의 문제는 사실 빈곤 문제지 모든 가정에서 다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은 경제적으로 부담하려고 하지만 부담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를 끊거나 독거 상태가 되고요.”(3)

“지금 이중부양하고 있는 한 개인 가정이 어떻게 변하느냐의 측면에서 볼 때와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를 조금 구분하면 좋을 거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의 중산층들은 계속해서 이중부양의 형태를 가져갈 것이라는 겁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50, 60대가 70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가진 돈이 전부 고갈되고, 연금도 자꾸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1)

이는 이중부양 부담이 강화되면 종국적으로는 가족의 갈등과 해체에 대한 위험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전화 조사에서도 중·장년층 세대의 이중부양 부담이 향후 가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응답 1순위는 성별, 연령별, 이중부양 가구 여부별 등 모든 특성과 상관없이 '경제 부담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짐'(32.7%)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부양 문제로 형제자매 및 기타 가족 간에 갈등이 증가함'(16.3%), '부양하는 성인자녀 및 노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함'(14.7%), '부양 문제로 부부간에 갈등이 증가함'(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미미하나 '개인시간 감소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음'(5.2%), '퇴사 및 휴직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음'(4.0%), 신체 및 정신건강이 악화됨'(2.9%) 등도 응답하였다.

앞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중부양 부담이 강화되면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의 발생과 이중부양으로 인한 가족 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 심화, 경제활동의 지속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의 악화 등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중부양 부담이 중·장년층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나 건강 및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면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소득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건강과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질 것이다.

〈표 6-30〉 응답자의 특성별 중·장년층 세대의 이중부양 부담이 향후 가족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한 견해(1순위)

구분	변화 없음	가족 간에 협동심/친밀감 증대	부양하는 상인사녀 및 노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함	부양 문제로 부부 간에 갈등이 증가함	부양 문제로 형제자매 및 기타 가족 간에 갈등이 증가함	경제적으로 경제행위 어려워짐	신체 및 정신건강이 악화됨	퇴사 및 휴직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음	개인시간 감소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음	기타	계(수)	χ ²
전체	3.7	5.5	14.7	14.6	16.3	32.7	2.9	4.0	5.2	0.5	100.0(996)	
응답자의 성별												
남성	4.7	7.9	13.7	16.9	16.5	28.9	3.2	2.6	5.2	0.2	100.0(510)	30.826***
여성	2.7	2.9	15.7	12.2	16.1	36.7	2.5	5.4	5.2	0.7	100.0(486)	
응답자의 연령												
20~29세	5.6	4.4	14.3	14.2	14.9	32.5	3.6	2.2	8.3	0.0	100.0(192)	
30~39세	1.7	6.6	13.0	17.4	11.8	36.5	3.2	5.0	4.8	0.0	100.0(206)	
40~49세	2.8	5.6	16.2	15.3	13.7	32.9	3.8	6.2	3.0	0.4	100.0(243)	60.877***
50~59세	2.9	5.0	12.6	13.7	24.1	31.5	0.6	2.6	5.7	1.5	100.0(243)	
60~65세	8.0	6.1	19.8	10.5	15.8	28.4	3.9	3.2	4.3	0.0	100.0(112)	
이중부양 가구 여부												
이중부양 가구임	3.7	3.0	14.8	14.2	19.2	32.0	0.9	4.1	6.0	2.1	100.0(132)	14.455
이중부양 가구아님	3.7	5.9	14.7	14.7	15.8	32.9	3.2	4.0	5.1	0.2	100.0(864)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이 연구를 위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전망 조사' 전화 조사 결과임.

제3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전망을 통한 정책 함의

미래의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환경적 조건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중·장년층 가족들이 이중부양 부담 문제를 헤쳐 나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개인과 가족들의 부양관과 생활양식은 앞으로 더욱더 개체화되고 분화될 것이다. 제도적 가족규범은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부양관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사회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라는 사회경제적 변동은 가족들이 전통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유발할 것이다.

향후 가족의 구조와 기능 또한 갈수록 더욱더 소규모화되고 다양화되지만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노부모 부양 기간은 장기화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중·장년층 부양자들은 설령 그들이 노후 은퇴기에 접어든다 해도 부양의 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전화 조사와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 세대의 이중부양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이중부양이 증가하리라는 견해가 감소하리라는 견해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이중부양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향후 이중부양은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도구적 부양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경제적 이중부양이었다.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전반적인 부담 변화에 대한 전화 조사 결과에서는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사회적 또는 공적 이중부양에 대한 전망이 강했다.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이중부양 유형별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경제적 이중부양과 신체적 이중부양, 도구적 이중부양에 대해서는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

이 우세했다. 하지만 정서적 이중부양에 대해서는 부양 유형의 특성상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중부양 환경이 전반적으로 중·장년층 가족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및 장기적 경기 침체 현상은 가족의 이중부양 능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들이다. 인구구조의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양 능력이 강화되고, 가족의 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향후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위한 이중부양은 증가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성인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욕구와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리라고 예견해 본다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는 기존 가족부양 정책에서 간과되었던 성인자녀와 노부모, 중장년 부양자를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해 보편성을 확장하는 일이다. 종전의 부양정책은 부양 지원 대상을 판단할 때 주로 소득 능력이나 건강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건강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성인이나 소득이 있는 노인은 부양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불안정한 고용이 확산되고, 사회보장이 미흡한 사회적 상황에서 건강하고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에 대한 부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중·장년층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이중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건강과 근로 능력 외에 실질적인 부양 욕구를 기준으로 하여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중부양은 가족을 통한 사적 부양에는 한계가 있다. 공적 부양을 통한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가 필요하므로 부양 지원 정책의 전달 주체를 공적 주체 중심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중부양에 대한 부양 주체 간의 분담에서 각기 상이한 이중부양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적 부양 주체와 공적 부양 주체 간의 적절한 분업 구조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중부양

유형 중에서는 특히 경제적 이중부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성인자녀와 노부모 등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 강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중부양 부담이 강화되면 종국적으로는 가족의 갈등과 해체에 대한 위험까지도 야기될 수 있다. 이중부양 부담이 중·장년층 가족들에게 경제적로나 건강 및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가족들에게 소득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건강과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이중부양 부담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중·장년층 부양자는 경제적 문제에서부터 건강 상실과 인간관계의 단절 및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문제 상황에 놓이게 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 중·장년층 부양자를 위한 부양 능력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7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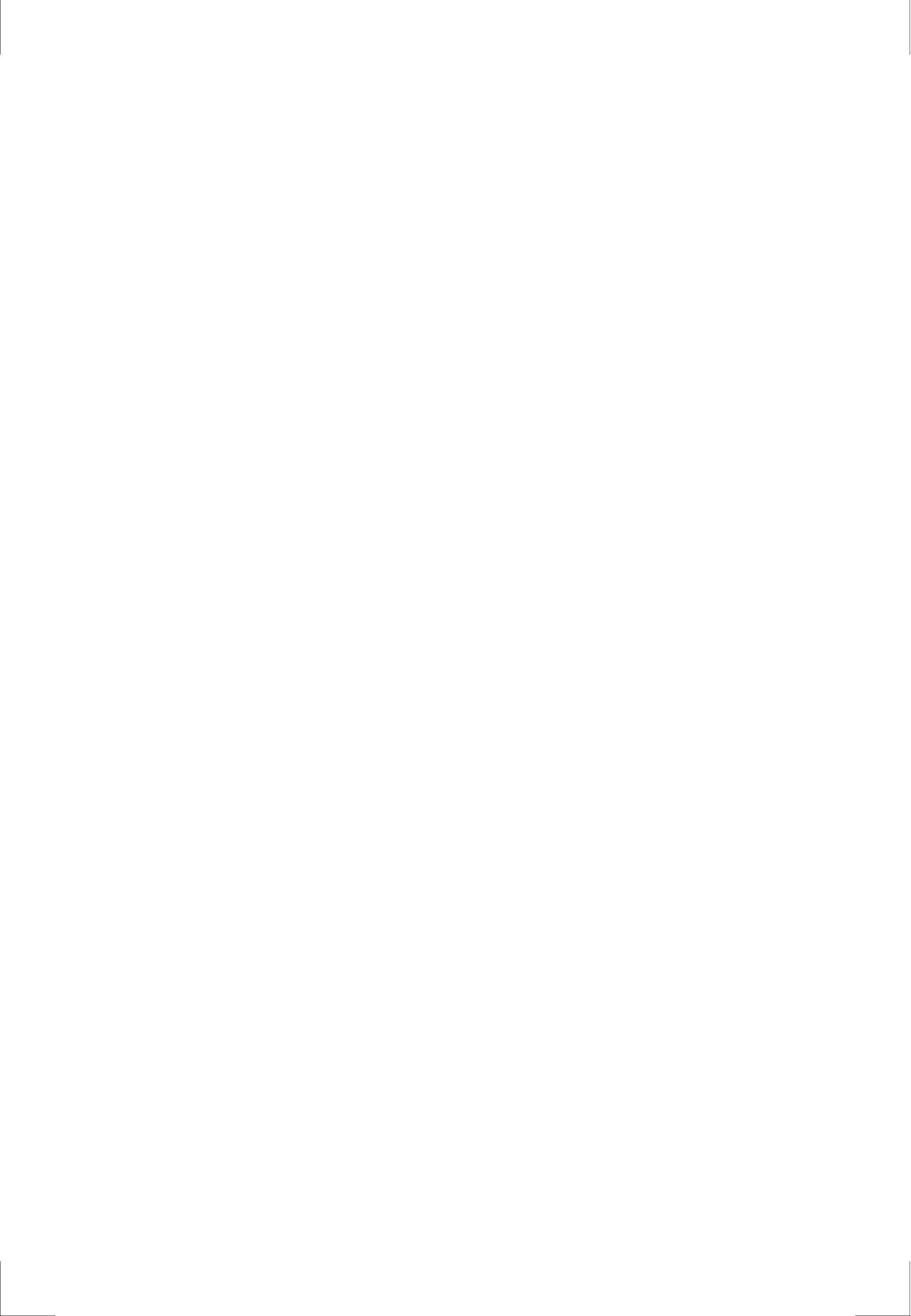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제1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제2절 중·장년층 대상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 방안

제3절 성인자녀 대상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 방안

제4절 노부모 대상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 방안



7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 부담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제1절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우리 사회는 급속한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 맞벌이부부 증가로 가족 돌봄을 담당할 주체가 급속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 인구의 확대와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성인기 자녀의 독립 지체는 돌봄 수요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기능 과부하를 낳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2015년 50.3세로 중·장년층 가족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본인의 노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로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향후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중·장년층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 가족의 지속적인 이중부양 부담 구조는 빈곤과 해체를 야기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야기한다. 중·장년층 가족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을 위해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간에 균형 있는 가족부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에서 향후 이중부양 주체의 전반적인 분담 변화에 대한 전화 조사 결과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과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이라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로 분포되어 사회가 가족보다 이중부양을 더 담당하거나 가족과 사회가 동등하게 분담하

는 방식으로 이중부양이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미래의 가족 현실이 사적 부양 중심으로 부양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클 것이므로 현실적 측면에서 부양축이 공적 구조 중심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해석된다.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이중부양 책임의 주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더 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중부양의 기본 구조는 공적 부양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구조 속에서 부양 대상의 특성과 부양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와 가족이 공동으로 부양 책임을 나누어 가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은 부양 대상과 부양 유형에 따라 접근을 하여야 한다. 첫째, 중·장년층 세대의 경제적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담보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부양문화 정착을 통해 가족 내 부양 주체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미혼 성인자녀 부양은 성인자녀의 독립 지점인 취업 및 결혼 등의 공적 지원을 통해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 시기가 단축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노부모 부양 환경의 공백과 세대 간 갈등은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므로 노인부양의 공적 기반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이중부양 욕구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부양 형태는 공·사 간의 분담 구조라는 것이다. 공사 부양 주체 간 분담 구조서 노부모에 대해서는 부양의 사회화를 강화하고, 성인자녀 부양은 가족이 주로 책임지지만 공공이 성인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분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중·장년층 대상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 방안

1. 경제적 지원

가.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 제도 활성화

이 연구 결과 이중부양을 하는 중·장년층 가족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중·장년층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이중부양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 계층에서 주로 이중부양을 담당하고, 소득 계층이 낮은 이중부양 중·장년층 가족은 이중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높게 경험하거나 노부모나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상은 서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교육 수준과 시장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샌드위치 세대가 노부모나 성인자녀의 이중부양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bertini, 2016). 다시 이야기하면 이중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중·장년층 가족은 이중부양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자신의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곧 다가올 정년과 은퇴로 인한 불안감은 중·장년층들이 극심한 부양 스트레스와 스스로의 노후에 대한 위기감을 인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건강수명의 연장과 고령화로 인한 노후 빈곤의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이제 사회가 개인들로 하여금 신체활동에 어려움이 없는 한 생물학적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한 동안에

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원의 유지·담보를 위해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지원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정책은 중·장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중·장년층이 노년기에 진입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므로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서구와 일본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노후 빈곤 확산과 가족의 경제적 부양 부담 증가, 건강수명의 연장 등을 고려하여 정년 제도를 개혁하여 은퇴 연령을 상향함으로써 소득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추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중·장년층들이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경제적 부양 스트레스와 갈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퇴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경우에 증가하게 될 기업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 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실직 중·장년층 대상 소득 보전과 취·창업 프로그램 강화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해 보면 갈수록 불안정 고용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부양기에 소득 활동이 단절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피부양 가족에게도 매우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실업이 장기화되면 이미 연령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위축된 중·장년층은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중·장년층 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중부양 순위의 1순위는 경제적 이중부양(70.9%)로 전망되었다. 성인자녀는 물론이지만 노부모의 부

양은 가족이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년층 세대의 이중부양 부담이 향후 가족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경제 부담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짐’(32.7%)이 가장 다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소득 보전 여부는 이중부양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중·장년층 부양자가 실직이나 불안정 고용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부양 특성을 고려하여 실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실직 기간 동안의 취·창업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취·창업 프로그램들은 주로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근로 능력은 있으나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있거나 소득 활동이 중단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정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국민연금제도상의 부양 기간 크레딧 인정 방안 모색

이번 연구 결과인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구조 전망에 따르면 중·장년층 시기에 이중부양자로서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 집단은 향후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가구주로서 가계의 부양 책임을 떠맡아야 할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장년층은 본인의 노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지속적인 이중부양 부담은 중·장년층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시켜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빈곤은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야기하므로 중·장년층이 부양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단절되거나

감소될 경우에 대비한 중·장년층 대상의 사회보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상에서는 출산, 군복무, 교육, 돌봄, 실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때 이 기간 동안 보험료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는 보험료의 본인 부담이 적거나 보험료의 기여가 없어도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제활동인구에게 상당히 유용하다.

중·장년층의 빈곤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부양 크레딧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금 크레딧에는 출산이나 군복무, 실업만 포괄되지만 중·장년층의 성인자녀와 부모의 이중부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포함한 경제력 위축에 대비하여 안전망의 일환으로 부양 크레딧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산 보전 방안: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이번 연구 결과 중·장년층 중에서 이중부양 가구는 비부양 가구에 비해 총소득과 순자산이 높았으며, 생활비 지출 측면에서도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 중에서 경제력을 가진 경우 이중부양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중부양하는 중·장년층 중에서 일반적으로 일을 더 오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55~64세 연령층의 순자산이 45~54세 연령층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지속적인 자산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증적 연구 결과 이중부양 전후에 변화로 경제 부담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진 경우가 약 14%로 적지 않아서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장년층에서 이증부양이 계속 지속될 경우 고용 불안정으로 소득원이 감소하고 있는 중·장년층은 자산까지 감소하게 되어 결국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중·장년층의 자산 가치를 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증부양으로 인하여 축적된 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동산은 유동성이 매우 작은 자산으로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교환하기 어려우며, 처분할 경우라도 현금화된 자산은 본인 사망 이전에 고갈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소득 축소 및 이증부양 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여 주택연금제도에 부동산의 유동성을 강화시키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현금을 공급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에 이런 기능이 강화될 경우 기초연금, 노령연금과 함께 중·장년층의 고령 빈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주택연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례로 현재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로 한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한이 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만일 50대 초중반에 실직을 한 이후 남은 자산이 주택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동시에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경제적 지원

가. 이중부양 보상 체계 마련 및 이중부양자 통합 서비스 제공

우리 사회는 산업화 및 후기사회의 이행으로 가족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족 규모 축소는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를 가져왔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맞벌이부부 증가와 함께 이혼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로 가족 내 돌봄을 수행할 주체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령 인구의 증가와 만혼·비혼으로 인한 성인자녀의 독립 지연에 따른 돌봄 수요의 증가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가구주의 고령화로 중·장년층 가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장년층은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 세대'로서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이다.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이중부양 부담 구조는 빈곤과 해체를 야기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실증적 연구 결과 중·장년층의 이중부양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부양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제약, 경제생활의 빈곤화,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 가족과 피부양자 간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핵가족화·소가족화로 인해 가족 내 이중부양을 분담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인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중부양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중·장년층 가족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균형적인 부양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 사례에서 살펴본 국가들에서는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에 대해 다양한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가족 돌봄자에 대한 관대한 보상 체계 및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핀란드의 정책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핀란드의 경우 가족 돌봄자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자수당을 지급한다. 노부모가 외부 기관에서 7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받더라도 가족 부양자를 종일 돌봄자로 인정하며, 매달 2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장년층 세대의 이중부양자가 혼자 돌봄을 수행하기보다 지역사회 의 다양한 돌봄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이중부양자의 부양 부담감 감소, 이들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 및 빈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노부모 대상의 재가급여 확대와 함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말벗 서비스, 외출동행, 교육 및 상담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노부모 및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욕구가 해결될 수 있는 통합적 가족 돌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거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매가족 휴가제와 같은 휴식 지원 제도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또한 지역사회의 가족 돌봄자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스웨덴의 벵세 지역에서는 돌봄자를 위한 법률 및 질병 정보 교육, 돌봄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돌봄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 돌봄자 대상 교육은 가족 돌봄자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최인희, 김정현, 2013)를 고려할 때, 중·장년층 이중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돌봄 기법, 질병별 돌봄 기법, 식이 관리 등 돌봄과 관련한 교육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 건강 유지 등 자기 관리와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동거 부양자의 돌봄 기술과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 유지 등 자기 관리 교육을 지역사회 내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록 지역사회 가족 돌봄자 지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나. 이중부양과 일의 균형적 지원 강화: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제도 확대

이번 연구 결과 중·장년층이 수행하는 이중부양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부양자의 개인시간 감소 등 일상생활의 제약에서부터 직장 등 사회생활이 원활하지 못해 퇴사 및 휴직 위기에 처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이중부양으로 인해 부양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도 악화되었다. 이는 이중부양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중·장년층 가족은 경제적 빈곤과 건강상의 위해, 가족 갈등으로 가족체제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중·장년층 부양자를 위한 부양 능력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의 일 중심 직장 문화 및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층 여성의 취업 특성을 고려할 때 가족돌봄휴가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제도는 자녀 양육기 가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노부모나 성인자녀를 돌보는 중·장년층 가족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 제도가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고려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 돌봄자들의 경우 연금 가입의 어려움 등으로 노후 빈곤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비공식 돌봄자에게 연금보험과 실업보험 가입 혜택을 주고 있는 독일의 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가 확산되어 있으나 일반 기업에는 가족돌봄휴가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로 인해 돌봄이 장기화되면 근로자들은 일을 포기하고 돌봄만 전담하게 되면서 경

제적, 신체적, 심리·정서적 문제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돌봄을 위한 휴가와 휴직이 확산되도록 가족정책을 강화하고, 기업들을 위한 유인 조치들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내실화 방안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은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다. 이로 인해 본인의 노후 준비는 배제된다. 시기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된 고용 환경은 향후 노후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향후 중·장년층의 이중부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통한 자원 보전은 이중부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의 전문가 FGI에서도 중·장년층이 생애주기상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은퇴 이후의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시기인데, 스스로의 인생 과업을 점검하고 노년기의 시작을 고민하고 대비하는 시기들을 놓치거나 지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남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로 인해 가족과 사회 내에서의 갈등과 고립이나 소외감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었다.

김영란, 장혜경, 이윤석(2017)은 청년 자녀 세대의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부모 세대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감소가 어렵다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에도 본인 세대의 노후 대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성인기 자녀를 둔 중·장년기 부모 대상 교육에서 노후설계 등의 내용을 교육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완화와 관련해 중·장년층 대상 정책에

노후 준비 서비스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세대 간 부양에 대한 기대 변화 및 노후 준비의 중요성 등의 내용을 다루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노후 지원 준비 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인프라 확대가 요구된다(이소정, 2016). 무엇보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 확대가 중요하므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즉 정부의 「노후준비지원법」 시행(2015. 12.)에 따라 개인의 노후설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진단·상담·교육·연계·사후관리 등의 프로그램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제적 수준 및 필요 욕구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중부양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서비스 강화

중·장년층 중에서 이중부양자들은 부양 부담으로 가족 내 갈등 증가와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만성피로,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등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부양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제약에서부터 경제생활의 빈곤화,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 가족과 피부양자 간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이중부양 부담이 강화되면 중국적으로는 부양가족의 정신건강이 상당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해소하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체적 부양은 주로 중·장년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장기 간병이나 돌봄을 지속하다 보면 부양자 스스로도 유병률이 높아지는 게 보고된다. 한편 낮은 소득으로 인해 이중부양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저소득층 중·장년층 가족은 그들의 피부양자와 한정된 자원 배분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중·장년층 이중부양 가족의 자원 이전 부족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은 중·장년층 1인 가구 및 노인 1인 가구의 고독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세대 간의 부양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는 중·장년층 가족의 가족관계 향상을 돕기 위한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층 이중부양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서비스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중부양 가족 단위의 교육 및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가족프로그램,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등 전문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성인자녀 대상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 방안

1. 경제적 지원

가. 통합적 성인기 진입 지원 정책 마련

최근 20~30대 청년층은 길어진 교육 기간과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사

회경제적 자립기가 지속적으로 유예되고 있다. 이들 성인자녀는 취업과 결혼의 어려움으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인간 발달 단계에서 성인기는 독립성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부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보다 성인기 자녀들이 독립적인 삶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성인자녀를 직접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가족 의존적 돌봄이 강화될수록 불평등한 사회가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적 대책보다 청년수당, 실업부조와 같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여유진 외, 2016).

심각한 취업난에 처한 성인자녀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없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 경험이 없는 성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직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이 제공되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채창균 외, 2017)을 생각할 때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 대상 실업부조나 청년소득보장제도, 주거지원제도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청년 지원 제도의 혜택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최병근, 2017). 한편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일자리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핀란드나 영국에서는 일자리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업부조와 함께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청년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김기찬, 2018). 이는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리적 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청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 고용, 자산, 주거 지원 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국내 성인자녀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대학교 졸업 이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대상이 니트나 프리터보다 대졸 실업자나 취업준비생인 것(이철선 외, 2016a)을 감안하여 성인자녀 대상 정책의 확대 및 우리나라 청년의 특수성에 기반한 청년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3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일자리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핀란드의 청년보장은 우리나라 청년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부모의 부양을 받는 성인자녀는 장기실업 상태로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적극적인 고용 지원 정책이 필요한 집단(이철선 외, 2016b)임을 주지하여 적극적인 고용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청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속해 있을수록 사회보험 가입 등을 통해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청년기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 및 공적 지원 제도가 확충될 때 사회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성인자녀의 일자리 및 주거 안정화 방안

이 연구를 위한 전화 조사 결과 미혼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은 약 54%로 절반을 초과하였다. 6년 이상 장기간 부양하는 비율도 23%에 이르며, 특히 장년층이 6년 이상 부양하는 비율은 약 34%로 3분에 1을 차지하였다. 이는 중·장년층의 자기부양과 함께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이중

부양으로 삼중 고통이 예상되어 성인자녀의 의존 요인인 일자리 및 주거 안정화를 통한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문가 FGI에서도 미혼 성인자녀의 실업률 해소,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미혼 성인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청년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것이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이 자립할 수 있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을 하는 정책과 청년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 측면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훈련과 취업 연계를 통해 구직 포기 청년층(실망 실업군)을 사회로 끌어내고, 필요한 직무와 청년층의 눈높이를 맞춰 가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취업지원금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시도이다. 중도 탈락과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에 근거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현행 방식 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김유경 외, 2015). 그 일환으로 마련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자가 본인이 6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동안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모든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과 함께 상기 정책 등이 병렬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독립적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 청년의 주거 독립 비율은 취업 유무, 직장과의 거리 등의 요소가 분가에 영향을 주므로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 선별한 주거 지원이 아닌 보다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임덕영, 이경애, 진미윤, 이의중, 2017). 현재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 공급 시도는 중요한 모델이다. 서구와 같은 월세 시스템이 질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주택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김유경 외, 2015). 청년 대상 주거 지원 확대는 중·장년층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전 세대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비경제적 지원

가. 세대 간 자립적 관계 모색: 상호부양과 사적 이전에 대한 기대 변화

혼인 가치관의 약화, 대학원 진학 및 취업 등으로 인한 만혼화 및 결혼 기피 등의 사회현상으로 성인자녀가 독립하는 가족 축소기가 늦어지고 있다. 부모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이 증가하며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실증적인 연구 결과 미혼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은 절반을 초과하였다. 6년 이상 장기간 부양하는 비율도 5분의 1에 이르며, 특히 장년층이 6년 이상 부양하는 비율도 3분에 1을 차지하였다. 또한 이중부양 전후의 가족생활 변화로 4분의 1이 부양자 간의 갈등,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과도한 부양 부담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소비

주의적 결혼문화, 주택 문제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는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사적 이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의존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적 차원에서는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가 상호부양 및 사적 이전에 대한 기대를 낮추어 부모 세대로부터 경제적 및 정서적 독립이 필요하다(장경섭 외, 2013). 즉 자녀 세대는 독립적인 라이프스타일 추구하고 함께 경제적으로도 부모 세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 개선과 함께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로 공유하는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세대 간 정서 지원 서비스 기반 마련

이번 연구 결과 미혼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은 절반을 상회하였다. 장기간 부양하는 비율도 5분의 1에 이르러서 이러한 부양 환경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개인 및 사회생활의 제약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모 세대를 위해서는 가족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정서·심리 지원 서비스가 내실화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과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정서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가 미흡한 편이다. 특히 지역 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지역 단위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센터 접근성이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

가족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마련하고, 상담 인력의 안정화를 통해 전문적·지

속적인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에서도 부모들은 성인자녀를 위한 정기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3분의 2 이상이 거의 매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성인자녀 부양으로 인한 부모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높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성인자녀를 위해 투자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을 자신의 희생을 통한 보상심리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정서적 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별 문제 해결 방식도 중요하나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지지 측면에서도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김유경 외, 2015).

제4절 노부모 대상의 이중부양 부담 해소 방안

1. 경제적 지원

가. 노부모 대상의 소득 기반 강화

이번 연구 결과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은 각각 47%와 36% 수준을 보였다. 부양 기간은 21년 이상이 63%로 거의 3분에 2에 달하였다. 55~64세 연령층의 경우 21년 이상이 67.2%로 전체와 45~54세 연령층보다 높았다. 중·장년층이 장기간 노부모 부양으로 경제적 부담 부담이 상당히 높으리라 예상된다.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 감소는 중·장년층 대상의 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부담 경감 효과도 있으나 이중부양의 원인인 노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이중부양 부담을 간접적

으로 경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특히 노부모와의 비동거 비율은 86%로 노부모의 물리적인 거주 환경은 자립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경제적인 자립은 미흡하다는 점에서 소득 기반의 자립을 도모하는 정책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 정책 사례 분석 결과 노부모 부양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가족돌봄에 대한 비경제적 지원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부양 부담이 상당히 축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공사 간에 분담하고 있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화 속도를 볼 때 중·장년층의 지속가능한 부양 환경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부모 대상의 공적 소득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부모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공적 소득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단독 가구 131만 원, 부부 가구 209만 6000원) 이하인 노인에게 1인 기준으로 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되므로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경제적 지원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의 적정한 소득이 약 104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들이 기초연금에만 의지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 공적연금 또한 평균 수급액이 월 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대략 월 104만 원 정도가 있어야 노후 생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제도의 적정성이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연금제도의 한계는 곧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들의 노후 보장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금급여의 상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

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확대를 통해 일자리 수를 크게 늘리고 참여자의 급여 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b). 이는 노인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만 65세부터 참여 가능한 공익활동형과 달리 시장형사업단·인력파견형사업단의 경우 만 60세부터 참여 가능하므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고용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 소득 안정성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 확대 및 질적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노부모 대상의 노후 안전망 마련

이 연구를 위한 전화 조사 결과 중·장년층의 노부모 집단 평균 부양 기간은 24년이며, 부모의 평균 연령은 부의 경우 84세, 모의 경우 83세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부양의 장기화와 고령화가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피부양자의 고령화뿐 아니라, 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고령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양자의 연령이 증가하고 부양 부담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 만족도 및 가족 건강성은 하락했다. 이는 향후 고령화 정도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사회에서 장기화된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가구 내 부정적인 영향들이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장년층 대상에서 가장 높은 정책 욕구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마련’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생산성과 경제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아 지연된 생애주기 과업에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고령화 사회로

의 빠른 이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구 내의 자생적인 노력으로만 해소될 수 없으므로 공적 차원의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장년층 가족 단위에서는 중·장년과 노부모가 자립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부양 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 사회에서는 이들의 자립적인 노후 안전망 설계를 지원하는 연금제도를 비롯하여 일자리 연계 서비스, 노후 준비 상담 서비스 등의 확대를 통해 개별 가구의 차등을 균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공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겠다.

2. 비경제적 지원

가. 공적 부양 체계의 접근성 제고

이 연구 결과 노부모의 부양관은 점차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져 국가 및 사회 등 공적 부양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양 환경 또한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맞벌이부부 증가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가족돌봄을 담당할 주체는 급속한 속도로 감소하였다. 이는 가족을 대체할 부양 주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이중부양 유형 가운데 각 이중부양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간의 분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화 조사 결과 이중부양의 부양 주체별 분담 구조는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44.4%)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경제적 이중부양, 신체적 이중부양, 도구적 이중부양에 대해서는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에 대한 의견이 높았으나, 정서적 이중부양에 대해서는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이중부양 유형의 분담 구조에서 애정과 친밀성에 기반한 부양 유형의 경우에는 가족이 부양을 주로 수행하고, 공적 주체는 가족의 부양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분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중부양과 신체적 및 도구적 이중부양에 대해서는 연구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적 부양 체계로 전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부모를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보편성과 포괄성을 확장하여 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성이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부모의 신체적 돌봄으로 인한 부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도 상향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1~2등급의 경우 제한된 재가급여 서비스로 인해 가족의 돌봄 없이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4시간 보호가 가능한 시설 입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가급여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노인 부부 가구나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소득, 건강, 사회관계 등이 취약한 노인들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비동거 자녀의 부양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 이중부양은 경제부양 및 신체·도구부양과는 차별되게 피부양자에 대한 친밀성과 애정이 기반이 되어야 하므로 공적 주체보다는 가족을 비롯한 사적인 주체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근으로 올수록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분거가 확산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면대면 접촉이 감소하는 현실에서 정서적 이중부양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노부모 동거 집단에서의 정서적 이중부양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이중부양 집단의 가족관계가 가장 낮았다. 이는 부양 집단으로 기능하는 중장년 집단에서 부양으로 인한 심리·정서적인 스트레스가 가족간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서적 이중부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의 여가와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바우처를 활용하여 가족 단위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적 부양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소진되기 쉬운 부양자를 위해서는 가족상담기관을 통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세대 간 상호 교류 증진: 상호부양 제고

이 연구를 위한 전화 조사 결과 3세대 가구에서 부모→중장년과 중장년→부모로의 상호 부양이 더 활발하였다. 현금과 현물지원도 상호간에 빈번하게 나타나 3세대 가구의 가구 구조가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의 상호부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호부양이 높은 3세대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 및 가족 건강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3세대로 구성된 가족 구조가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과 노부모의 세대 간 교류가 물리적인 가구 특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상호부양을 실제적으로 증진하고, 이로 인한 가족 내 긍정적인 경제·심리·정서적 기능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세대 간 교류를 통한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 상호부양으로 부양 부담의 감소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세대 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 가구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측면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부모와 중장년 집단 간의 세대 간 교류를 증진하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

특히 노부모 가구와의 비동거가 일상적인 현 상황에서 비동거 가구에 대한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비동거 중·장년층 자녀와 노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교육 혹은 상호 교류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대 간 교류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 강선아. (2013).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애착, 자아분화와 부모 부양의식**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강원도).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3b87344467801a58ffe0bdc3ef48d419에서 인출.
- 강성진, 전형준. (2005).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10(1), 23-46.
- 강성호. (2011). 부양의식 및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와 소득보장효과. **재정정책논집**, 13(1), 113-144.
- 강이수. (2011). 취업여성의 '남편'과 일가족문제. **젠더와 문화**, 4(1), 43-87.
- 강혜규, 정홍원, 함영진, 권소일, 김지민, 오다은, 민진아. (2015).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기도청 홈페이지. (2018). **청년구직지원금**. <http://www.gg.go.kr/archives/3886860>에서 2018. 5. 15. 인출.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홈페이지. (2018). **청년구직지원금**. https://www.gjf.or.kr/?portfolio_page=%EA%B2%BD%EA%B8%B0%EB%8F%84-%EC%B2%AD%EB%85%84-%EA%B5%AC%EC%A7%81%EC%A7%80%EC%9B%90%EA%B8%88에서 2018. 5. 15. 인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8). **중·장년층 대상 고용지원 제도**. <http://moel.go.kr/index.do>에서 2018. 6. 2. 인출.
- 고용조사분석시스템. (2008~2016). **고령화연구패널[데이터 파일]**.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2.jsp>에서 2018. 2. 24. 인출.
- 곽인숙. (2012). 베이비부머세대와 노인의 성인자녀와의 동거를 결정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23-44.
- 관계부처 합동. (2018).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http://www.molit.go.kr/USR/NEWS/m_71/

- dtl.jsp?lcmspage=3&id=95081018에서 인출.
- 광주시청 홈페이지. (2018). **광주청년드림수당**. <https://gj3dreams.modoo.at/?link=b4y9vxey>에서 2018. 5. 15.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8). **소득세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86%8C%EB%93%9D%EC%84%B8%EB%B2%95#undefined>에서 2018. 5. 5. 인출.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2018). **‘부양’**.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에서 2018. 11. 4. 인출.
- 국민연금공단. (2017). **2016 국민연금 생생통계**. 전북: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18). **국민연금**.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에서 2018. 7. 1. 인출
- 국토교통부. (2017). **주거복지 로드맵 설명서**.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bodo.jsp>에서 2018. 7. 14. 인출.
- 국회정책예산처. (2017).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재정규모**. http://www.nabo.go.kr/Sub/Finance_stat/fn03-99.jsp에서 2018. 6. 25. 인출.
- 권기갑, 이재모. (2009).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혁신논집**, 4(2), 1-19.
- 권나경, 이진숙. (2016). 유럽국가들의 돌봄레짐별 비공식 돌봄제공자 지원정책 비교. **유럽사회문화**, 16, 293-321.
- 권중돈. (1994). **한국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사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f97aef5169291731ffe0bdc3ef48d419에서 2018. 6. 25. 인출.
- 권중돈. (2018).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본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과제. **보건사회연구**, 38(1), 9-36.
- 금재호. (2011).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노동리뷰**, 61-75.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113-149.

- 김기용, 조성용, 노경희, 지재현. (2018). **해외취업지원 미래전략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 김기찬. (2018). **취업성공패키지, 실업부조제로 대체...폐업 자영업자에 소득지원**. <https://news.joins.com/article/22901823>에서 2018. 6. 15. 인출.
- 김기태. (2002). 노인의 사회재적응 평가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1, 71-97.
- 김기현. (2017).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 54-68.
- 김남영. (2011). 부모 부양을 위한 상속법적 접근방안. **이슈와 논점**, 307.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김두섭, 박경숙, 이세용. (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 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89.
- 김미경, 주재선(2003). 고령화시대 노인부양부담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성연구**, 65(1), 181-210.
- 김미혜, 신경림, 강미선, 강인. (2006). 고령화 한국사회의 부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별 부양체계 분석을 통하여. **한국노년학**, 26(3), 617-639.
- 김병규. (2015. 9. 10.). 복지부, 지자체 90여곳 효도·장수 수당 폐지 '권고'.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0/0200000000AKR20150910202300017.HTML>에서 인출.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진우. (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진우.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종서, 손창균, 최영준,.....윤아름.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2017). 중장년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족건강성 및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2(3), 471-492.

- 김영란, 장혜경, 이윤석. (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범, 박준식, 이기원. (2008). 자녀와의 지원교환과 노인의 부양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47-65.
- 김영옥, 김종숙, 이선행. (2017).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17년)**.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2010).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경기도: 양서원.
-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 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연구보고서 2015-10.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 (2017).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부양 환경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0, 6-28.
- 김정석, 김익기. (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김준. (201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의 입법영향분석.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김지경. (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부양부담. **월간노동리뷰**, 6, 21-36.
- 김태완, 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44, 6-19.
- 김현정. (2015). 성인자녀의 입장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유형: Q방법론의 적용. **사회복지연구**, 46(1), 135-163.
- 김혜선, 박효진. (2016) 중·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7). 555-563.
- 김희삼. (2008).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30(1). 71-130.
- 대한민국정부. (2017). **2017 한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서울: 대한민국정부.

-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서울: 대한민국정부.
- 류연규. (2012). 가족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의 성격 규명. **비판사회정책**, 37(11), 113-153.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2018). **청년주거지원제도**.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de=MENU001>에서 2018. 5. 15. 인출.
- 맹진영, 이용재. (2017).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노인복지연구**, 72(2), 85-112.
- 민기채, 송창길, 이재은. (2017). 국민연금제도의 부양가족연금 재정추계 및 수급요건 개선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9(2), 325-350.
-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김한근, 이신영, 조준행, . . . 송준아.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박종준. (2017).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관련 법제 개편 방향. **보건복지포럼**, 12, 67-80.
- 박철우, 이영민, 정동열, 김기용. (2017). **내일채움공제 내실화 및 확대방안**. 고용노동부
-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 (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법제처. (2018).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lawNotice/lawNoticeInfo.jsessionid=fjZvFgTRCm247mN04zBo99FFtX9gS2x1btD3nslAZg7NPvfW0wfCX7ZFqxx3I68b.moleg_a2_servlet_engine2?ogLmPpSeq=46287&mappingLbicId=0&announceType=TYPE5&pageIndex=&rowIdx=10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 (2017). <차태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1876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 (2018a). **2018 기초연금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b).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c).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d).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e).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f). **2018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g).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8. 5. 28.).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SEARCHKEY=&SEARCHVALUE=&page=1&CONT_SEQ=344924에서 인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8). **국민연금**.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1에서 2018. 6. 3. 인출.
- 복지로 홈페이지. (2018). **효도수당**.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755>에서 2018. 5. 8. 인출.
- 서울을 가지세요 서비스 홈페이지. (2018). **서울형 뉴딜일자리**. https://have.seoul.go.kr/jsonDetailView2.action?m=main&service_id=120에서 2018. 5. 27. 인출.
-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2018). **청년수당**. https://youthhope.seoul.go.kr/front/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18634fec499e45158eaac8369b66130f에서 2018. 5. 15. 인출.
-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2018). **서울시 청년수당**.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4651867>에서 2018. 11. 22. 인출.
- 서울특별시. (2016).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세종: 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2018). **서울형 뉴딜일자리**. <http://spp.seoul.go.kr/>

- main/news/news_explanation.jsp#view/272459?tr_code=snews.
에서 2018. 11. 23. 인출.
- 석재은, 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우덕, 강은나, 이윤경, 김지미, 최인덕, 양찬미. (2015).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미애. (2014). 40,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 및 가족 담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2), 131-141.
- 성미애, 옥선화. (2002).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1), 1-21.
- 성미애, 최연실, 최새은, 이재림. (2016). 일방적 '의존'과 '상호성'의 경계에서 - 부모-비혼 성인자녀관계의 재조명,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59-183.
- 성재민. (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월간노동리뷰**, 15, 75-83.
- 성지미, 안주엽. (2011). 중고령자의 은퇴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29(2), 175-212.
- 손병돈. (1999).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효과, **한국사회복지학**, 39, 157-179.
- 송다영. (2014). 한국 30-40대 여성의 이중돌봄 현실과 돌봄의 다중성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3), 209-230.
- 송리라, 이민아. (2012). 성역할태도와 우울. 성별·연령집단별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35(3), 87-116.
- 송현주, 임란. (2016).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전북: 국민연금공단.
- 신경아. (2014). 신자유주의시대 남성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30(4), 153-187.
- 신영선. (2005). **맞벌이부부 가족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 한 연구: 사회교환이론 및 가족주의가치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울)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da51d1a320cdc602ffe0bdc3ef48d419에서 인출.
- 신준섭. (2018. 10. 8.). 국민일보 ‘학력지상주의-> 과잉 학력->미자립...’ 악순환 끊어야 ‘청년 실업’ 숨통.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16164&code=11131100&cp=nv>에서 인출.
- 신효식, 이선정. (2007). 퇴직한 남자 노인의 가족자원 및 관련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87-213.
- 심현정, 정나라. (2018). 5가지 키워드로 본 5060세대의 가족과 삶. 2018 미래에셋 은퇴라이프 트렌드 조사 보고서. 서울: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안종석, 박수진, 이서현. (2017).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국제비교.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양영순. (2007).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시간사용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6, 1-26.
- 양영자. (2008). 농촌노인부부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 60(1), 127-152.
- 여성가족부. (2004). **전국보육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 **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유진, 김영순, 강병구, 김수정, 김수완, 이승윤, 최준영. (2016).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옥선화. (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e5240b4ca6401a1d에서 인출.
- 워크넷 홈페이지. (2018). **청년취업성공패키지**. <http://www.work.go.kr/pkg/>

- young/content03/summary.do에서 2018. 6. 1. 인출.
- 유경원. (2007).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 분석**. 서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유민상. (2008). **사교육비 지출이 노후대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19ce9ae4a569c112ffe0bdc3ef48d419에서 인출.
- 유민균. (1997). **효의 인식과 가족환경, 가족관계 및 성격적 특성의 상관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6ca534e85de6580ffe0bdc3ef48d419에서 인출.
- 윤석명. (2017).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하고 공적·사적 연금 균형발전 발판 마련을. **나라경제**, 10-11.
- 이광규. (1990). **한국의 가족과 종족**. 서울: 믿음사.
- 이덕식. (2015). 가족주의에서 나타난 효와 부양의 고찰, **社會科學研究**, 32(2), 173-209.
- 이미경. (2017. 10. 27). 2017년 세법개정안 3편. **병원신문**.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215>에서 인출.
- 이병희, 김혜원, 길현종, 이민홍. (2017).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선형, 조막래. (2015). **가족 내 다양한 돌봄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방안마련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선희.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족수발자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건복지포럼**, 11, 89-101.
- 이성림. (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이성희.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와 개선방안. **월간노동리뷰**, 3, 46-58.

- 이소정. (2016).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9, 70-82.
- 이수비, 송영매, 이현옥, 최운주. (2016). 젠더관점에서 본 기혼성인의 취업상태와 자살에 대한 연구 - 성 역할 인식을 매개하여, **비판사회정책**, 51, 487-520.
- 이수옥. (2016).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국토정책 Brief**, 560. 세종: 국토연구원.
- 이에스터. (2018. 2. 27.).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건강보험료 월 2만 2000원 줄어든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399631>에서 인출.
- 이연미. (2006).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양부담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서울)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d87647a558d538ccffe0bdc3ef48d419에서 인출.
- 이용, 김동기. (2011).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2), 115-140.
- 이윤경.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 급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165, 96-104.
- 이윤경.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271-292.
- 이윤경, 강은나, 김세진, 변재관. (2017).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장기요양제도 개편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보호 현황과 저해 요인 분석. **보건복지포럼**, 5, 77-89.
- 이울. (2018. 6. 28.). 하반기 주52시간 노동제... 기초연금 25만원·아동수당 10만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8/0200000000AKR20180628052300002.HTML?input=1195m>에서 인출.
- 이인환. (2008). **기혼자녀의 부모부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

-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bb1374f2f8996db2ffe0bdc3ef48d419에서 인출.
- 이재림. (2015).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에 나타난 제도적 가족주의,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78-89.
- 이지호, 서복경. (2018). **2017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2018년 추적조사 분석**. 서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이진숙. (2017).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지원체계 효율화방안 모색. **보건복지포럼. 제10월호**, 78-87.
- 이진숙. (2018). 한국 가족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나. **월간 복지동향**, 235, 22-28.
- 이진숙, 최원석. (2014). 남성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경로 연구 : 성역할태도, 사회서비스 이용정도, 자아존중감, 삶의 질 관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6, 377-404.
- 이철선, 김문길, 임성은. (2016a).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선, 김영란, 변수정. (2016b). **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이한세. (2018. 6. 7.). 부모 모시고 부업도 되고... '일석이조' 가족요양보호사.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693754>에서 인출.
- 이희경. (2010).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경기도)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bed3c1d3124d4685ffe0bdc3ef48d419에서 인출.
- 임덕영, 이경애, 진미윤, 이의중. (2017).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 세종: LH 토지주택연구원.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018). **효도수당**.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new.jsp?lawsNum=411101323120

- 16&scType=title&scValue=%C8%BF%B5%B5%20%BC%F6%B4%E7
&isClose=0&kind=1에서 2018. 6. 1.인출.
- 장경섭. (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23(3), 1-23.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립. (2013).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한나. (2016). 치매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지역격차 연구: 2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2), 385-420.
- 장호성. (2018. 3. 20). '청년 내일채움공제' 실효성 논란에 청년층 의견 부분. 한국금융. **한국금융**.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032012303385525e6e69892f_18에서 인출.
- 전성무. (2016. 2. 16). 매년 200억 쏟아붓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성과는?. **News1**. <http://news1.kr/articles/?2573870>에서 인출.
- 전성표. (2007). **부모 부양: 효도인가, 교환인가?, 가족, 정부 그리고 계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전수현. (2018. 2. 9). '아이가 아플 때'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보장 추진. **베이비뉴스**.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00>에서 인출.
- 전승훈, 박승준. (2011).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 29(4), 171-205.
- 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용찬, 변재관, 문현상.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2001).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 . . 이은진. (2010). **베이비 부모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 . .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병순, 김태욱. (2016).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모델 구축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정부 24 홈페이지. (2018). **시흥시 조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000000066680>에서 2018. 6. 5. 인출.
- 정성호. (2006). **중년의 사회학**. 경기도: 살림지식총서.
- 정순돌, 이현희. (2012). 가족특성과 노후준비의 관계: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세대의 비교. **한국노인복지학회**. 58. 209-231.
- 정지아, 최석현. (2010). 가족의 노후 지원/돌봄의 맥락적 성격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 대만, 일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33-153.
- 조성희. (2011). **노부부간 친밀감이 배우자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충남)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3fb48d739c923e35ffe0bdc3ef48d419에서 인출.
- 조정문, 장상희. (2001). **가족 사회학**. 대전: 아카넷.
- 조지현. (2011). **동아시아 4개국의 노인부양의식 및 노인부양행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일본·중국·대만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전남).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1c52035ecb82016bffe0bdc3ef48d419에서 인출.
- 조추용. (2004).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71-99.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2018). **노부모 주택특별공급제도**. <http://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505.jsp>에서 2018. 5. 30. 인출.

- 진달래. (2013). **대학생이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경남).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fefb3c8b354854c1ffe0bdc3ef48d419에서 인출.
- 진주영, 하규수. (2016).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2), 45-57.
- 채창균. (2017). 청년층 소득 지원: 한국과 OECD 국가 비교. **KRIVET Issue Brief**, 132.
- 채창균, 최영섭, 오호영, 정재호. (2017).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세종: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최병근. (201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의 및 정책과제. **이슈와 논점**, 1295,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최순남. (1995).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신논문집**, 12, 497-534.
- 최순남. (2000). **현대복지론**. 경기도: 한신대학교 출판부.
- 최여진, 이재림. (2014). 성인자녀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구적 지원 관련 요인 - 지원에 관한 태도 및 지원 제공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87-105.
- 최인희. (2014). 손자녀 돌봄이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문화**, 26(4), 118-138.
- 최인희, 김정현. (2013).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 영향요인 비교 연구. **가족과 문화**, 25(3), 159-185.
- 최혜경. (2000).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부양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10, 141-164.
- 탁현우. (2016). **기초연금제도 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통계청. (2000a). **경제활동인구조사[데이터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00b). **사회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00c). **인구동향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00d).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02). **사회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05a). **경제활동인구조사[데이터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05b). **인구동향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0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06). **사회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09). **사회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10a). **경제활동인구조사[데이터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10b). **사회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10c). **인구동향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10d).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12). **인구동향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14). **사회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15a). **경제활동인구조사[데이터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15b). **인구동향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15c). **인구주택총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16a). **사회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16b). **2016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6c). **인구동향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17a). **경제활동인구조사[데이터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17b). **2017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7c). **인구동향조사[데이터 파일]**. <https://mdis.kostat.go.kr/search/>에서 2018. 4. 15. 인출.
- 통계청. (2017d). **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8a). **2017년 인구동향조사 -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8b). **생명표(국가승인통계 제101035호)**. <http://kostat.go.kr/wsearch/search.jsp>에서 2018. 5. 1. 인출.
- 통계청. (2016.12. 8.) **장래인구추계: 2015~206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bSeq=&aSeq=35793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인출.
- 통계청. (2017. 8. 22.)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

- ode=read&bSeq=&aSeq=36233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인출.
- 하석철. (2012). 부양 경험이 노후부양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3(3), 181-209.
- 하준경. (2006). 금주의 논란: 가계(家計)의 교육비 부담 증가와 금융시장. **주간금융브리프**, 15(13), 3.
- 한경혜. (2011). 한국의 베이비부머 연구.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 MetLife Korea Foundation 심포지움**.
- 한경혜, 이서연. (2009). 배우자 부양자의 부양동기, 사회적 지지와 부양부담: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2), 683-699.
- 한국고용정보원. (2010, 2012, 2014, 2016). **고령화연구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노동연구원. (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9, 2012, 2015).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다원. (2018. 4. 24.). 중남미로 방향 튼 해외 취업 지원... 질 문제는 개선점. **시사저널e**.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3093>
- 홍경준. (2002).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0, 61-85.
- 홍미령. (2004). 고령화사회 노인요양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지역복지정책**, 18, 159-182.
- 황남희. (2012). **비시장노동과 세대간 이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남희, 김경래, 배혜원, 김재호. (2017).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보연. (2017. 3. 28.). 노인 38%만 국민연금 수급... 평균 연금액 36만8천원.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88321.html>에서 인출.

- Albertini, M. (2016). *Ageing and family solidarity in Europe*. World Bank Group.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7678.
- Albertini, M., & Kohli, M. (2013). The generational contract in the family: An analysis of transfer regimes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 4, 828-840.
- Albin, B., Siwertsson, C., & Svensson, J. (2011). Informal care of the elderly in Sweden. *Aotearoa New Zealand Social Work*, 23(1/2), 66.
- Altonji, J.G., Hayashi, F., Kotlikoff, L. (1996). The Effects of Income and Wealth on Time and Money Transfer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NBER Working Paper. No. 5522*.
- Aquilino, W., Supple, K. (1991). Parent-child relations and parent satisfaction with living arrangements when adult children live at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3-27.
- Arber, S. and Ginn, J. (1990). The Meaning of Informal Care: Gender and the Contribution of Elderly People, *Ageing and Society* 10(4), 429-454.
- Barro, R. J. (1974). Are Government Bonds Net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1095-1117.
- Beavers, W. R. & M. N. Voeller. (1983). Family models: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 Beck, U., and Beck-Gernsheim, E.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Los Angeles: Sage.
- Becker, G. (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 1063-1093.
- Becker, G., and Tomes.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 Families, *Journal of Labour Economics* 4(2).
- Becker, G. and Murphy, K. M. (1988). A Theory of Rational Addi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4), 675-700.
- Bernheim, B., Shleifer, A. and Summers, L. H. (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1045-1076.
-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Wiley.
- Bogenschneider, K. (2006). *Family policy matters.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ody, E. M. (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1), 19-29.
- Caplan, G. (1982). *Community support systems and mental health*. New York: Springer.
- Chang, K.-S. (2010).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 Chang, K.-S. (2014). *A theoretical account of the individual-family-population nexus in post-socialist transitions*. In Z. Rajkai(Ed.), *Family and social change in socialist and post-socialist societies: Change and continuity in Eastern Europe and East Asia* (pp. 19~35). Leiden and Boston: Brill.
- Chappell, N. L. and Reid, R. C. (2002). Burden and well-being among caregivers: examining the distinction. *Gerontologist* 42(6), 772-780.
- Charles., N. and James., E. (2005). He earns the bread and butter and I earn the cream: job insecurity and the male breadwinner family in South Wales, *Work, Employment & Society* 19(3), 481-502.
- Colombo, F., & Mercier, J. (2012). *Help wanted? Fair and sustainable*

- financing of long-term care services*.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34(2), 316-332.
- Couch, A., Kenneth, D., Mary, C. and Douglas, W. A. (1999), Time and Money both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o Older Parents, *Demography*36(2), 219-232.
- Courtin, E., Jemiai, N., & Mossialos, E. (2014). Mapping support policies for informal carer across European Union. *Health Policy, 118*, 84-94.
- Cox, D. (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508-546.
- Cox, D. and Rank, M. (1992). Inter-vivos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2), 305-314.
- Daly, M., and Lewis, J.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51(2), 281-298.
- Davis, L. V. (1996). *Role theory and social work treatment*. In. Turner, F. J.(Ed.), *Social Work Treatment*(pp. 581-600). New York: The Free Press.
- Edward, J. R., and Rothband, N. P. (2000). Mechanisms Linking work and family: Specify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 and family construc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2), 178-199.
- Erikson, E. H. (1974). *Dimensions of a New Identity*. *Jefferson Lectures in the Humanitie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UP Oxford.
- Esping-Andersen, G. (2006). A welfare stat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he welfare state reader*, 434-454.
- Europa Homepage. (2018). *Earning-related allowance*. Retrieved from

-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09&langId=en&intPageId=4528>. 2018. 6. 5.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17). *Your social security rights in Germany*. European Commission.
-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2015). *Better reconciliation of family, care and work*.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 Fingerman, K. L. (2017). Millennials and their parents: Implications of the new young adulthood for midlife adults. *Innovation in Aging, 1*(3), 1-16.
- Frankenberg, E., Lillard, L., & Willis, R. J. (2002).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627-641.
- Fraser, N. (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591-618.
- Geurts, T. Poortman, A. R. and Tilburg, T. G. (2012). Older parents providing child care for adult children: Does it pay off?.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74(2), 239-250.
- Given, B. A. and Given, C. W. (1991). Family caregiving for the elderly. *Annual Review of Nursing Research*9, 77-101.
- Goldfarb, S. F. (2014). Who pays for the 'Boomerang Generation'? A legal perspective on financial support for young adults. *Harvard Journal of Law and Gender, 37*, 45-106.
- Greenhaus, J. H. and Powel G.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31, 72-92.
- Grundy, E. and Henretta, J. C. (2006). Between elderly parents and adult children: a new look at the intergenerational care

- provided by the 'sandwich generation'. *Ageing & Society*26(5). 707-722.
- Helsinki City Homepage. (2018). *Care allowance*. Retrieved from <https://www.hel.fi/helsinki/en/social-health/elderly/informal/informal-care-act>. 2018. 6. 4. 인출.
- Hochguertel, S. and Henry, O. (2000). Compensatory InterVivos Gifts, *Working Papers In Economics*31. Goeteborg University.
- Hood, J. C.(1986). The Provider Role: Its Meaning and Measur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48(2), 349-359.
- Ingersoll-Dayton, B., Neal, M. B., & Hammer, L. B. (2001). *Aging parents helping adult children: The experience of the sandwiched generation*. *Family Relations*, 50(3), 262-271.
- Jensen, R. T. (2003). Do Private Transfer 'Dispalce' the Benefits of Public Transfer? Evidence from South Afric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89-112.
- Kato, T., A., Kanba, S., & Teo, A. T. (2018). Hikikomori: Experience in Japan and international relevance. *World Psychiatry*, 17, 105-106.
- Kela Homepage. (2018). *Labour market subsidy*. Retrieved from <http://www.kela.fi/web/en/labour-market-subsidy>. 2018. 6. 5. 인출.
- Kittay, E.(1999). *Lover's Labor: Essays i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 Kotlikoff, L.J. and Spivak, A.(1981). The Family as an Incomplete Annuities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89(2), 372-391.
- Kotre, J.(1984). *Outliving the self: Generativ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liv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unemund, H.(2006). Changing welfare states and the 'sandwich generation': Increasing burden for the next generation?.

-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Later life*1(2), 11-30.
- Lee, Y.-S. (2011). Attitudes about parental economic support to young adult children: Comparisons among children, mother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4(3), 1-30.
- Loomis, L. S. and Booth, A.(199). Multigenerational caregiving and well-being: *The myth of the beleaguered sandwich gener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16(2), 131-148.
- Miller, D. A.(1981). The 'sandwich' generation: *Adult children of the aging*. *Social Work*26(5), 419-423.
- Millar, J., & Warman, A. (1996). Family obligation in Europe. *Social Policy Research*, 107, Retrieved from <https://www.jrf.org.uk/report/family-obligations-europe>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2). The Youth Guarantee in Finland: Providing employment, *training and a customer service*. Retrieved from https://www.oph.fi/download/148967_The_Youth_Guarantee_in_Finland.pdf
- Motel-Klingebiel, A., Tesch-Roemer, C., & Kondratowitz, H. V. (2005). Welfare states do not crowd out the family: Evidence for mixed responsibility from comparative analyses. *Ageing & Society*, 25, 863-882.
- Muir, T. (2017), Measuring social protection for long-term care,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93, *OECD Publishing*, Paris.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1787/a411500a-en>
- Nordsoc Homepage. (2018). *labour market subsidy*. Retrieved from <http://www.nordsoc.org/en/Finland/Unemployment>. 2018. 6. 5. 인출.
- Nussbaum, M. (2002). *Long-term care and social justice: A challenge to conventional ideas of the social contract*, *Ethical Choices in*

- Long-Term Care: What Dose Justice Require?* WHO.
- OECD. (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 OECD. (2016a). 한 눈에 보는 사회 2015: OECD 사회지표. OECD.
- OECD. (2016b). *Be Flexible! How Workplace Flexibility can help European Employees to Balance Work and Family*. OECD.
- OECD. (2017). *Investing in Youth: Japan*. OECD Publishing, Paris.
- Olson, D. H., C. Russell, and D. H. Sprenkle.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Petry. N. M. (2002). A Comparison of Young, Middle-Aged, and Older Adult Treatment-Seeking Pathological Gamblers, *The Gerontologist*42(1), 92-99.
- Poulshock, S. W., & Deimling, G. T. (1984). Families caring for elders in residence: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burden. *Journal of gerontology*, 39(2), 230-239.
- Preston, S. H. (1984). Children and the Elderly: Divergent Paths for America's Dependents. *Demography*21(4), 435-457.
- Razin, A. and Sadka, E. (2002).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Size of the Welfare Stat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110(4), 900-918.
- Regine, S. (1998). *일하는 엄마가 아이도 잘 키운다*. 김순화 역, 2000, 글담(인디고).
- Rice, R. W., Near, J. P. and Hunt, R. G. (1979), Unique variance in job and life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work-related and extra-workplace variable, *Human Relation*(32), 605-623.
- Roloff, M. E.(1981).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e Social Exchange Approach*. Sage.
- Rosenzweig, M. R. and Wolpin, K.I.(1994). Parental and Public Transfers to Young Women and Their Children, *American*

- Economic Review* 84(5), 1995-1213.
- Rössler, W.(2012). Stress, burnout, and job dissatisfaction in mental health workers.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 Clinical Neuroscience* 262(2), 65-69.
- Rubin, R. and White-Means, S.(2009). Informal caregiving: Dilemmas of sandwiched caregiv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0, 252-267.
- Saraceno, C. (2010). Social inequalities in facing old-age dependency: A bi-gener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1), 32-44.
- Soma, N., and Yamashita, J.(2013). The double burden of care in Japan: Emerging new social risks of women providing both elderly care and childcare, *presented at the EASP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Hong Kong.
- Spillman, B. and Pezzin, L.(2000). Potential and active family caregivers: Changing networks and the 'sandwich generation', *The Milbank Quarterly* 78(3), 347-373.
- Sutor, J. J. and Pillemer, K.(1988). Explain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 1037-1047.
- Suomi Hompage. (2018). *Care allowance*. Retrieved from <https://www.suomi.fi/citizen/health-and-medical-care/falling-ill/guide/acting-as-an-informal-carer/financial-support-for-informal-care>에서 2018. 4. 30. 인출
- Thévenon, O. (2015). *Aid policies for young people in Europe and the OECD countries*. Families and Societies.
- Thibaut, J. W. and Kelle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Free Press.

- Tosi, M., & Grundy, E. (2018). Returns home by children and changes in parents' well-being in Europe. *Social Science & Medicine*, 200, 99-106.
- UK Homepage. (2018). *Jobseeker's Allowance*. Retrieved from <https://www.gov.uk/jobseekers-allowance/what-type-you-get>. 2018. 6. 5. 인출.
- UNESCAP. (2015). *Long-term care of older persons in Singapore*. Bangkok.
- Verbeek-Oudijk, D., Woittiez, I., Eggink, E., & Putman, L. (2014). *Who cares in Europe?*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Wakasaki, A., Matsumoto, K. and Kakehashi, C. (2006). A Study on Successful Ageing of Middle and Advanced Aged People - with Major Focus on the Current Status of Women in their Major Stage Living in Three Districts in Japan. *Kawasaki Journal of Medical Welfare* 12(1), 45-53.
- Warren, C. (1981). *Helping networks: How people cope with problem in the urban communit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Indiana Press.
- Wetzstein, M., Rommel, A., & Lange, C. (2015). *Informal caregivers-Germany's largest nursing service*. Publ. Robert Koch Institute, Berlin.
- Willis, R. J. (1980). The Old Age Security Hypothesis and Population Growth. *Demographic Behavior: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Decision-making*, Westview Press, 43-69.
- Yamashita, J. and Soma, N. (2016). The Double Responsibilities of Care in Japan: Emerging New Social Risks of Women Providing both Elderly Care and Childcare. *New Life-Courses, Social Risks and Social Policy in East Asia*. New York: Routledge, 95-112.

1.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전망조사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전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가족변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만 20-65세)의 의견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담당부서: 인구정책연구실 (☎ 044-287-8339 박신아 연구원)

조사원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사도
성
만 연령

거주 지역	_____시·도
응답자	•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 만 연령: _____세
	• 결혼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유배우(동거) <input type="checkbox"/> ② 사별 <input type="checkbox"/> ③ 이혼 <input type="checkbox"/> ④ 별거(이혼전제) <input type="checkbox"/> ⑤ 미혼
	• 이중부양가구: <input type="checkbox"/> ① 이중부양가구 <input type="checkbox"/> ② 비이중부양가구
전화번호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14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최근 우리 사회는 1~2인가구 급증으로 가족 규모가 줄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내 부양이나 돌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양 및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귀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③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④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 ⑤ 언제(까지)라도 ⑥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 ⑦ 기타(_____)

1.

2. 귀하께서는 미혼 성인자녀(만 25세 이상)에게 필요한 다음 역할을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함	가족이 책임진다 생각한다 적당히 책임져야 함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함	사회가 가족보다 책임진다 생각한다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함	모르겠음
2-1.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2-2. 고인상담 등 정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2-3. 간병·수발 등 신체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2-4. 상사(사촌·제사)·병환동행 등 도우미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2-5. 전반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2-1.

2-2.

2-3.

2-4.

2-5.

3. 귀하께서는 성인자녀가 노부모의 부양을 어느 수준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부모의 능력여부를 떠나 반드시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
- ②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
- ③ 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
- ④ 부모가 원할 경우에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 ⑤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 ⑥ 기타(_____)

3.

최근 중·장년층 세대가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를 '이중부양'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가구주들이 점점 고령화되어 예전보다 중장년층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또 성인 자녀들의 취업이나 결혼 등이 늦어져 독립도 지체되고,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어 이중부양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귀하께서는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양에 관한 다음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럼	대체로 그럼	매우 그럼	모르 겠음
4-1. 성인자녀와 노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똑같이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2. 상사(사촌)·노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노부모를 우선으로 도와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3. 상사(사촌)·노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상사(사촌)를 우선으로 도와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1.

4-2.

4-3.

5. 귀하께서는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의 경우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함 ②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함
 ③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함 ④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져야 함
 ⑤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함 ⑥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5.

6. 귀하께서는 미혼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의 경우 누구를 얼마만큼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성인자녀와 노부모 양쪽 다 가능한 최대로 부양함
 ② 성인자녀보다 노부모를 좀 더 중점적으로 부양함
 ③ 노부모보다 성인자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부양함
 ④ 성인자녀와 노부모 모두 최소한만 부양함
 ⑤ 성인자녀와 노부모 모두 부양하지 않음
 ⑥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6.

7. 만일 귀하가 미혼의 성인자녀가 있는 부모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가 대학교졸업 후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해 계속해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귀하는 어떻게 부양하기를 희망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자녀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겠다
 ② 자녀와 따로 살면서 부양하겠다
 ③ 자녀와 따로 살면서 일시적으로 부양하겠다
 ④ 자녀와 따로 살면서 부양하지 않겠다
 ⑤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⑥ 기타()

7.

8. 만일 귀하의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귀하는 어떻게 부양하기를 희망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양하겠다
 ②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부양하겠다
 ③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일시적으로 부양하겠다
 ④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부양하지 않겠다
 ⑤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⑥ 기타()

8.

9. 만일 귀하의 성인자녀가 독립하지 못하여 부모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고 노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귀하는 어떻게 거주하기를 희망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성인자녀와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
 ② 성인자녀와는 따로 살되, 부모님과는 함께 살겠다
 ③ 성인자녀와는 함께 살되, 부모님과는 따로 살겠다
 ④ 성인자녀와 부모님과 따로 살겠다
 ⑤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⑥ 기타()

9.

416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 9-1. 만일 귀하의 성인자녀가 독립하지 못하여 부모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고 노부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귀하는 어떻게 부양하기를 희망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성인자녀와 부모님 모두 지속적으로 부양하겠다
 - ② 성인자녀는 일시적으로 부양하고, 부모님은 지속적으로 부양하겠다
 - ③ 성인자녀는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부모님은 일시적으로 부양하겠다
 - ④ 성인자녀와 부모님 모두 일시적으로 부양하겠다
 - ⑤ 성인자녀와 부모님 모두 부양하지 않겠다
 - ⑥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 ⑦ 기타()

9-1.

향후 이중부양 전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이중부양에는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부양과 정서적(말벗 등) 부양, 신체부양(간병·수발 등), 도구부양(가사·병원동행 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향후 중장년층세대가 담당하는 이중부양이 현재보다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구분	현재보다 매우 줄어들	현재보다 줄어들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늘어남	현재보다 매우 늘어남	모르겠음
10-1. 경제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0-2. 정서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0-3. 신체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0-4. 도구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0-5. 전반적인 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0-1.

10-2.

10-3.

10-4.

10-5.

11. 귀하께서는 향후 중장년층세대가 담당하는 부양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중부양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순위 _____
- ① 경제적 이중부양 ② 정서적 이중부양 ③ 신체적 이중부양
 - ④ 도구적 이중부양 ⑤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11.

12. 귀하께서는 향후 이중부양을 현재보다 누가 더 책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구분	전적으로 가족이 책임지게 될 것임	가족이 사회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가족과 사회가 동일하게 책임질 것임	사회가 가족보다 좀 더 책임지게 될 것임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지게 될 것임	모르겠음
12-1. 경제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2-2. 정서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2-3. 신체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2-4. 도구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2-5. 전반적인 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2-1.

12-2.

12-3.

12-4.

12-5.

13. 귀하께서는 향후 중장년층세대가 이중부양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현재보다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구분	현재보다 매우 완화됨	현재보다 완화됨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강화됨	현재보다 매우 강화됨	모르겠음
13-1. 경제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3-2. 정서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3-3. 신체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3-4. 도구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3-5. 전반적인 부양	①	②	③	④	⑤	⑥

13-1.

13-2.

13-3.

13-4.

13-5.

14. 귀하께서는 향후 중장년층세대대의 이중부양 부담으로 가족생활 중 어떤 부분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세가지만 선택) 1순위: ___ 2순위: ___ 3순위: ___

- ① 변화 없음
- ① 가족 간에 협동심/친밀감 증대
- ② 부양하는 성인자녀 및 노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함
- ③ 부양문제로 부부 간에 갈등이 증가함
- ④ 부양문제로 형제자매 및 기타 가족 간에 갈등이 증가함
- ⑤ 경제 부담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짐
- ⑥ 신체 및 정신건강이 악화됨
- ⑦ 퇴사 및 휴직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음
- ⑧ 개인시간 감소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음
- ⑨ 기타(_____)

14. 1순위

2순위

3순위

이중부양에 대한 정책 욕구

15. 귀하께서는 향후 중장년층세대가 바라는 이중부양 지원정책에 대한 욕구는 현재보다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구분	현재보다 매우 감소함	현재보다 감소함	현재 수준임	현재보다 증가함	현재보다 매우 증가함	모르겠음
15-1. 경제적 이중부양 지원정책 욕구	①	②	③	④	⑤	⑥
15-2. 정서적 이중부양 지원정책 욕구	①	②	③	④	⑤	⑥
15-3. 신체적 이중부양 지원정책 욕구	①	②	③	④	⑤	⑥
15-4. 도구적 이중부양 지원정책 욕구	①	②	③	④	⑤	⑥

15-1.

15-2.

15-3.

15-4.

16. 귀하께서는 향후 중장년층세대가 바라는 지원정책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중부양 지원정책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선택) 1순위 ___ 2순위 ___ 3순위 ___ 4순위 ___

- ① 경제적 이중부양 지원정책
- ② 정서적 이중부양 지원정책
- ③ 신체적 이중부양 지원정책
- ④ 도구적 이중부양 지원정책
- ⑤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16.

4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17. 귀하께서는 성인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가족의 경우 성인자녀 및 노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7-1: 성인자녀: _____ 17-2: 노부모: _____
① 경제지원(보조금 지원 등) ② 일자리지원 ③ 의료지원
④ 심리·정서지원 ⑤ 돌봄서비스 지원(집안일 지원 등)
⑥ 생각해보지 않았다/모르겠다 ⑦ 기타(_____)
18. 귀하께서는 향후 중장년층 세대가 이중부양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위로 두가지만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중장년층의 일자리 마련 ② 이중부양가족 대상 보조금 지원
③ 이중부양가족의 거주비 지원 ④ 이중부양가족 대상 세금공제 등 가계보전
⑤ 이중부양가족 대상 가족돌봄휴직제도/정원휴직제도
⑥ 이중부양가족 대상 상담 및 정서서비스 지원
⑦ 이중부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강화
⑧ 이중부양가족과 지역사회 간 소통과 연대강화
⑨ 이중부양가족 간에 네트워크 및 유대관계 강화
⑩ 기타(_____)

17-1.
 17-2.

18.
 1순위
 2순위

19. 명

응답자 일반사항

19. 귀하의 총 가구원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 현재 누구와 사는 지 질문:

- ⑤ 혼자 살음 ① 배우자 ② 미혼자녀 ③ 기혼자녀 ④ 나의 아버지 ⑤ 나의 어머니
⑥ 배우자의 아버지 ⑦ 배우자의 어머니 ⑧ 손자녀 ⑨ 나의 형제자매 ⑩ 배우자의 형제자매
⑪ 기타(_____)

20. 귀하의 가구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조사원이 현재 누구와 사는지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번호 기입

- ① 1인 가구 ② 부부가구 ③ 부부+ 미혼자녀 ④ 한부모+ 미혼자녀
⑤ 3세대가구 ⑥ 조부모+ 손자녀 ⑦ 기타가구(_____)

20.

21. 귀하께서는 형제·자매 순위(사망한 형제자매 포함)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장남 ② 장녀 ③ 차남 이하 ④ 차녀 이하

21.

22. 귀하의 최종학력(졸업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이하(무학 포함)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학 이상

22.

23. 귀하께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일한다(근로자) ② 일하지 않는다(비근로자) **질문 24로**

23.

23-1. (일을 하고 있다면) 귀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및 관련 가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⑥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기타

23-1.

23-2. (일을 하고 있다면)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③ 상용임금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⑤ 무급가족종사자(가정주부 등-가족 일을 돕되 임금이 없는)
 ⑥ 기타(무엇: _____)

23-2.

※ 상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24. 지난 1년간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 ⑥ 소득없음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799만원 ⑨ 800만원 이상 ⑩ 잘 모르겠음

24.

25. 귀댁의 재산(동산+부동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⑥ 재산 없음 ① 5천만원 미만 ② 5천만원~1억 미만
 ③ 1억~2억 미만 ④ 2억~3억 미만 ⑤ 3억~4억 미만
 ⑥ 4억~5억 미만 ⑦ 5억 이상 ⑧ 잘 모르겠음

25.

2.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 조사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복지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원에서는 전국 중·장년층(만 45~64세)을 대상으로 이중부양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담당부서: 인구정책연구실 (☎ 044-287-8339 박신아 연구원)

조사원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시도 성 만 연령

— — — —

거주 지역	_____시·도	<input type="checkbox"/> ① 도시(시부) <input type="checkbox"/> ② 농·어·산촌(군부)
응답자	•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 만 연령: _____세	
	• 결혼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유배우(동거) <input type="checkbox"/> ② 사별 <input type="checkbox"/> ③ 이혼	
	<input type="checkbox"/> ④ 별거(이혼전제) <input type="checkbox"/> ⑤ 미혼	
전화번호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22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5-4. (미혼 성인자녀 부양) 귀하가 주로 부양하는 미혼 성인자녀(만 25세 이상)는 현재 일(1주간에 1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일한다(근로자) ② 일하지 않는다(비근로자) ③ 비해당(학생)

5-4.

5-5. (미혼 성인자녀 부양)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부양하는 모든 미혼 성인자녀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까?

구분	정기적		비정기적	
	현금지원	현물지원	현금지원	현물지원
5-5-1. 부모-부양자녀	월평균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연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5-5-2. 부양자녀-부모	월평균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연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5-5.

※ 현금지원에는 용돈, 생활비, 병원비(의료비), 학비, 부동산구매 포함/현물지원에는 여행 및 관광,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 및 음식물, 상품권 등 포함

5-6. (미혼 성인자녀 부양)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부양하는 모든 미혼 성인자녀와 말벗 및 신체 수발, 가사·병원동행 등을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까?

구분	정서적 도움 (고민상담, 말벗, 이야기 상대 등) [보기] ① 도움을 주지 않음 ② 일주일에 1회 정도 ③ 일년에 1~2회 정도	신체적 도움 (간병수발) ① 거의 매일(주4회 이상) ② 한달에 1~2회 정도 ③ 기타(_____)	도구적 도움 (청소·식사준비·세탁·병원동행) ① 일주일에 2~3회 정도 ② 3개월에 1~2회 정도
	5-6-1. 부모-부양자녀		
5-6-2. 부양자녀-부모			

5-6.

6. 다음은 부양하는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주로 경제적 지원, 말벗(고민상담, 이야기 상대) 및 신체수발, 가사·병원동행 등의 도움을 드리는 부모님은 누구십니까?

- ① 부양하는 부모 없음(질문7로) ① 본인부모
 ② 배우자부모 ③ 본인부모와 배우자 부모

6.

※ 주로 부양하는 부모가 양쪽 부모 모두인 경우(6번에 ③로 응답) 본인부모를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6-1. (부모부양) 귀하가 주로 부양하는 부모를 부양한 기간은 몇 년 되었습니까? 약 _____ 년

6-1. 년

6-2. (부모부양) 귀하가 주로 부양하는 부모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6-2-1. 부. 만 _____ 세 6-2-2. 모. 만 _____ 세

6-2-1.
6-2-2.

6-3. (부모부양) 귀하가 주로 부양하는 부모님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6-3-1. 부. _____ 6-3-2. 모. _____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6-3-1.
6-3-2.

※ 3-1번과 3-2번 질문에서 ②~⑥로 응답한 경우만 6-4번, 6-5번 질문(①로 응답한 경우는 질문 6-6번으로 가시오.)

6-4. (부양부모와 비동거인 경우)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주로 부양하는 부모님과 어느 정도 연락(전화, 휴대폰 문자, 이메일, 편지 등)하였습니까? ※ 부모님 두 분이 따로 살 경우 자주 연락하는 분 기준

- ①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 ② 거의 매일(주4회 이상)
 ③ 일주일에 2~3회 정도 ④ 일주일에 1회 정도
 ⑤ 한달에 1~2회 정도 ⑥ 3개월에 1~2회 정도
 ⑦ 일년에 1~2회 정도 ⑧ 기타(_____)

6-4.

6-5. (부양부모와 비동거인 경우)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주로 부양하는 부모님과 어느 정도 만났습니까? ※ 부모님 두 분이 따로 살 경우 자주 만나는 분 기준

- ① 전혀 만나지 않는다
- ② 거의 매일(주4회 이상)
- ③ 일주일에 2~3회 정도
- ④ 일주일에 1회 정도
- ⑤ 한달에 1~2회 정도
- ⑥ 3개월에 1~2회 정도
- ⑦ 일년에 1~2회 정도
- ⑧ 기타()

6-5.

--

6-6. (부모 부양)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부양하는 모든 부모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까?

구분	정기적		비정기적	
	현금지원	현물지원	현금지원	현물지원
6-6-1. 본인-부양부모	월평균 만원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연 만원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6-6-2. 부양부모-본인	월평균 만원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연 만원	<input type="checkbox"/> 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없음

6-6-1.

--	--	--	--

6-6-2.

--	--	--	--

※ 현금지원에는 용돈, 생활비, 병원비, 부동산구매 등 포함/현물지원에는 여행 및 관광, 건강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의식 및 음식물, 상품권 등 포함

6-7. (부모 부양)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부양하는 모든 부모와 말벗 및 신체수발, 가사·병원동행 등을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까?

구분	정서적 도움 (고민상담, 말벗, 이야기 상대 등) (보기 ⑥ 도움을 주지 않음	신체적 도움 (간병수발) ① 거의 매일(주4회 이상)	도구적 도움 (청소·식사준비·세탁·병원동행) ② 일주일에 2~3회 정도
	6-7-1. 본인-부양부모	③ 일주일에 1회 정도	④ 한달에 1~2회 정도
6-7-2. 부양부모-본인	⑥ 일년에 1~2회 정도	⑦ 기타	

6-7-1.

--	--	--

6-7-2.

--	--	--

이중부양부담

※ 이중부양부담은 4번에서 ① 또는 ④ 또는 ⑤를 응답한 경우는 모두 조사합니다.

7. 귀하는 지난 1년간(2017년) 모든 미혼 성인자녀 또는 모든 부모를 위한 총 부양비용 중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하였습니까? 7-1. 미혼 성인자녀: _____ 7-2. 부모: _____

- ※ 부양비용=의식주비+보건의료비+교양오락비(신문·사적·영화·공연관람)+교양오락용품구입비/교양오락서비스)+교통통신비 등
- ① 전혀 부담하지 않음
 - ② 일부만 부담함(분담자 누구: _____)
 - ③ 전체를 부담함

7-1.

--	--	--

7-2.

--	--	--

8. 귀하가 지난 1년간(2017년) 모든 미혼 성인자녀와(또는) 모든 부모를 부양하는 데 지출한 총 비용은 월평균 얼마이며 가계소득의 몇 퍼센트입니까?

8-1. 부양비용: _____ 만원 8-2. 가계소득의 _____ %
 ※ 부양비용은 부양한 모든 성인자녀와(또는) 모든 부모의 총 부양비용을 말함

8-1.

--	--	--	--

8-2.

--	--	--	--

9. 귀하가 지난 1년간(2017년) 모든 미혼 성인자녀와(또는) 모든 부모를 부양하는 데 지출한 총 비용은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 ② 별로 부담되지 않음
- ③ 약간 부담이 됨
- ④ 매우 부담이 됨

9.

--

- ㉔ 없음 ㉑ 중장년층의 일자리 마련
- ㉕ 이중부양가족 대상 보조금 지원 ㉒ 이중부양가족의 거주비 지원
- ㉖ 이중부양가족 대상 세금공제 등 가계보전
- ㉗ 이중부양가족 대상 가족돌봄휴직제도/청원휴직제도
- ㉘ 이중부양가족 대상 상담 및 정서서비스 지원
- ㉙ 이중부양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강화
- ㉚ 이중부양가족과 지역사회 간 소통과 연대강화
- ㉛ 이중부양가족 간에 네트워크 및 유대관계 강화
- ㉜ 기타(_____)

응답자 일반사항

16. 귀댁의 총 가구원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명입니까?

※ 현재 누구와 사는 지 질문:

- ㉑ 혼자 살음 ㉒ 배우자 ㉓ 미혼자녀 ㉔ 기혼자녀 ㉕ 나의 아버지 ㉖ 나의 어머니
- ㉗ 배우자의 아버지 ㉘ 배우자의 어머니 ㉙ 손자녀 ㉚ 나의 형제자매 ㉛ 배우자의 형제자매
- ㉜ 기타(_____)

17. 귀댁의 가구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조사원이 현재 누구와 사는지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번호 기입

- ㉑ 1인 가구 ㉒ 부부가구 ㉓ 부부+ 미혼자녀 ㉔ 한부모+ 미혼자녀
- ㉕ 3세대가구 ㉖ 조부모+ 손자녀 ㉗ 기타가구(_____)

18. 귀하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순위(사망한 형제자매 포함)는 어떻게 됩니까?

- 18-1. 귀하: _____ 18-2. 배우자: _____
- ㉑ 장남 ㉒ 장녀 ㉓ 차남 이하 ㉔ 차녀 이하

19. 귀하의 최종학력(졸업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 ㉑ 초등학교 이하(무학 포함) ㉒ 중학교 ㉓ 고등학교 ㉔ (전문)대학 이상

20. 귀하께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㉑ 일한다(근로자) ㉒ 일하지 않는다(비근로자) **※ 질문 22로**

20-1. (일을 하고 있다면) 귀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㉑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㉒ 사무종사자
- ㉓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㉕ 기능원 및 관련 가능 종사자,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㉖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기타

20-2. (일을 하고 있다면)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㉑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㉒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 ㉓ 상용임금근로자 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 ㉕ 무급가족종사자(가정주부 등-가족 일을 돕되 임금이 없는)
- ㉖ 기타(무엇:_____)

※ 상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15.

년월	
일	

16.

--	--

 명

17.

--

18-1.

--

18-2.

--

19.

--

20.

--

20-1.

--

20-2.

--

426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21. 귀하는 맞벌이 부부이십니까? (* 표지에 응답자 결혼상태가 유배우(동거)인 경우 해당/부부 모두 1주일에 1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① 맞벌이 부부이다 ② 맞벌이 부부가 아니다 ③ 비해당(사별·이혼·별거/미혼)
22. 지난 1년간 귀택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④ 소득 없음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799만원 ⑨ 800만원 이상 ⑩ 잘 모르겠음
23. 귀택의 재산(동산+부동산)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⑥ 재산 없음 ① 5천만원 미만 ② 5천만원~1억 미만
 ③ 1억~2억 미만 ④ 2억~3억 미만 ⑤ 3억~4억 미만
 ⑥ 4억~5억 미만 ⑦ 5억 이상 ⑧ 잘 모르겠음
24. 귀택의 현재 경제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어렵다 ② 조금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여유가 있는 편이다 ⑤ 매우 여유가 있다
25. 귀택이 아래 항목 중 가계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두가지만 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⑥ 없음 ① 식비(식료품비) ② 의료비 ③ 주거비(관리비, 월세 등)
 ④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등 ⑤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주택자금대출 포함)
 ⑥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 ⑦ 부모님에게 들어가는 비용(배우자 부모 포함)
 ⑧ 기타(_____)
26. 귀택의 생활비를 주로 부담하고 계시는 분과 이외에 부담하시는 분은 각각 누구십니까?
 26-1. 주된 부담자: _____ 26-2. 이외에 부담자: _____ * 대출을 받은 경우는 명의를 선택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와 배우자
 ④ 가구주의 성인자녀 ⑤ 가구주의 부모 ⑥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⑦ 가구주의 친인척 ⑧ 기타(_____)

21.

22.

23.

24.

25.

26-1

26-2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